연구자료
민관협력 2011-09-259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 – 시민사회 협력 방안 연구

2011. 11

손혁상, 한재광, 박보기

KOICA 한국국제협력단
WORLD FRIENDS KOREA

연구책임자

손 혁 상
-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소장, 공공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원

한 재 광
- ODA Watch 사무총장

박 보 기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이 주 희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대리

김 소 위
-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연구원

서 진 희
-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석사과정

이 윤 미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자문위원

송 진 호
- 한국YMCA전국연맹 대외협력실장

안 성 식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윤 현 봉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 명 신
- 월드비전 해외사업본부장

이 성 훈
-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 – 시민사회 협력 방안 연구

2011. 11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연구책임자 : 손혁상)

목차

Ⅰ. 연구개요 ·····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및 내용 ····· 5
가. 연구목적 ····· 5
나. 연구내용 ····· 6
3. 연구전략 및 방법 ····· 7
가. 연구전략 ····· 7
나. 연구방법 ····· 9
4. 주요 연구일정 및 연구팀 구성 ····· 13

Ⅱ. 정부-시민사회 협력의 이론적 배경 ····· 15
1. 정부-시민사회 협력의 의미 ····· 15
2. 정부- 시민사회 협력의 주요 이론 ····· 18
가. 참여적 거버넌스 ····· 19
나. 신정책의제 ····· 21
다. 결사체로서의 시민사회 ····· 22
라. 제4의 영역으로서의 개발NGO ····· 24
3. 정부-시민사회 협력의 국제 현황 ····· 26
가. 정부-시민사회 협력의 역사 ····· 26
나. 정부-시민사회 개발협력의 해외 현황 분석 : 규모와 지원방식 ··· 29

Ⅲ. 시민사회 협력의 전략적 목표 ····· 35
1. 시민사회와의 협력 목표 ····· 35
가. 개요 ····· 35

나. 양자간 원조 중 CSO협력 사업비 비율에 따른 특징 ····· 39
다. 크로스 커팅 이슈(Cross-cutting issues) ····· 42
2. 시민사회 협력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 44
가. 중점협력 지역 ····· 44
나. 중점협력 사업분야 ····· 46
다. 시민사회 협력 정책문서 ····· 48

Ⅳ. OECD/DAC 회원국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현황분석 ····· 52
1. 분류방식 개요 ····· 52
2. 프로그램 분석 ····· 54
가. 타 지원과 구별된 특성을 가진 전략적 파트너에 대한 지원 ····· 60
나. 신규단체 지원 ····· 62
다. 특정지역 및 분야 지원 ····· 63
라.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 65
마. 연간 지원규모 ····· 67
바. 대응자금비율 ····· 68
사. 사업기간 ····· 69
3. 시사점 ····· 70

Ⅴ. 한국의 정부-시민사회협력 현황분석 ····· 72
1. KOICA의 민간단체지원사업 현황 ····· 72
가. 지원규모 ····· 72
나. 지역 및 분야 ····· 75
다. 자금지원방식 ····· 78
2.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 78
가. NGO의 특성에 따른 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 ····· 79
나. NGO의 특성에 따른 그룹화의 기준 ····· 80
다. NGO 그룹화의 주체 ····· 81
라. 신규단체 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 ····· 82
마. 정부지정 지원사업의 확대 필요성 ····· 83
바. NGO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 방식의 도입 ····· 83

사. 개발NGO외 시민사회단체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필요성 ···· 86
아. 현지 사업 수행 시 인권 및 시민적 권리와 의무,
여권신장 등과 관련된 교육 혹은 연계 사업의 필요성 ····· 86
자. 지원사업비의 간접비 비율 확대 시 우려사항 ····· 87
차. 개발도상국 현지 NGO 직접 지원제도의 도입 ····· 88
3. 정부-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실무·전문가 의견조사 ····· 90

Ⅵ.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제안 ····· 99
1. 정책기조와 프로그램 제안 개요 ····· 100
2. 특성에 따른 지원 ····· 103
가. 신규단체지원 프로그램 ····· 103
나. 중견단체지원 프로그램 ····· 108
다.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 ····· 112
3. 창의적개발을 위한 환경조성 ····· 125
가.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 ····· 125
4. ODA 정책보완 ····· 134
가. 특정지역 및 분야지원 프로그램 ····· 134
5. 국제개발 파트너십 ····· 138
가. 국제 및 현지 NGO지원 프로그램 ····· 138
6. CSO 개발역량강화 ····· 143
가. 사업기초조사지원 프로그램 ····· 143
나. CSO코디네이터 프로그램 ····· 148
다. KOICA-CSO데스크 프로그램 ····· 151
7. 프로그램 실행 일정 ····· 156

참고 문헌 ····· 159

부 록

Ⅰ. OECD/DAC 24개국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현황
1. OECD/DAC 24개국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 169
가. 그리스 ····· 169
나. 네덜란드 ····· 170
다. 노르웨이 ····· 172
라. 뉴질랜드 ····· 173
마. 덴마크 ····· 174
바. 독일 ····· 176
사. 룩셈부르크 ····· 177
아. 미국 ····· 178
자. 벨기에 ····· 178
차. 스웨덴 ····· 180
카. 스위스 ····· 181
타. 스페인 ····· 181
파. 아일랜드 ····· 183
하. 영국 ····· 183
거. 오스트리아 ····· 186
너. 이탈리아 ····· 188
더. 일본 ····· 189
러. 캐나다 ····· 190
머. 포르투갈 ····· 192
버. 프랑스 ····· 193
서. 핀란드 ····· 195
어. 호주 ····· 196
저. EU 대표부 ····· 197
2. OECD/DAC 24개국 시민사회협력 목표, 우선지역·분야 및 협력 프로그램 조사 자료 ····· 202
가. CSO 협력 목표 및 우선순위 ····· 202
나. 우선 지역 및 우선 분야 ····· 203

다.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 205

Ⅱ. 설문조사 ····· 211
1. 국내 NGO 설문조사 ····· 211
가. 응답단체의 특성 ····· 213
나. 설문조사 내용 ····· 216
다. 설문지 ····· 234

Ⅲ. 국내외 인터뷰 ····· 240
1. 국내외 인터뷰 대상자 ····· 240
가. 국내 인터뷰 대상자 ····· 240
나. 해외 인터뷰 대상자 ····· 242
2. 해외현지조사 자료 1 : 영국 ····· 245
가.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 245
나. British Overseas NGOs for Development (Bond) ····· 249
다. Action Aid ····· 251
라. Triple Line ····· 252
마. International NGO Training and Research Centre(INTRAC) ··· 254
바. War on Want ····· 256
사. Christian Aid ····· 257
3. 해외조사 자료 2 : 스웨덴 ····· 259
가. Sweden Mission Council ····· 259
나. Sida Partnership Forum ····· 263
다. Sida ····· 265
라. Forum Syd ····· 269
마. Africa Group of Sweden(AGS) ····· 271
4. 해외조사 자료 3 : 호주 ····· 274
가. Sexu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Australia ····· 274
나. AusAID ····· 277
다. ACFID ····· 283
라. Interplast AUSTRALIA & NEW ZEALAND ····· 289

마. IDSS ····· 293
바. Plan Australia ····· 295
사. OXFAM Australia ····· 300
5. 해외조사 자료 4 : 네팔 ····· 303
가. AIN ····· 303
나. JICA ····· 305
다. DFID ····· 307
라. Love Green Japan ····· 310
마. AusAID ····· 313
바. DHRC ····· 318
사. Shia ····· 322
아. Caritas Nepal ····· 327
자. HDCS ····· 331
차. SWC ····· 334
카. ActionAID ····· 337
타. 네팔 현지 한국 개발NGO 간담회 ····· 341
6. 간담회 회의록 ····· 352
가. 1차 개발NGO 워킹그룹 간담회 ····· 352
나. 개발NGO 현지사업 경험자 간담회 ····· 355
다.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이사회 간담회 ····· 360
라. 2차 개발NGO 워킹그룹 간담회 ····· 364
마. 자문회의 ····· 369
바. 공개 심포지엄 ····· 372

표 목차

<표 1-1> 해외조사 대상국별 주요 인터뷰 내용 ····· 10
<표 1-2> 연구방법 개요 ····· 12
<표 1-3> 주요 연구 일정 ····· 13
<표 2-1> 정부의 개발NGO 지원 공통점 ····· 17
<표 2-2> 시민사회의 정책과정 참여 ····· 21
<표 2-3> OECD/DAC 회원국 및 NGO의 원조 규모 변화 ····· 30
<표 2-4> 2007-2009년 OECD/DAC회원국 NGO지원 자금 규모 ····· 32
<표 3-1> 시민사회 협력사업의 목표 ····· 36
<표 3-2> 오스트리아의 중점 협력 지역 ····· 45
<표 3-3> 국가별 시민사회 협력 목표 및 전략 관련 정책 문서 ····· 48
<표 4-1> OECD/DAC 23개 회원국의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분류방식 ···· 52
<표 4-2> 23개 공여국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내용 ····· 55
<표 4-3> OECD/DAC 국가들의 전략적파트너 지원프로그램 ····· 60
<표 4-4> 미국, 오스트리아, 호주의 신규단체 지원프로그램 ····· 62
<표 4-5> OECD/DAC 국가들의 특정지역 및 분야 프로그램 ····· 63
<표 4-6> OECD/DAC 국가들의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 65
<표 4-7> OECD/DAC회원국들의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자금규모 현황 ··· 67
<표 4-8> OECD/DAC 회원국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매칭비율 현황 ···· 68
<표 4-9> OECD/DAC 회원국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지원기간 현황 ···· 69
<표 5-1> KOICA의 민간단체지원사업 실적변화의 추이(1995~2011)
(민간단체지원사업 및 관련 행정비부분만 포함) ····· 72
<표 5-2> KOICA의 민간단체지원사업 국가, NGO 및 지원사업 현황
(1995~2011) ····· 74
<표 5-3> 1995~2009년 KOICA의 민간단체지원사업 분야별 현황 ····· 77
<표 5-4> KOICA의 민간단체지원사업 개요 ····· 78
<표 5-5> NGO 그룹화 및 특성에 따른 지원제도 도입 필요 여부 ····· 79
<표 5-6> NGO 그룹화의 구분 기준 ····· 80
<표 5-7> NGO 그룹화 분류작업의 주체 ····· 81

<표 5-8>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단체를 위한
지원액 상한이 있는 제도의 필요 여부 ····· 82
<표 5-9> 처음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를 위한
적절한 지원액 상한선 ····· 82
<표 5-10> NGO 지원사업 외 정부지정 지원사업 확대 필요 여부 ····· 83
<표 5-11> NGO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 방식의 도입 필요성 ····· 83
<표 5-12> NGO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방식이 필요한 이유 ····· 84
<표 5-13> NGO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방식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 85
<표 5-14> 개발NGO 외 민주주의, 인권, 여성 등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필요 여부 ····· 86
<표 5-15> BHN(Basic Human Needs) 외 인권 및 시민적 권리와 의무,
여권신장 등에 대한 교육 혹은 이와 연계된 사업 필요 여부 ··· 87
<표 5-16> 간접비 비율(인건비 지원) 확대 시 우려되는 사항 ····· 87
<표 5-17> 개발도상국 현지 NGO 직접 지원의 필요성 ····· 88
<표 5-18> 현지 NGO 직접 지원이 필요한 이유 ····· 88
<표 5-19> 현지 NGO 직접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 89
<표 6-1> KOICA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5대 분야 9개 프로그램구성 ··· 103
<표 6-2> 신규단체 지원프로그램 ····· 103
<표 6-3> 중견단체 지원프로그램 ····· 108
<표 6-4> 전략적파트너 지원프로그램 ····· 112
<표 6-5> 영국의 PPA의 자금지원 사전실사 내용 ····· 115
<표 6-6> 영국 PAA의 전략적 파트너 심사단계 ····· 115
<표 6-7> 영국 PPA의 사업심사서 ····· 116
<표 6-8> 인증제도의 내용 ····· 118
<표 6-9>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 ····· 127
<표 6-10> 영국의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인
'GPAF-Innovation Window' ····· 131
<표 6-11> 특정지역 및 분야지원 프로그램 ····· 134
<표 6-12> 국제 및 현지 CSO지원 프로그램 ····· 138
<표 6-13> 사업기초조사 지원프로그램 ····· 144
<표 6-14> CSO코디네이터 프로그램 ····· 148

<표 6-15> KOICA-CSO데스크 프로그램 ····· 151
<표 6-16> 5대 분야 9개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내용 ····· 155
<표 6-17> 5대 분야 9개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실행 일정 ····· 156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목표 ····· 5
<그림 1-2> 연구전략 및 방법 ····· 8
<그림 2-1> 제4의 영역으로서의 NGDO ····· 25
<그림 2-2> 2001-2009년 OECD/DAC회원국의
NGO에 대한/NGO를 통한 총 ODA자금 ····· 30
<그림 2-3> 2009년 DAC회원국 양자간 ODA 중 NGO 지원 비율 ····· 31
<그림 2-4> 각국(기관)별 대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재정지원방식 수 ··· 33
<그림 3-1> OECD/DAC 국가들의 시민사회 협력 목표 ····· 37
<그림 3-2> NGO를 통한 사업비 비율에 따른 시민사회 지원 목표 :
전체 ODA 중 20% 이상 ····· 39
<그림 3-3> NGO를 통한 사업비 비율에 따른 시민사회 지원 목표 :
전체 ODA 중 20% 미만 (6%~19%) ····· 40
<그림 3-4> NGO를 통한 사업비 비율에 따른 시민사회 지원 목표 :
전체 ODA 중 5% 이하 ····· 41
<그림 3-5> CSO 협력사업 지원의 우선 분야 ····· 46
<그림 5-1> KOICA의 민간단체지원사업 실적변화의 추이(1995~2011)
(민간단체지원사업 및 관련 행정비부분만 포함) ····· 73
<그림 5-2> KOICA의 민간단체지원사업 국가, NGO 및 지원사업 현황
(1995~2011) ····· 74
<그림 5-3> 1995~2010년 KOICA의 민간단체지원사업 지역별 현황 ① ··· 75
<그림 5-4> 1995~2010년 KOICA의 민간단체지원사업 지역별 현황 ② ··· 76
<그림 5-5> NGO 그룹화 및 특성에 따른 지원제도 도입 필요 여부 ····· 79
<그림 5-6> NGO 그룹화의 구분 기준 ····· 80
<그림 5-7> NGO 그룹화 분류작업의 주체 ····· 81

<그림 5-8>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단체를 위한
지원액 상한이 있는 제도의 필요 여부 ····· 82
<그림 5-9> 처음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를 위한
적절한 지원액 상한선 ····· 82
<그림 5-10> NGO 지원사업 외 정부지정 지원사업 확대 필요 여부 ····· 83
<그림 5-11> NGO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 방식의 도입 필요성 ····· 83
<그림 5-12> NGO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방식이 필요한 이유 ····· 84
<그림 5-13> NGO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방식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 85
<그림 5-14> 개발NGO 외 민주주의, 인권, 여성 등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필요 여부 ····· 86
<그림 5-15> BHN(Basic Human Needs) 외 인권 및 시민적 권리와 의무,
여권신장 등에 대한 교육 혹은 이와 연계된 사업 필요 여부 ··· 87
<그림 5-16> 간접비 비율(인건비 지원) 확대 시 우려되는 사항 ····· 87
<그림 5-17> 개발도상국 현지 NGO 직접 지원의 필요성 ····· 88
<그림 5-18> 현지 NGO 직접 지원이 필요한 이유 ····· 88
<그림 5-19> 현지 NGO 직접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 89
<그림 6-1> 신규단체 지원프로그램 수행절차 및 시행 일정 ····· 106
<그림 6-2> 중견단체 지원프로그램 수행절차 및 시행 일정 ····· 110
<그림 6-3> 인증제도 시행 절차 ····· 119
<그림 6-4> 인증제도의 진행 절차 흐름도(안) ····· 121
<그림 6-5> 호주의 인증제도 절차 안(draft) 흐름도 ····· 122
<그림 6-6> 캄보디아 CCC의 Voluntary NGO Certification System
절차 흐름도 ····· 123
<그림 6-7>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 수행절차 및 시행 일정 ····· 124
<그림 6-8>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 수행절차 및 시행 일정 ····· 129
<그림 6-9> 특정 지역 및 분야지원 프로그램 수행절차 및 시행 일정 ····· 136
<그림 6-10> 국제 및 현지 CSO지원 프로그램 수행절차 및 시행 일정 ··· 140
<그림 6-11> 사업기초조사지원 프로그램 수행절차 및 실시 일정 ····· 145
<그림 6-12> CSO코디네이터 프로그램 수행절차 및 실시 일정 ····· 150
<그림 6-13> KOICA-CSO데스크 프로그램 수행절차 및 실시 일정 ····· 153

박스 목차

<박스 4-1> 스웨덴의 시민사회협력의 목표 ····· 66
<박스 6-1> 인증제도의 기대효과 ····· 118
<박스 6-2> 영국 GPAF-Innovation Window 사업이 규정하는 '창의' ··· 126
<박스 6-3> CSCF를 통한 WOMANKIND Worldwide의 여성지원사업 ··· 132
<박스 6-4> 영국 CSCF를 통한 네팔의 장애인분야 시민사회 활성화 사례 ··· 133
<박스 6-5> 호주의 네팔 CSO지원 DAP프로그램 관련 인터뷰 ····· 143
<박스 6-6> 덴마크의 Project Fund 사업조사지원금 ····· 147
<박스 6-7> 일본의 NGO사업 보조금 제도 ····· 147

약어

AAA	Accra Agenda Action
ACFID	Australian Council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usAID	The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BHN	Basic Human Needs
CC2A	Community Call to Action
CCC	Cooperation Committee for Cambodia
CSCF	Civil Society Challenge Fund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P	Direct Aid Programme
DCI	Development Cooperation Instrument
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
FGI	Focus Group Interview
FO	Framework Organization
GPAF	Global Poverty Action Fund
GRO	Grassroots Organizations
HLF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INTRAC	International NGO Training and Research Centre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MAPS	Multi-Annual Programme Scheme
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NGDOs	Nongovernmental Development NGOs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ATC	Project Advice and Training Centre
PPA	Partnership Programme Agreements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PVO	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
RBA	Rights-based Approach
RDIF	Rights Democracy and Inclusion Fund
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UN	the United Nations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Ⅰ.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한국 정부는 2010년 10월에 '국제개발협력선진화전략'을 발표하고, NGO에 대한 지원규모를 2015년까지 2010년 약 90억의 10배(약 900억)로 확대할 계획을 확정하는 등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정부의 대표적인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인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의 '민간단체지원사업'은 시민사회협력에 대한 확고한 이론적 기반과 체계적 전략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사회와 한국사회의 변화와 기대를 수용하기 위해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사회는 1950년대 이후 개발NGO를 포함한 시민사회가 다자간·양자간 원조기구와 다른 전략적 강점 및 차별성을 가진다고 인정하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ODA 집행 정책을 실시해왔다. 2008년 OECD/DAC 회원국들의 NGO에 대한 ODA지원규모는 순지출 기준 양자간 ODA의 11.14% 이르고 있다.[1)]

또한 국제사회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시민사회 참여 및 기여 확대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 공여자들이 2008년 가나의 아크라에서 개최된 3차 원조효과성고위급회담에서 발표한 아크라행동선언(Accra Action Agenda, AAA)에서 Civil Society Organization(CSO)[2)]를 독립적인 주요 원조행위자로 인정하고, 개발에 대한 CSO의 기여를 최대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협력할 것을 밝힌 것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3)]

---

1) 2008년 OECD CRS (Credit Recording System)을 분석해 보면 순지출 기준 양자간 ODA 규모는 114,147.6백만 달러인데 그중 NGO지원 규모는 12,715.2백만 달러이다. 이 내용에는 DAC회원 국가들이 자국NGO 외에 국제NGO(예 : International Trust Fund for Demining and Mine Victims Assistanc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를 지원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2) 최근에는 개발NGO 이외에도 여성단체, 환경단체, 자원봉사단체, 의료보건단체 및 인권단체 등 다양한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체들을 포괄하는 용어로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를 사용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CSO 중 국제개발협력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단체들을 개발NGO로 특정하여 분류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CSO를 개발NGO와 애드보커시 NGO를 모두 포함하는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시민사회조직으로 지칭하며, 따라서 NGO와 병행하여 사용한다.

3) http://www.oecd.org/dataoecd/11/41/34428351.pdf

선진공여국 사회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기존의 전통적인 개발NGO 중심의 지원에서 그 대상을 인권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등으로 확대하여 시민사회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이를 원조정책에 포함시켜왔다. 이에 따라 대다수 선진공여국의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는 개발NGO, 종교, 인권, 여성 단체 등과의 협력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책문서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최근의 논의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중심 담론이었던 '원조효과성'에서 보다 폭넓은 내용을 가진 '개발효과성'으로 옮겨지고 있다. '개발효과성' 논의는 인권, 여성, 민주주의 등 시민사회가 그동안 강조하고 집중해 온 주제를 주로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해지면서 국제사회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효율성과 효과성 및 전문성을 담보하여 책무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제도적, 규범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선진공여국들은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두고 CSO들의 역량과 성격을 고려해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영국의 Partnership Programme Agreement(PPA), Civil Society Challenge Fund(CSCF) 지원제도, 호주 AusAID의 인증제도(Full & Base Accreditation) 등이 있다.

시민사회 역시 자신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4], 이는 시민사회의 다원성을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에 반영한 결과이며, 공여국과 개발도상국 주민들에 대한 책무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협력과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작은 1995년에 시작된 KOICA의 '민간단체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모든 CSO들이 신청하여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자금을 지원받는 형태로 진행되어왔다. '민간단체지원사업'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단년제' 사업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10년부터 '다년제' 사업방식이 도입되었다. 단년제·다년제라는 두 가

4) Code of Conduct on Images and Messages(European NGO Confederation for Relief and Development, CONCORD), Code of Good Practice in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Aid Personnel(People in Aid), Foreign Aid Certification(Foreign Aid Ratings LLC), Istanbul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Principles (Open Forum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Open Forum), Code of Ethics and Operational Standards (Canadian Counci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지의 사업방식이 수행되고 있으나,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개발NGO의 범주를 넘어서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활동주체들의 참여가 점차 증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못하다.

정부는 2010년 10월 국무총리실 이하 16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에서 'NGO를 실질적인 개발협력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한다고 천명하였으며, 구체적으로 2010년 90억 규모의 예산을 2015년까지 10배인 900억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5] 또한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4th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4)에 대한 한국정부의 '포지션 페이퍼'에서도 CSO의 역할에 대해 중요하게 언급하였으며, 2011년 7월 파리에서 개최된 원조효과작업반 회의에서는 다양한 개발주체들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제적 협약(A New Global Compact for Development) 도출에 있어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개발 주체들의 참여를 강조했다.[6] 이처럼 국내외의 국제개발협력 사회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KOICA의 새로운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환경 변화, 정부의 의지 및 시민사회의 변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존의 '민간단체지원사업'의 내용을 더욱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KOICA 외에도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7], 삼성꿈장학재단[8] 등 민간분야에서 다양한 시민사회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개발NGO가 주로 참여했으나, 최근에는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재단, 장애인단체와 여성 및 인권단체 등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많은 단체들이 KOICA 및 민간재단 등의 지원 외에 자체 모금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현재 국내 개발NGO들의 해외사업비는 1,722.6억

---

5)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7-1호). 국무총리실

6) 이 회의에서 HLF4 준비를 위한 Core Group 의장이자 원조효과작업반(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WP-EFF) 부의장인 박은하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장이 언급한 사항이다. 이에 관해서는 남수정. 2011.「OECD 원조작업반 결과와 의의」『ODA Watch Letter』56호 (8월 2일) 참조.

7) 유엔(UN)의 천년개발목표(MDGs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고 사업수행을 통해 현지 비영리단체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1년부터 개발NGO를 지원하는 해외지원사업을 시작하여 2009년까지 약 250억을 집행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손혁상 외, 2010.「NGO지원사업 종합평가 보고서」,한국국제협력단 사업평가실, pp.288-291 참조.

8)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개발도상국 학령기 아동·청소년과 저소득층 세계 한인 후손을 지원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배움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해외장학지원사업과 배움터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삼성꿈장학재단의 지원사업 현황은 손혁상 외. 위 자료. pp. 291-293 참조

원에 달하며,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전체 해외사업비의 43.8%인 715.8억 원이, 아프리카 지역에 전체 해외사업비의 30.2%인 494억 원이 집행되었다.[9)]

그러나 국제개발협력분야에 참여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은 서구 사회에 비해 짧은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한국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변화와 발전의 한 축으로 크게 기여해온 한국 시민사회의 경험과 역량이 현재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해온 단체들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 및 인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상황이다.[10)] 대다수의 단체들은 역량강화의 필요성은 인식하나 구체적인 방법과 자원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 현황 조사 및 관련 연구도 부족한 형편이다.[11)]

따라서 현 시점에서 향후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 발전방향에 맞추어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CSO의 현황 및 특징, 역량 등을 고려한 선진적인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

9)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2010. 2009 한국 국제개발협력NGO 편람. pp166-169 참조

10) 한국의 개발NGO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체는 해외원조단체협의회, KOICA ODA교육원, NPO공동회의가 있다. 이 중 ODA교육원과 NPO공동회의는 2010년부터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원조단체협의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13개의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수 국제NGO의 한국 사업체가 실시하는 자체 조직·인력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으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11) 본 연구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개발NGO들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사업계획 및 시행과정, 평가 및 모니터링 과정에 대한 교육과 각 사업분야별 국제개발사업에 관한 교육 뿐 아니라 전문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워크숍, 세미나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수행에 관한 컨설팅 등 다양한 역량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부록>에 실린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

2. 연구 목적 및 내용[12)]

가. 연구목적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 연구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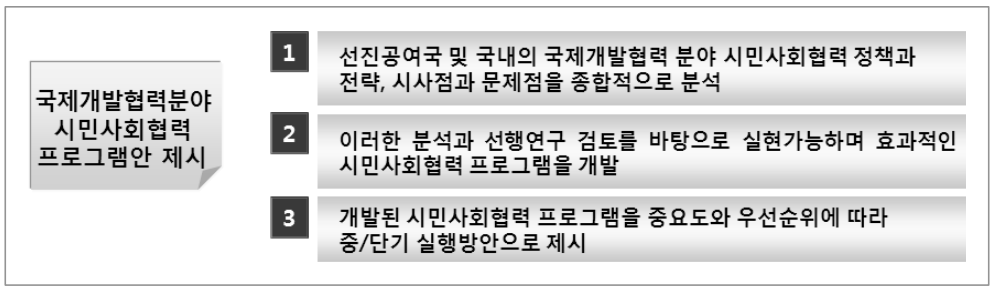
○ 선진공여국 및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협력 정책과 전략, 문제점을 종합·분석하고,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 OECD/DAC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CSO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분석과 한국의 CSO 협력 프로그램 확대 방안에 대한 국내 수요 현황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 이러한 분석과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하며 효과적인 시민사회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새롭게 개발된 시민사회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중단기별 사업 실행의 우선 순위를 제안한다.

<그림 1-1> 연구목표



12) 시민사회란 유산계급, 즉 자본가 계급을 시민과 동일하게 보는 근대 자유주의적 정의에서 생산관계의 총화 혹은 물적 토대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적 정의, 시민적 헤게모니가 지배하는 상부구조로 보는 그람시적 정의, 국가와 경제사회와 구별되는 영역으로서 정의하는 코헨과 아라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부적 단체들을 통칭하는데, 이들의 활동 공간이 시민사회이며, 활동주체는 NGO가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개발NGO 이외에도 여성단체, 환경단체, 자원봉사단체, 의료보건단체 및 인권단체 등 다양한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체들을 포괄하는 용어로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를 사용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CSO 중 국제개발협력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단체들을 개발NGO로 특정하여 분류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CSO를 개발NGO와 애드보커시 NGO 모두를 포함하는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시민사회조직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며, 따라서 NGO와 병행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는 시민사회와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발전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국제사회의 흐름, 한국 사회의 변화, 정부 및 시민사회 등 각 이해당사자간의 관계, 역량, 역할을 포함한 종합적 맥락 속에서의 실현가능성(feasibility)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연구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시민사회와의 협력 정책의 수행과 역량강화가 지속가능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정부와 CSO 및 대학, 연구소 등 민간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각자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상승효과(synergy)를 발휘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KOICA와 시민사회의 효과적 파트너십 개발을 통해 한국 원조의 질 제고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CSO의 참여확대에 기여하고, 보다 발전적인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안 제시를 통한 선진적 민관협력모델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나. 연구내용

이러한 목표 하에서 진행되는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공여국의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국제적 흐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13] 이를 통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시민사회 참여의 필요성을 논증하고, 시민사회 내 다양한 결사체의 국제개발협력분야 참여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정부·기업·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정부의 증대된 ODA 사업과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탐색해보고자 한다.

둘째, 선진공여국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와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OECD/DAC에 소속되어 있는 24개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시민사회와의 협력 목표를 조사·분석하고, 각 국가들이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는 지역 및 분야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KOICA의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있어 구체적인 목표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미래지향적인 시민사회 협력의 목표 설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13)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이론적 배경은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에 대한 관한 학술적 논의가 아니라 참여적 거버넌스 등과 같이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협력에 대한 당위적 근거를 구성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다루고자 한다.

셋째, OECD/DAC에 소속되어 있는 23개 국가들이 수행하고 있는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현황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한다. 먼저 각 국이 수행하고 있는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대상 단체의 특징, 특정 분야 및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지원자금 규모, 기간, 대응자금 비율(matching)의 기준과 협력방식(직접·간접)에 따라 살펴본다.[14)]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에는 광범위한 문헌조사와 함께 스웨덴, 영국, 호주, 네팔에서 진행된 현지 조사를 통해 조사된 실제 운영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상의 경험을 활용하여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넷째, 한국의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본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KOICA의 시민사회 협력 현황을 지원자금 규모, 사업 분야, 사업 지역, 자금지원 방식 및 기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또 KOICA-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식에 대한 국내 개발NGO들의 의견과 제안을 조사하여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다섯째, 선진공여국의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과 한국의 시민사회 협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안한다. 또한 협력 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feasibility)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상승효과(synergy)를 고려하여 시기별 우선순위를 제안한다.

3. 연구 전략 및 방법

가. 연구 전략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는 2010년에 진행되었던 'NGO 지원사업 종합평가'[15)]를 통해 산출된 기존 연구결과물을 심화·발전시키고, 다양한 관련 분야의 의견을 집성하여 실현가능한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단계적·종합적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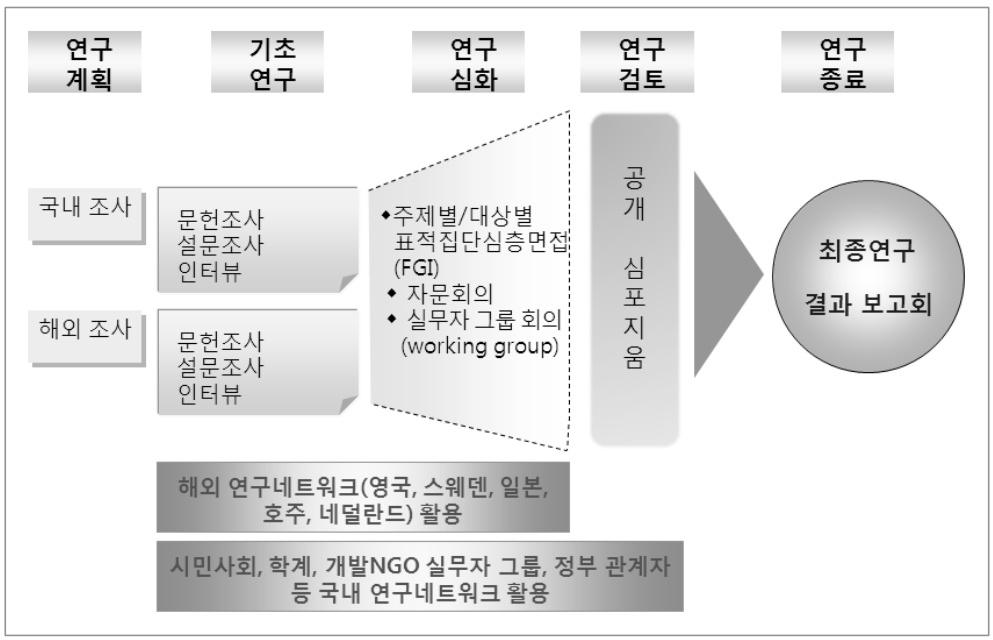
14) OECD/DAC 2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23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15) 이 연구는 2010년 6월~10월에 진행되었으며, 국내 설문조사와 탄자니아 및 몽골 현지조사를 통해 KOICA의 'NGO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사업전략, 사업추진절차, 현지사업수행체제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명을 'NGO 지원사업'에서 '시민사회 협력 사업'으로 전환할 것과 9개 트랙의 시민사회 협력 사업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혁상 외, 앞의 보고서 참조

특히 시민사회와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민사회, 정부, 학계 등 주요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이는 주요 전문가 집단, 실무자 그룹 등과 폭넓은 의사소통을 통해 시민사회와의 협력 당사자 뿐 아니라 관계자들의 의견을 집성하여 연구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된 본 연구의 흐름을 총괄적으로 개념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1-2> 연구전략 및 방법



연구과정에 있어서는 기초문헌조사를 시작으로 하여 연구심화, 연구검토의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적합한 연구방법론을 설정하는 단계적 연구를 추구한다. 이를 통해 연구성과의 검증 및 질적 제고를 도모할 뿐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연구과정을 통해 시민사회, 정부, 학계 관계자들과 연구결과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선행연구인 'NGO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물의 효과적 활용과 심화를 통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전략 및 분야별·주체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종합적 연구를 지향한다. 선행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구축한 다양한 시민사회 네트워

크 및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외 현황과 사례를 총괄분석하고,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통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전략과 실행을 통합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 인터뷰, 설문조사, 그룹 워크숍, 공개 심포지엄의 다섯 가지 방식의 연구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이는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시민사회와의 협력방안을 도출하여 선진적인 사업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1) 문헌조사

문헌조사는 KOICA의 현행 민간단체지원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문헌을 조사하되 국내 NGO지원사업 분야는 선행 연구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 사항에 대해 조사했다. 또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주요 공여국들의 관련 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특히 OECD/DAC에 속한 24개 공여국들의 시민사회와의 협력 목표 및 우선 순위, 협력 프로그램 현황 등에 대해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국내 개발NGO를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사업지원방식에 대한 요구와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수용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강화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사업지원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는 하향식(top-down) 방식의 사업, 협의체(Framework Organization)를 통한 사업지원 방식, 사업참여 대상의 그룹화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도, 해외 현지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한 질문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3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설문대상 단체 137개 중 79개 단체가 응답하였고, 설문응답자의 의견이 아니라 소속 단체의 공식적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반드시 국제개발협력 사업 담당자 및 부서와 협의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했다.[16)]

3) 인터뷰

기초문헌조사, 국내 개발NGO 설문조사, 해외조사가 수행된 이후 진행된 간담회와 인터뷰는 시민사회와의 협력방안의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세부안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결과의 적실성을 높이고자 했다.

시민사회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서 요구되는 다양한 사업방식에 대해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기초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심층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인터뷰 대상에 따라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였고 집단인터뷰와 개별인터뷰, 표적집단 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혼용하여 진행하였다.

해외현지조사의 경우 원조기관 담당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사업 사례를 도출하기 위해 각 국가별로 다음과 같은 집중 조사내용을 설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17)]

<표 1-1> 해외조사 대상국별 주요 인터뷰 내용

영국	스웨덴	호주	네팔
• DFID의 NGO 지원 현황 및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	• 협의체(Framework Organization) 제도의 운영현황 및 성과, 유의점, 개선점 등	• NGO 인증제도의 추진 배경 및 과정상의 문제점, 인증제의 기준 및 구체적 적용방식 등	• 현지사업 수행체계 현황 및 실제 지원 프로그램 상의 문제점 및 개선점
• PPA 및 CSCF 참여 NGO들의 평가 및 운영실태 파악	• ForumSyd 운영현황 및 타 협의체와의 협력현황 등	• AusAID/ACFID Partnership Agreement	• DFID, JICA, Sida, AusAID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체의 운영현황

16) 설문조사문항 및 결과는 <부록>을 참조

17) 영국, 스웨덴, 호주, 네팔에서 진행된 각 원조담당기관별, 관계자별 인터뷰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을 참조

국내 인터뷰의 경우, 설문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명확한 대상을 설정하여 보다 적실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표적집단 심층인터뷰(FGI)를 함께 사용하였다. 설문조사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나 정량적 조사결과만으로는 설득력 높은 종합적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현지사업 경험자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대표자급 등 표적집단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였다.

4) 그룹 워크숍

그룹 워크숍은 조사된 내용을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현상을 명확히 하고 문제의 원인과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이는 내용에 따라 실무자 그룹(Working group) 워크숍, 그룹 워크숍, 자문회의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워킹그룹 회의는 본 연구내용에 대해 개발NGO 실무진의 실질적 조언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사회협력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조언 및 제안을 목적으로 했다. 워킹그룹 회의의 참석자들은 개발NGO의 규모, 역사, KOICA 협력사업 경험 등과 기성, 신생, 대형, 중형 및 소형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KOICA 협력사업 수행경험이 11년 이상인 2개 단체와 KOICA 협력사업 수행경험이 4년에서 10년인 3개 단체, KOICA 협력사업 수행경험이 3년(2009년 이후) 이하 혹은 경험이 없는 2개 단체, 그리고 협의체인 해외원조단체협의회의 팀장급을 선정하여 워킹그룹 회의를 진행하였다.[18)]

워킹그룹 회의 외에도 네팔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한국 개발NGO 현지 사업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 간담회에서는 현 KOICA의 NGO 지원사업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보다 효과적인 현지 사업 수행 및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19)]

이 외에도 정부 관계자 인터뷰 및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에 대한 심층 토론을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참여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18) 워킹그룹 회의 참석대상자 명단은 <부록>에 실린 국내외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참조

19) 네팔에서 진행된 한국 개발NGO 간담회의 구체적 내용은 <부록> 참조

5) 공개 심포지엄

공개 심포지엄은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단계별 연구단계 중 연구검토에 해당하는 것이다. 학계 전문가, KOICA, NGO 관계자,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연구조사의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연구결과를 공유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와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 및 반영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과 그에 따른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연구방법 개요

구분	내용
문헌조사	• 선행연구결과물 관련 자료 활용 및 추가 자료 조사 • OECD/DAC 국가들의 시민사회 협력 목표 및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 • OECD/DAC 국가들의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현황에 대한 조사
인터뷰	• 시민사회, 학계, 정부 등 주요 관련자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및 그룹인터뷰
현지 인터뷰	• 스웨덴, 영국, 호주의 대외원조담당 부서 및 기관 주요 관계자 인터뷰 • 스웨덴, 영국, 호주의 대외원조 관련 주요 민간단체 관계자 인터뷰 • 네팔의 현지사업 수행 NGO 및 관계자 인터뷰 • 네팔에서 시행 중인 선진원조기관의 프로그램 관계자 인터뷰
표적집단 심층인터뷰 (FGI)	• 국내 전문가 그룹별 심층면접인터뷰
설문조사	• 국내 개발NGO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과 이해도 조사
그룹워크숍	• 실무자그룹(Working Group) 회의, 간담회, 자문회의의 형태로 진행 • 연구결과에 대한 심층 토론 및 제안 수렴
공개 심포지엄	• 정부 관계자,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 학자, 시민 등이 참여하는 공개 심포지엄 개최

4. 주요 연구일정 및 연구팀 구성

이러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진행된 본 연구의 진행단계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반부 연구는 기초문헌조사와 국내 개발NGO 설문조사, 해외방문조사를 중심으로, 후반부 연구는 전반부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그룹워크숍, 표적집단 심층인터뷰, 공개심포지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과정은 우선 기초문헌조사와 설문조사, 해외방문조사를 통해 축적된 연구결과를 국내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과정에 따라 수행된 주요 연구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1-3> 주요 연구일정

기간	항목	내용
3월 15일 ~ 4월 24일	해외조사 스웨덴, 영국, 호주, 네팔	• 선진 공여국의 시민사회협력방안 및 개발NGO 활성화 방안 • 수원국에서의 선진 공여국의 개발NGO활동 협력 및 지원내용
3월 28일 ~ 4월 13일	설문조사 : 총 79개	• 시민사회협력방안에 대한 NGO의 의견 청취
3월 8일 ~7월 16일	워킹그룹회의 - 개발NGO 실무진 - 해원협 관계자	• 시민사회 협력방안 논의 • 해외조사대상국의 사례 검토 및 시사점 논의 • 국내조사 결과 공유 및 시사점 논의
	표적 집단 심층인터뷰 - 국제개발협력사업 해외사업장 경험자	• 국내외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시민사회협력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표적 집단 심층인터뷰 - 해원협 이사진	• 국내외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시민사회협력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자문회의 - 시민사회 전문가	• 개발협력 및 시민사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사회협력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정부관계자 - KOICA 민관협력실 관계자	• 연구내용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민사회 협력방안 내용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수렴
8월 11일	공개심포지엄	• 연구결과 종합 발표 및 토론

이상과 같은 연구를 수행한『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연구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연구책임자 : 손혁상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장, 공공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원 : 한재광 (ODA Watch 사무총장)
박보기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 이주희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대리)
김소위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연구원)
서진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석사과정)
이윤미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자문위원 : 송진호 (한국YMCA전국연맹 대외협력실장)
안성식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윤현봉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명신 (월드비전 해외사업본부장)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Ⅱ. 정부-시민사회 협력의 이론적 배경

1. 정부-시민사회 협력의 의미

시민사회는 시대와 이데올로기를 따라 다의적으로 사용되어 온 추상적 개념이다. 17, 18세기의 홉스(Thomas Hobbes)와 로크(John Locke) 이후 칸트(Immanuel Kant)와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그람시(Antonio Gramsci),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코헨(Jean Cohen), 아라토(Andrew Arato) 등 수많은 학자들이 시민사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규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러한 논의는 시민사회가 가족, 지역공동체 등 경제영역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을 내포함과 동시에 국가 및 경제로부터 독립적이면서도 복합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가 민주적 자기 결정을 통해 국가에 정당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국가의 통치를 받는 공간이며, 경제로부터 물질적 기반을 제공받는 동시에 경제구조나 경제활동의 특정한 성격에 대한 지지나 비판을 통해 경제적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공간이기 때문이다.[20]

현대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었다. 국가간 상품과 자본,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세계화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존 주권국가 고유의 역할이라 여겨졌던 국방, 통화, 금융, 복지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비국가행위자의 역할과 위상이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시민사회는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기제로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선진공여국이나 OECD와 UN, World Bank 등 국제적인 주요 개발기구들은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한다. 이는 시민사회가 다자간·양자간 원조기구와는 다른 차별성 및 전략적 강점을 보유한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우선 개발NGO로 대표되는 시민사회는 개발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집행하면서 정부행정조직과는 달리 유연한 조직과 업무환경을 가진다. 따라

20) 조희연, 정태석, "한국 민주주의 변동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분석 틀", 조희연 편,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서울 : 나눔의 집, 2002), pp.29-31.

서 원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정부보다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개발NGO의 태생이 빈곤을 퇴치하겠다는 이상주의적 동기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정치·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받는 정부 조직 행위자와는 달리,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민감한 지역뿐만 아니라 낙후되고 고립된 지역에서도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규모가 큰 NGO의 경우 자체적으로 원조프로그램을 조직·계획·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프로젝트 수행이 아니라 보다 큰 맥락에서 프로그램 중심의 원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규모가 작은 NGO의 경우에도 현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지역사회 자원 동원에 있어 서류작업을 통해 정책결정을 하는 관료조직보다 효과적이며,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NGO로 대표되는 시민사회는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하여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원조기관에 비해 유리하다.[21)]

2008년 가나의 아크라에서 개최된 제3차 원조효과성고위급회의(Third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3)는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원조관료를 중심으로 진행해 왔던 개발협력은 한계점을 보였고, 수원국이 스스로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수원국의 주인의식이 강조되며, 정부와 민간영역의 협력을 중시하는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이 이슈화되면서 시민사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HLF3에서 발표한 아크라행동선언(Accra Action Agenda, AAA)에서는 CSO를 독립적인 주요 행위자로 인정하였으며, 개발에 대한 CSO의 기여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조성에 협력할 것에 합의하였다.[22)] 개발원조 정책의 최종 소비자이자 공급자가 되는 시민사회가 국제개발원조에 있어 독립적인 권리를 지닌 자율적 행위자로 인식된

21) Degnbol-Martinussen, Engberg-Pedersen, Aid : Understand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London : Zed Books : 2003), p.157-158.

22) Paragraph 20 of Accra Agenda for Action : "We [official donors and governments] will deepen our engagement with CSOs as independent development actors in their own right whose efforts complement those of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We share an interest in ensuring that CSO contributions to development reach their full potential. To this end : a) We invite CSOs to reflect on how they can apply the Paris principles of aid effectiveness from a CSO perspective. b) We welcome the CSOs' proposal to engage with them in a CSO-led multi-stakeholder process to promote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As part of that process, we will seek to i) improve co-ordination of CSO efforts with government programmes, ii) enhance CSO accountability for results, and iii) improve information on CSO activities. c) We will work with CSOs to provide an enabling environment that maximises their contributions to development."(인터넷 출처 :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ACCRAEXT/Resources/4700790-1217425866038/AAA-4-SEPTEMBER-FINAL-16h00.pdf. 접속일자 : 2011년 5월 11일)

것이다.

주요 선진공여국들은 시민사회를 자국의 대외원조정책 수행에 있어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호주 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의 발전지원, 자국 정부의 원조효과성과 영향력 증대 등을 목적으로 CSO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개발NGO들 이외에도 시민단체, 노조, 언론, 직능단체, 종교단체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을 포함하고 있다. CSO는 원조정책 의제설정에서부터 정책의 합의, 이행, 그리고 평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정책전반에 참여하는데, 이는 크게 개발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의 참여(projects and programs)와 정책옹호 및 정책대화를 위한 협력(collaboration for advocacy and policy dialogue)으로 구분할 수 있다.[23)]

2006년 영국 개발NGO 훈련 연구기관인 International NGO Training and Research Centre (INTRAC)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등 7개 국가의 개발NGO 재정지원 정책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7개국의 정책을 분석하여 정부가 개발NGO를 지원하는 6개의 공통적 특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음 〈표 2-1〉과 같다. 이러한 특징은 원조공여국이 CSO지원을 통하여 빈곤한 사람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현실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이중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1> 정부의 개발NGO 지원 공통점[24)]

① 빈곤한 사람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자원을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국 정부보다는 시민사회를 활용함.
②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 전문기관들을 지원함.
③ 대중적으로 알려진 CSO를 지원함.
④ 공여국에서 개발교육을 실행하는 CSO를 지원하여 국가의 개발원조 규모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함. 또한 ODA/GNI 0.7% 달성과 같이 원조의 양을 늘리기 위해 CSO의 로비를 활용함.

23) Advisory Group on Civil Society and Aid Effectiveness, Civil Society and Aid Effectiveness - Issues Paper, (2007) p.4.

24) Brian Pratt., Jerry Adams and Hannah Warren. "Official Agency Funding of NGOs in Seven Countries : Mechanisms, Trends and Implications." INTRAC Occasions Papers Series (2006) No. 46 : 8.

⑤ 국가와 시장에 대응하여 빈곤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남반구의 역동적인 시민사회 발전을 지원함.
⑥ CSO를 지원하는 것은 공여국의 긍정적 이미지와 국익을 증진시키는 것임.

현재 대다수 국제개발NGO들은 개발도상국 현지CSO를 지원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사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현지CSO에 재정지원과 기술협력을 하는 것은 수원국 주민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 외부자로서 직접 현지에 들어가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비해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25]

물론 개발NGO의 운영자금 중 상당부분은 정부기관에서 지원되며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도 정부기관과의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NGO의 역할이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규모가 큰 NGO의 경우 개발 사업과 절차가 유연하지 않을 수 있고, 관료적인 조직체계의 특성을 띄기도 하며, 다양한 분야가 아닌 한 가지 분야에만 전문화되어있을 경우 근시안적인 원조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26]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개발협력분야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가져올 수 있는 강점을 희석시킬 수는 없다.

2. 정부-시민사회 협력의 주요 이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민사회는 정부와 국제기구의 개발협력 노력을 보완해줄 수 있는 존재로서 인식되며 정치학, 사회학, 국제개발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의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여기에서는 정부-시민사회 협력의 주요 이론으로 참여적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신정책의제, 마이클 에드워즈(Michael Edwards)의 결사체로서의 시민사회 이론, 그리고 알란 파울러(Alan Fowler)의 제4의 영역으로서의 개발NGO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25) 한재광 (2010) "국제개발NGO발전의 흐름과 한국 개발NGO에의 시사점". 국제개발협력학회 정기학술회의 자료집 - 한국의 DAC가입과 HLF개최의 의미와 과제.

26) Degnbol-Martinussen, Engberg-Pedersen (2003) p.159.

가. 참여적 거버넌스

거버넌스 모델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몰락한 이후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환경이 민주주의적 거버넌스 모델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경제적 발전단계가 심화될수록 물리적 자원보다는 인적자원,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국가가 자원을 강압적으로 동원하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작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 이외의 사회 및 시장행위자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집단행동문제의 발생을 사회구성원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입장이 부각되었다.

거버넌스는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에 속하는 행위자들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립한 유형 또는 무형의 제도로 구성된 통치체제'로 정의될 수 있다. 기존의 국가중심적인 시각이 국가·사회의 관계를 비양립적이라고 여기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거버넌스 이론에서는 양자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한다. 즉, 국가와 사회의 교류는 상호간의 역량을 강화시켜 준다. 이렇게 풍부하게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강한 국가를 만들며 나아가 경제적 번영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아울러 거버넌스 모델은 단순히 국가와 시장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한 규제국가모델과는 달리 국가 및 시장과 더불어 제3섹터로서 시민사회 집단을 추가하여 삼분법적 논리를 지향하고 있다. 거버넌스 모델은 정부와 사회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책임을 나누어 갖는 것을 상정한다. 즉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사회적 힘을 통해 보완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27]

거버넌스는 경제적 자유화와 함께 국가·시장운영에 있어 민주주의적 원리를 강조한다. 전자는 자유주의적 정향의 거버넌스 모델이며, 후자는 민주주의적 정향의 거버넌스 모델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의 운영에 있어 민주주의적 원리를 강조한다.

여기에서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과는 다른 제3섹터에 속한다. 시민사회는 공공재와 민간재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적 재화를 추구하는 비영리적·자발적 시민조직이며, 거버넌스 모델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는 매우 강조되는 항목이다. 국가와 시장의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감시하는 역할까지도 상정된다. 나아가 형평의 원리도 강

27) 이연호. 『발전론』.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p.225-226

조되는데, 이는 시장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교정하고 예방하려는 자발적 시민조직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기 때문이다.[28)]

이러한 참여적 거버넌스 확산의 맥락에 의해 OECD는 정부정책의 수립·집행·평가 과정에서 국민을 파트너로 인식하며, 그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OECD는 정책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정보(information)제공을 기본전제로 삼고, 협의(consultation)를 정책과정의 핵심으로 상정하며, 능동적 참여(active participation)를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한다. 정보는 정부가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적 관계를 의미하며, 협의는 정부의 요청에 대하여 국민이 환류(feedback)를 제공하는 양방향적 관계를 뜻하고, 능동적 참여는 국민이 정책과정과 정책결정의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정부와의 협력관계 형성을 의미한다.[29)]

OECD는 정책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는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위한 핵심적 요소라고 지적한다.[30)] 국민의 참여는 정부로 하여금 보다 광범한 정보, 관점 및 해결방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정책결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과의 상호작용 증진에 대비하고 보다 나은 지식관리를 보장하여 정보사회의 도전에 대응한다. 또한 자신의 의사가 전달되어 정책과정에서 고려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국민의 투입을 정책과정으로 통합하며 투명성과 책무성 증진에 대한 보다 강력한 국민의 요구에 조응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한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수렴할 뿐만 아니라(하향적 관점), 국민은 정책의 소비자임과 동시에 생산자라는 것(상향적 관점)을 인식하여야만 정부-국민간의 강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강할 수 있게 된다.[31)]

---

28) 위의 책. p.228-229.

29) OECD, Citizens as Partners :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Paris : OECD, 2001). p.23.

30) 위의 책. pp.27-69.

31) 박재창 외.『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서울 : 오름, 2009). p.75.

<표 2-2> 시민사회의 정책과정 참여[32)]

정책과정	내용
정보	• 정부가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적 관계. • 국민의 요구에 의해 정보를 수동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정부가 국민에게 정보를 전파하는 능동적 수단을 모두 포함. • 정보 제공의 책임은 대의정부의 본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협의	• 국민이 정부에게 환류(feedback)를 제공하는 양방향적 관계를 의미. • 정부가 먼저 협의할 주제를 설정, 이에 대한 국민의 견해를 묻는 형태. • 협의의 목적은 정책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견해와 경험을 고려하고 쇄신적·창의적 대안을 검토하며 새로운 제도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논거를 토대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을 개선하는 데에 있음.
능동적 참여	• 정책결정의 과정과 내용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국민이 능동적으로 의제설정과 정책안 마련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며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부와의 협력에 기반을 둔 관계. • 정책형성이나 최종결정은 정부의 책임이지만, 정책의제의 설정, 정책대안의 제안이나 정책논의의 전개에 있어서 국민의 역할을 인정함.

나. 신정책의제

거버넌스 이론의 등장과 같은 맥락에서 국제개발협력에서도 개발NGO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이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신정책의제(New Policy Agenda)이다. 1970-80년대 국가주도의 개발접근방식 실패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추진에 따른 정부개입의 축소 결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양자간·다자간 원조기관들은 1990년대 들어 '신정책의제'라는 새로운 정책노선을 추구하였다. 여기서 개발NGO는 빈곤감소, 사회복지, 시민사회 발전 등에 있어 축소된 국가의 사회안전망 제공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위자임과 동시에 민주적 과정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된다.[33)]

신정책의제를 추구하는 방식은 각 양자간·다자간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진다. 우선 시장과 사적 영역의 이니셔티브가 경제성장, 재화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메커니즘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들 수 있다. NGO

32) OECD (2001). p.28.

33) David Lewis, Development NGOs and the Challenge of Partnership : Changing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Vol.32 No.5. (1998). p.502 ; Michael Edwards, David Hulme, 'Too Close for Comfort? The Impact of Official Aid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orld Development, Vol.24. (1996). p.6

는 특히 빈곤한 계층에 접근함에 있어 정부보다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서비스제공자로 인식되었으며, 다른 사업주체보다 자금을 가치있게 사용한다고(giving better value- for-money) 인식되었다. 물론 NGO는 이전에도 보건·교육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오긴 하였으나, 이는 계획에 의해서라기보다 그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정부의 능력이 전무하였기 때문이었다. 신정책의제에서 NGO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자로서 선호되었고, 이는 개발협력에서의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신정책의제의 두 번째 요소는 '정치적'인 부분이다. 여기에서 굿거버넌스는 건전한 경제를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었으며, 양자간·다자간 원조기관은 NGO와 Grassroots Organizations(GRO)가 민주화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즉, NGO와 GRO는 시민사회의 번영을 가져오고, 국가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 대화와 참여의 통로를 확보하고, 활동가(activists)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다원주의를 추구할 수 있는 총체적인 요소로서 인지되었다. 이렇게 NGO의 역할은 신정책의제의 두 가지 특성에서 모두 강조되며, 공적 원조기관들의 원조가 NGO에게 혹은 NGO를 통하여 개발사업에 쓰이도록 촉진하였다.[34]

그러나 굿거버넌스를 추구한다는 명목 하에 원조제공에 정치적 조건이 부여되기도 하여 개발도상국 정부에 압력이 행해졌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는 기존 원조금융을 위한 경제적 처방인 '구조적 조정'에 더해 이루어진 것으로 다수정당 정치체계 구축, 관료제 축소, 투명하고 책무성 있는 정부, 인권존중, 사회에서의 여성 지위 향상, 시민사회운동 제공, 군비축소 등 다양한 사항이 조건으로 요구되었다.[35]

다. 결사체로서의 시민사회

마이클 에드워즈는 시민사회를 이해하기 위하여 '결사적 삶의 토대'로서의 시민사회, '좋은 사회'로서의 시민사회, '공공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를 설명한다. 각각의 논의는 저마다의 장단점을 가지나 단독으로 존재할 때 불완전하며, 세 이론의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시민사회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결사적 삶의 토대'로서의 시민사회는 신뢰와 협동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

34) Michael Edwards, David Hulme (1996). p.6-7

35) Alan Fowler, 'Authentic NGDO Partnerships in the New Policy Agenda for International Aid : Dead End or Light Ahead?' Developmental and Change vol.29. (1998). p.138.

안정된 민주주의의 토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발적 결사체(voluntary associations)는 국가의 권력을 견제하고 사회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발적 결사체보다는 가족, 학교, 직장, 대학, 정치기관 등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다양한 가치, 믿음, 성향 등을 형성하게 되며, NGO를 비롯한 다른 자발적 결사체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공통된 정치적 합의 수준에 도달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가진다.

여기에서 '좋은 사회'로서의 시민사회론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보유한 '문명화된' 사회로 결사체들이 나아가도록 한다. 좋은 사회로서의 시민사회는 공적 참여의 불평등성을 줄여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형태이며, 자칫 이기적인 이해의 충돌로 치닫기 쉬운 자발적 결사체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스스로 특권화를 경계하게 하는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결사체들이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그 방향이 모든 변수들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결여되었다는 점이 이 이론의 취약점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공공 영역'으로의 시민사회론이 요구된다. 공공 영역은 논쟁과 심의의 공론장으로서 민주적 틀을 가시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이곳에서 상이한 결사체들은 개인적인 자율성과 사회적 총체로서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사항 사이에서의 균형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마이클 에드워즈는 각각의 이론, 즉 결사적 삶, 좋은 사회, 공공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연계할 때 시민사회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포용력 있고 유기적으로 잘 연관된 결사적 생태체계는 좋은 사회의 추동력이 되며, 이러한 결사적 삶을 뒷받침하는 독립성과 평등한 활동의 장이 가능한 것은 심화된 민주주의를 지닌 좋은 사회의 성취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공공 영역'이 존재하지 않았었다면, 좋은 사회의 목적과 수단에 대한 규정은 불가능할 것이다.[36]

그는 이러한 자발적 결사체들의 공간으로서 시민사회가 국가의 개발사업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강한 국가와 강한 사회 사이의 시너지가 지속적인 빈곤감축적 성장의 열쇠 중 하나이며, 이를 경제·사회·정치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각 영역에서 시민사회는 공여국의 국가와 시장보다 강점을 가지는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자발적인 결사체의

36) 마이클 에드워즈, 『시민사회, 이론과 역사, 그리고 대안적 재구성』, (서울 : 동아시아, 2004) p.180-181.

구성을 지원하여 결과적으로 굿거버넌스 및 민주주의 성취를 진작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공여국의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을 보완하고 견제하여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조케 하는 성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한다.[37]

라. 제4의 영역으로서의 개발NGO

알란 파울러는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협력공간으로서 비정부 개발기구(Non-governmental Development Organizations, NGDOs)의 역할을 상정하였다. 공여국의 원조규모가 확대되면서 국회와 국민에게 빈곤감소의 '결과'를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여기서 NGDO는 세금으로 공여국 원조의 정당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직접 원조를 수행하는 주요 행위자로 여겨졌다. 그러나 NGDO는 자금지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조추세에 취약하고, 자율성의 저해, '협의체(association)'로서 갖게 되는 조직의 병리적 문제, 공공으로부터의 신뢰상실과 시민적 근원(civic roots) 상실, 자기검열의 문제 및 비교우위의 쇠퇴 등의 문제를 겪게 되었고, 이는 NGDO로 하여금 새로운 개념적·재정적 대안을 찾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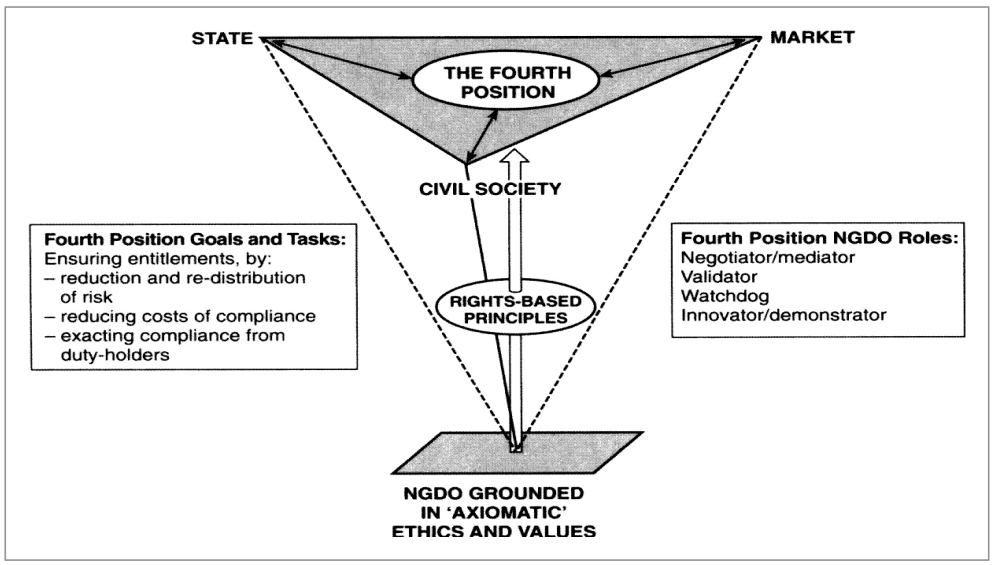
NGDO는 전통적인 국가, 시장, 사회와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이 중 하나의 프레임워크로는 완전하게 이해되지 않는 영역에 위치한다. 우선 NGDO는 공공어젠다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국가를 닮아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되, 그 원천(재정)이 외부로부터가 아닌 자기 내에서 충족된다는 점에서 시장과 연계되어 있다(surplus generation, self-financing). 이와 동시에 NGDO 자신의 뿌리, 가치중심의 역할과 참여적 방식 활용이라는 맥락에서 시민사회와 연결되어 있다. NGDO는 시민사회영역에 속해있기는 하지만, 온전히 시민사회 영역만의 것은 아니며, 시민사회, 국가, 시장 사이의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다.

알란 파울러는 〈그림 2-1〉을 통하여 기존의 단순한 국가·사회·시장의 구분이 아니라, NGDO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하는 목적, 역할, 임무를 재고찰한다. 여기서 NGDO는 '제4의 영역 (the fourth position)'에서 활동하면서 나머지 세 영역의 협력과 참여를 제공하는 도약판(springboard)의 역할을 한다. NGDO는 사회질서와 인간관계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와 개인적인 헌신(commitment)을 통하여 세계질서의 비인간적인 질서를 바꾸어나갈 수 있다는 믿음의 '자명한 가치 혹은 윤리'를 기반으로 한다.

37) 위의 책, p.43-47.

NGDO의 역할과 의무는 빈곤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중심을 두면서 의무담지자(duty bearer)에게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사회의 전체적인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 위험을 재분배하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NGDO는 각 행위자들과 다른 영역간의 협상가 및 중재자, 의무담지자로 하여금 권리를 준수하게 하는 신뢰받는 행위자(validator), 의무담지자와 NGDO 자신을 포함한 권리 청구인의 행동을 감시하는 존중받는 감시자, 마지막으로 더 크고 힘 있는 행위자들의 선택과 (권리의) 청구인(claimants)의 역량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공공 이익에 있어 인지되는 창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38]

<그림 2-1> 제4의 영역으로서의 NGDO[39]



〈그림 2-1〉은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협력이 다른 행위 주체들 간의 협력공간을 제시하여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기여함을 설명한다. NGDO는 제1의 영역 '국가'에 정책적인 영향을 끼치며, 이를 감시한다. 또한 사람들의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함과 동시에, 국가가 어떻게 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역으로 국가는 NGDO로 하여금 정당성과 책무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제2의 영역 '시장'

38) Alan Fowler, 'NGO futures : beyond aid : NGDO values and the fourth position', *Third World Quarterly*, vol.21 No.4 (2000) pp. 598-600.

39) 위의 책. p.599.

에서 NGDO는 기업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기업이 행동강령(codes of conduct)을 준수하는지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개발적 관점에서 사회기업으로 행동하면서, 동시에 자금을 충당하는 면에서는 비개발기업(non-development enterprise)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기업은 역으로 NGDO가 전문성뿐만 아니라 믿을만한 명성(credible reputation)을 쌓을 것을 요구한다. 제3의 영역인 '시민사회'로부터 NGDO는 합법성, 책무성, 자원을 확보한다. 또한 시민사회 안에서의 창의를 제공하고, 중재, 협상에서의 전문성,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력은 비단 학문영역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수립·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참여형 거버넌스의 확대, 신정책의제의 부상, 결사체로서의 시민사회의 역할, 제4영역으로서의 개발NGO라는 이론적 시각은 개발협력에서 NGO가 독립적인 개발주체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거버넌스 이론에서 시민사회는 굿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신정책의제에서의 개발NGO는 국가를 대신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위자이면서 민주적 과정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된다. 또한 결사체 이론에서는 국가와 사회, 특히 시민사회간의 강한 시너지(파트너십)는 지속적인 빈곤감축적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된다. NDGO는 제4의 영역에서 국가·사회·시장 영역의 협력과 참여를 제공하는 도약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각 이론이 주장하는 정부-시민사회의 관계는 다양하지만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국가와 NGO와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이 도출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경험적 차원에서 그동안 정부와 시민사회간 파트너십의 역사와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정부-시민사회 협력의 국제 현황

가. 정부-시민사회 협력의 역사

주요 선진공여국 정부의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2차 세계 대전 종식 이후 시작되었다. 1949년 미국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하여 Point Ⅳ[40]를 선언하고, 같은 해 농

업법을 제정하면서, PVO (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41]의 해외활동 보조금 지원과 식량원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60년대 들어서는 여러 국가에서 NGO를 통한 ODA집행이 시작되었는데, 독일과 스웨덴은 1962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1965년, 캐나다는 1968년, 뉴질랜드 1974년, 영국과 캐나다는 1975년, 벨기에는 1976년,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1977년부터 NGO에 대한 정부개발원조 지원을 시작하였다.[42]

그러나 사실 NGO는 1950년부터 1972년 사이의 기간 동안 단순한 긴급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 정부 중심의 UN회의과정과 냉전시기의 긴장으로 인해 국제무대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43] 1970년대 말이 되어서야 NGO는 개발 분야의 또 다른 주요 행위자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NGO가 현지주민을 조직하고 이들이 자조(self-help)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보다 노련하게 빈곤감소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NGO를 통한 정부의 ODA지원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비용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특성 덕분에 정부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정부의 NGO지원이 국민들의 ODA에 대한 지지 증가에 도움이 되며, 정부와 NGO의 파트너십이 지역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은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의 기본을 수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다.[44] 데이빗 루이스(David Lewis)와 나즈닌 칸지(Nazneen Kanji)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개발영역에서 개발NGO가 발전하게 된 원인을 크게 4가지로 꼽고 있다. 우선 1980년대 당시 기존 발전이론인 근대화 이론과 종속이론이 모두 설득력을 잃게 되어 실효성이 없어지면서 인간중심 접근방식의 개발이론이 등장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NGO가 대안적 행위자로 제시되었다. 둘째, 그동안의 정부 원조가 빈곤감소에 그다지 큰 성과를 가

---

40) 1949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취임연설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저개발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미국의 노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며, 미국정부가 중동국가와, 카메룬, 인도, 이스라엘에 기술원조와 개발활동을 위해 미국의 PVO(Private Volunteer Organization)에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 김채형.「OECD회원국의 NGO활동 : 개발원조를 중심으로」, 한국국제협력단연구자료 92-13-63. (1992) p.13.

41) 미국에서는 개발NGO의 성격을 가진 단체를 PVO라 지칭한다.

42) 영국은 1975년 NGO지원 프로그램인 JFS(Joint Funding Scheme)을 시작하였고, 프랑스는 1977년 협력부(Minist è re de Coopération)에서 NGO지원을 시작하였다. 캐나다는 1975년 기존의 CIDA 내에 관련 부서를 만들어 NGO지원을 시작하였다. 김채형 (1992) p.13,17-18.

43) David Lewis and Nazneen Kanji,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Development. (NewYork : Routledge. 2009) .p.33

44) Ian Smillie and Henny Helmich. Stakeholders : *Government-NGO Partnership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London : Earthscan Publications Ltd., 1999) p.8.

져오지 못하였고, 관료제와 부정부패의 문제점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개발분야에서 환경, 여성, 사회발전 이슈 등의 중요성을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각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NGO들이 개발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1989년 냉전 종식 후 기존 소련 체제 하에 있던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화하는 가운데 NGO가 전체주의가 빠지고 생긴 빈 공간을 '시민사회'로서 메우는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45)]

이러한 정부행위자의 NGO에 대한 인식 변화는 국제사회의 논의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이는 NGO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1972년 스톡홀름 UN환경회의, 1974년 세계인구회의, 1989년 UN아동권리협약을 거치면서 NGO는 UN정책과정에서 역할을 확대하였다.

1990년대 이르면서 개발NGO는 정부 등 공적 공여자들이 '선호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는데[46)], 이는 당시 추진된 '신정책의제(New Policy Agenda)'와 같은 맥락이다. '신정책의제'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작은 정부' 기조를 주장하는 것인데, 여기서 개발NGO는 정부와는 다른 대안적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사업수행을 할 수 있으며,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시키는 잠재력을 가져 굿거버넌스에 기여하는 행위자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주요한 원조공여자로서의 NGO의 중요성과 지위가 더욱 공고히 굳어졌다고 할 수 있다.[47)] NGO는 1992년 리오 UN환경개발회의에서 모든 준비과정 및 회의진행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지구환경보전종합계획인 'Agenda21'에서는 UN시스템의 정책·프로그램의 디자인, 실행 및 평가에 NGO의 전문성과 관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NGO는 공식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48)]

루이스와 칸지는 2000년대에 나타난 UN 중심의 MDGs 제정 및 OECD/DAC 중심의 원조 효과성 논의가 개발원조의 '재정부화(re-governmentalization)'를 강화시켜 개발NGO가 1990년대의 국제개발협력 체제에서 누려오던 중심적 지위와 관심을 잃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개발NGO들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service delivery)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49)]

---

45) David Lewis and Nazneen Kanji (2009) p.39-40

46) Edwards M., and Hulme, D. (1995)

47) David Lewis. "Development NGOs and the Challenge of Partnership : Changing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Vol 32, No.5 (1998) pp.502-509.

48) David Lewis and Nazneen Kanji (2009) p.33

2009년 벨기에 앤트워프대학의 린 니지스(Leen Nijs)와 로브레트 레나드(Robrecht Renard)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스위스의 8개국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2000년 이후의 개발NGO 정부지원이 이전과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발NGO의 특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원조효과성이라는 큰 패러다임 내에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따라서 개발NGO들로 하여금 정책옹호활동, 권리에 기반하는 접근방식(RBA), 주변화된 그룹 지원, 창의적인 방식의 접근을 활용하는 등 NGO행위자만이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치를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제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원조효과성의 원칙인 타 공여자와의 조화(harmonization)와 정부정책과의 일치(alignment) 등의 수행을 요구한다. 이는 개발협력분야의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재정지원을 각국 정부의 분야 및 지역배분과 관련한 전략적 관점과도 일치시켜 상승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50]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부의 NGO에 대한 인식은 시대 흐름에 따라 부침(浮沈)이 있었고, NGO 역시 시대에 따라 자신들의 역할을 개발원조의 정부보조자, 보완자, 비평가, 감시자 등 여러 가지 관점으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의 차이와는 별개로 NGO는 개발담론을 풍성하게 만들고, 남반구와의 협력에 있어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51] 2008년 가나 아크라의 3차 원조효과성고위급회담에서는 아크라행동선언(Accra Action Agenda, AAA)을 발표하면서, CSO를 독립적인 주요 개발행위자로 인정하였다.

나. 정부-시민사회 협력의 해외 현황 분석 : 규모와 지원방식

1) 규모

1990년대 개발NGO는 정부 등 공적 공여자들의 '선호하는 수단'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개발분야에서의 NGO 자체의 원조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대되었다. 〈표 2-3〉은 1991년과 1992년 평균 9.8%에 불과하였던 ODA자금에 대비하

49) 위의 책. pp.34-43.

50) Leen Nijs, Robrecht Renard. '*Reforming Government Funding of Development NGOs – a Comparative Analysis of Eight European Donors*'. Institute of Development Policy and Management. 2009. p. 14-18.

51) Ian Smillie and Henny Helmich (1999) p. 8.

여 NGO 자체적으로 모금된 자금집행의 비율이 2009년에는 18.4%까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발원조 분야에서 NGO의 역할과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3> OECD/DAC 회원국 및 NGO의 원조 규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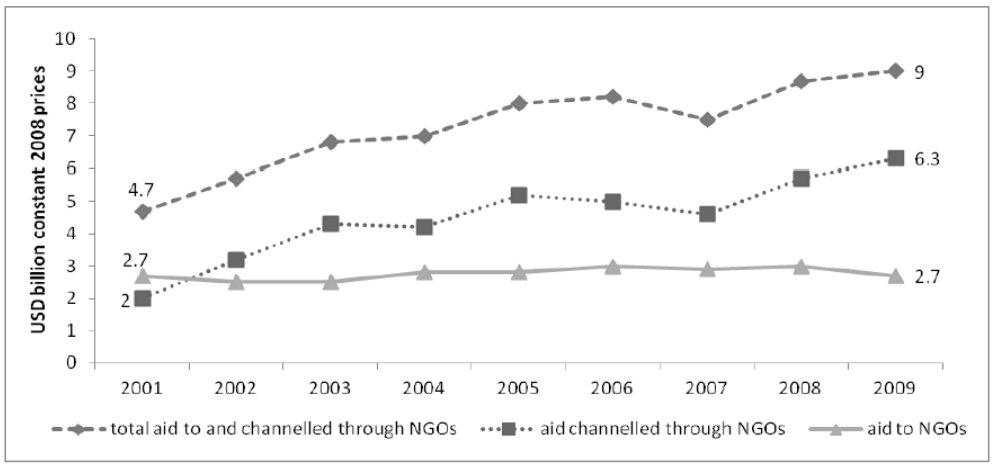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1991-92 평균	1993-94 평균	1996-97 평균	1998-99 평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ODA 자금	58,453	57,610	52,028	52,910	69,065	79,432	107,838	104,814	104,206	122,359	120,000
NGO 자체자금	5,704	5,869	5,480	6,173	10,239	11,320	14,823	14,749	18,352	23,787	22,047
ODA대비 NGO 자체자금 집행	9.8%	10.2%	10.5%	11.7%	14.8%	14.3%	13.7%	14.1%	17.6%	19.4%	18.4%

※ 출처 : OECD 홈페이지에서 재구성

개발협력을 위한 NGO의 자체자금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와 함께, 2001년부터 2009년까지 DAC회원국의 NGO에 대한 혹은 NGO를 통한 총 ODA자금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2001년 그 규모가 US$ 47억이었던 것에 비해 2009년에는 US$ 90억으로 증대되었으며, 이는 〈그림 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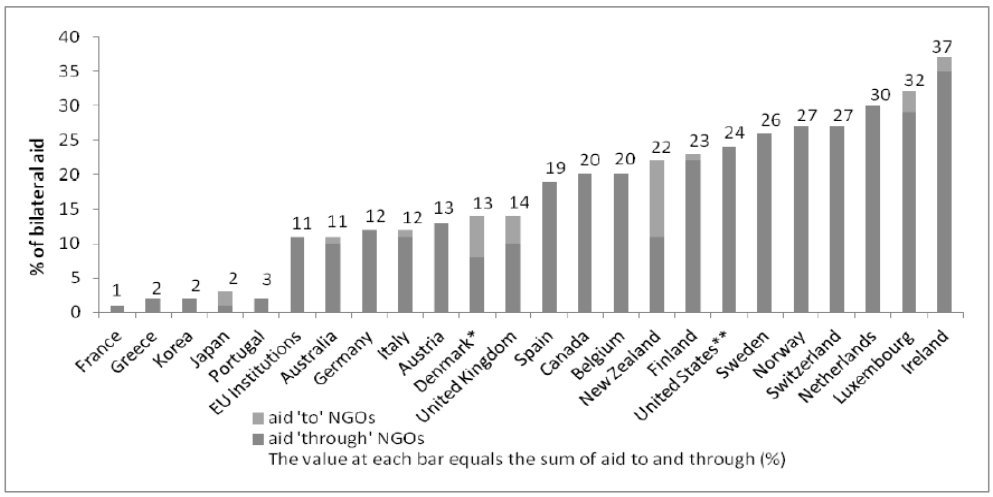
<그림 2-2> 2001-2009년 OECD/DAC회원국의 NGO에 대한/NGO를 통한 총 ODA자금



※ 출처 : DCD/DAC (2011) p.10.

OECD/DAC는 공여국 정부의 NGO지원을 'NGO에 대한 지원(aid to NGO)'과 'NGO를 통한 지원(aid through NGO)'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NGO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core support)을 말하며, 후자는 NGO가 정부가 계획한 프로젝트를 대신하여 진행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earmarked aid)을 말한다. 2009년 DAC 회원국에서 양자간 ODA 중 NGO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림 2-3〉와 같다. 회원국 중 11개국은 ODA 자금의 20% 이상을 NGO에 대한, 혹은 NGO를 통한 지원에 사용하고 있는 반면, 5% 미만의 규모도 5개국이나 된다. 이를 통하여 OECD/DAC 회원국 간에도 원조수행에 있어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대해 상이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아일랜드는 ODA자금 중 37% 이상을 NGO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 프랑스의 경우 단 1%만을 지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52)]

<그림 2-3> 2009년 DAC회원국 양자간 ODA 중 NGO 지원 비율



※ 출처 : DCD/DAC (2011) p.11.

반면, 한국의 경우 다른 DAC 22개 회원국 및 EU와 비교하였을 때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의 NGO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 〈표 2-4〉에서 확인가능하다. 2007-2009년 DAC 회원국의 NGO지원 자금규모를 비교하였을 때, 한국은 각각 US$8백만, 1천만, 1천 1백만을 지원함으로써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물론, ODA자금 규모 자체가 회원국 사이에서도 크게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ODA 전체 자금 중 NGO

52) DCD/DAC (2011). p.9-11.

지원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 자금규모의 측면도 중요한 수치라는 점에서, 한국의 낮은 NGO지원 자금규모는 향후 한국 ODA에 있어 NGO지원 규모 확대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2-4> 2007-2009년 OECD/DAC회원국 NGO지원 자금 규모[53]

(단위 : 백만불)

DAC member	2007	2008	2009
Australia	175	193	256
Austria	77	70	69
Belgium	259	306	336
Canada	20	232	640
Denmark	205	209	224
Finland	135	160	178
France	112	129	121
Germany	788	940	993
Greece	0	2	5
Ireland	297	348	255
Italy	132	123	126
Japan	231	287	321
Korea	8	10	11
Luxembourg	7	83	84
Netherlands	1,491	1,766	1,480
New Zealand	29	55	49
Norway	784	853	863
Portugal	6	12	8
Spain	3	1,470	945
Sweden	725	768	777
Switzerland	394	454	480
United Kingdom	963	982	1,071
United States	3,267	4,438	6,239
EU Institutions	639	761	1,456
Grand total	10,747	14,650	16,988

※ 출처 : DCD/DAC (2011) p.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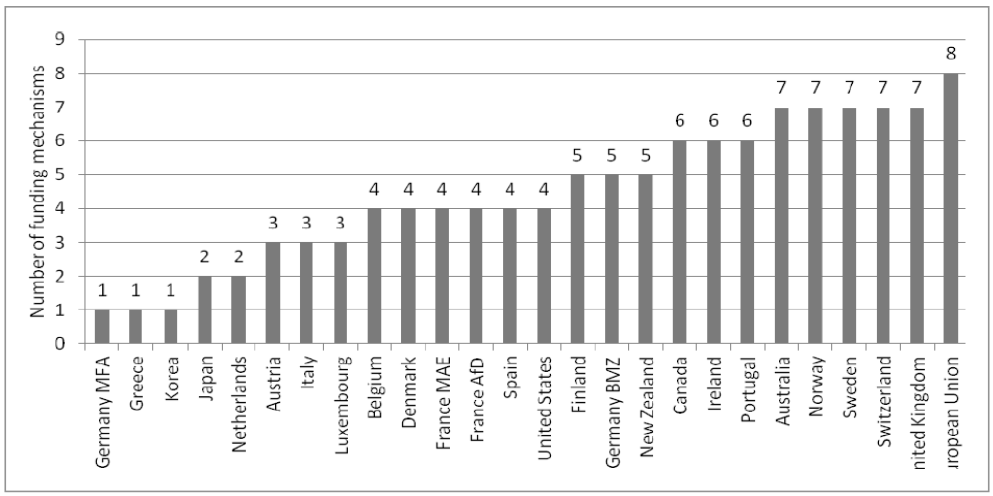
53) DCD/DAC (2011) p.46. 이 표는 DAC의 Creditor Reporting System을 사용한 표이다. 음영표시가 된 국가는 countries did not report channel codes for 25% or more of their activities 이며, 미국의 경우 'NGO를 통한 지원'의 부분이 불완전하다.

2) 지원방식

DCD/DAC는 2011년 발간한 'How DAC Members Work With Civil Society Organisations : An Overview'에서 DAC 24개 회원국의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의 재정지원방식(funding mechanism)을 조사하였다. 공여국 정부의 시민사회 재정지원방식은 크게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자국 및 국제 CSO의 프로젝트·프로그램 지원, 공여국 본부에서의 사업제안서 접수를 통한 지원, 수원국에서 현지 CSO 프로젝트·프로그램 지원, 본부에서의 전략적·포괄적 지원, 수원국에서의 사업제안서 접수를 통한 지원, 수원국 정부를 통한 현지 단체 지원, 수원국 정부에서의 전략적·포괄적 지원 및 기타 유형이다.

〈그림 2-4〉를 통하여 총 24개 조사 대상기관 중 한국과 그리스를 제외한 22개 기관이 2개 이상의 재정지원방식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EU는 8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및 호주 등 5개국은 7개의 재정지원방식을 운용한다. 이와 같이 OECD/DAC의 국가들의 다양한 재정지원방식의 운용은 시민사회협력의 규모를 확대하고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한국의 상황에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그림 2-4> 각국(기관)별 대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재정지원방식 수



※ 출처 : DCD/DAC, (2011) p.22.

지금까지 정부-시민사회 협력의 국제적 현황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2009년 양자간 ODA대비 NGO지원사업 비율은 2%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2015년까지 GNI 대비 ODA비율을 0.25%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NGO 사업비도 순차적으로 약 900억까지 증대될 예정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 설정이 요청되는 바이다. 또한 재정지원방식 분석에서 확인하였듯이,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 재정지원 방식은 한 가지로 제한되어 있어 다른 DAC 회원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방식을 참고할 필요성이 제시된다.[5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선진공여국의 CSO협력에 관한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고, 보다 발전적인 CSO와의 협력관계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54) 한국의 경우는 p 33에서 설명한 DCD/DAC의 7가지 재정지원방식 중 '공여국 본부에서의 사업제안서 접수를 통한 지원'에만 해당된다.

Ⅲ. 시민사회 협력의 전략적 목표

본 장에서는 OECD/DAC에 속하는 24개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민사회 협력사업의 전략적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각 국가가 어떤 정책 목표를 가지고 시민사회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가별 특징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협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전략적 특징이 있는가와 시민사회와의 협력 목표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정부-시민사회 협력 목표 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시민사회와의 협력 목표

가. 개요

24개 국가가 가장 많이 시민사회와의 협력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빈곤감소이다. 아래의 〈표 3-1〉[55]에서 나타나듯이 MDGs 달성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국가를 포함할 경우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빈곤감소를 가장 주된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요한 목표로 시민사회 활성화,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 원조정책 보완, 공여국 인지제고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 국가들은 굿거버넌스[56]와 인간안보, MDGs 달성, 수원국의 민간경제 개선 등 매우 다양한 시

55) <표 3-1>은 2010년에 수행된 'NGO지원사업 종합평가' 연구 과정에서 조사된 내용과 본 연구과정에서 조사한 자료, KOICA 민관협력실 업무자료(2011-02-016)인 선진공여국 NGO지원사업, DCD/DAC, 2011, *How DAC Members Work With Civil Society Organisations : An Overview*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각 국가별 협력목표는 CSO 협력 관련 전략문서나 정책문서에 명시된 것을 기초로 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CSO 협력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칙(principle), 기준(criteria) 등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자료에서 추출한 것이다. <표2-1>과 이하에서 다루고 있는 OECD/DAC 국가들의 CSO 지원프로그램 현황을 정리한 표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초자료들의 목록과 구체적 출처는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56) 굿거버넌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외에 World Bank의 굿거버넌스의 정의 중 시민사회 참여(Voice and Accountability)를 제외한 정치적 안정성과 평화(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효과적 정부(Government Effectiveness), 양질의 규제정책(Regulatory Quality), 법치(Rule of Law), 반부패(Control of Corruption)를 명시한 경우를 포함하였다. World Bank의 Th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WGI)에 대해서는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index.asp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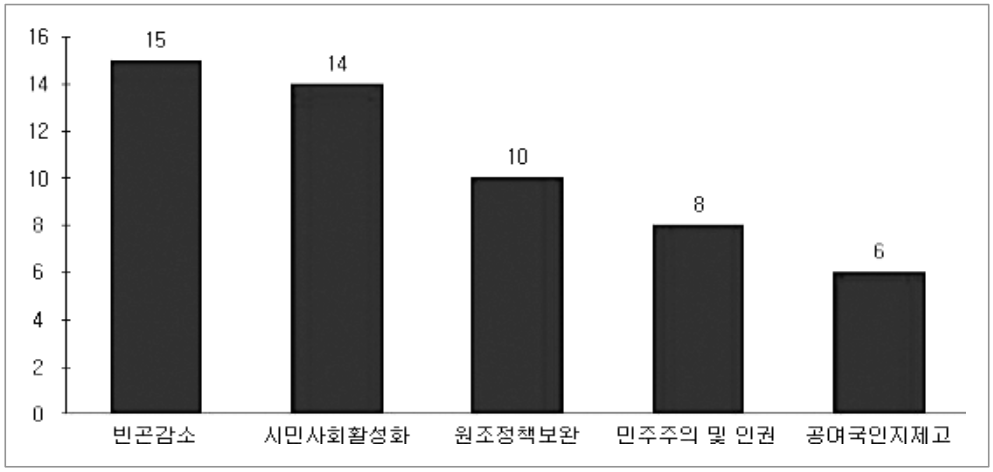
민사회 지원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 목표를 복수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시민사회 협력사업의 목표

국가	빈곤감소	시민사회 활성화	원조정책 보완	민주주의 · 인권	공여국인지 제고	굿거버넌스	인간안보	MDGs 달성	수원국 민간경제 개선	수원국 주민역량 강화	협력구축	수원국 취약계층 지원	젠더	서비스전달 및 관리증진	양질의 원조를 위한 파트너십	이주민 참여	사회경제서비스	균등발전	지속가능한 개발	지식공유	새로운 주제와 활동분야	자국어 증진	국제적연대	국제개발대화 기여	취약국 지원
그리스		■	■		■																				
네덜란드	■	■	■						■																
노르웨이	■	■		■		■										■									
뉴질랜드	■	■							■																
덴마크		■	■	■							■														■
독일			■		■																■				
룩셈부르크	■																								
미국		■	■								■														
벨기에										■															
스웨덴	■	■		■																					
스위스	■	■																							
스페인	■						■																		
아일랜드		■		■	■			■					■					■							
영국					■	■											■								
오스트리아	■			■		■													■						
이탈리아	■	■		■		■																			
일본	■						■																		
캐나다	■	■			■					■		■		■						■					
포르투갈	■						■	■	■												■		■		
프랑스	■	■		■																		■			
핀란드		■	■					■																	
호주	■		■																						
EU	■	■		■	■																				
한국			■												■										
합계	15	14	10	8	6	4	3	3	3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전체 24개 국가 중 5개국 이상이 공통적으로 표방하는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그림 3-1> OECD/DAC 국가들의 시민사회 협력 목표



〈그림 3-1〉에서 나타나듯 '빈곤감소'는 가장 많은 국가들이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분야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빈곤감소라고 명시하지 않더라도 3개 국가에서 MDGs의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MDGs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빈곤감소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는 24개 국가 중 18개 국가가 빈곤감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빈도 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로 치환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빈곤감소가 가장 보편적인 시민사회와의 협력 목표가 되는 셈이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민주주의 및 인권의 신장' 역시 많은 국가들이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DCD/DAC의 'How DAC Members Work With Civil Society Organisations : An Overview'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가 시민사회 강화를 위해 NGO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19개의 DAC 국가들이 수원국의 정부와의 정책적 대화(policy dialogue)를 통해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7]

특히 이 두 항목은 해외현지조사에서 수행된 각 국가별 원조기관의 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 속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수원국 현지 CSO 및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tool kit)와 같은 구체적 항목에 '권리에 기반한 접근법(Rights-Based Approach, RBA)'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57) DCD/DAC, 2011. *How DAC Members Work With Civil Society Organisations : An Overview*, pp.15~16.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58] 스웨덴의 경우에도 역량강화를 위해 수요 기반 접근(Needs Based Approach)에서 권리에 기반한 접근법(RBA)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했다.[59]

또한 수원국인 네팔 현지조사에서도 영국[60]과 호주[61]의 원조기관 담당자들은 현지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현지 시민사회 뿐 아니라 국가의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인터뷰를 통해서 민주주의 및 인권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단순히 문서상의 전략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원조정책의 보완'도 주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목표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표 3-1〉에서 보이듯이 한국과 같이 원조정책의 보완을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미국, 일본, 포르투갈, 핀란드, 호주의 경우 빈곤감소나 시민사회 활성화, 민주주의 및 인권 같이 많은 국가에서 주요하게 추구되는 목표를 함께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조정책의 보완과 함께 주요한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항목은 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인지제고'이다. 그리스, 독일,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EU에서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공여국 인지제고는 시민사회 협력 사업이 갖는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민사회와의 협력 사업은 정부간 사업은 아니지만 공여국의 공적 자금이 투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는 달리 공적 자금의 원천이 되는 납세자들에 대한 책무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원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러한 활동의 중요성과 성과를 공여국 내에서 공유하고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 역시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8) 2011년 3월 22일, 영국 현지조사 인터뷰, Action Aid, Rebecca Ingram(PPA manager).

59) 2011년 3월 18일, 스웨덴 현지조사 인터뷰, Forum Syd, Maria Feleman(Head of International Programmes).

60) 2011년 4월 18일, 네팔 현지조사 인터뷰, DFID, Gobinda Neupane(Community Support Programme Coordinator), Bandhu Ranjan(Programme Mana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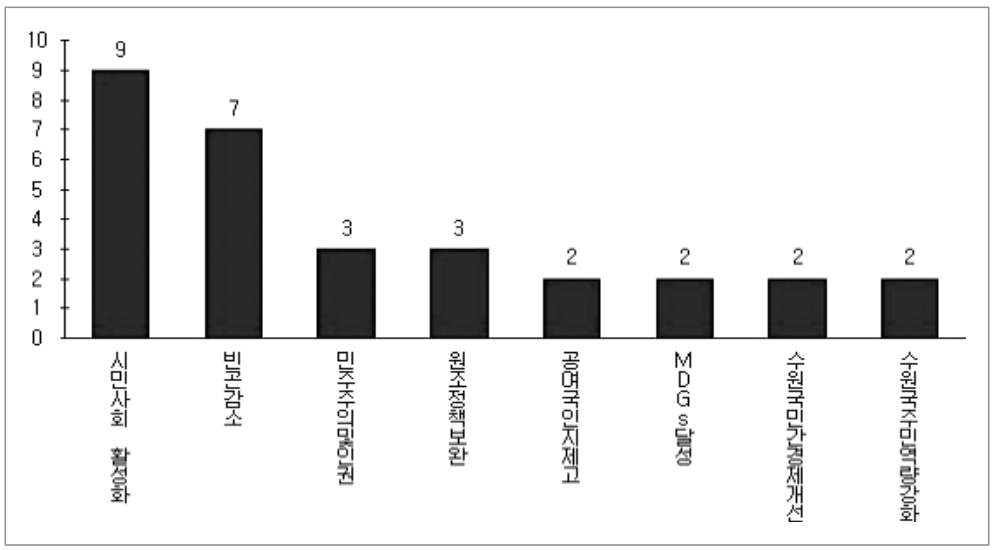
61) 2011년 4월 20일, 네팔 현지조사 인터뷰, AusAID, Benjamin Reese(First Secretary), Krishna Bahadur Karki (Program & Research Officer)

나. 양자간 원조 중 시민사회 협력 사업비 비율에 따른 특징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과 함께 양자간 원조 중 NGO들을 통한 사업비 비율에 따라 시민사회와의 협력 목표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62]

먼저 CSO 지원 비율이 전체 ODA 중 20% 이상인 11개 국가에서 주요하게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63]

<그림 3-2> NGO를 통한 사업비 비율에 따른 시민사회 지원 목표 : 전체 ODA 중 20% 이상



〈그림 3-2〉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가 가장 높은 빈도 수를 보이고 있다. 빈곤감소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전체 2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다른 부분은 민주주의 및 인권이 원조정책보완과 동일한 빈도 수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24개국 전체를 분석했을 때 주요한 목표로 나타났던 5개 분야 모두가 2개국 이상에서 공통으로 추구하는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의 특징은 24개국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와 비교해 시민사회 활성화가 빈곤감소보다 높게 나타나

62) 사업비 비율은 DCD/DAC이 발간한 앞의 보고서에 나온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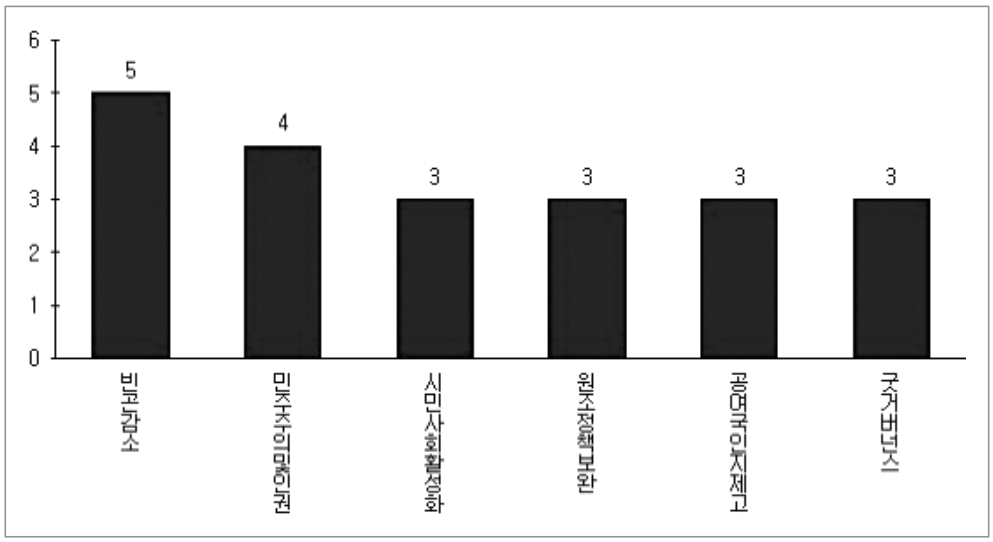
63)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아일랜드, 캐나다, 핀란드

고, 민주주의 및 인권이 원조정책 보완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 외에 5개 분야가 모두 나타난다. 또한 전체 24개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보다 다양한 목표가 설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항목 외에 이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이 공통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없으며, 이들 국가는 MDGs 달성, 수원국 민간경제 개선, 수원국 주민역량강화와 같이 주로 현지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CSO 지원 비율이 전체 ODA 중 20% 미만인 8개 국가에서 주요하게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분야는 아래와 같다.[64)]

<그림 3-3> NGO를 통한 사업비 비율에 따른 시민사회 지원 목표 :
전체 ODA 중 20% 미만(6%~19%)



이들 국가에서는 24개국 전체를 분석했을 때와 같은 5개 주요 분야와 함께 굿거버넌스라는 항목이 새롭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빈곤감소와 원조정책보완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의 빈도 수에 있어 전체 국가를 분석했을 때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들 8개 국가에서 위 그림에서 나타난 항목 외에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항목은 없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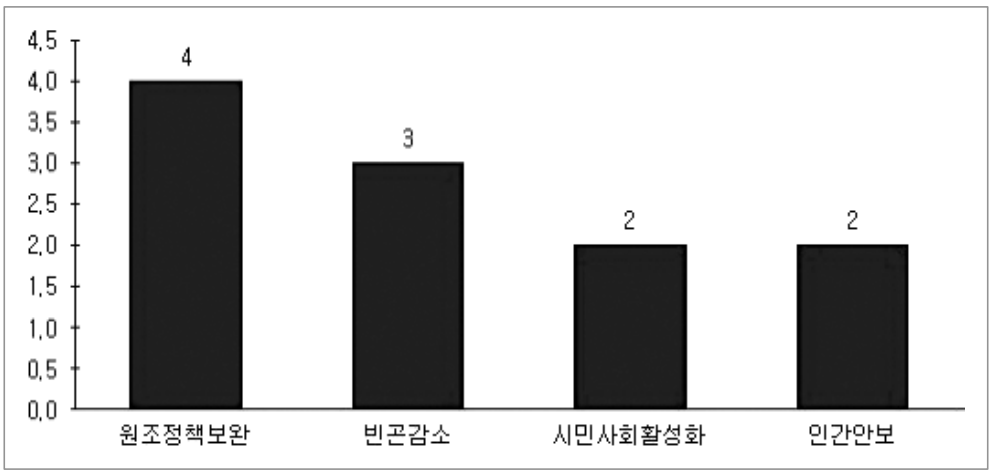
64) 덴마크, 독일,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호주, EU

며, 취약국 지원, 새로운 주제와 활동분야의 발굴 등 각 국이 독특하게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있다.

이들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특징은 넓게 보아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 있는 항목들이 주요하게 추구되어진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및 인권, 시민사회 활성화, 굿거버넌스의 빈도 수를 모두 합하면 빈곤감소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CSO 지원 비율이 전체 ODA 중 5% 이하인 5개 국가에서 주요하게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65]

<그림 3-4> NGO를 통한 사업비 비율에 따른 시민사회 지원 목표 : 전체 ODA 중 5% 이하



〈그림 3-4〉에서 NGO를 통한 사업비 비율이 전체 ODA 중 5% 이하로 낮은 국가들의 경우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주요한 목표로 설정되었던 5개 분야 중 원조정책 보완, 빈곤감소,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3개만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빈도 수에 있어서도 앞에서 분석한 국가들과 달리 원조정책 보완이라는 공여국의 정책적 목표가 수원국의 빈곤감소나 시민사회 활성화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국가도 역시 〈그림 3-4〉에 나타나는 항목 외에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없다.

65) 그리스, 일본, 포르투갈, 프랑스, 한국

그러나 이 그룹에 속하는 5개국 중 그리스와 한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이 빈곤감소를 시민사회와의 협력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빈곤감소를 보편적 목표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의 경우 빈곤감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요하게 추구되는 목표와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빈곤감소나 시민사회 활성화와 같은 보편적으로 추구되는 목표 대신 '양질의 원조를 위한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으며[66], 이외에도 이들 5개 국가는 MDGs 달성, 공여국 인지제고, 민주주의 및 인권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CSO와의 협력 목표를 24개국 전체와 전체 ODA 중 NGO를 통한 사업비 비율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종합적으로 볼 때 "빈곤감소, 시민사회 활성화,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 원조정책 보완, 공여국 인지제고"라는 5개 분야는 사업비 비율 5% 이하인 국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보편적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또 사업비 비율 5% 이하인 5개국에서도 5개 분야 중 빈곤감소와 시민사회 활성화, 원조정책 보완은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사업비 비율과 보편적인 협력 목표 추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업비 비율이 높을수록 보다 보편적인 협력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사업비 비율이 높을수록 거버넌스, 젠더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크로스 커팅 이슈(Cross-cutting issues)

〈표 3-1〉을 통해 발견되는 특이점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크로스 커팅 이슈(Cross-cutting issues)로 활용하고 있는 환경과 젠더가 낮은 빈도 수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국제개발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과 양성평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점은 다소 의아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OECD/DAC은 2009년 원조관리지침(Managing Aid : Practice of DAC Member Countries)에서 원조효과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 크로스 커팅 이슈의 채택 필요성을 강

66) 이 부분은 <표 2-3>의 정책문서나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DCD/DAC의 보고서에서 언급되었기에 추가하였다.

조하며, 이를 실행하는 방안으로 크로스 커팅 이슈의 주류화(mainstreaming)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크로스 커팅 이슈를 사업의 실행계획에 포함시키거나 평가에 연결시키고 크로스 커팅 이슈와 관련된 집단의 역량강화를 통한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67] 즉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도 환경과 젠더 같은 크로스 커팅 이슈는 빈곤감소나 시민사회 활성화 등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부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68]

그러나 뒤에서 다루고 있는 각 국가의 CSO 협력사업의 우선순위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환경과 여성을 우선 분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처럼 사업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양성평등 및 환경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분야가 아직은 정책적 차원에서 추구되는 주요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CSO와의 협력에 있어 전략적 목표로서는 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OECD/DAC에 속한 24개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CSO 협력사업의 목표를 분석한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감소, 시민사회 활성화, 원조정책 보완'이라는 보편적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다양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목표 중 OECD/DAC에 속한 24개 국가가 모두 설정하고 있는 분야는 '빈곤감소, 시민사회 활성화, 원조정책 보완'이라는 세 가지 항목이다. 이는 NGO를 통한 사업비 비율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설정하고 있는 보편적 협력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빈곤감소, 시민사회 활성화' 목표를 포함한 뚜렷한 정책목표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경우 이 세 가지 분야 중 원조정책 보완이라는 항목을 이미 시민사회와의 협력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확대에 대

67) OECD. 2009. *Managing Aid : Practice of DAC Member Countries*. pp.85-88.

68) 개발에서의 젠더와 관련해 정혜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OECD/DAC이 성 주류화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인 젠더마커를 아직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조사 단계에서부터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ODA Watch, 제19차 ODA 월례토크 "여성 이슈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2009.6.11.)

비하여 적어도 가장 보편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빈곤감소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구체적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NGO를 통한 사업비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이 세 항목 외에 다양한 협력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민주주의 및 인권, 수원국 주민 역량강화 등 주요하게 나타나는 분야를 포함해 시민사회 협력사업의 목표를 보다 폭넓게 설정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국내 개발협력 인지제고 목표도 강조되어야 한다.

KOICA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시민사회협력을 통한 국내 개발협력 인지제고도 많은 국가들이 중요하게 추구하는 분야이므로 보다 명확하게 정책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시민사회 협력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24개 국가들은 각기 설정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협력 사업의 주요 지역을 설정하거나 주요 지원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적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보다는 보다 많은 국가들이 지원 분야별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추구하고 있다.

가. 중점협력 지역

우선 지역 혹은 국가를 설정하고 있는 국가들은 그리스,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캐나다, 포르투갈, 호주로 나타난다. 이들 국가 중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은 자국의 식민통치를 받았거나 자국 중심의 문화권에 속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해외방문조사 대상국인 호주의 경우 지정학적 특성에 따라 태평양 지역[69]과 동남아 지역[70]에 지역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우선 지역 외에 파푸아뉴기니를 우선 국가로 설정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

69) 멜라네시아, 나우루 및 인근 섬국가. AusAID, 2006, *Australian Aid : Promoting Growth and Stability.* pp.26-31.
70)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티모르, 메콩강 지역, 멜라네시아, 나우루 및 인근 섬나라. AusAID. 2006. pp.26-31.

지역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국가들 중에서 오스트리아가 가장 많은 지역을 포괄하며 CSO 협력사업 지원에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8개의 중점 지역과 국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이 밖에도 기타 중점협력국으로 팔레스타인을 설정하고 있다.[71]

<표 3-2> 오스트리아의 중점 협력 지역

지역	국가[72]
아프리카(AU)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우간다
남아프리카	모잠비크
서아프리카·사헬	부르키나파소
히말라야-힌두 쿠시 지역	부탄
남동유럽·발칸 지역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코소보, 몬테네그로, 몰도바
중앙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니카라과
남 코카서스 지역	

오스트리아는 CSO와의 협력사업 중 남부 중점협력국[73]과 동부 중점협력국[74]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단순히 중점협력국을 설정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 협력 사업인 Individual Projects East[75]의 사업비 지원에 있어 중점협력국인 경우 50%, 중점협력국이 아닌 경우는 25%를 지원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뿐 아니라 룩셈부르크의 경우에도 Co-funding of NGO Projects에서

71) 7개의 중점지역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2009년에 발간된 오스트리아의 정책문서인 *Three-Year Programme on Austrian Development Policy 2009-2011*.(p.15)에 따른다.

72) 국가는 다시 구체적으로 남부 중점협력국과 동부 중점협력국으로 세분화되어 나타나며, 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중점협력국이 더욱 많이 설정되어 있다.

73) ADC 남부 중점협력국
- 니카라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 카보베르데,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 에티오피아, 우간다
- 모잠비크, 짐바브웨, 나미비아, 남아고공, 탄자니아
- 부탄, 네팔, 파기스탄
- 팔레스타인

74) ADC 동부 중점협력국
-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마케도니아, 몬테그로, 세르비아
-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몰도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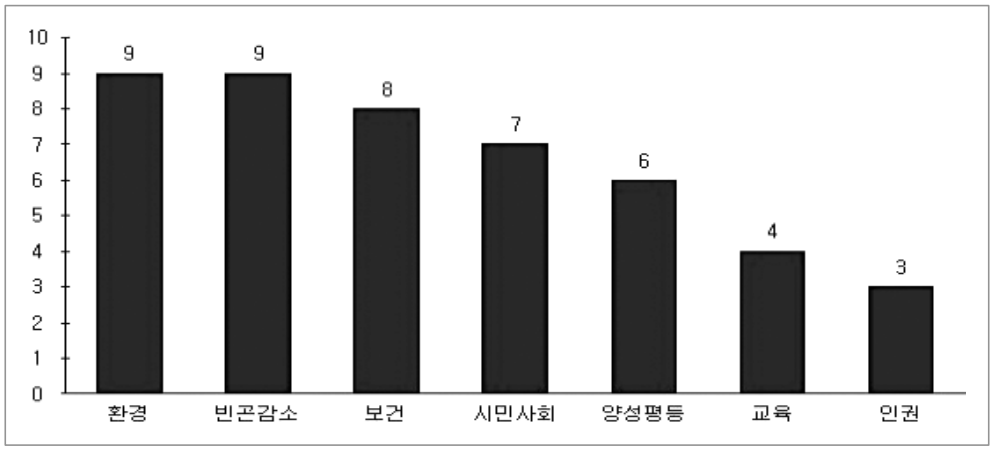
75) 중점협력국이 아닌 국가에서의 사업지원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국가가 협력국인지 여부에 따라 단체의 자부담 비율이 다르다. 우선파트너 국가의 경우 75%까지 지원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66.7%까지 지원한다.[76]

나. 중점협력 사업분야

분야별 우선 순위의 경우 전체 24개국 중 16개국이 시민사회 협력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우선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16개 국가가 설정하고 있는 우선 분야를 빈도수에 따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5> CSO 협력사업 지원의 우선 분야



〈그림 3-5〉에서 보건은 HIV/AIDS를 포함하여 나타냈고, 시민사회활성화는 참여와 민주주의를 포함하여 나타낸 것이다.

시민사회와의 협력 목표에서 가장 보편적인 목표로 설정되고 있는 빈곤감소는 우선분야 설정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빈도 수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EU가 빈곤감소를 우선 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

76) 룩셈부르크의 우선 파트너 국가는 다음과 같다.
- 아프리카 :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말리, 나미비아, 니제르, 세네갈
- 남미 :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아시아 : 라오스, 베트남

시민사회활성화 역시 높은 빈도 수를 보이고 있는데, 양성평등이나 인권과 같이 시민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이슈들과 합쳐서 본다면 우선 분야로 가장 많이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시민사회활성화는 덴마크, 영국, 뉴질랜드, 참여와 민주주의는 그리스,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인권은 그리스, 노르웨이, 독일, 양성평등은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EU에서 우선 분야로 명시하고 있다.

시민사회와의 협력 목표 부분에서 다루었던 크로스 커팅 이슈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환경과 양성평등이라는 대표적인 크로스 커팅 이슈가 많은 국가에서 우선 분야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은 16개국 중 9개국에서 우선 분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는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EU이다. 양성평등은 위에서 언급한 6개 국가에서 우선 분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보건과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 차원에서 전통적으로 중시되는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이 분야는 개발협력사업에서 오랫동안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며 빈곤감소, 시민사회의 활성화 등 시민사회 협력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DCD/DAC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24개 국가 중에서 벨기에, 독일, 덴마크만이 사회적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이 NGO들을 지원하는 목표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14개 국가에서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을 통해 구체적 분야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77] 이는 개발협력 사업에 있어 사회적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 자체가 아니라 이를 활용해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적 흐름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밖에 독일과 스웨덴은 다른 국가들이 설정하고 있는 분야보다 더욱 다양한 분야를 우선하고 있다. 두 국가는 환경, 빈곤감소 등을 공통적으로 우선 분야로 설정하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는 기술협력, 농촌개발, 에너지 공급, 수공예·소규모 산업 발전이라는 구체적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는 참여와 민주주의 뿐 아니라 정치·경제적 독립, 경제·사회적 평등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된 분야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77) DCD/DAC, 앞의 보고서, p. 15

다. 시민사회 협력 정책문서

이와 같은 시민사회와의 협력 목표와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우선순위, 우선분야는 각 국가별로 시민사회 협력사업 정책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이보다 상위 수준의 ODA 정책문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 장에서 분석하고 있는 24개국 중 대략 절반 정도의 국가에서 시민사회 협력사업의 목표와 전략을 명시한 전략 문서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ODA 정책문서를 포함할 경우 모든 나라가 이와 관련된 정책 문서나 자료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국가별로 시민사회 협력사업의 목표, 전략 등을 명시하고 있는 자료들은 〈표 3-3〉과 같다.

<표 3-3> 국가별 시민사회 협력 목표 및 전략 관련 정책 문서

국가	시민사회 협력 관련 전략문서	개발협력 관련 정책문서
그리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Greece. 2004. Hellenic Aid Action Plan for Cooperation and Harmoniz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네덜란드		The Netherland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0. Letter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utlining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The Netherland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1. Letter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presenting the spearheads of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노르웨이	Principles for Norad's Support to Civil Society in South. (2009)	
뉴질랜드	NZAID and CID. 2009. Strategic Policy Framework for relations between NZAID and New Zealand NGO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10. New Zealand Aid Programme.
	NZAID. 2010. Guideline Working With Civil Society Organisations.	
덴마크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2008. Strategy for Danish Support to Civil Society in Developing Countries.	
독일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BMZ). 2011. German development policy at a glance.
룩셈부르크		Lux-Development. 2008. Annual Report
미국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Guidance. 2002. USAID-U.S. PVO Partnership.	
	USAID. 2011. RFA Number M-OAA-GRO-EGAS-DGP-11-0001 "Development Grants Program (DGP)".	

벨기에		The Federal Public Service Foreign Affairs, Foreign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2009. The Belgian Development Cooperation. the DGD Annual Report.
		The Federal Public Service Foreign Affairs, Foreign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2007. Plan for the Harmonization and the Alignment of Aid-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the Belgian governmental bilateral aid
스웨덴	Sida. 2010. Sida's Instructions for Grants from the Appropriation Item Support via Swedish Civil Society Organisations.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09. Strategy for support via Swedis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2010-2014.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09. Pluralism. Policy for support to Civil Society in developing Countries within Swedish Development Cooperation.	
	Sida. 2007. Sida's support to civil society in Development Cooperation.	
	Sida. 2004. Civil Society and Poverty Reduction.	
	Sida. 2003.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frame organisations.	
스위스	SDC. 2007. NGO Politik.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FDFA). 2011. ABC of Development Policy.
	SDC. 2001. Funding from SDC to Swiss NGO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스페인	AECID(Spain) http://www.aecid.es/web/es/ong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Cooperation. 2009. Third Master Plan of Spanish Development Cooperation for 2009-2012.
		AECID. 2009. Sp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아일랜드	Irish Aid. 2011. Civil Society Fund(CSF). Guidelines for Applicant Organisations.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2011. Background Note for the Minister of State.
	Irish Aid. Civil Society Policy http://www.irishaid.gov.ie/article.asp?article=1213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Statement of Strategy 2008-2010
	Irish Aid. 2010. Guidelines for Report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projects funded under The Civil Society Fund (CSF).	Towards Poverty Reduction Mainstreaming Strategy 2007-2009.
영국	DFID. 2006. Civil Society and Development, How DFID works in partnership with to deliver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DFID. 2009. White Paper. Eliminating World Poverty : Building Our Common Future.
오스트리아	Federal Ministry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2007. NGO Cooperation.	Federal Ministry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2009. Three-Year Programme on Austrian Development Policy.

이탈리아		DGCS : the Committee of Ministries. 2010. Italian Development Co-Operation 2011-2013 : Programming guidelines and direction.
일본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0.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White Paper 2010.
		Government of Japan. 2005. Japan's Medium-Term Policy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캐나다		CIDA. 2011. Report on Plan and Priorities.
		CIDA. 1997. CIDA's Policy on Meeting Basic Human Needs.
포르투갈	IPAD. 2010. Apoio a Intervencao Das ONGD No Dominio Da Cooperacao Para O Desenvolvimento.	IPAD. 2006. Portuguese Cooperation Strategy.
		IPAD. 2006. Strategic Vision for Portuguese Development Cooperation.
프랑스	French Ministry of Foreign and European Affairs. 2011. Development Cooperation : a French Vision : Framework Document.	
핀란드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Finland. 2010. Guidelines for Civil Society in Development Policy.	
호주		AusAID. 2006. Australian Aid : Promoting Growth and Stability. A White Paper on the Australian Governments Overseas Aid Program.
EU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2. Participation of non-state actors in EC development policy.	The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2006. Joint statement by the Council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States meeting within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mmission on European Union. Development Policy : 'The European Consensu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 46/1.

시민사회 협력의 우선 순위에 대해 이상과 같은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환경과 양성평등의 주류화를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크로스 커팅 이슈(Cross-cutting issues)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환경과 양성평등을 시민사회와의 협력 사업의 우선 분야로 설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크로스 커팅 이슈의 주류화(mainstreaming) 흐름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민사회와의 협력 목표와 우선 순위 설정을 연계한다.

시민사회와의 협력 목표와 연계한 우선 순위 설정과 더불어 이와 연계된 사업방식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가 중점협력국을 설정할 뿐 아니라 중점협력국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매칭비율을 달리하는 방식 등을 참고하여 중점협력국이나 중점지원 분야에 대한 우선 순위를 실제로 반영하는 사업방식을 통해 CSO와의 협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시민사회협력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한 정책문서 작성이 요청된다.

단순히 사회적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 사업 수행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목표의 달성이라는 명확한 전략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문서의 수립이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통합적 문서의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민사회 협력사업 가이드라인과 같은 형식을 통해 명시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목표에 대해 KOICA뿐만 아니라 개발NGO 커뮤니티, 새롭게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CSO들의 이해를 고양할 필요가 있다.

Ⅳ. OECD/DAC 회원국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의 현황분석

OECD/DAC의 회원국인 23개 선진공여국은 다양한 내용의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78] 본 장은 OECD/DAC의 23개 선진공여국들이 시행하는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 중인 프로그램을 6가지로 분류했다. 6가지로 분류된 프로그램은 다시 사업운영주체를 기준으로 재분류되었다.[79] 또한 최근 발간된 DCD/DAC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OECD 23개 회원국의 재정지원방식(Funding Mechanism)을 참고해 그 내용을 포함시켰다.

1. 분류방식 개요

OECD/DAC의 회원국인 23개 선진공여국의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은 다음의 〈표 4-1〉과 같이 6가지 내용과 5가지 사업운영주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표 4-1> OECD/DAC 23개 회원국의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분류방식

내용 / 사업 운영주체	지원 대상 단체속성	특정지역, 분야지원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자금규모	대응 자금비율	사업기간
원조기관본부						
원조기관 현지 사무소(대사관)						
CSO협의체						
컨설팅사						
개별CSO						

6가지 내용은 지원 대상 단체의 속성, 특정지역, 분야지원,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자금규모, 대응자금비율 및 사업기간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78) EU도 편의상 국가로 간주하여 포함하였다.

79) 22개국의 정부 원조기관 외에 EU도 포함해 선진공여국으로 표시한다.

첫째, 지원 대상 단체의 속성은 대상의 특성에 따라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대상단체를 구분하는데, 대상의 내용으로는 신규단체, 중·소 단체, 전략적 파트너,[80] 그리고 특별한 구분 없이 지원하는 경우이다. 23개 선진공여국들은 대체로 역량을 갖춘 큰 규모의 전략적 파트너를 다른 단체들과 구분해 협약을 맺어 지원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또한 많은 선진공여국들이 중·소규모의 단체와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소수의 공여국들은 신규단체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특정지역 및 분야지원이다. 몇몇 공여국들은 자국과 연관성이 있는 특정지역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특정분야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셋째,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이다. 23개의 모든 공여국들의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은 CSO들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원국의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한다. 또한 소수의 공여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적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인 방식의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도 한다.

넷째, 지원 자금규모이다. 본 연구는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을 연간 최대 지원 자금규모 US$50만 미만, US$500만 이하, 그리고 US$500만 초과로 구분해 분석했다.

다섯째, 대응(matching)자금비율이다. 이는 100%, 80% 미만, 그리고 80% 이상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현재 소수의 공여국들만이 100% 재정지원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공여국들은 80%를 기준으로 해 공동재정협력방식(co-funding)을 활용하고 있다.

여섯째, 사업기간이다. 이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단년 지원이며, 둘째는 2~3

80) 전략적 파트너는 다년간 지원, 타 프로그램보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재정 지원, 별도로 구별된 프로그램 등의 특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는 단체를 뜻한다.

년 지원, 마지막은 4년 이상 지원이다.

5가지 사업운영주체는 원조기관본부, 원조기관 현지사무소(대사관), NGO협의체, 컨설팅사, 그리고 개별 NGO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여국 본부이다. 거의 모든 공여국이 원조기관본부가 직접 시민사회와 협력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수원국에 주재하는 공여국 원조기관의 사무소 혹은 대사관이다. 많은 공여국들이 수원국의 CSO들이나 국제NGO들과 협력할 때 원조기관의 현지사무소나 대사관을 활용한다.

셋째, NGO협의체이다. 소수의 공여국들은 NGO협의체와 협약을 맺고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넷째, 컨설팅사이다. 소수의 경우이지만 공여국 원조기관이 컨설팅사와 협약을 맺고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개별NGO이다. 재단이나 NGO가 공여국 원조기관과 협약을 맺고 특정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2. 프로그램 분석

아래 〈표 4-2〉는 본 연구 분류방식에 따라 OECD/DAC의 회원국인 23개 선진공여국의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을 배치한 표이다.[81]

81) <표 4-2>에서 표기하고 있는 각 국가별 프로그램의 약칭은 서술상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표 4-2> 23개 공여국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내용

사업 운영 주체		국가/ 프로 그램	대상				특정지역, 분야	시민사회 지원	지원규모(연간)			대응자금비율 (matching)			기간		
			신규 단체	중소 단체	전략적 파트너	구별 없이 지원			US$ 50만 미만	US$ 500만 이하	US$ 500만 초과	100% 지원	80% 미만	80% 이상	단년	2~3년	4년 이상
본국본부	자국CSO	그리스				DP[82] CTH HFP DPA	CTH[83] HFP[84] DPA[85]		DP[86] (약US$8만5천~15만) CTH (약US$13만~20만)				DP(75%) CTH(75%) HFP(75%) DPA(75%)		DP (1년)		
		네덜란드				MFS Ⅱ PDP SFDC[87]	COF[88] PDP[89]			MFS Ⅱ (US$280만) COF (US$360만)	PDP (US$140만~560만)		MFS Ⅱ(75%) PDP(50%) SPDC(50%)				MFS Ⅱ (4~5년) COF PDP(4년)
		노르웨이		IA	CA									IA,CA (90%)	IA		CA(3~5년)
		뉴질랜드			SDF								SDF(70%)				SDF (2~4년)
		덴마크		PA,IA, AP,PF	FA	IP	PF[90]	PF	PF-appraisal US($1.4~1.7만) PPF-partnership activity (US$3.8~9.5천) PF-small (US($3.8~19만) PF-large (US($19~95만)		FA (US$840~3000만)	PF		FA(90%)			FO(5년)
		독일	SSP[91]			LSP SSP			SSP (US$1.8~5.5만)	LSP (약US$70만)			LSP(75%) SSP(75%)		SSP (1년)		LSP (4년)
		룩셈부르크				CF FA			CF (US$42만)				CF (US66.7, 75%)	FA (85,925[92]%)			CF(5년) FA(2~5년)
본국본부	자국CSO	미국	DGP			FOG			FOG (US$20만)	DGP (US$200만)				DGP (85~90%)	FOG	DGP	
		벨기에				CFP[93] BFFS CPPC			CFP (최소US$5.6만, 17만)	CPPC (US$14~200만)		CPPC		CFP (80%) BFFS (45~90%)		CFP (2~3년) CPPC (1~3년)	
		스웨덴		FO	FO		FO[94]	FO	FO[95]	FO	FO			FO(90%)			FO(7년)
		스위스				Program Block Grant			Program Block Grant US$3~18만				Program Block Grant 50%				Program Block Grant 제한없음

사업 운영 주체		국가/ 프로그램	대상				특정지역, 분야	시민사회 지원	지원규모(연간)			대응자금비율 (matching)			기간		
			신규 단체	중소 단체	전략적 파트너	구별 없이 지원			US$ 50만 미만	US$ 500만 이하	US$ 500만 초과	100% 지원	80% 미만	80% 이상	단년	2~3년	4년 이상
본국본부	자국CSO	스페인				CAP GA, GP	CAP			CAP (US$70만)	GA, GP (US$700만)			GA, GP (80%)		CAP (18개월) GP (1-2년)	GA(2-4년)
		아일랜드			MAPS	CSF			CSF (US$28만),		MPS (US$2900만)[96]		CSF(70%)			CSF (1~3년)	MAPS (5년)
		오스트리아	NMP		FP	IPS IPE			NMP(US$0.7천) IPS((US$14만) IPE(US$14만) FP(US$42만)[97]				IPS (25~50%) IPE (25~50%)[96] FP(70~80%)	NMP (85%)	NMP	IPS IPE FP	
		영국		CSCF, GPAF -innovation, impact	PPA			CSCF, GPAF- innovation	GPAF- innovation (US$40만)	CSCF (US$82만)	PPA GPAF -impact (US$40만~ 640만)	PPA,CSCF, GPAF -innovation, impact	GPAF -impact (75%)			PPA(3년) GPAF (3년) -innovation, impact	CSCF(5년)
		이탈리아				CF[99]			CF ($40만)					CF(85%)	CF	CF (3년)	
		일본				GAJNP[100] GGP JPP[101]				JPP (US$5.5천~ 200만) GGP (US$12~ 120만)		GAJNP[102] JPP			GAJNP	JPP (1~3년)	JPP(5년)
		캐나다				VSP VSF PDP (under US$2M) PDP (US$2M and over)	VSF[103] PDP (underUS$2M)[104] PDP (US$2M and over)	VSF	VSP (최소US$50만), VSF (최대US$50만)	PDP (under US$2M) (200만 이하) PDP (US$2M and over) (US$200만 이상)			VSP VSF PDP (under$2M) PDP (US$2M and over) (75%)			VSF(3년)	VSP PDP (underUS$2M) PDP (US$2M and over) (5년)
본국본부	자국CSO	포르투갈				NGDO CF	NGDO CF[105]		NGDO CF (US$3~40만)				NGDO CF (75%)			NGDO CF (2-3년)[106]	
		프랑스				FISONG, FSD, NWLC, CMSP, PRA-OSIM, FP	PRA-OSIM[107]	PRA-OSIM, FP	FSD ((US$40만), PRA-OSIM (US$20만) CP, CMSP	NWLC (US$100만)	FISONG (US$700만)		FSD(70%), CMSP(75%) PRA-OSIM (70%), FP(50%)	FISONG (90%)	PRA- OSIM	CP(3년), CMSP (3년), INTER-NP (3년), FP(3년)	FISONG (4년), CP(4년), CMSP(4년), INTER-NP (4년), FP(4년)

사업 운영 주체		국가/ 프로 그램	대상				특정지역, 분야	시민사회 지원	지원규모(연간)			대응자금비율 (matching)			기간		
			신규 단체	중소 단체	전략적 파트너	구별 없이 지원			US$ 50만 미만	US$ 500만 이하	US$ 500만 초과	100% 지원	80% 미만	80% 이상	단년	2~3년	4년 이상
본국본부	자국CSO	핀란드			PAS									PAS (85%) (92.5%)			제한없음
		호주[108]	CC2A[109]	ANCP-innovation ANCP-base ANCP-full	ANCP-partnership				ANCP-innovation (US$16만) ANCP-base (US$16만) CC2A (US$2.6천~16만)	ANCP-full[110]	ANCP-partnership[111]	CC2A		ANCP-innovation(84%) ANCP-base (84%) ANCP-full (84%)	CC2A	ANCP-innovation ANCP-base ANCP-full	ANCP-partnership
		EU				ENPI, EIDHR	DCI[112] EIDHR	EIDHR				EDF, ENPI		EIDHR(80%) EIDHR(95%)		EDF,DCI,ENPI, EIDHR, EIDHR[113]	
파트너국현지사무소	현지CSO	독일				SSEP	SSEP[114]		SSEP (US$3만5천)			SSEP[115]			SSEP (1년)		
		벨기에					CoS	CoS		CoS (US$71만)[116]							
		일본								GGP (US$12.3만)							
파트너국현지사무소	현지CSO	호주							DAP (US$3만)			DAP			DAP		
	자국CSO	일본							US$6~12만					GA(80%)			
		포르투갈				FPP			FPP (최대약 US$1.5만)						FPP (6개월 이하)		
협의체	자국CSO	덴마크								MP[117] (US$9.5~59만)						MP (3년)	
		스웨덴[118]		FO	FO	FO			FO	FO	FO			FO(90%)			FO (7년)

사업 운영 주체	국가/ 프로 그램	대상				특정지역, 분야	시민사회 지원	지원규모(연간)			대응자금비율 (matching)			기간		
		신규 단체	중소 단체	전략적 파트너	구별 없이 지원			US$ 50만 미만	US$ 500만 이하	US$ 500만 초과	100% 지원	80% 미만	80% 이상	단년	2~3년	4년 이상
컨설팅사	네덜란드				MDG3	MDG3[119]			MDG3 (US$65만)					MDG3	MDG3	MDG3
	영국		CSCF, GPAF			RAG	CSCF, GPAF (Innovation)	GPAF-innovation (US$40만)	CSCF, GPAF RAG (US$30만)	CSCF, GPAF - impact (US$40만~640만)	CSCF, GPAF (Innovation)	GPAF (impact75%) RAG(67%)			GPAF (3년) RAG(3년)	CSCF (5년)
개별 CSO	영국					CGI DRF			CGI(US$32만) DRF(US$2만)					DRF (1년)		CGI(5년)

82) Hellenic Aid는 1년에 한 번 공동재정협력을 원하는 CSO뿐만 아니라 재외공관, 법인, 대학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요청함.

83) 인신매매 퇴치 관련 프로그램(Activities aiming at Comb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에 대한 공동재정지원. 그리스는 인신매매 퇴치를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그리스 정책의 우선순위로 제정하고 있으며, CSO에 의해 수행되는 인신매매 방지 및 치료 등의 관련 프로그램에 정부가 지원함.

84) 인도주의적 원조와 식량원조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함.

85) 새천년 개발 목표와 개발 관련 주요 글로벌 이슈 등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인지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함.

86) €6만(약 US$ 8만 5천) 이하 지원금은 이사회가 결정하며, €6만(약 US$ 8만 5천) 이상의 지원금은 총회에서 결정함. €10만(약 US$ 15만) 이상 지원금에 대해서는 좋은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에 대한 보증서(letter of guarantee)를 요청함.

87) Standard Framework for Development Cooperation(SFDC)는 구조적 빈곤감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로컬CSO를 제외한 비영리, 독립적인 네덜란드 및 국제 CSO 지원사업

88) Choices and Opportunities(COF)펀드는 HIV/AIDS 및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네덜란드 국제 CSO만을 위한 방식임. 2011년에서 2014년까지만 시행되는 사업임. 총 40만 규모(약 US$ 5억 8천만)임.

89) Productive Development Partnerships Funds(PDP)는 빈곤관련 질병퇴치 위한 의약품개발 지원 펀드로 2011~2014년 동안 진행되며 7개 단체가 참여함.

90) 이 프로그램은 Small and Large scale development project의 경우 현지 직원의 인건비, 덴마크 전문가의 인건비, 현지 파트너의 사업 행정비, 덴마크 내 사업정보(최대 2%), 덴마크 내 행정비(최대 7%), 현지 및 덴마크 내에서의 감사비용을 지원함. 사업사전조사(appraisal)은 3인, 2주 한도의 사업사정관련 비용 및 출장비용과 Partnership activities의 교육, 교류, 로컬단체의 덴마크 단체 방문비용, 국제회의, 평가비용 등을 지원함.

91) Small-scale project(SSP)는 신규단체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처음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는 1년 동안 지원받는 이 프로그램만 신청할 수 있음.

92) 장애인 관련 단체는 92.5%까지 지원함.

93) 지원 대상에 대한 구분은 없으며 벨기에 DGDC에 의해 Recognized된 단체만 지원함.

94) 15의 FO 중 노동조합, 장애인, 아프리카단체 등 특정 분야 및 지역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음.

95) FO는 다양한 재정 규모로 지원됨.

96) 아일랜드는 이 제도로 2010년 5개 CSO에 약 € 566십만을 지원했는데, 이 중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을 받은 CONCERN은 € 208십만(미화환산 약 US$ 294백만을 지원받았음.)

97) 이 방식은 최대와 최저기준만 있음.

98) 중점지원국이 아닌 경우는 25%, 중점지원국인 경우는 50%를 지원함.

99) 이탈리아 법에 등록된 단체로 3년 이상의 활동경력이 있어야 함.

100) Grant Assistance for Japanese NGO Project(GAJNP)에 신청을 위해서는, 지원시기 이전 최소 2년간의 원조실적이 요구됨.

101) JICA가 개발도상국의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을 일본의 NGO, 대학,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의 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함.

102) 매칭은 100% 가능하나, 단, 자기 자금이 있는 경우나, 당초 자기 자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해당 사업 자금만으로 사업을 완성시킬 예정이었는데, 총 사업비가 당초 예산을 넘었을 경우의 수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함.

103) cross-cutting 이슈로서 양성평등과 함께 CIDA의 5개 우선 순위 분야(민주적 거버넌스, 민간 부문 개발, HIV/AIDS를 포함한 보건, 교육, 환경)에 우선 지원.

104) CIDA의 20개 중점국과 3개의 우선분야(식량안보, 청소년의 미래보장,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재정을 할당하고 있음.

105) 포르투갈어 사용 국가를 우선 지원하며, 분야로는 굿거버넌스, 참여와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퇴치(교육, 보건, 농촌진흥, 환경과 지속가능한 천연 자원의 관리, 경제성장), 개발교육 분야를 우선 지원함.

106) 2~3년 범위 내에서 지원 규모에 따라 기간이 정해짐.

107) 이주민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108) 호주는 Cooperation Agreement(CA)라는 호주 CSO 지원방식이 있으나, 이는 각 수원국 대사관에서 자체 재량으로 지원함으로, 통일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려움.

109) CC2A는 미인증(Non-accredited)단체를 대상으로 해 2010년 Pilot 프로그램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중지되었음.

110) ANCP-full의 지원규모는 단체의 재정규모 비율에 따라 달라짐, 전체 CSO 지원규모의 35% 이상은 한 단체에 지원할 수 없음.

111) ANCP-partnership agreement의 지원규모는 단체의 재정규모 비율에 따라 달라짐, 전체 CSO 지원규모의 35% 이상은 한 단체에 지원할 수 없음. 2011년 한 단체가 호주$ 5,200만(US$ 5,482만)을 지원받음.

112) 지역과 테마에 따라 달리 지원함.

113) 모든 사업은 1년 이상 지원함.

114) Small Scale Embassy Project(SSEP)는 독일 정부가 수원국 주재 대사관에 예산을 제공해 기술협력 분야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이는 grassroot 사업과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현지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115) 현지 CSO의 일부 자체부담이 요구되나 필수요건은 아님.

116) 규모를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 71만을 받은 단체가 있음.

117) 5개의 CSO 협의체를 통해 지원됨.

118) 스웨덴의 FO 제도는 스웨덴 CSO뿐만 아니라 현지 CSO도 지원함.

119) MDG3 Fund는 Pricewaterhouse Coopers(PwC)가 사업제안서 접수, 기금운용, 모니터링을 진행함.

가. 타 지원과 구별된 특성을 가진 전략적 파트너에 대한 지원

〈표 4-3〉과 같이 OECD/DAC의 총 23개 공여국 중 9개의 국가가 전략적 파트너를 별도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있어 단체들 간에 구별을 두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역량, 경험, 재정규모 등 일정 내용을 갖춘 단체를 그룹화하여 특성에 따라 달리 지원하는 것이다.

<표 4-3> OECD/DAC 국가들의 전략적 파트너 지원프로그램

국가/프로그램	내용
노르웨이 Cooperation Agreement(CA)	대형 CSO들과 다년간(3~5년) 협력협약을 맺고 재정을 지원함. 2010년 현재 27개의 CSO와 CA를 맺음.
덴마크 Framework Organization(FO)	사업수행능력 및 재정능력 등을 기반으로 역량을 인정받은 6개의 덴마크 CSO들을 Framework Organization으로 규정해 5년간 기본협약을 맺고 지원함. 2009년 6개 CSO에 US $9,550만이 지원됨.
아일랜드 Multi-Annual Programme Scheme(MAPS)	Concern, Trócaire, GOAL, Christian Aid Ireland, Self Help Africa 등 총 5개 단체와 다년간(3년)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함. 2003~2010년엔 5개 CSO에 US $515백만을 지원함.
오스트리아 Framework Programmes(FP)	개발사업경험 3년 이상의 CSO를 3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최소지원금은 연간 US$ 43만이며 정부가 70~80%의 재정을 지원함.
영국 Partnership Programme Agreement(PPA)	역량이 입증되고 인지도가 높은 영국의 CSO들에게 전략적으로 100% 무상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2010년 총 27개 단체와 협약을 맺고 있으며, 연간 US$ 1억 44백만에 달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스웨덴 Framework Organization(FO)	2011년 15개의 FO들을 통해 스웨덴 CSO 및 파트너국의 CSO들에게 US$ 2억 4천만을 지원하고 있음.
핀란드 Partnership Agreement Scheme(PAS)	각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파트너기관과 협약을 맺고 이를 통해 CSO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현재 11개의 파트너기관이 지원받고 있으며,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진행됨. 사업의 최대·최소 규모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매칭은 85%까지 가능함.
호주 AusAID-NGO Cooperation Program(ANCP)	호주에서 인지도가 높고 신뢰성 있는 운영 체제 및 사업능력을 가지고 있는 CSO와 광범위한 규모의 협력을 맺는 프로그램임. CSO의 재정규모에 따라 재정지원규모가 달라짐. 2011년 한 단체가 US$ 5,482만을 지원받기도 함.

다음 세 국가의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전략적 파트너 지원프로그램이다. 먼저 덴마크 외교부(Danida)는 사업수행능력 및 재정능력 등을 기반으로 역량을 인정받은 6개의 덴마크 CSO들과 포괄적 협약(framework agreements)을 맺고, 이들을 Framework Organization으로 규정해 해마다 별도의 국회심의를 통해 연도별 지원액을 결정하고 5년간 지원한다. 이 제도는 CSO가 장기간 유연성 있는 계획을 가지고 개발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6개의 지원대상 CSO는 MS Danish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Dan-ChurchAaid, the Danish Red Cross, IBIS, CARE Denmark, 그리고 Save the Children Denmark이다. 2009년에는 이들 6개 단체에 US$ 9,550만이 지원되었다.[120)]

스웨덴의 Sida는 출범 당시부터 시민사회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Sida는 스웨덴의 대중운동(popular movement)이 스웨덴 정부에 압력을 넣어 1965년 설립되었는데, 그 당시 Sida의 직원은 CSO 및 정부기관 등에서 파견되어 구성되었다.[121)] 이러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해 스웨덴은 독특한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인 Framework Organization(FO)를 운영한다. 1977년에 Swedish Cooperate Center와 Trade Union이 첫 FO로 등록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현재는 15개의 FO가 있는데, Sida는 2011년 이들을 통해 스웨덴 및 파트너국의 CSO들에게 US$ 2억 4천만을 지원했다. 이 제도는 최대 7년간 CSO에게 재정지원을 하며, 8%의 행정비를 지원한다. FO들은 종교, 지역, 분야별 특성을 가졌으며, 회원단체 및 수원국 현지 CSO들의 상황과 역량을 충분히 고려해 자금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DFID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며 역량이 입증되고 인지도가 높은 영국의 CSO들과 협력을 맺고 있다. DFID는 Partnership Programme Agreement (PPA) 제도를 통해 자금사용에 대해 유연성을 가지며,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자금을 3년간 선정된 CSO들에게 지원한다.

DFID는 2010년 총 27개 단체와 PPA 협약을 맺고 있으며, 연간 US$ 1억 4천만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PPA에 참여하는 CSO들은 CSCF나 GPAF 등 기타 DFID가 지원하는 CSO지원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

12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STRATEGY FOR DANISH SUPPORT TO CIVIL SOCIETY IN DEVELOPING COUNTRIES. 2008,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121) 연구팀이 2011년 3월 17일에 Sida의 시민사회담당부서인 CIVSAM의 Carl-Johan Smedeby씨와 진행한 인터뷰의 내용.

나. 신규단체 지원

〈표 4-4〉와 같이 미국, 오스트리아, 호주 등 3개 국가는 신규단체만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대다수의 선진공여국은 신규단체와 기성단체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OECD/DAC 회원국들 대다수가 오랜 시간 동안 시민사회에 대한 재정지원을 했으며, 서구의 시민사회가 정부원조기관과의 협력을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해왔던 데서 기인한다. 즉, 오랜 기간의 협력 경험과 역사로 인해 정부의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큰 어려움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별도의 신규단체를 위한 사업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표 4-4> 미국, 오스트리아, 호주의 신규단체 지원프로그램

국가/프로그램	내용
미국 Development Grants Program	2008년부터 시작된 신생 PVO/NGO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경험이 부족한 신생단체에게 기술지원, 교육, 컨설팅을 지원해 개발사업 수행을 지원함. US$ 2백만 내외의 자금을 지원함.
오스트리아 NGO Micro-project	ADC나 연방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를 제외한 신규단체를 위한 제도. 총 프로젝트 비용은 US$ 2만 8천 이내이며, 정부 지원금은 최대 US$ 7천임. 사업기간은 1년임.
호주 Community Call to Action(CC2A)	2008년 AusAID가 MDGs 달성을 목적으로 신설한 제도임. 1년간 US$ 25만~150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AusAID의 인증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신생단체들에게만 지원함.

호주의 AusAID는 2008년 MDGs 달성에 대한 호주 사회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Community Call to Action(CC2A)'[122]사업을 신설했다. 이 사업은 1년간 최소 US$ 25만에서 최대 US$ 150만까지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에 AusAID의 인증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신생단체들에게만 지원되었으나, 2011년 종료되었다. 이 사업은 CSO들 간의 네트워크, 회의, 세미나, 특별행사, 개발인지제고 및 개발사업을 지원하며, 긴급구호 및 난민지원, 정치적·종교적 활동, 자금모금 행사 등의 사업에는 지원되지 않는다.[123]

122) 2010년 한해만 시행됨.

123) AusAID. 2009. Community Call to Action : FAQs. AusAID

오스트리아는 NGO Micro-project를 통해 Austria Development Cooperation (ADC)나 연방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를 제외한 신규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총 사업비는 US$ 2만 8천 이내며, ADC의 지원금은 최대 약 US$ 7천이다. 이 사업은 MDGs 달성 및 Three-Year Programme(3개년 단위의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관련 전략)과 일치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1년이다.

다. 특정지역 및 분야 지원

많은 수의 OECD/DAC 회원국들 〈표 4-5〉와 같이 특정지역과 분야에 대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표 4-5> OECD/DAC 국가들의 특정지역 및 분야 프로그램

국가/프로그램	내용
그리스 Activities Aiming at Comb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인신매매 퇴치는 그리스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음. 이에 그리스 원조기관인 Hellenic Aid는 CSO나 기타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재정을 지원함.
뉴질랜드 Sustainable Development Fund(SDF)	SDF는 보건과 교육, 식수와 위생 등을 중점 분야로 하며, 2~4년간 총 예산의 70%까지만 지원함.
덴마크 Project Funding(PF)	1인당 GDP가 덴마크 외교부의 공식 빈곤기준 이하인 나라만 지원하는 프로그램. US$ 1.4만에서 US $95만까지 비용을 지원함.
벨기에 - Belgian Fund for Food Security - Conflict Prevention and Peace Consolidation	- 2010년 새로 시작된 식량안보기금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와 식량 위험에 처해있는 개발협력 우선파트너 국가를 지원. 지원 규모, 매칭비율 각기 다름. - 2006년 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분쟁방지와 평화구축 프로젝트를 지원함. 분쟁 이전·중·이후의 개입이 모두 가능하며, 1년 및 3년간 지원하며, 재정 100%를 지원함. 사업규모는 US$ 14만~200만임.
스페인 Convocatoria abiertay permanente(CAP)	매년 8개의 분야에서 특정 우선순위를 선정해 그에 맞는 다양한 주제에 따른 프로그램을 공모함. 최대 18개월까지 지원 가능, 지원규모는 총 US$ 829만 중 상황에 따라 지급.
오스트리아 - Individual Projects South	- 사업대상 지역을 남반구 지역에 속하는 국가에 중점을 두되, 흑해 지역과 다뉴브 지역은 제외. 프로젝트 최대비용은 US$ 35만, 프로젝트 당 최대 US$ 14만을 지원함. 중점협력 국가일 경우 사업비의 50%를, 기타 국가인 경우 25%를 지원함. 사업기간은 2~3년이며, 매년 2회 실시.

- Individual Projects East	- 사업지역은 DAC에서 정의한 남동유럽, 동유럽,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지역임.
포르투갈 NGDO Co-financing	포르투갈어 사용 국가를 지원하며, 굿거버넌스, 참여와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퇴치, 개발교육 분야를 지원함. 지원규모는 US$ 428만~35만이며 75%를 2~3년간 지원함.
프랑스 Support Programme for Migrant Solidarity Organizations(PRA-OSIM)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건강과 사회개발, 식수 및 위생, 환경, 문화, 교육 및 직업훈련, 경제개발 및 지역개발, 그리고 시민사회 역량강화와 인권강화 등을 우선분야로 선정해 지원함. 최대 US$ 17만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CSO는 최소 10% 이상을 담당해야 함. AFD는 최대 70%까지 지원 가능함.
EU - Development Cooperation Instrument-geographic programmes, Thematic Programmes (DCI) -European Instrument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EIDHR)	- EU가 지리와 테마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기금. 기금의 목적은 MDGs를 포함한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개발, 민주주의 증진, 굿거버넌스, 인권 및 법질서 향상임.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남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아시아,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리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기금은 US$ 140억이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테마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기금은 US$ 78억임. 규모와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프로젝트마다 상이함. 사업은 통상 2~3년을 기본으로 함. - 시민사회 기관을 통한 참여와 대의민주주의 및 인권 강화, 인권보호와 민주주의 강화와 관련된 국제적인 프레임워크 강화, 민주적인 선거 프로세스의 신뢰성과 투명성 구축을 중요시 함.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선진공여국들은 주로 자신들의 역사적, 지리적 관련성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그 예로 포르투갈은 아프리카의 포르투갈어 사용국가 및 동티모르 내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오스트리아는 남반구 및 남동 유럽, 중앙아시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스트리아의 'Individual Projects South, Individual Projects East' 프로그램은 지역에 따라 지원하는데, 전자는 OECD/DAC에서 정의한 남반구 지역에 해당하는 파트너 국가들을 지원하고 후자는 남동 유럽, 동유럽,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지역 등의 국가를 지원하다. EU는 'Development Cooperation Instrument-geographic programmes, Thematic Programmes(DCI)'를 통해 남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아시아,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정분야에 대한 지원의 경우, 그리스는 인신매매퇴치, 뉴질랜드는 보건, 교육, 식수 및 위생, 벨기에는 분쟁예방과 평화구축 및 식량안보관련 사업을 진행한다. 스페인은

8가지의 우선순위에서 매년 특정분야를 선정해 지원한다. 8대 우선순위 분야는 ① 건강, 식수, 교육, 식량, 인재 등 인간에 대한 기본서비스(basic social services) 분야, ② 인프라 증축 분야, ③ 생산력 증대 분야, ④ 인권 보호, 균등한 기회 제공, 여성의 사회참여, 소수자 보호, 아동노동 및 난민보호 분야, ⑤ 민주주의 및 시민사회 확대 분야, ⑥ 환경, 재사용 및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분야, ⑦ 문화적 다양성 분야, ⑧ 과학 연구 및 어플리케이션지원 분야이다. EU는 MDGs를 포함한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개발, 민주주의 증진, 굿거버넌스, 인권 및 법질서 향상을 지원하며, 포르투갈은 굿거버넌스, 참여와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퇴치, 개발교육 분야를 지원한다. 프랑스는 강과 사회개발, 식수 및 위생, 환경, 문화, 교육 및 직업훈련, 경제개발 및 지역개발, 그리고 시민사회 역량강화와 인권강화를 우선순위로 선정해 지원한다.

라.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많은 OECD/DAC 회원국들의 CSO들은 정부의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원국 현지 CSO와 협력하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지원한다. 그러나 〈표 4-6〉과 같이 몇몇 공여국의 경우 보다 분명한 내용과 목적을 가지고 수원국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시민사회협력사업의 목표가 〈박스 4-1〉과 같이 수원국의 시민사회 활성화임을 정책문서를 통해 명확히 밝히고 있다.

<표 4-6> OECD/DAC 국가들의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국가/프로그램	내용
덴마크 Project Fund	PF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현지의 다양하고, 역동적이면서 민주적인 시민사회를 강화하는 목표를 가짐.
스웨덴 Framework Organization(FO)	FO제도를 통해 스웨덴NGO들은 반드시 수원국 현지 CSO와 협력해 사업을 수행하며 이들의 활성화를 중요하게 염두에 둠.
영국 - Civil Society Challenge Fund(CSCF) - Global Poverty Action Fund - Innovation(GPAF)	영국NGO들은 이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시 반드시 수원국 현지 CSO와 협력해 수행해야 함. 이를 통해 수원국 현지 CSO들의 활성화를 지원함.

캐나다 Volunteer Sector Fund(VSF)	개발도상국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시키고, 캐나다 CSO와 수원국 현지 CSO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사회의 주인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임.
프랑스 Support Programme for Migrant Solidarity Organizations(PRA-OSIM)	시민사회 역량강화와 인권강화 등을 우선분야로 선정해 지원함.
EU - European Instrument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EIDHR)	시민사회 기관을 통한 참여와 대의민주주의 및 인권 강화,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 강화와 관련된 국제적인 프레임워크 강화, 민주적인 선거 프로세스의 신뢰성과 투명성 구축을 중요시 함.

<박스 4-1> 스웨덴의 시민사회협력의 목표

"The overall objective for support to -.and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 is : A vibrant and pluralistic civil society in developing countries that contributes effectively, using a rights-based approach, to reducing poverty in all its dimensions"[124)]

"인권기반의 접근방법으로 모든 부분에서의 빈곤을 줄이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다원적이고 활성화된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또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영국의 Civil Society Challenge Fund(CSCF) 경우 프로그램명 자체에서 시민사회를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 NGO가 반드시 수원국 현지 CSO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수원국 현지 CSO의 역량강화를 통해 시민사회활성화까지 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스웨덴과 영국 외에도 덴마크, 오스트리아, 프랑스, 호주, EU가 수원국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몇몇 공여국들은 수원국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법으로 공동기금(pooled funding)을 활용한다. 이는 DCD/DAC 보고서에서 OECD/DAC 23개 회원국의 재정지원방식 중 하나로 설명된 내용이다. 영국, 스웨덴, 스위스는 탄자니아에서

12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weden. 2009. Pluralism Policy for support to Civil Society in developing Countries within Swedish Development Cooperation. p.10

'Foundation for Civil Society'라는 공동기금 프로그램을 창설해 탄자니아 시민사회 단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네팔에서는 DFID가 SDC, AusAID, Danida와 함께 'Rights Democracy and Inclusion Fund(RDIF)'를 설립해 현지 시민사회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마. 연간 지원규모

많은 공여국의 원조기관들은 〈표 4-7〉과 같이 US$ 50만 미만의 자금규모로 CSO와 협력하고 있다. 23개의 조사 대상 중 15개의 국가가 이에 해당한다. 10개 국가는 US$ 50만 이상 US$ 500만 이하의 자금지원을 시행하며, US$ 500만 초과의 대규모 자금지원을 하는 공여국도 8개가 있다. 전반적으로 US$ 500만 이하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략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호주의 경우 지원 자금 규모가 US$ 500만을 초과한다.

<표 4-7> OECD/DAC회원국들의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자금규모 현황

US$ 50미만	US$ 50~500만 이하	US$ 500만 초과
그리스,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미국,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호주
15개국	10개국	8개국

독일, 그리스, 포르투갈, 호주 등 4개국은 수원국의 현지 주재 대사관이나 원조기관 현지사무소를 통해 현지CSO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 4개 국가 전부 US$ 50만 이하의 자금규모로 CSO를 지원하고 있다. 단, 일본(US$ 123만)과 벨기에(US$ 71만)는 US$ 50만 이상 US$ 500만 이하의 자금규모로 수원국의 현지 CSO를 지원하고 있다.

소수의 공여국은 NGO협의체를 통해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은 15개의 Framework Organization을 통해 자국 및 수원국 단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데, 그 규모는 단체와 사업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덴마크

는 5개의 NGO협의체(Host Organization)를 통한 자금협력을 하는데, 그중 하나인 Project Advice and Training Centre(PATC)는 US$ 50만 미만과 US$ 500만 이하의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독특하게도 컨설팅사(Triple Line)를 통해 NGO를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 US$ 500만 이하 및 US$ 500만 초과의 규모로 자금협력을 하고 있다.

바. 대응자금비율

〈표 4-8〉은 23개 공여국들의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의 매칭비율을 보여준다. 매칭비율은 100% 지원과 80%를 기준으로 구분했다.[125] 이를 통해 보면 많은 국가가 100% 자금지원을 하기보다는 CSO에게 어느 정도의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13개 이상의 공여국이 80% 이상을 지원한다.

<표 4-8> OECD/DAC 회원국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의 매칭비율 현황

100%	80% 미만	80% 이상
덴마크, 벨기에, 영국, 일본, EU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룩셈부르크,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핀란드, 호주, EU
5개국	12개국	13개국

23개의 OECD/DAC회원국 중 덴마크, 벨기에, 영국, 일본, EU 등 5개 국가는 CSO들에게 100% 자금협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126] 영국의 경우 주된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인 PPA, CSCF 및 GPAF(innovation)에서 100%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독일과 호주는 수원국의 자국 대사관에서 현지 CSO를 대상으로 100%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Small Scale Embassy Project는 독일 정부가 현지 대사관에 예산을 제공해 현지CSO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125) 기준을 80%로 설정한 것은 2010년 정부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선진화전략'에서 2012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비율을 80%로 할 것임을 밝힌 것에 기초하여 한국의 상황에 시사점을 줄 수 있도록 분석하기 위해서다.

126) 호주의 CC2A프로그램도 100%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2011년 종료되었다.

프로그램이다. 호주의 Direct Aid Program(DAP)은 호주대사관이 수원국의 현지 CSO들에게 US$ 5,000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스웨덴은 FO제도에 참여하는 수원국의 CSO들에게 100% 자금지원을 한다.

23개 공여국 중 12개 국가가 80% 미만의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13개의 공여국은 80% 이상의 자금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룩셈부르크는 80% 미만 및 80% 이상,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CSO에게 100% 자금지원을 하는 영국은 80% 이하의 규모로 자금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IPS, IPE 프로그램의 경우 25~50% 정도의 자금만 지원하기도 한다.

컨설팅사를 통한 자금지원 및 관리 방식을 사용하는 영국은 100% 자금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인 CSCF, GPAF-Innovation과 75% 지원 프로그램인 GPAF-Impact을 운영하고 있다.

사. 사업기간

많은 선진 공여국들이 CSO지원을 다년간 프로그램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4년 이상 중장기로 지원하는 국가들도 많다. 〈표 4-9〉는 23개국의 지원기간을 정리한 것이다.

<표 4-9> OECD/DAC 회원국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의 지원기간 현황

단년지원	2~3년 지원	4년이상 지원
그리스, 노르웨이,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호주,	미국, 벨기에, 아일랜드,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호주, EU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9개국	13개국	14개국 * 핀란드, 스위스는 제한 없음.

9개의 공여국은 자국CSO에 대한 단년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그리스와 포르투갈, 독일, 호주 4개국은 파트너국 현지사무소를 통한 현지CSO지원 시에도 역시 단년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13개 국가가 2~3년간 지원을 하고 있으며, 14개 국가는 4년 이상의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와 스위스는 특별히 지원기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국은 CSCF프로그램을 5년간, 덴마크는 전략적 지원프로그램인 FO프로그램, 아일랜드도 역시 전략적 지원프로그램인 MAPS를 5년간 수행한다. CSO협의체를 통한 지원방식을 활용하는 스웨덴은 자국CSO 및 현지CSO에 게 최대 7년의 자금협력을 하고 있다.

3. 시사점

23개 선진공여국의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7가지 내용이 발견된다.

첫째, 신규단체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23개 선진공여국 중 소수이긴 하지만,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는 신규단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신규단체가 급증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도입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제도이다.

둘째, 전략적 파트너에 대한 지원이다.

다수의 선진 공여국은 CSO들 중에서 전략적 파트너를 선정해 포괄적 협약(framework agreement)을 맺고 자금지원을 한다. 이러한 지원의 특성은 자금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다른 사업에 비해 큰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며, 장기간에 걸쳐 협력을 유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셋째, 공여국 본부 및 파트너국 현지사무소(대사관 포함)를 통한 현지CSO 및 국제CSO지원이다.

다수의 선진공여국들은 현지사무소나 대사관을 통해 수원국의 현지CSO들을 지원한다. 공모를 통해 현지 CSO들을 개별지원하거나 공동기금(pooled funding)을 조성해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수원국의 CSO들에게 필요한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수원국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지원한다.

넷째, 수원국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이다.

다수의 선진공여국들이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의 목표 설정과 실제 집행에 있어 수원국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오스트리아, 영국 등의 국가는 시민사회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국CSO에 대한 지원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수원국 현지 CSO와 협력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CSCF 사업은 직접적인 사회적 서비스 전달이 아닌 수원국의 정책결정과정에 현지CSO가 참여토록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다섯째, 특정지역 및 분야에 대한 지원이다.

몇몇 공여국은 자국과 관련된 특정지역과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자국과 역사적·정치적·경제적 및 사회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과 분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때문이다. 한국은 2005년에 제시된 '아프리카 이니셔티브'에 따라 '빈곤퇴치기여금'을 개발CSO에게 지원해 아프리카의 에이즈, 보건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여국의 정책적 이슈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지역과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활용하기도 한다.

여섯째, 협의체(Framework Organization)를 통한 지원이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CSO협의체를 공식적인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개별CSO들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히 소수의 전략적 파트너는 정부원조기관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다수의 중·소규모 CSO들을 5개의 CSO협의체가 관리 및 지원하는 덴마크의 사례는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일곱째, CSO들의 효과적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 외 역량강화 프로그램지원이다.

일본의 경우 수원국에서의 CSO 활동을 지원하는 NGO-JICA Japan 데스크와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의 기획·조사·평가·조직운영 등을 지원하는 'NGO 프로젝트 보조금' 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스웨덴의 Framework Organization 중 하나인 Shia는 Sida의 자금지원을 통해 CSO가 효과적인 사업발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nitial'펀드를 운영한다. 이와 같이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CSO들이 더욱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개발도상국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Ⅴ. 한국의 정부-시민사회협력 현황분석

1. KOICA의 민간단체지원사업 현황

가. 지원 규모

1) 민간단체지원사업 예산 지원 규모

KOICA의 민간단체지원사업 예산규모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127] IMF의 영향으로 1998년과 1999년에 규모가 축소된 것을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약 12억 원 정도를 지원했다. 이후 2007년 민관협력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최초로 20억 원을 넘었고, 2008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해 58억 원을 지원했고 2011년의 경우 최초로 100억원을 넘어서는 예산을 배정하였다. 이는 지난 2010년 10월에 한국정부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선진화전략'에서 표명한 NGO 지원규모 확대 계획이 점차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1> KOICA의 민간단체지원사업 실적변화의 추이(1995～2011)
(민간단체지원사업 및 관련 행정비부분만 포함)[128]

(단위 : 백만 원)

연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지원금액	489	539	619	328	426	618	1,016	1,077	1176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계
지원금액	980	1138	1220	2,742	5,883	5,301	6,157	10,399	40,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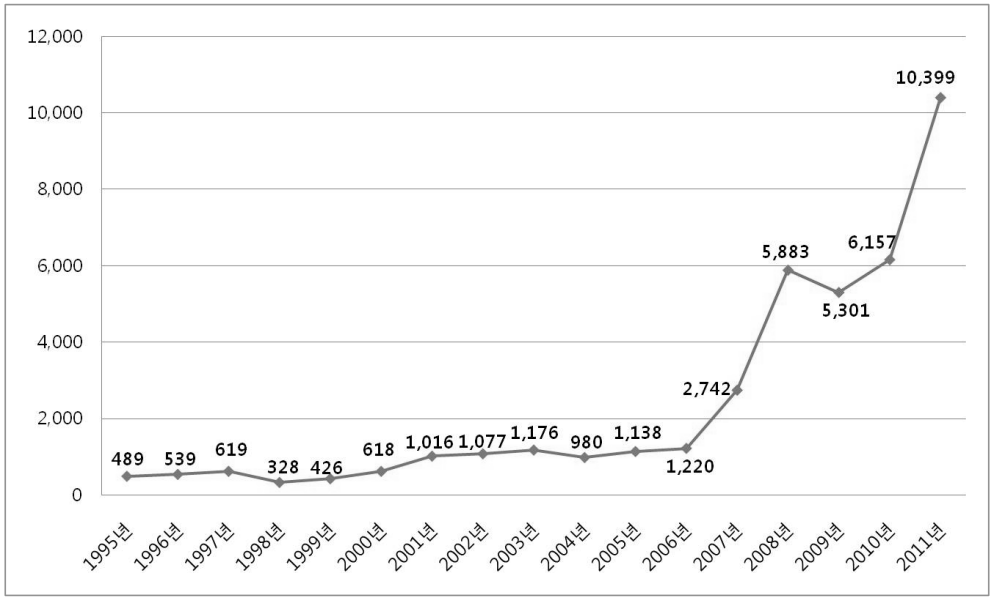
※ 출처 : 1995~2009년 지원금액 부분은 KOICA 민간협력팀 내부자료 'NGO지원사업통계'를 통해 재구성했으며, 2010, 2011년 자료는 KOICA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함. NGO봉사단, 개발인지제고, 긴급구호, 해원협 지원을 제외한 순수 '민간단체지원사업과 이를 위한 민간협력팀 행정비'만 반영함. 2010, 2011년은 KOICA 홈페이지에 표시된 실적을 반영함.

127) 이 예산 규모는 본 연구의 대상이 'NGO지원사업' 이기에 NGO봉사단, 개발인지제고, 긴급구호, 해원협 지원은 제외하고 순수 '민간단체지원사업과 이를 위한 민간협력팀 행정비'만 반영했다.

128) KOICA의 홈페이지 자료와 실제 내부 자료사이에는 약간의 혼동이 있다. '민간단체지원사업'외에 NGO지원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NGO봉사단, 개발인지제고, 긴급구호, 해원협지원 등의 포함여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자료에서는 순수한 '민간단체지원사업 사업비와 행정비'만 계상하였다. 향후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규모의 통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

<그림 5-1> KOICA의 민간단체지원사업 실적변화의 추이(1995～2011)
(민간단체지원사업 및 관련 행정비부분만 포함)

(단위 : 백만 원)



※ 출처 : 1995~2009년 지원금액 부분은 KOICA 민간협력팀 내부자료 'NGO지원사업통계'를 통해 재구성했으며, 2010, 2011년 자료는 KOICA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함. NGO봉사단, 개발인지제고, 긴급구호, 해원협 지원을 제외한 순수 '민간단체지원사업과 이를 위한 민간협력팀 행정비'만 반영함.

2) 민간단체지원사업 사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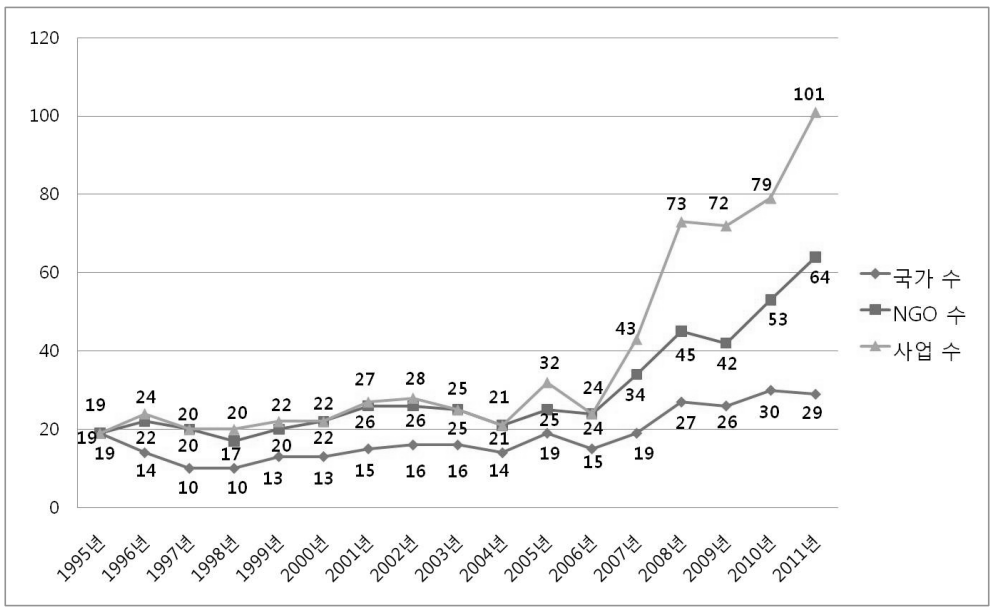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16년간 이뤄진 KOICA의 민간단체지원사업은 수적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04년의 전체 예산축소로 인한 감소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해 2010년에는 53개 NGO의 79개 사업을 지원했다. 또한 2011년의 경우 지원국가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64개 NGO의 101개 사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눈에 띈 증가를 보였다. 아래의 〈표 5-2〉를 통해 1995년의 19개 사업에 비해 2011년에는 101개로 약 5.3배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5-2> KOICA의 민간단체지원사업 국가, NGO 및 지원사업 현황 (1995~2011)

연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국가 수	19	14	10	10	13	13	15	16	16
NGO 수	19	22	20	17	20	22	26	26	25
사업 수	19	24	20	20	22	22	27	28	25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국가 수	14	19	15	19	27	26	30	29	
NGO 수	21	25	24	34	45	42	53	64	
사업 수	21	32	24	43	73	72	79	101	

※ 출처 : 1995~2009년 NGO 수는 KOICA 민간협력팀 내부자료 'NGO지원사업통계'를 통해 재구성했으며, 2010, 2011년 자료는 KOICA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함. 지원국가 수와 사업 수는 KOICA 홈페이지를 통해 재구성함. 2010, 2011년은 KOICA 홈페이지에 표시된 실적을 반영함.

<그림 5-2> KOICA의 민간단체지원사업 국가, NGO 및 지원사업 현황(1995~2011)



※ 출처 : 1995~2009년 NGO 수는 KOICA 민간협력팀 내부자료 'NGO지원사업통계'를 통해 재구성했으며, 2010, 2011년 자료는 KOICA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함. 지원국가 수와 사업 수는 KOICA 홈페이지를 통해 재구성함. 2010, 2011년은 KOICA 홈페이지에 표시된 실적을 반영함.

특히 참여NGO의 수는 1995년의 19개 NGO에서 2011년의 64개로 3.4배가 증가했다. 지원국가 수는 1995년의 19개국에서 2011년의 29개로 약 1.5배가 증가했다. 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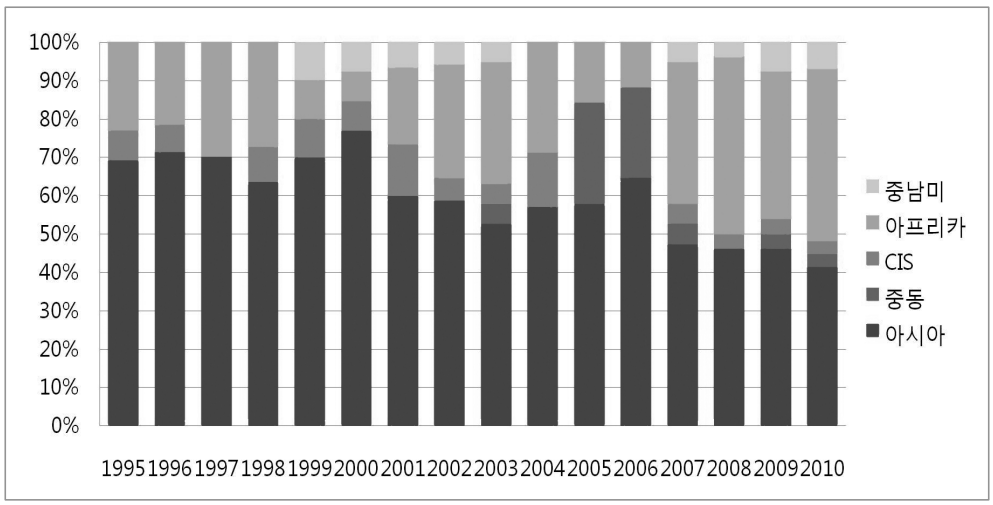
종합해 보면 참여 NGO 수나 지원대상 국가 수에 비해 사업 수의 증가 속도가 더욱 가속화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지난 16년간 사업을 수행해오던 NGO의 역량이 증대되어 개별 NGO가 사업대상 국가를 확대하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수행 국가에서 더 많은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민간단체지원사업에서 개별NGO당 지원가능 사업수를 확대한 정책과도 같은 맥락이며, 향후 급증할 NGO지원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역량이 있는 신규 및 소규모 NGO들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민간단체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을 더욱 확장해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들이 참여토록 하고, 현지 NGO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과정의 공식화 및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나. 지역 및 분야

1) 민간단체지원사업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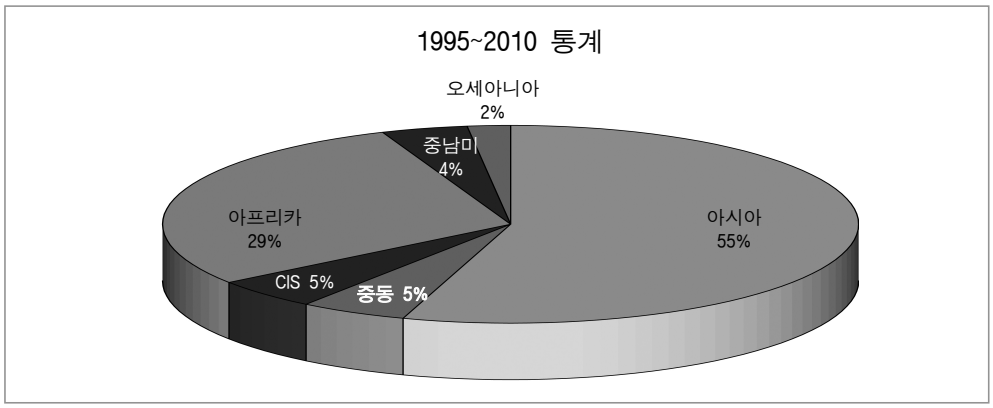
<그림 5-3> 1995～2010년 KOICA의 민간단체지원사업 지역별 현황 ①



※ <그림 5-3>에는 1995년에만 지원이 있었던 오세아니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출처 : 1995~2009년 NGO 자료는 KOICA 민간협력팀 내부자료 'NGO지원사업통계'를 통해 재구성했으며, 2010년 자료는 KOICA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함.

〈그림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KOICA의 민간단체지원사업에서는 아시아 지역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원은 2000년에는 전체 지원액 중 70% 이상이 집중되었으며, 최근 몇 년 간을 제외하고 매년 50% 이상을 차지했다. 2007년부터 노무현 정부의 '아프리카 이니셔티브 정책'의 영향으로 아프리카 지역 NGO 사업에 대한 지원이 급격히 증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아시아 지역 지원 비율이 감소했으나, 2010년에도 40% 이상을 지원했다.

<그림 5-4> 1995~2010년 KOICA의 민간단체지원사업 지역별 현황 ②



※ 출처 : 1995~2009년 NGO 자료는 KOICA 민간협력팀 내부자료 'NGO지원사업통계'를 통해 재구성했으며, 2010년 자료는 KOICA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함.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16년간의 지원 현황을 보면, 아시아 지역 55%, 아프리카 지역 29%, 중동과 CIS 지역 5%, 중남미 지역 4%, 오세아니아 지역이 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전체 지원의 84%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KOICA의 민간단체지원사업은 지원대상 국가와 관련해 세 가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최빈국 및 협력 사업이 적은 국가 및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둘째, 아프리카 지역은 교육, 식수 및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원효과를 제고하며, 셋째, 외교통상부 여행제한 및 여행금지 국가와 지역에서의 사업은 지원불가하다.

그러나 한국도 현재 지원불가에 해당되는 '여행제한 및 여행 금지 국가와 지역'에서

안전문제가 해소된 내용을 증명한 NGO들을 지원하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NGO들이 지역선정의 유효성을 가지고 현지밀착형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의 정부원조가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호주의 경우 NGO지원사업을 아프리카, 중동 등의 비중점협력국에서 활용하기도 한다.

2) 민간단체지원사업 분야별 현황

<표 5-3> 1995～2009년 KOICA의 민간단체지원사업 분야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지역개발 (농림수산)	교육	보건	환경	총 사업 수	총 지원액
1995~2009	116(23.7%)	180(36.7%)	188(38.4%)	6(1.2%)	490	33,397.3

※ 지역개발은 2005년부터 정식 분야로 구분되었으며, 그 전에는 농림·수산으로 구분되어 지역개발이 이뤄져 왔다.
※ 환경은 2008년부터 구분되었으나, 2009년에는 <보건 및 환경>으로 구분되었다.
※ 출처 : 1995~2009년 NGO 자료는 KOICA 민간협력팀 내부자료 'NGO지원사업통계'를 통해 재구성했음.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15년간 민간단체지원사업 분야를 보면 보건 분야가 38.4%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교육 분야가 36.7%, 지역개발 분야가 23.7%, 그리고 환경 분야가 1.2%이다. 교육과 보건 등 인간의 기본생활욕구(Basic Human Needs, BHN)를 지원하는 분야가 75.1%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KOICA가 민간단체지원사업의 목적을 설명하며 활용하는 BHN 분야 지원과 일치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BHN 분야를 지원한 비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KOICA가 지역개발로 분류하고 있는 사업도 결국은 지역사회에서 BHN을 포함하는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NGO들이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환경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BHN 분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빈곤의 다면성을 고려할 때 빈곤 감소에는 BHN 외에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민주주의 및 대안적인 개발방식 등의 접근도 함께 이뤄져야 하며, 이를 지원사업 분야에 점차 반영해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 자금지원방식

<표 5-4> KOICA의 민간단체지원사업 개요

자금 규모	기본 사업	최대 2억 원
	신규단체 사업	최대 1억 원
매칭 비율	기본 사업	70%
	신규단체 사업	60%
사업 기간	단년도 사업	1년
	다년도 사업	최대 3년 (2010년부터 다년도 지원사업 도입)

※ 출처 : KOICA, 2011, 민간단체지원사업안내서, p.10.

KOICA의 NGO지원사업은 '민간단체지원사업'으로 명명돼 이뤄지고 있으며, 자금협력방식에 있어 KOICA와 NGO가 재정협력을 하는 방식인 공동자금협력(matching grant)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KOICA는 NGO가 추진하는 단위 사업에 대해 매칭 펀드 방식으로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하며, 신규단체의 사업 경우에는 최대 60%까지 지원하고 있다. 2012년에는 그 비율이 80%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단년도 사업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는 다년도 사업이 도입되어 사업기간이 최대 3년으로 증가되었으며, 자금규모는 최대 2억 원, 신규단체의 사업인 경우 1억 원이다. KOICA는 2011년 현재 아시아의 8개 사업, 아프리카의 6개 사업을 다년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129)]

현재 많은 선진공여국들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일괄지원방식(block grant)을 활용해 NGO들의 사업효과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역량이 검증된 NGO사업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일괄지원방식을 적용하는 유형의 사업을 특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영국의 Programme Partnership Agreements(PPA)는 역량 있는 27개의 NGO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일괄지원을 하고 있다.

2.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확대될 시민사회와의 협력방식에 관하여 실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

129) KOICA 홈페이지와 2011년도 민간단체지원사업 현황을 참고했다.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136개의 KOICA 등록 단체 중 79개 단체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136개의 모집단 수는 KOICA에 등록한 단체를 기준으로 해원협 소속 단체와의 중복단체, 설문응답을 거부한 단체를 제외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3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응답 시 설문응답자의 개별 의견이 아닌 단체의 의견으로 간주됨을 명시하여 반드시 국제개발협력사업 담당자가 응답하거나 담당부서의 의견을 취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79개 단체 중 해원협 소속 단체는 52개, 해원협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는 27개이며, 국제개발사업 수행연도의 경우 3년 미만인 단체가 14개(18.2%), 3년에서 5년은 27개 단체(35.1%), 6년에서 10년은 15개 단체(19.5%), 10년 이상인 단체는 21개(7.3%)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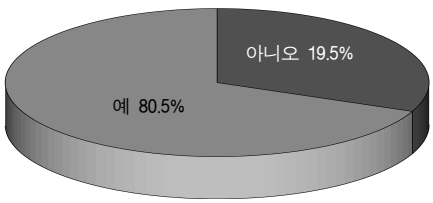
본 설문조사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NGO의 특성에 따른 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

NGO 지원사업에 있어 일정한 기준에 따라 NGO들을 그룹화하고, 그룹에 따라 특성을 달리하여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단체가 62개(80.5%), 부정적인 단체가 15개로 나타나고 있다.

<표 5-5, 그림 5-5> NGO 그룹화 및 특성에 따른 지원제도 도입 필요 여부

구분	빈도	백분율(%)
예	62	80.5
아니오	15	19.5
합계	7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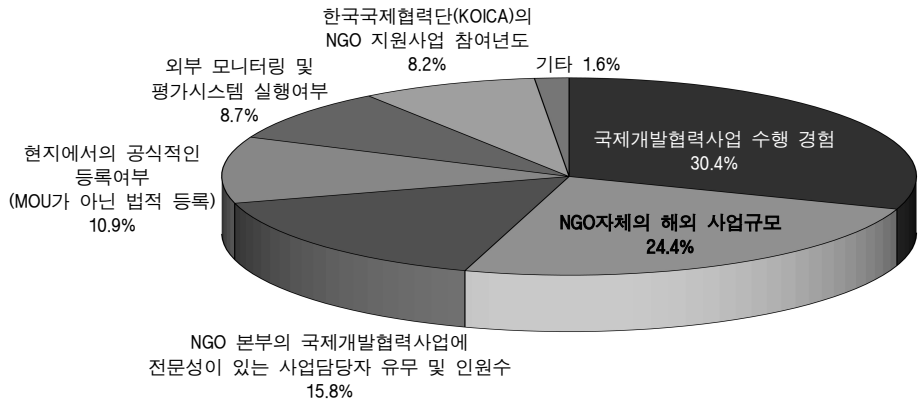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의 구체적 이유는 NGO의 특성과 기준이 매우 다양하므로 그룹화하는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이러한 그룹화가 오히려 NGO의 다양성과 자유로움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규단체의 사업참여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등으로 나타난다.

나. NGO의 특성에 따른 그룹화의 기준

NGO들을 그룹화하고 그룹별 특성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그 그룹화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3개의 복수 응답을 하도록 한 결과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경험(30.4%), NGO 자체의 해외 사업규모(24.4%), NGO 본부의 전문성이 있는 사업담당자 유무 및 인원 수(15.8%), 현지에서의 공식적인 등록 여부(10.9%), 외부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실행 여부(8.7%), KOICA의 NGO 지원사업 참여년도(8.2%) 순으로 나타난다.

<표 5-6, 그림 5-6> NGO 그룹화의 구분 기준

구분	빈도	백분율(%)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경험	56	30.4
NGO자체의 해외 사업규모	45	24.4
NGO 본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사업담당자 유무 및 인원수	29	15.8
현지에서의 공식적인 등록여부(MOU가 아닌 법적 등록)	20	10.9
외부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실행여부	16	8.7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NGO 지원사업 참여년도	15	8.2
기 타	3	1.6
합 계	184	100.0



그룹화의 기준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NGO의 활동 분야, 기존 사업 내용, 사업방식(단체 지부 여부, 현지 파트너의 성격), 사업 분야 및 내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과 사업 목적별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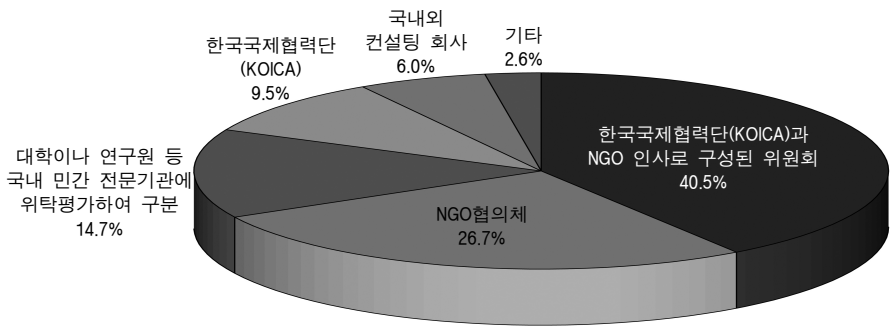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볼 때, NGO의 특성에 따른 지원제도 다양화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NGO의 특성에 따른 분류기준으로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경험, NGO 자체의 해외사업 규모, NGO 본부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인원 및 그 유무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NGO 그룹화의 주체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NGO를 특성에 따라 그룹화를 할 때, 그 작업을 수행하는 주체에 대한 질문에는 KOICA와 NGO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40.5%), NGO협의체(26.7%), 대학이나 연구원 등 국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14.7%), KOICA(9.5%), 국내외 컨설팅 회사(6.0%)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표 5-7, 그림 5-7> NGO 그룹화 분류작업의 주체

구분	빈도	백분율(%)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NGO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	47	40.5
NGO협의체	31	26.7
대학이나 연구원 등 국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평가하여 구분	17	14.7
한국국제협력단(KOICA)	11	9.5
국내외 컨설팅 회사	7	6.0
기 타	3	2.6
합 계	116	100.0



이는 그룹화를 할 때 NGO와 KOICA의 의견이 상호존중되어야 함을 뜻하며, KOICA와 NGO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와 NGO협의체를 가장 선호하는 것은 그룹화의 주체가 NGO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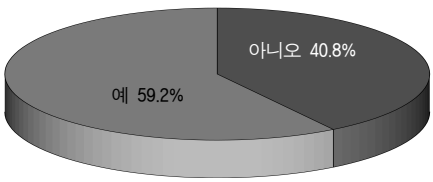
기타 의견으로는 NGO 전수조사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정부기관에 제안하는 방식이나 NGO가 주체가 되고 필요시 KOICA가 조정하는 방안, 이해관계가 없는 공정한 전문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라. 신규단체 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

새롭게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만이 참여할 수 있되 지원액 상한이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찬성이 59.2%, 반대가 40.8%로 나타난다.

<표 5-8, 그림 5-8>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단체를 위한 지원액 상한이 있는 제도의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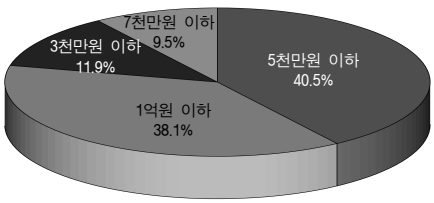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예	45	59.2
아니오	31	40.8
합계	76	100.0



처음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신규단체만을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적절한 상한선에 대한 의견은 5천만원 이하(40.5%), 1억원 이하(38.1%), 3천만원 이하(11.9%), 7천만원 이하(9.5%) 순으로 나타난다. 신규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대체로 소액지원방식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표 5-9, 그림 5-9> 처음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를 위한 적절한 지원액 상한선

구분	빈도	백분율(%)
5천만원 이하	17	40.5
1억원 이하	16	38.1
3천만원 이하	5	11.9
7천만원 이하	4	9.5
합계	4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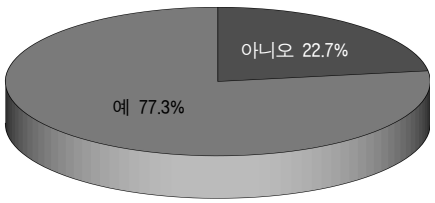


마. 정부지정 지원사업의 확대 필요성

정부지정 지원사업이란 정부의 ODA 정책과의 전략적 연계에 기반하여 특정 지역과 분야, 혹은 ODA 프로젝트의 사후관리 사업 등을 지정하여 이에 응모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의 빈곤퇴치 기여금제도와 같은 정부지정 지원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이 77.3%, 반대가 22.7%로 나타난다.

<표 5-10, 그림 5-10> NGO 지원사업 외 정부지정 지원사업 확대 필요 여부

구분	빈도	백분율(%)
예	58	77.3
아니오	17	22.7
합계	7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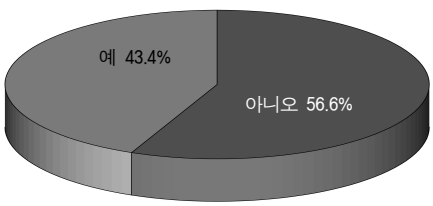
대체로 NGO들은 정부지정 지원사업의 확대에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에 관한 의견으로는 빈곤퇴치 기여금의 확대와 함께 지역조사수행 지원사업, 수행사업평가 및 사후관리사업, MDGs 달성을 위한 집중사업, 개발도상국 의료지원 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바. NGO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 방식의 도입

현재 수행되고 있는 민간단체지원사업 이외 특정 NGO협의체에 위임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56.6%, 긍정적인 의견이 43.4%로 나타난다.

<표 5-11, 그림 5-11> NGO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 방식의 도입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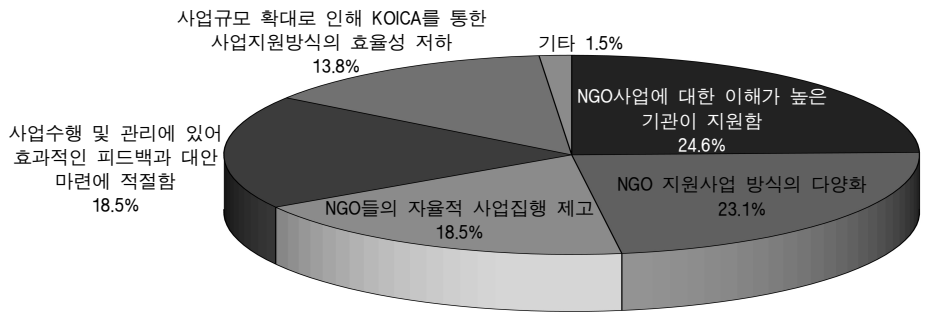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예	33	43.4
아니오	43	56.6
합계	76	100.0



NGO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 방식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단체들의 경우 그 이유로 NGO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기관이 지원함(24.6%), NGO 지원사업 방식의 다양화(23.1%), NGO들의 자율적 사업집행 제고(18.5%), 사업수행 및 관리에 있어 효과적인 피드백과 대안 마련에 적절함(18.5%), 사업규모 확대로 인해 KOICA를 통한 사업지원 방식의 효율성 저하(13.8%)를 들고 있다.

<표 5-12, 그림 5-12> NGO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방식이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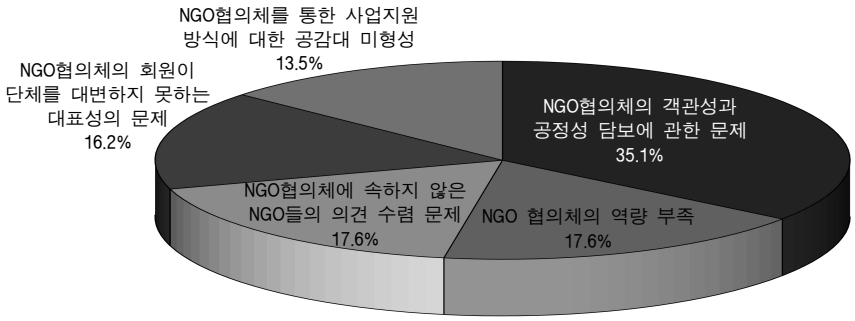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NGO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기관이 지원함	16	24.6
NGO 지원사업 방식의 다양화	15	23.1
NGO들의 자율적 사업집행 제고	12	18.5
사업수행 및 관리에 있어 효과적인 피드백과 대안 마련에 적절함	12	18.5
사업규모 확대로 인해 KOICA를 통한 사업지원방식의 효율성 저하	9	13.8
기 타	1	1.5
합 계	65	100.0



NGO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 방식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한 단체들은 그 이유로 NGO협의체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에 문제가 있음(35.1%), 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방식을 담당할 NGO협의체의 역량 부족(17.6%), NGO협의체에 속하지 않은 NGO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함(17.6%), NGO협의체의 회원이 아닌 단체들이 제기할 수 있는 대표성의 문제(16.2%), NGO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 방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는(13.5%)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5-13, 그림 5-13> NGO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방식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NGO협의체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에 관한 문제	26	35.1
NGO 협의체의 역량 부족	13	17.6
NGO협의체에 속하지 않은 NGO들의 의견 수렴 문제	13	17.6
NGO협의체의 회원이 단체를 대변하지 못하는 대표성의 문제	12	16.2
NGO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 방식에 대한 공감대 미형성	10	13.5
합 계	74	100.0



또한 기타의견으로 NGO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관리부처가 필요하다는 것과 수행절차의 번거로움 등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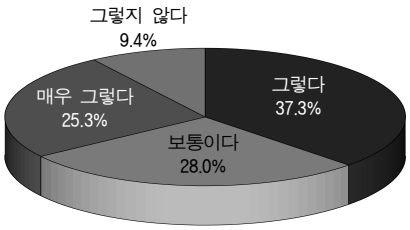
사. 개발NGO 외 시민사회단체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필요성

현재 KOICA의 NGO 지원사업은 주로 개발NGO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발NGO 외에 민주주의, 인권, 여성 등의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37.3%), 보통이다(28.0%), 매우 그렇다(25.3%), 그렇지 않다(9.3%)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를 5점 척도로 변환하면 3.79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체로 시민사회단체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표 5-14, 그림 5-14> 개발NGO 외 민주주의, 인권, 여성 등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필요 여부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다	28	37.3
보통이다	21	28.0
매우 그렇다	19	25.3
그렇지 않다	7	9.4
합계	75	100.0



한편,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단체들이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NGO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현지 국가에서의 사업경험이 없는 점에 대한 우려, 기존 개발NGO의 사업 내용 속에 이미 인권이나 여성 등의 이슈를 담고 있으므로 특정 분야의 시민단체 참여가 불필요하다는 점, 지원체계의 정착과 관리 없이 양적 확대만 하는 것은 오히려 내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 현지 사업 수행 시 인권 및 시민적 권리와 의무, 여권신장 등과 관련된 교육 혹은 연계 사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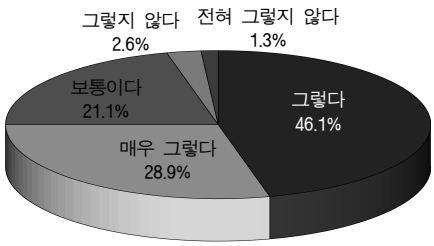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시 현지에서 인권 및 시민적 권리와 의무, 여권신장 등에 대한 교육 혹은 이와 연계된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46.1%), 매우 그렇다(28.9%), 보통이다(21.1%), 그렇지 않다(2.6%), 전혀 그렇지 않다(1.3%)의 순

으로 나타난다.

이를 5점 척도로 환산해 보면 3.99가 나오는데, 이는 시민적 권리나 인권 등에 대한 교육, 그와 연계된 사업의 필요성에 매우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5-15, 그림 5-15> BHN(Basic Human Needs) 외 인권 및 시민적 권리와 의무, 여권신장 등에 대한 교육 혹은 이와 연계된 사업 필요 여부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다	35	46.1
매우 그렇다	22	28.9
보통이다	16	21.1
그렇지 않다	2	2.6
전혀 그렇지 않다	1	1.3
합계	7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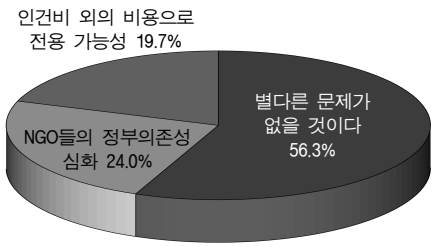


자. 지원사업비의 간접비 비율 확대 시 우려사항

NGO지원사업의 간접비 비율(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대답이 56.3%를 보이나 NGO들의 정부 의존성 심화(24.0%)와 인건비 외의 비용으로 전용가능성(19.7%)에 대한 우려가 나타난다.

<표 5-16, 그림 5-16> 간접비 비율(인건비 지원) 확대 시 우려되는 사항

구분	빈도	백분율(%)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40	56.3
NGO들의 정부 의존성 심화	17	24.0
인건비 외의 비용으로 전용 가능성	14	19.7
합계	7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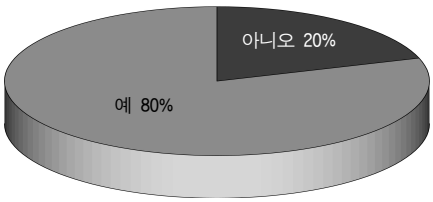


이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대체로 사업의 전문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확대가 검토되어야 하고, 간접비 역시 사업진행에 있어 필수적인 만큼 일정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간접비 확대 시 이에 대한 관리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차. 개발도상국 현지NGO 직접 지원제도의 도입

<표 5-17, 그림 5-17> 개발도상국 현지NGO 직접 지원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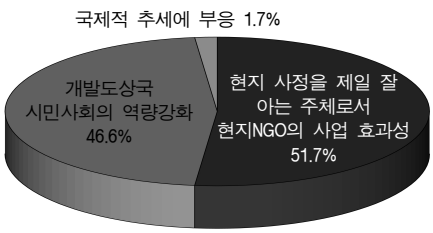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예	60	80
아니오	15	20
합계	75	100.0



OECD/DAC 국가들의 CSO 협력 프로그램 현황 분석에서 나타나듯 많은 원조공여국들이 다양한 형태로 현지NGO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 대다수의 단체들이 필요하다고(80%) 응답하고 있다. 이는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제도의 도입과 시행시기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음을 시사한다.

<표 5-18, 그림 5-18> 현지NGO 직접 지원이 필요한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현지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주체로서 현지NGO의 사업 효과성	30	51.7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27	46.6
국제적 추세에 부응	1	1.7
합계	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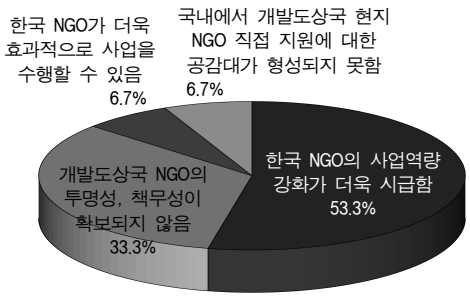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에 긍정적인 단체들의 경우 그 이유로 현지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주체로서 현지NGO의 사업 효과성(51.7%),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46.6%), 국제적 추세에 부응(1.7%)을 들고 있다.

<표 5-19, 그림 5-19> 현지 NGO 직접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한국 NGO의 사업역량 강화가 더욱 시급함	8	53.3
개발도상국 NGO의 투명성, 책무성이 확보되지 않음	5	33.3
한국 NGO가 더욱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1	6.7
국내에서 개발도상국 현지 NGO 직접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함	1	6.7
합계	15	100.0



반면 이 제도의 도입에 부정적인 단체들의 경우 그 이유로 한국 NGO의 사업역량 강화가 더욱 시급함(53.3%), 개발도상국 NGO의 투명성, 책무성이 확보되지 않음(33.3%), 한국NGO가 더욱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6.7%), 국내에서 개발도상국 현지 NGO 직접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는(6.7%)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지NGO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치 않은 이유로 한국NGO의 사업역량강화가 더욱 시급함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내NGO의 사업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현지NGO 직접 지원이라는 제도의 다양화와 국내NGO의 역량강화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의 개선방향이 명확히 인지되지 못한 채 혼재되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정부 -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실무·전문가 의견조사

연구팀은 KOICA의 새로운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2011년 3월부터 7월까지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총 5회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8개 NGO의 중견 실무자워킹그룹, 6개 NGO의 해외사업장 근무자, 10명의 해원협 이사진 및 자문위원 4인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으며 그 중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130]

첫째, 신규단체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신규단체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신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더욱 구체적인 의견들이 나왔다.

캄보디아에서 2년간 CSO의 사업책임자로 근무하면서 KOICA의 민간단체지원사업에 처음으로 참여하여 지원을 받아본 경험을 가진 실무자는 "신규단체 지원에 찬성한다. 실제로 신규단체가 KOICA 사업 지원을 받을 확률이 매우 낮다. 따라서 신규단체들만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며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해원협 이사단체의 대표는 "신규단체 및 전략적 파트너 등의 구분은 시민사회를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패러다임에 맞는 방식이다"라고 평가하며 신규단체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에 적극 찬성하였다.

신규단체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신규단체의 자격'이다. 그 중 신규단체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간'에 대한 CSO관계자들의 의견은 대략 2~3년 정도의 해외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가진 단체로 모아진다.

---

130) NGO의 중견 실무자워킹그룹에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최은정 팀장, 더프라미스 옥세영 팀장, 하트하트 문후정 팀장, 굿네이버스 이수경 팀장, 월드투게더 김나연 팀장, 은평천 사원 김현숙 팀장, 월드비전 장문희 과장이 참여하였다. NGO의 해외사업장 근무자로는 코피온 오원기 간사, 한베재단 이선미 팀장, 한국희망재단 최윤희 팀장, 다일복지재단 김학용 국장, 지구촌나눔운동 김민영 팀장, 피스빌리지네트워크 지은희 팀장이 참여하였다. 해원협 이사진으로는 한국해비타트 이창식 회장(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장), 어린이재단 노시선 부회장, 세이브더칠드런 김노보 회장, 기아대책기구 정정섭 회장, 한국YMCA전국연맹 남부원 사무총장, 한국JTS 김기진 대표,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민경일 상근이사/부본부장, 한국헬프에이지 조현세 회장, 글로벌케어 박용준 회장과 이외에 해원협의 윤현봉 사무총장도 참여하였다. 자문위원으로는 한국인권재단의 이성훈 이사, 한국YMCA전국연맹의 송진호 실장, 월드비전코리아의 이명신 본부장,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의 윤현봉 사무총장이 참여하였다.

“사업을 시행한지 최초 3년까지는 신규로 해야 한다. 첫해에는 보통 조사를 진행하고 두 번째 해부터 그에 따른 실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해원협 또한 2년 사업 경험이 있는 단체를 신규로 칭한다.”, “우리 단체의 경험상 2년차 이상이 신규단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을 셋업하는데 1년, 사업을 수행하는데 1년이 걸리므로 2년은 해외사업결과를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의견들은 최소한의 국제개발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한 단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으로 증대하는 규모에 따라 준비가 되지 않은 단체가 지원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반응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규단체제도의 신설시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CSO가 많이 태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단체를 구분해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신규 단체의 경우, pilot사업을 진행하게 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자유와 자율이 많아질수록 책임도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윤리강령을 회원단체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신생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환경인데, 이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단체를 좀 더 검증하고, 검증받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CSO관련자들은 신규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세부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신생단체가 크기 위해서는 인건비, 체제비용에 대해 100%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관리·감독 부분을 고려하여 조정해야 할 것이다. 신규단체 지원·관리·감독하는 기관을 따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신규단체지원 시 고려해야할 자금 매칭비율에 대한 CSO관련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신규단체들에게 타격이 큰 자부담비율을 낮추어야 한다. 매칭비율은 최소한의 책임비율을 주는 것인데, 신규단체의 경우 기존 단체보다는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

다.”, “신규단체들을 키워 주려면, 100%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매칭비율을 둔다는 자체가 믿지 못한다는 것인데,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기준 이하인 경우 매칭비율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민사회 실무자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신규단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신설에 대한 의견은 설문조사를 통해 79개 단체 중 59.2%인 45개 단체가 동의한 부분과 맥을 같이 한다.

둘째, 전략적 파트너에 대한 지원을 신설

전략적 파트너 도입에 대해 CSO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협력방식을 다원화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해도 커져가는 예산을 분배하기 어렵다.”, “전략적 파트너에 대한 의견은 긍정적이다.”

이와 같은 긍정적 반응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이 바로 전략적 파트너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실적, 사업기간, 규모, 활동국가 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자의 규모로 기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해외사업경험 연도 수, 순수해외사업비용, 사업실행국가 수, 해외사업담당 직원 수 등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충족시킨 단체에 한해 단체가 직접 자신이 들어갈 카테고리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지에 직접 사무소가 있는 단체와,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하는 단체를 구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전략적 파트너들에 대한 자금배분의 경우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략적 파트너 기준을 잘 설정해 놓았을 경우 자금지원은 동일하게 해야 한다.”, “지원에 대한 상한선과 하한선이 필요하다. 선진공여국 수준으로 적용하기 어렵겠으

나, 한국 단체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많은 국내 단체들이 국내에서 수행한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단체들이 바로 ‘전략적 파트너’단체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CSO관계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잘한다고 해서, 해외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한 기간,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와 해외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틀이 상이하다. 따라서 국내의 실적이 해외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많은 현지사업수행 경험자들은 ‘전략적 파트너’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음의 내용과 같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전략적 파트너는 좋을 것 같지만, 현장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1년이나 3년도 짧지 않다. 관리와 평가를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단체가 얼마 되지 않는다. 전략적 파트너로 할 경우 해당 CSO도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지원기간이 끝났을 때는 위기가 올 수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칫하면 의존성만 키울 수 있다. 사전단계부터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지원과 기회가 필요하다.”

전략적 파트너 외에도 이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중견단체’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신규단체와 전략적 파트너 사이의 그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CSO관계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중견단체는 전략적 파트너와 동일한 수준의 질(quality)을 갖춘 단체이다. 단, 특화된 분야나 지역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단체를 중견단체로 봐야 할 것이다. 규모가(quantitative) 아닌 질적인(qualitative) 기준으로 단체를 구분해야 할 것이다.”, “큰 단체들에게는 자율적 자금활용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중소단체가 어느 정도 발전이 있어야 개발NGO가 다양하고 활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NGO의 특성에 따른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특별히 전략적 파트너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간담회에 참여한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서도 NGO그룹화와 특성에 따른 지원제도 도입에 대해 79개 응답기관의 80.5%인 62개 단체가 찬성하는 등 간담회의 내용과 일치하였다.

셋째, 공여국 본부 및 파트너국 현지사무소(대사관 포함)을 통한 현지 및 국제CSO 지원을 신설

수원국의 현지CSO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CSO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문제점이 많을 수 있다. 따라서 현지CSO 직접지원이 아니라, 한국CSO가 감독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간담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CSO실무자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베트남에 있는 선진공여국의 대사관들은 개발 사업을 주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사업도 현지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KOICA도 이런 방식으로 도입한다면, 실제 현지 사업 시 정보력이나 현지적용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이다. KOICA의 역할은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한국CSO를 지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 개발사업 노하우 등을 수집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KOICA 또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모든 개발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립이다. 그 측면에서 현지CSO를 믿고 역량을 키운다면 한국CSO가 가지고 있지 않는 강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돈의 가치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 큰 강점이다.”

많은 선진공여국들이 개발도상국의 CSO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동기금(pooled funding)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 ODA의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의

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이 새롭게 만드는 것은 어렵고, 이미 조성된 것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 "분야에 따라 공동기금으로 해야만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로 기후변화 같은 것은 공동으로 참여해서 아젠다(agenda)를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CSO를 지원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지원 및 관리주체이다. 현재 많은 선진공여국들은 정부원조기관의 현지 사무소나 대사관이 이를 담당한다. 한국의 경우 KOICA 현지사무소나 대사관이 담당하는 것에 대한 CSO실무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대사관을 접하다보면 대사관 업무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 사업을 감당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단체가 관리·감독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KOICA가 국내CSO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지CSO를 평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지 및 국제CSO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담회와 설문조사의 내용이 일치한다. 설문조사에서는 79개 응답기관 중 80%인 60개 단체가 긍정적인 답을 하였다. 또한 간담회에서 현지CSO지원의 이유로 제기된 "현지사정을 잘 아는 주체",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는 설문조사에서도 각각 51.7%, 46.6%의 단체가 지원의 이유로 제시하였다.

반면 간담회에서는 국제 및 현지CSO지원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에 비해 설문조사에서는 국제 및 현지CSO지원에 대한 반대 이유로 "한국NGO의 사업 역량강화가 더욱 시급함"(53.3%)과 "개발도상국NGO의 투명성·책무성이 확보되지 않음"(33.3%)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창의적 개발 사업지원을 신설

간담회에 참석한 CSO실무자들은 창의적 사업지원,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기존 단체들이 검증하지 못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투자하고 작은 규모로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략적 파트너가 큰 규모로 진행하기에는 위험도가 큰 사업을 창의적 사업으로 분리하여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본다.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민사회단체들을 지지해주고 기회를 주어 개발협력사업을 하는 대상이 개발NGO로만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 개발사업 및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의 ‘개발NGO외 민주주의, 인권, 여성 등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필요여부’에 관한 문항이 연결된다. 시민사회단체가 이전에 실시되지 못한 분야, 내용, 방식의 창의적인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유사한 분야의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그들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 같은 ‘개발NGO 외 민주주의, 인권, 여성 등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필요여부’ 문항에 대해 37.3%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답을 제시하였다. 또한 “BHN 이외 인권 및 시민적 권리와 의무, 여권신장 등에 대한 혹은 이와 연계된 사업필요 여부”에 75%가 찬성하였다. 이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기존 단체들이 검증하지 못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투자”,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민사회단체들을 지지해주고 기회를 주어”라는 의견과 동일한 방향의 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섯째, 특정 지역 및 분야 지원을 신설

간담회에 참석한 CSO실무자들은 특정 지역 및 분야 지원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CSO가 수행하는 사업들은 정부나 KOICA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이다. KOICA 사무소가 없는 지역에서도 CSO가 활동할 수 있다. 오히려 CSO사업이 진행된 후에 사무소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국제사회의 흐름, 이슈를 고려하여 분야 및 지역을 설정하고 융통성있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몇 년을 주기로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분야·지역 설정 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시행할 수 없는 상황 혹

은 지역 및 분야 등에 CSO가 대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의 ‘정부지정 지원사업의 확대 필요성’ 항목이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정부가 특정한 지역이나 분야로 지정한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의미한다. 설문조사에서 “NGO 지원사업외 정부지정 지원사업 확대 필요 여부”에 대해 77.3%의 NGO가 동의한 것은 특정 지역, 분야에 대한 정부지정 사업의 지원확대에 대한 수요로 해석될 수 있다.

여섯째, 협의체(Framework Organization)를 통한 지원을 실시

간담회를 통해 CSO협의체를 통한 지원에 대해 밝힌 CSO관계자들의 의견도 다양하다.

먼저 긍정적인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전략적 파트너 구분의 경우 코이카에게 맡기고, 나머지 사업심사 관련은 해원협이 담당해도 좋다.”, “이러한 권력은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분야나 역량에 따라 사업을 배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하나의 협의체가 아니라 다양하게 생긴다면 서로 보완이 되고 권력도 분산될 것이라고 본다.”, “해원협(협의체)이 신규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상적이다.”, “장기적으로 정부가 민간단체를 심사·평가하는 것은 시민사회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상황에서 해원협이 충분한 역량과 책임을 가지기 위해서는 회원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견도 동시에 제기되었다.

“우선 한국 협의체가 발전되어야 한다. 현재는 이른 논의라고 생각한다. CSO를 이해하는 면에서 긍정적이나 지원금에 대한 또 하나의 중간단계가 생기는 것일 수도 있다.”, “CSO는 CSO가 더 잘 알 수 있고 소통도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CSO에 대한 또 다른 권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해원협의 역량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시행착오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가 어려운 문제이다. 경험상 해원협이 현재 CSO사업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비해원협 회원단체인데, 해원협 회원단체가 된다

고 해서 지금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만약 해원협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된다면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협의체를 통한 지원에 대해 간담회에서는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비슷한 규모로 제시되었다. “NGO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 방식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43.4%인 33개 단체가 찬성, 56.6%인 43개 단체가 반대의사를 표명한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Ⅵ.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제안

KOICA의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은 1995년 이래 '민간단체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모든 CSO들이 지원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자금지원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어왔다. 이 사업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는 '단년제' 사업방식으로 진행되었고, 2010년부터 '다년제' 사업방식이 도입되었다.

2010년 10월에 국무총리실 이하 16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에서 "NGO를 실질적인 개발협력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협력방안 강구"한다고 표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2010년 90억 규모의 예산을 2015년까지 900억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131] 또한 2011년의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 대한 한국정부의 '포지션 페이퍼'에서도 CSO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2011년 7월에 파리에서 개최된 원조효과작업반 회의에서는 다양한 개발주체들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적 협약(A New Global Compact for Development) 도출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개발 주체들의 참여를 강조했다.[132]

이와 같이 국내외 국제개발협력사회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KOICA의 새로운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환경변화, 정부의 의지 및 시민사회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기존의 '민간단체지원사업'의 내용을 더욱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은 전통적으로 개발NGO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왔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프로그램들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특성을 잘 고려하면서도 정부의 원조정책과 조화를 이뤄가며 운영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선진공여국이 수행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특성들을 잘 고려한 가운데 우리 현실에 부합하면서도 더욱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시민사회협력프

13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7-1호. 국무총리실.

132) HLF-4 준비를 위한 Core Group 의장이자 원조효과작업반(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WP-EFF) 부의장인 박은하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장의 발언. 남수정. 2011. OECD 원조작업반 결과와 의의. ODA Watch Letter. 56호. 2011년 8월 2일.

로그램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이 더욱 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타 공여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와 경험을 가진 한국의 국제개발사업 수행 주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이들의 역량강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개발목표 달성에 있어 실질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 맥락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1년 3월부터 7월까지 OECD/DAC의 24개 회원국들에 대한 문헌조사와 영국, 스웨덴, 호주 및 네팔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79개 NGO에 대한 설문조사와 NGO중견실무자로 구성된 워킹그룹회의 2회, NGO해외사업장근무경험자회의 1회, 해원협 이사회를 통한 NGO대표자회의 1회, 시민사회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회의 1회 등 총 5회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러한 연구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협력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의 수요에 대한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반영해, 향후 KOICA가 고려할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그 정책기조와 프로그램, 시행일정 및 중·장기 과제를 제안한다.

1. 정책기조와 프로그램 제안 개요

첫째, 독립적인 개발행위자인 시민사회의 특성을 존중하고 고려한다.

새로운 KOICA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은 2008년 아크라 3차 원조효과성고위급회담(HLF-3)의 '아크라행동선언'에서 명시된 '독립적인 개발행위자'로서 시민사회의 특성을 존중한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BHN(Basic Human Needs) 서비스 제공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발NGO 외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개발협력에 참여해 수원국의 빈곤퇴치 및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의 대상과 내용을 확대한다. 이는 단순한 참여자 범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정부가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시민사회에 대해 실질적인 인식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상징한다. 또한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은 CSO와의 관계를 '보조금 등 단순지원이 아니라 원조사업의 동반자·협력자로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133]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13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7-1호. 국무총리실.

‘신규단체 지원 프로그램’, ‘중견단체지원 프로그램’,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 및 ‘국제 및 현지CSO지원 프로그램’을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으로 제안한다.

둘째, 정부 원조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상당수의 선진공여국들은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자국의 원조정책과 ‘조화와 일치’를 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CSO와 정부가 사업수행 지역을 분담하거나, 정부 ODA사업의 사후 운영관리를 CSO에 위임하고, 특정분야 및 주제의 ODA사업을 CSO에 위임하는 등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정부의 원조정책과 ‘조화와 일치’를 고려하는 가운데 CSO의 참여를 통해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특정지역 및 분야지원 프로그램’을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으로 제안한다.

셋째,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발전을 지원한다.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는 그 역사와 경험, 그리고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역량강화와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금지원 확대를 포함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CSO의 개발사업 수행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기초조사지원 프로그램’, ‘CSO코디네이터 프로그램’, ‘KOICA-CSO데스크 프로그램’을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으로 제안한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된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5개의 프로그램 분야를 설정하였다.

5개 프로그램 분야는

첫째, ‘특성에 따른 지원’으로 CSO들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된다.

둘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환경조성’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진행되어온 BHN 중심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 사업 외에 창의적인 방식과 분야, 내용으로 구성된 개발협력사업을 지원하고자 한다.

셋째, ‘ODA정책보완’이다. 정부의 원조정책에 따라 하향식(top-down)으로 특정 지

역과 분야에 대해 지원하며, 이에 참여하는 CSO 활동을 통해 정부 원조정책의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넷째, '국제파트너십 강화'이다. 이는 선진공여국이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수원국 사회의 실질적 필요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섯째, 'CSO개발역량강화'이다. 이는 CSO의 개발사업 수행역량 강화를 통해 CSO의 사업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의 5개 프로그램 분야에서 총 9개의 사업을 제안한다.

첫째, 특성에 따른 지원 분야에서는 '신규, 중견 및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의 세 가지 프로그램이 제안된다. 기본적으로 KOICA의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는 CSO들은 이 세 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에 참여한다.

둘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환경조성분야에서는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이 제시된다.

셋째, ODA정책보완 분야에서는 '특정지역 및 분야지원 프로 프로그램'이 제시된다.

다섯째, CSO개발역량강화 분야에서는 '사업기초조사(baseline survey)지원 프로그램', 'CSO코디네이터 프로그램', 'KOICA-CSO데스크 프로그램'의 세 가지 내용이 제시된다. 그 중 '사업기초조사(baseline survey)지원 프로그램'에는 모든 CSO가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다른 두 개의 프로그램은 간접적으로 CSO들의 개발역량을 강화한다.

이상의 프로그램의 운영은 KOICA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와 위탁운영기관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직접 집행과 위탁운영의 구분 원칙은 프로그램이 KOICA와 정책적, 조직적 연계성이 높거나 지원규모가 큰 경우는 KOICA가 직접 집행을 한다. 이에 반하여, 기존에 수행되어 사업 운영상의 제반 문제에 대한 경험이 축적된 사업을 기반으로 하거나,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은 위탁운영기관이 담당한다.

이와 같은 5대 분야와 9개 프로그램의 구성은 〈표 6-1〉에 요약되어 있다.

<표 6-1> KOICA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5대 분야 9개 프로그램 구성

제목	내용	운영
특성에 따른 지원	신규단체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단체
	중견단제지원 프로그램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	KOICA
창의적 개발을 위한 환경조성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	
ODA정책보완	특정지역 및 분야지원 프로그램	
국제파트너십 강화	국제 및 현지CSO지원 프로그램	
CSO개발역량강화	사업기초조사(baseline survey)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단체
	CSO코디네이터 프로그램	
	KOICA-CSO데스크 프로그램	KOICA

2. 특성에 따른 지원

가. 신규단체지원 프로그램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은 〈표 6-2〉과 같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부족한 단체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해 신규단체들이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6-2> 신규단체지원 프로그램

구성	내용
성격	• 경험이 부족한 CSO가 전문적인 개발협력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지원조건	• 첫해 사업지원의 경우, 이전에 KOICA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CSO • 3년 이상의 자체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한 CSO • 법적으로 관련정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선발방식	• 연 1회 공모방식
위탁 운영기관	• KOICA의 공개경쟁 선발과정을 통해 사업관리를 위탁받은 운영기관
사업기간	• 1년 단년제
사업비	• 사업 당 최대 1억 원 (최대 3개 사업 3억 원)
대응자금비율	• 80%(KOICA) : 20%(자부담)
간접비	• 15% (인건비로 100% 사용가능)

사업비지급시기	• 계약 후 70%, 중간보고 후 30%
지원횟수	• 1년 1회 3년간 가능 (2년차 중간평가 후 심사하여 일련의 절차를 통해 3년차 때는 중견단체지원 프로그램으로 전환 가능)
연간 지원가능 사업 수	• 1년차 CSO는 1개 사업 수행가능 • 2, 3년차 CSO는 3개까지 수행가능
심사	• 위탁운영기관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KOICA 관계자, 시민사회 전문가, 개발협력 전문가 지역 및 분야 전문가가 참여 •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KOICA 현지사무소와 같이 공인된 기관 혹은 단체나 개인을 통해 사업장 현장 방문조사 실시 • 심사기준은 위탁운영기관 공모 시 지원기관이 제안토록 함.
평가	• 위탁운영기관이 직접 또는 독립적인 외부 기관(개인)을 위촉하여 수행. 결과는 KOICA에 보고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함.
사업접수	• 온라인 접수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예산계획서, 단체소개서, 법적 등록증
중요사항	• 지원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전교육에 참가한 단체만 참여 가능함.

신규단체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되는 '민간단체지원사업' 제도에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신규단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현재 정부의 ODA자금과 CSO지원규모 확대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는 추세에 따라 새롭게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시작하는 CSO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KOICA의 '민간단체지원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CSO들은 사업수행 경험이 많고 규모가 크며 전문성을 가진 기존의 CSO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험과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가진다. 신규단체지원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러한 신규단체들이 안정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개발단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신규단체'의 기준은 KOICA '민간단체지원사업'에 대한 '참여경험' 여부이다. 이미 오래 전에 설립되고 자체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해 온 역사와 경험이 있는 단체라도 '민간단체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면 '신규단체'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구체적으로 자체 자금을 가지고 최소한 3년 이상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들이 참여 대상이 된다. 단체 자체의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여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경험한 단체들이 이를 기반으로 KOICA의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할 시 기회비용을 줄이고, 사업효과성을 더욱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신규단체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반드시 법적으로 등록된 비영리단체이어야 한다.

신규단체지원 프로그램은 연 1회 공모제도 방식으로 진행하며, 사업운영은 KOICA가

주관한 공개경쟁 선발과정을 거쳐 선정된 기관에 사업관리를 위탁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성격의 많은 시민사회 내 행위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KOICA보다는 시민사회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는 성격의 기관이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단체지원 프로그램의 사업기간은 단년제로 1년이며, 사업비 규모는 최대 1억 원으로 설정한다. 사업비 지급은 계약 후 70%를, 중간평가 후 30%를 집행한다. 또한 대응자금(매칭)비율은 KOICA지원 80%, 자부담 20%로 한다. 사업비 외 사업수행에 필요한 간접비 지원은 지원사업비의 15%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인건비로 100%까지 활용할 수 있다. 신규단체들이 지원할 수 있는 횟수는 최대 3년간으로 한정한다. 이후에는 중견단체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 2년차 중반에 실시하는 중간평가 후 심사를 통해 해당 단체의 사업수행역량이 인정될 시에는 3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3년차부터 '중견단체지원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해당 단체가 3년차에 기존의 신규단체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할지, 중견단체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지는 단체의 결정에 따른다.

개별 CSO단체는 신규단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년차에는 1개 사업만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년차부터는 심사를 통해 최대 3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심사는 별도로 조직된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KOICA 관계자, 시민사회 전문가, 개발협력 전문가, 지역 및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심사는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기본으로 하며, 사업현장 방문조사는 필요시 공인된 기관 및 개인, 즉 KOICA 현지사무소나 관련 기관, 개인을 통해 실시한다.

사업심사기준은 공개경쟁 선발과정을 거쳐 사업관리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공모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KOICA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신규단체지원 프로그램에는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부족한 단체들의 상황을 고려한 심사기준을 활용토록 한다.[134)]

134) 오스트리아는 신규단체들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NGO micro-project의 심사기준에 주제별 우선성, 프로젝트의 타당성과 일관성(목적, 결과, 비용의 타당성 등), 효과성(무엇을 성취할 것인가)과 효율성(cost-benefit ratio)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이 사업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며, 이밖에 프로젝트 계획과 수행에 있어 현지 파트너 및 수혜자의 참여, 현지 역량강화, 사업지역의 정부 혹은 조직과의 협력과 조화, 신청기관 및 현지 파트너 기관의 행정력, 능력(competency), 책무성 기준을 활용한다.

사업평가는 위탁운영기관이 직접 또는 독립적인 외부 기관(개인)을 위촉하여 수행하고 결과는 KOICA에 보고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 중간평가는 사업수행 당해년도 3/4분기에 실시하고, 사업결과평가는 사업종료 후 차년도 1/4분기 1월에 실시한다. 사업접수는 온라인접수를 기본으로 하며, 신청서류는 사업계획서, 사업예산계획서, 단체소개서 및 법적 등록증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 시 추가로 요청한다.

신규단체지원 프로그램은 2012년 상반기에 지원예상 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신규단체지원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성격의 많은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히 그동안 국제교류·연대·봉사단 파견 등의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과 기존에 수행했던 사업의 차이 및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본지식, 개발협력사업 수행과정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전교육 참가여부를 신규단체지원 프로그램 신청의 필수조건으로 설정한다. 이를 통해 신규단체의 사업수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신규단체지원 프로그램은 〈그림 6-1〉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그림 6-1> 신규단체지원 프로그램 수행절차 및 시행 일정

업무단계	주요내용	시행일정
운영기관선정	KOICA의 공개경쟁 선발과정 통해 사업을 위탁관리할 운영기관을 선정	전전년도 4분기
↓		
사업설명회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반적 내용 • 신규단체지원 프로그램 취지, 배경 • 사업시행 일정	전년도 1/4분기
↓		
교육	• 참석대상은 사업책임자 및 실무자 필수 • 기간은 2일 이상으로 구성 • 내용 - 국제개발협력사업 일반 - CSO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특징 - 사업발굴, 형성, 실행, 모니터링, 평가 - 사업 보고서 작성 및 회계 관련사항 - 현지사업 수행자 및 본부 담당자 업무 관련사항	전년도 1/4분기
↓		

사업기본계획서 접수	• 위탁운영기관이 온라인으로 접수	전년도 3/4분기
↓		
현지타당성조사	• CSO코디네이터, KOICA 현지사무소(KOICA-CSO데스크) 혹은 공관과 협력해 실시	전년도 4/4분기
↓		
사업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실시	전년도 4/4분기
↓		
사업계획수립	•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전년도 4/4분기
↓		
사업계획 심의·승인	• KOICA 이사회 의결 및 외교통상부 장관 승인, 사업선정결과 단체에 통보	전년도 4/4분기
↓		
사업실행계획서 접수	• 심사내용, 지원금 확정내용 반영한 사업실행계획서 접수	당해연도 1/4분기(1월)
↓		
약정체결	• KOICA 이사장과 단체대표간 체결	당해연도 1/4분기 (1월)
↓		
1차 자금 지원	• 약정체결 이후 14일 이내 지원금의 70% 지급	약정 후 14일 이내
↓		
사업착수	• 약정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착수	약정 후 2개월 이내
↓		
사업착수보고서 제출	• 사업착수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송금확인증, 현지사용 영수증, 사진)	사업착수 14일 이내
↓		
사업중간보고서 제출	• 약정체결 시 KOICA가 지정하는 날짜까지의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 1개월 이내 제출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 영수증 포함)	당해년도 3/4분기
↓		
2차 자금 지원	• 중간보고 검토완료 후 14일 이내 지원금의 30% 지급	당해년도 3/4분기
↓		
결과보고서 제출	• 총 사업기간 동안의 실적을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 영수증 등 포함)	차년도 1/4분기(1월)
↓		

사업결과평가	• 종료사업에 대하여 CSO코디네이터, 집행기관, KOICA 본부 및 현지사무소(KOICA-CSO데스크) 혹은 공관이 종합적으로 실시함.	차년도 1/4분기
↓		
사업결과 공유포럼 및 사업설명회 개최	• 당기 사업참여 단체 및 차기 사업응모 단체 포함 관련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결과를 공유하는 포럼 개최 • 차기 사업설명회 동시 개최	차년도 1/4분기

나. 중견단체지원 프로그램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은 신규단체와 전략적 파트너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들을 구분해 '중견단체'라고 설정하고, 이들이 참여하는 '중견단체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 '중견단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과 역량을 축적한 단체들이 향후 전략적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표 6-3> 중견단체지원 프로그램

구성	내용
성격	• 중견단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문적인 개발NGO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지원조건	• 신규단체지원 프로그램 및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단체 • 법적으로 관련정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선발방식	• 3년 1회 공모방식
실행기관	KOICA (첫 사업기간 3년간은 KOICA가 수행하고, 이후 2015년부터는 KOICA의 공개경쟁 선발과정을 통해 사업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실행)
사업기간	• 기본 3년
사업비	• 사업 당 연간 1~2억 원 (3개 사업 지원 시 3년간 총 9~18억 원)
대응자금비율	• 80%(KOICA) : 20%(자부담)
간접비	• 10% (인건비로 100% 사용가능)
사업비지급시기	• 계약 후 70%, 중간보고 후 30%
단체당 지원가능 사업 수	• 3개
심사	• KOICA 관계자, 시민사회 전문가, 개발협력 전문가 및 지역, 분야 전문가로 구성 •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KOICA 현지사무소와 같이 공인된 기관 혹은 단체나 개인을 통해 사업장 현장방문 조사 실시

심사	• 심사기준은 KOICA가 실행하는 1차 사업기간 3년은 기존의 '민간단체 지원사업' 기준에 준하여 사용 • 2차 사업기간부터 심사기준은 위탁운영기관 공모 시 지원 기관이 제안토록 함.
평가	• KOICA가 직접 또는 독립적인 외부 기관(개인)을 위촉하여 수행
사업접수	• 온라인 접수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예산계획서, 단체소개서, 법적 등록증
중요사항	• 신규단체지원 프로그램을 마친 경험이 적은 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려함. • 많은 단체들이 전략적 파트너 지원프로그램에 지원하기보다는 중견단체지원 프로그램에서 경험을 축적하고 역량을 제고하여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중견단체지원 프로그램은 규모와 내용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간단체지원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진행되며, 법적으로 관련 정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단, 신규단체지원 프로그램 및 전략적 파트너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체는 신청할 수 없다.

중견단체지원 프로그램은 처음 시작되는 사업 1기에는 KOICA 민관협력실이 담당하되 사업 2기부터는 KOICA가 주관한 공개경쟁 선발과정을 거쳐 선정된 기관이 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한다.[135] 중견단체지원 프로그램은 3년을 사업주기로 하여, 3년 1회 주기의 공모제도 방식으로 진행된다. CSO들은 이 프로그램에 단체 당 최대 3개를 지원할 수 있다. 중견단체지원 프로그램의 사업비 규모는 연간 1개 사업 당 1~2억 원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1개 단체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비 규모는 총 3개 9~18억 원 규모이다. 사업비 지원은 사업 착수 시 70%, 사업 2년차 3/4분기에 실시하는 중간평가 후 30% 지원하며, 사업비 대응(matching)비율은 KOICA가 80%를 지원하고 CSO가 자부담으로 20%를 부담한다. 간접비는 지원사업비의 10%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인건비로 100%까지 활용할 수 있다.

중견단체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심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KOICA관계자, 시민사회전문가, 개발협력전문가, 지역 및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다.

135) 1기는 2012~2014년, 2기는 2015~2017년이다. 중견단체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별도의 준비작업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심사는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기본으로 하며, 사업현장방문조사는 필요 시 공인된 기관 및 개인 즉, KOICA 현지사무소나 관련기관, 개인을 통해 실시한다. 사업 심사기준은 현재 KOICA가 '민간단체지원사업'에서 활용하는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그 내용의 수준을 강화하여 활용한다. 특별히 장기간 양질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인적 역량강화 부분에 대해 비중을 두고 구성한다. 사업 2기부터는 공개경쟁 선발과정을 거쳐 사업관리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공모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KOICA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사업평가는 KOICA가 직접 또는 독립적인 외부기관(개인)을 위촉하여 수행한다.[136] 중간평가는 사업수행 2년차 3/4분기에 실시하고, 사업결과평가는 사업종료 차년도 1/4분기에 실시한다. 그리고, 평가에 관계없이 매년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사업접수는 온라인 접수를 기본으로 하며, 신청서류는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법적 등록증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그림 6-2> 중견단체지원 프로그램 수행절차 및 시행 일정[137]

업무단계	주요내용	시행일정
사업기본계획서 접수	• KOICA가 온라인으로 접수	전년도 3/4분기
↓		
현지타당성조사	• CSO코디네이터, KOICA 현지사무소(KOICA-CSO데스크) 혹은 공관과 협력하여 실시	전년도 4/4분기
↓		
사업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실시	전년도 4/4분기
↓		
사업계획수립	•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전년도 4/4분기
↓		
사업계획 심의·승인	• KOICA 이사회 의결 및 외교통상부 장관 승인, 사업선정결과 단체에 통보	전년도 4/4분기
↓		

136) 사업 2기 사업평가는 위탁운영기관이 직접 또는 독립적인 외부 기관(개인)을 위촉하여 수행하고, 결과는 KOICA에 보고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

137) 중견단체지원 프로그램의 수행은 2012년 시작하는 사업 1기는 KOICA가 진행하며 2014년도에 시작하는 사업 2기에는 2013년 4분기에 선정한 위탁운영기관이 사업전반을 진행한다.

사업실행계획서 접수	• 심사내용, 지원금확정내용 반영한 사업 실행계획서 접수	사업1년차 1/4분기(1월)
↓		
약정체결	• KOICA 이사장과 단체대표간 체결	사업1년차 1/4분기(1월)
↓		
1차 자금 지원	• 약정체결 이후 14일 이내 지원금의 70% 지급	약정 후 14일 이내
↓		
사업착수	• 약정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착수	약정 후 2개월 이내
↓		
사업착수보고서 제출	• 사업착수보고서 및 관련증빙서류 제출 (송금확인증, 현지사용 영수증, 사진)	사업착수 14일 이내
↓		
사업중간보고서 제출	• 약정체결 시 KOICA가 지정하는 날짜까지의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 1개월 이내 제출 (사업비집행내역, 증빙 영수증 포함)	사업 2년차 3/4분기
↓		
2차 자금 지원	• 중간보고 검토완료 후 14일 이내 지원금의 30% 지급	사업 2년차 3/4분기
↓		
결과보고서 제출	• 총 사업기간 동안의 실적을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 영수증 등 포함)	사업종료 차년도 1/4분기
↓		
사업결과평가	• 종료사업에 대하여 CSO코디네이터, KOICA본부 및 현지사무소(KOICA-CSO데스크) 혹은 공관이 종합적으로 실시함.	사업종료 차년도 1/4분기
↓		
사업결과 공유포럼 및 사업설명회 개최	• 당기 사업참여 단체 및 차기 사업응모 단체 포함 관련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결과를 공유하는 포럼 개최 • 차기 사업설명회 동시 개최	사업종료 차년도 1/4분기

중견단체지원 프로그램은 가장 많은 수의 CSO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민간단체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구축한 사업운영경험 및 관리 노하우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발휘해 많은 규모의 CSO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하고, 더 나아가 전문적인 개발NGO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행해야 한다.

다.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은 KOICA가 제시한 일련의 선정과정을 거친 전략적 파트너와 다년 지원, 대규모 자금, 자금집행의 자율성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협약(framework agreement)을 맺고 진행하는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표 6-4〉와 같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개발협력분야의 전문적인 CSO들이 고유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안정적으로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6-4>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

구성	내용
성격	•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전문적인 CSO를 대상으로 하며, 대규모의 자금을 자율성을 갖고 사용하며, 다년간 지원하여 사업효과성을 제고함.
지원조건	•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경험을 5년 이상 보유한 CSO • 연간 해외사업규모 10억 원 이상인 CSO •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은 CSO
선발방식	• 3년 1회 공모방식
실행기관	• KOICA
사업기간	• 3년
사업비	• 사업당 연간 6~20억 원 (3년간 총 18~60억 원)
대응자금비율	• 80%(KOICA) : 20%(자부담)
간접비	• 5% (인건비로 100% 사용가능)
사업비지급시기	• 계약 후 70%, 중간보고 후 30%
단체별 지원 가능 사업 수	• 1개 단체가 1개의 협약을 맺고 사업수행 가능
심사	• 인증제도를 거쳐 인증을 받은 단체를 대상으로 전략적 파트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함. • 심사위원회는 KOICA 관계자, 시민사회 전문가, 개발협력 전문가, 지역 및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필요 시 법률, 회계 및 기타 전문가도 참여 •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방문심사를 함.
평가	• KOICA가 직접 또는 독립적인 외부 기관(개인)을 위촉하여 수행
사업접수	• 온라인 접수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예산계획서, 단체소개서, 외부감사보고서, 인증단체 증명서

중요사항	•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은 지원받은 재정의 사용에 있어 각 개별 단체의 목표설정과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집행함. 구체적으로는 사업 수, 지역, 분야에 있어 자율성을 부여함. 단, 사회적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 정책애드보커시, 교육, 조직 개발, 인력양성 등에 있어서의 사업비 집행 비율에 있어 적절한 제한을 둠. •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 대상단체를 선발하는 기준 구성이 중요함. 중견단체와의 차이를 확실히 구별짓는 기준 구성을 해야 함. • 전략적파트너는 반드시 인증제도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함. •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단체는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 및 특정지역 및 분야 지원 프로그램 외 다른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못 함.

1) 전략적파트너지원 사업의 시행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현재 개발단체로서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CSO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단체들은 5년 이상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경험과 연간 해외사업규모 10억 원 이상, 그리고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은 단체들이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KOICA 내 관련 부서가 전담하며, 사업은 3년 주기로 매 3년 1회 주기의 공모제도 방식으로 진행한다. 〈표 6-5〉와 같이 사업비 지원규모는 연간 6~20억 원, 3년간 총 18~60억 원으로 설정한다. 사업비는 계약 후 70%를 지원하고, 3년차 사업의 경우는 사업 시작 차년도 3/4분기에 시행되는 중간보고 후 30%를 지원한다. 사업비 대응(matching)비율은 KOICA 지원을 80%로, 자부담을 20%로 한다. 간접비는 지원사업비의 5%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인건비로 100%까지 활용 가능하다. 사업평가는 KOICA가 직접 또는 독립적인 외부기관(개인)을 위촉하여 수행한다. 중간평가는 사업수행 2년차 3/4분기에 실시하고, 사업결과평가는 사업종료 차년도 1/4분기에 실시한다. 그리고, 평가에 관계없이 매년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전략적파트너에 대한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 시 응모단체의 본부를 방문·심사한다. 심사위원회는 KOICA 관계자, 시민사회 전문가,

개발협력 전문가가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법률, 회계 전문가 및 분야별, 지역별 전문가도 참여한다. 심사기준은 현재 KOICA가 '민간단체지원사업'에서 활용하는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효과성, 전문성 및 사업 파급효과 측면에 중점을 둔다. 사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기간 종료 후 운영계획, 현지파트너와의 협력여부 등을 강조한다. 사업접수는 온라인 접수를 기본으로 하며, 신청서류는 사업계획서, 사업예산계획서, 단체소개서, 외부감사보고서 및 인증증명서이다. 이 중 외부감사보고서와 인증증명서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할 수 있다.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체는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과 '특정 지역 및 분야 지원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의 사용에 있어 자율성을 특징으로 갖는다. 단, 사업실행 전 KOICA와 포괄적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KOICA의 전략적파트너로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가진다. 또한 각 개별단체의 우선순위에 의한 목표설정과 전략에 따라 재정배분을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즉 사업수, 지역, 분야에 있어 단체가 결정권을 가진다. 그러나 사업수행에 있어 사회적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사업, 정책애드보커시사업, 교육사업, 그리고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발 및 인력양성 등에 있어서는 사업비 집행 비율의 적절한 제한을 두도록 한다. 이러한 자금사용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대신 사업종료평가 시 그 효과성을 평가한다.[138]

〈표 6-5〉과 〈표 6-6〉, 그리고 〈표 6-7〉은 영국의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인 Partnership Programme Agreements(PPA)의 수행에 대한 내용이다.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들과 달리 장기간 큰 규모의 자금이 개별 단체에게 지원되므로 대상단체 선정에 있어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 이에 현재 선진적인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국의 DFID의 PPA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는 선정·심사과정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표 6-6〉은 대표적인 전략적파

138) 연구팀이 2011년 3월 21일 방문한 영국DIFD의 시민사회협력부서의 PPA담당자인 Steve Nally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PPA자금을 직원들의 보너스를 주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업종료 후 결과평가 시 이는 좋은 결과를 받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영국의 경우는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PPA 제도 운영 시 자금사용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되 단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한국의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트너지원 프로그램인 영국의 PPA프로그램에 대해서 DFID가 CSO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전 실사(due diligence)의 내용이다. '거버넌스, 재정역량, 가치있는 자금사용과 그 성과(value for money and results)'의 세 분야에 대한 사전실사를 하는데 한국의 새로운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6-7〉은 영국의 PPA에서 활용되는 전략적파트너 사업선정을 위한 6단계 과정이다. 선정에 있어 모든 과정에서 단일적인 심사가 아니라 다자간 평가에 의한 원칙을 활용하여 보다 신중한 심사를 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표 6-8〉은 영국 PPA의 사업심사서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전략적파트너 단체들을 심사하고 선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5> 영국의 PPA의 자금지원 사전실사 내용[139]

구성	내용
거버넌스	• CSO 관리체제 • 위험관리과정 • Bribery Act 2010과 같은 중요 법률에 대한 대응 능력 • 핵심정책과 절차 (아동보호, 환경위험관리, 이익충돌)
재정역량	• 계획된 성과 도출에 필요한 자원과 시스템에 대한 조직 운영 능력
가치있는 자금사용과 그 성과	• DFID 재정지원의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능력과 자금을 가치있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조직의 방식 평가

<표 6-6> 영국 PAA의 전략적파트너 심사단계[140]

단계	내용
1단계	• 모든 지원서는 독립적 주(lead) 평가자에 의해 검토됨. • 7개 분야에 대해 점수 부여나 표시는 없음. • 모든 평가자는 일관성 확보 위해 2일간의 평가훈련에 참여함.
2단계	• 모든 지원서는 부(second)평가자에 의해 검토됨. • 7개 분야에 대해 점수 부여나 표시는 없음.
3단계	• 주 평가자와 부 평가자의 동의 하에 모든 분야에 공동점수를 부여함. • 동의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그대로 둠.
4단계	• 2명의 품질 검증자(quality assurors)가 모든 평가단계에 걸쳐 품질기준을 모니터하고 유지함. • 품질 보증자들은 평가자의 역할을 하지 않음.

139) http://www.dfid.gov.uk/Working-with-DFID/Funding-opportunities/Not-for-profit-organisations/Corporate-Governance-expectations-of-CSOs-and-Due-Diligence/

140) http://www.dfid.gov.uk/Documents/funding/ppa/PPA-assessment-process.pdf

5단계	• 확인과 정밀조사 회의 개최 : 모든 평가자들과 품질 검증자들이 모든 제안서에 대해 틈새(niche), 전략적 적합성, 지리적 고려 및 통합성을 고려한 균형점 등을 기준으로 토론함.
6단계	• 품질검증(QA)회의 개최 : 시민사회부서 및 분쟁·인도주의·안보부서의 책임자들이 전체적인 과정의 일관성에 대해 논함. 평가 부서와 가치있는 자금활용(value for money)팀의 대표자들도 품질검증 과정에 참여함.

<표 6-7> 영국 PPA의 사업심사서[141)]

2.1 Strategic Fit	Score	Comments
- Have they provided an answer which clearly shows what their strategic objectives are? - Are they able to show a strong fit with DFID values and priorities? - Can they demonstrate a strong fit with wider HMG development objectives? - How well do their strategic objectives fit it with the MDGs? - Does their answer show how they contributes to gender equality and tackling climate change	1-3	
2.2 Vision and Impact		
- Does their answer clearly show what their geographic and policy priorities would be for a PPA? - Do they demonstrate that they allocate aid to countries that are fragile or in most need? - Do they clearly show how their work supports specific groups of poor and vulnerable people? - Have they provided specific evidence to show how they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policy and practice on specific issues - Have they made a strong case for strategic funding over project	1-3	
2.3 Added value in the field (CSH ONLY)		
- Have they provided evidence of their added value in the field of CSH? - Have they provided evidence of their added value to the outcomes they hope to achieve?	1-3	
3.1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 Have they provided strong recent examples which show how they ensure transparency in what they do? - How open are they in publishing project information? - Have they provided strong evidence to show how they ensure accountability to all stakeholders? - Have they noted membership of any accountability body/organisation?	1-3	

141) PPA Assessment Sheet의 세부 내용은 다음을 참조.
http://www.dfid.gov.uk/Documents/funding/ppa/PPA-assessment-sheet.pdf

3.2 Results Delivery		
- Have they been able to clearly show the results they have achieved against their objectives? - Have they clearly set out what their role and added value was? - Have they provided evidence of impact from policy engagement? - Again have they clearly shown what their role and added value was? - Have they explained how their results management systems operate? - Do their results management systems seem appropriate for an organisation receiving strategic support? - Do they provide evidence of the impact their results have had on the live of poor people?	1-4	
3.3 Value for Money		
- Have they provided recent examples to show how they ensure value for money in their work? - Have they provided evidence of how they have achieved economy in purchase of programme inputs? - Is there evidence to show that they use rates of return and cost effectiveness in decision making? - Have they used any comparators (either internal or external) to highlight value for money? - Is there evidence to show that they are continually looking to improve value for money?	1-4	

2) 인증(accreditation)제도의 시행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인증제도'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즉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CSO들은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고 지원할 자격을 갖춘 후,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인증제도는 기본적으로 CSO를 등급화하거나 분류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조직적, 인적, 재정적 역량을 갖춘 단체임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또한 이 제도는 인증과정에 참여한 CSO가 자 단체의 다양한 역량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기회를 가진다는 일종의 컨설팅적 성격을 가지며, 이 과정을 통해 CSO의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단,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은 CSO가 자동적으로 전략적파트너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인증을 받은 단체가 스스로 결정해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큰 규모의 CSO 뿐 아니라, 작은 규모의 CSO도 인증제도에 지원하여 〈박스 6-1〉과 같이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받는 것 외 회

원 및 외부 공여자 등 국내외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인증과정에서의 역량평가를 통해 더욱 전문적인 CSO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받는 등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박스 6-1> 인증제도의 기대효과

-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자격 부여
- 정부, 기업, 국제기구, 재단 등 외부 공여자들에게 신뢰 제고
- 회원, 임직원 등 내부 관계자들의 자긍심 고양
- 단체의 조직적, 인적, 재정적, 사업적 분야에 대해 수행되는 역량평가를 통해 조직진단을 해 단체의 성장에 기여
- 대외적인 인지제고 및 홍보활동에 기여

인증제도에 참여할 CSO는 기부금 세금감면혜택을 가진 단체, 정부에 공인된 법적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 그리고 윤리 및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준수를 동의한 단체로 제한된다.[142] 인증기준은 크게 5개 분야로 구성된다. 첫째는 단체의 정체성 및 조직구조이며, 둘째는 개발협력 철학 및 관리 역량이다. 셋째는 개발협력 파트너 및 협력관계이고, 넷째는 한국사회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다섯째는 재정상태, 재정관리 및 위험관리 체계이다. 5가지 기준은 각각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지표(indicator)를 가진다. 인증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표 6-8〉에서 제시하는 16가지로 구성된다.

<표 6-8> 인증제도의 내용

구성	내용
성격	• 인증제도는 점수를 부여하여 CSO를 등급화 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단체임을 증명하는 제도임. •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단체는 반드시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인증을 받은 단체가 자동적으로 전략적파트너가 되는 것은 아님. • 단체의 결정에 따라 인증을 받았지만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인증제도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CSO단체의 역량강화 제고에 기여함. • 인증제도의 인증과정은 일종의 단체 컨설팅과정 성격을 갖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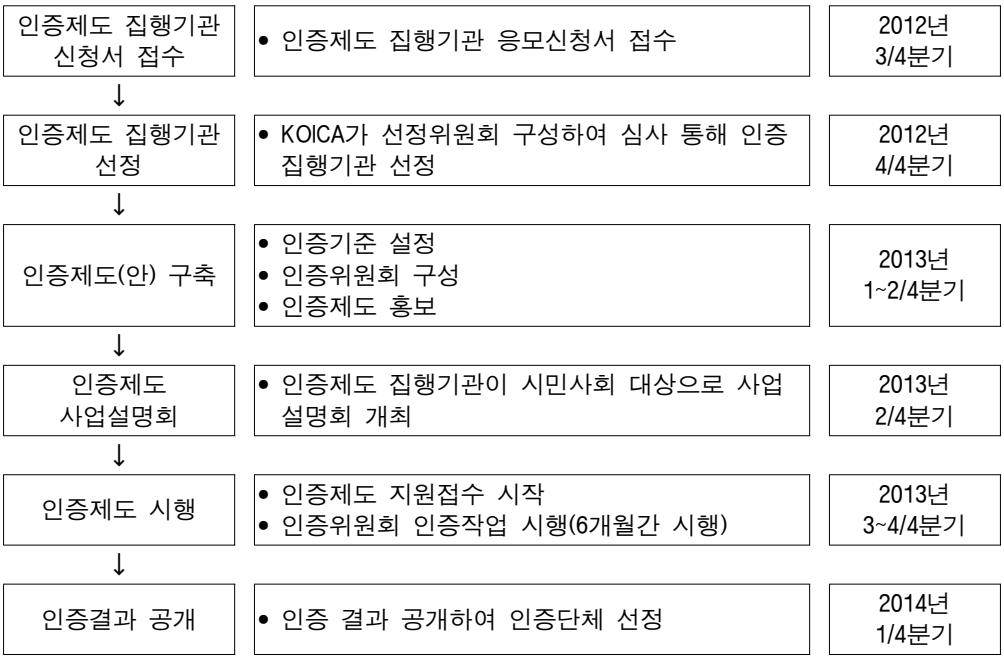
142) 윤리 및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은 NGO협의체나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신력있는 기관이 제작한 것을 활용한다.

지원조건	• 기부금 세금감면혜택 단체 • 정부에 공인된 법적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 • 윤리 및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준수를 동의한 단체
기준	• 단체의 정체성 및 조직구조 • 개발협력 철학 및 관리 역량 • 개발협력 파트너 및 협력관계 • 한국사회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 재정상태, 재정관리 및 위험관리 체계
제출서류	① 지원서 ② 가치, 비전, 미션 선언문 ③ 정관 ④ 지난 1년간의 이사회 회의록 ⑤ 현 이사회 구성원 관련 내용(이름, 소속, 직위, 임기, 주소, 연락처) ⑥ 이사회 조직 설명(역할) ⑦ 단체 조직도 ⑧ 법적 등록서류 ⑨ 최근 연간보고서 ⑩ 최근 외부회계감사보고서 ⑪ 현재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실행계획서 ⑫ 한국 내 사업이해 관계자(공여자, 정부, 기업, 회원, 직원 및 기타) 수원국 내 사업이해 관계자(현지 중앙 및 지방 정부, 파트너기관, 수혜자, 직원 및 기타) 리스트 ⑬ 현재 실행하는 사업 평가서 ⑭ 인사정책원칙 ⑮ 재정정책원칙 ⑯ 직원의 업무설명서 ⑰ 직원 평가양식

인증제도는 〈그림 6-3〉과 같은 과정을 거쳐 구축한다. 인증제도는 한국 사회에서 처음 시도되는 제도이며 파급효과가 큰 제도이므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작한다. 또한 인증제도의 핵심인 '인증집행기관'은 철저한 선정과정을 거쳐 선발한다.

<그림 6-3> 인증제도 시행 절차

업무단계	주요내용	시행일정
인증제도 집행기관 선정(안) 마련	• KOICA가 인증제도 집행기관 선정(안) 마련	2012년 2/4분기
↓		
인증제도 설명회	• KOICA가 인증제도 및 인증제도 집행기관 선발 과정 설명	2012년 2/4분기
↓		



인증제도를 실시한 오랜 경험을 보유한 호주의 AusAID나 개발도상국 CSO로서는 성공적인 자체 인증 관련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캄보디아 Cooperation Committee for Cambodia(CCC)의 Voluntary NGO Certification System은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인증제도에 대한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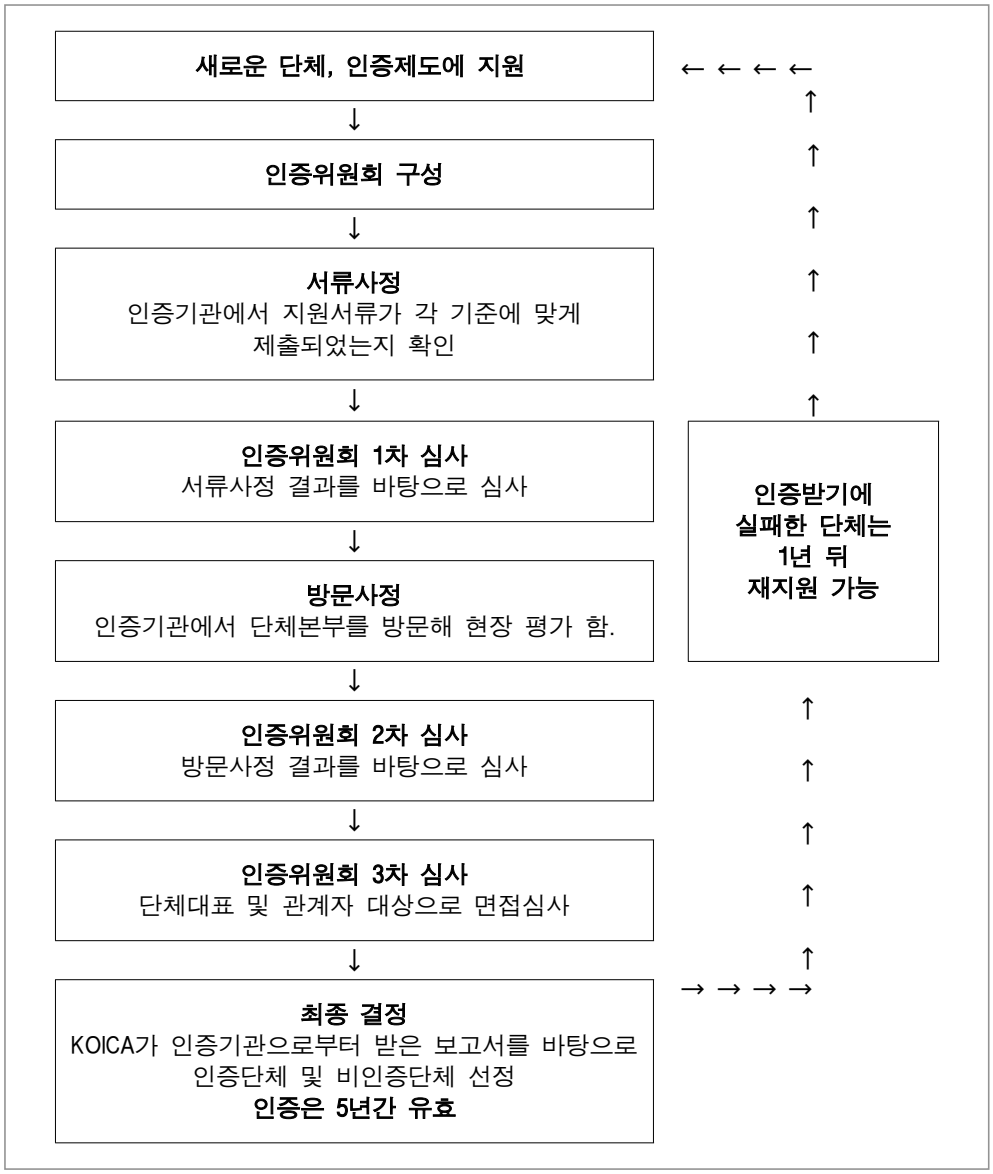
호주의 인증제도에서는 〈그림 6-5〉와 같이 응모단체들의 제출서류심사 및 단체 방문심사, 최종심사라는 세 단계를 거쳐 인증여부가 결정되며, AusAID가 직접 인증작업을 진행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캄보디아의 제도에서는 〈그림 6-6〉과 같이 응모단체들이 사전예비심사(pre-requisite)를 거쳐 서류심사와 현장방문심사 및 최종심사에서 Certificate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반해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서는 〈그림 6-4〉와 같이 집행기관이 서류사정, 방문사정을 거치고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가 서류사정결과심사, 방문사정결과심사를 거쳐 직접면접심사를 하는 등 총 5번의 심사 실시 후 KOICA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KOICA는 이를 바탕으로 인증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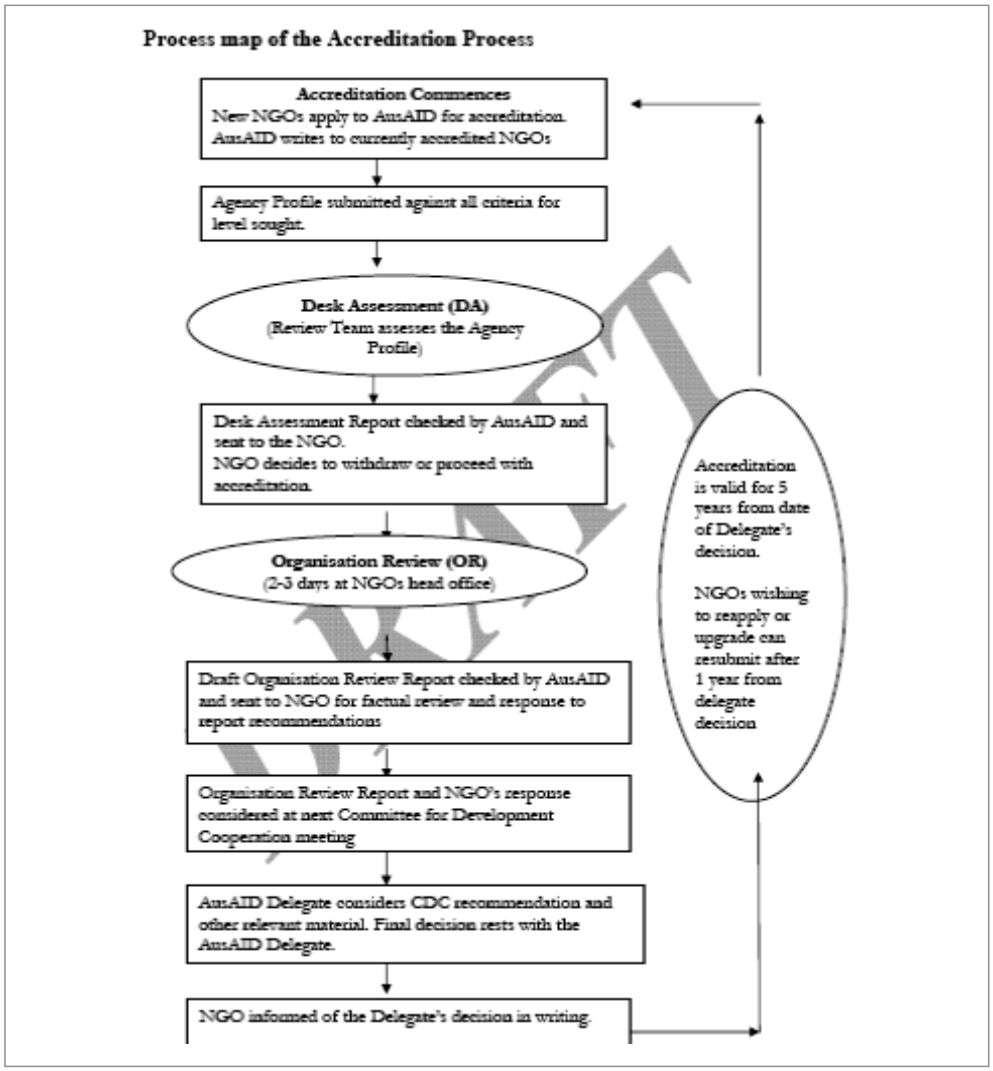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의 인증제도는 KOICA의 공개경쟁 선발과정을 거쳐 업무를 위탁받은 외부 전문기관이 진행하고, 인증위원회는 KOICA 관계자, 시민사회 전

문가, 개발협력 전문가가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법률, 회계 전문가 및 분야별, 지역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인증의 효력은 5년간 유효하고, 인증을 받지 못한 단체는 1년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그림 6-4> 인증제도의 진행 절차 흐름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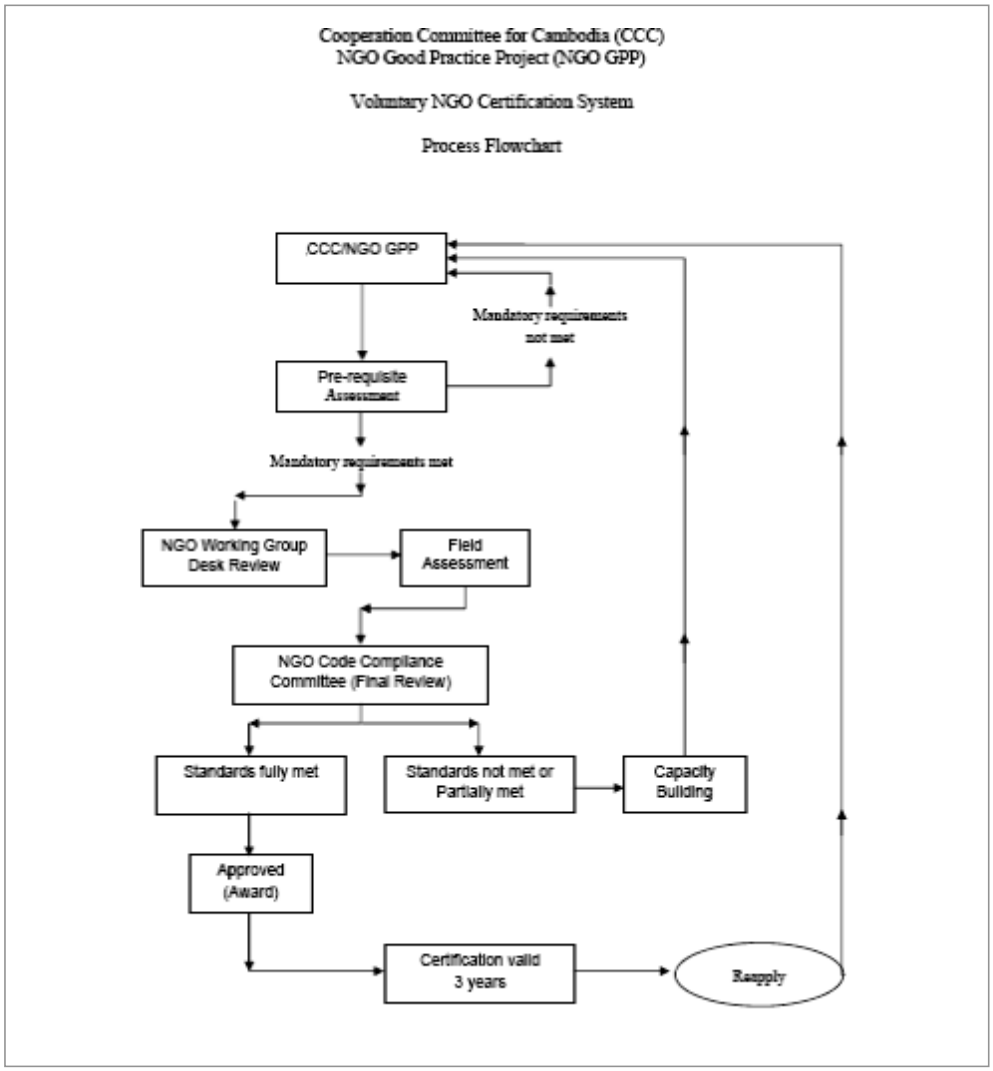


<그림 6-5> 호주의 인증제도 절차 안(draft) 흐름도[143)]



143) AusAID. 2011. NGO Accreditation Guidance Manual: Discussion Draft. Canberra. AusAID.

<그림 6-6> 캄보디아 CCC의 Voluntary NGO Certification System 절차 흐름도[144)]



144) http://www.ccc-cambodia.org/certification-system.html

3)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의 실행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은 〈그림 6-7〉과 같이 실행한다.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서는 대상단체를 선발하는 기준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본 프로그램 도입 시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많은 개발NGO들의 지원이 예상된다. 그러나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은 대규모의 자금을 전문적으로, 책무성을 갖고 집행해야 한다. 따라서 다소 역량이 부족한 단체는 중견단체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림 6-7>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 수행절차 및 시행 일정

업무 단계	주요내용	시행일정
사업 설명회	• 시민사회대상 전략적파트너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 신규단체 지원 프로그램 취지, 배경 - 사업시행 일정	전년도 2/4분기
↓		
사업기본계획서 접수	• KOICA가 온라인으로 접수 • 필요 시 인증서, 외부회계보고서등의 관련서류는 방문접수	전년도 3/4분기
↓		
사업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면접 심사하며, 필요시 방문심사를 실시	전년도 4/4분기
↓		
사업계획수립	•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전년도 4/4분기
↓		
사업계획 심의·승인	• KOICA 이사회 의결 및 외교통상부 장관 승인, 사업선정결과 단체에 통보	전년도 4/4분기
↓		
사업실행계획서 접수	• 심사내용, 지원금확정내용 반영한 사업 실행계획서 접수	사업1년차 1/4분기(1월)
↓		
약정체결	• KOICA 이사장과 단체대표간 체결	사업1년차 1/4분기(1월)
↓		
1차 자금 지원	• 약정체결 이후 14일 이내 지원금의 70% 지급	약정 후 14일 이내
↓		

사업착수	• 약정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 착수	약정 후 2개월 이내
↓		
사업착수보고서 제출	• 사업착수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송금확인증, 현지사용 영수증, 사진)	사업착수 14일 이내
↓		
사업중간보고서 제출	• 약정체결 시 KOICA가 지정하는 날짜까지의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 1개월 이내 제출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 영수증 포함)	사업2년차 3/4분기
↓		
2차 자금 지원	• 중간보고 검토완료 후 14일 이내 지원금의 30% 지급	사업2년차 3/4분기
↓		
결과보고서 제출	• 총 사업기간 동안의 실적을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 영수증 등 포함)	사업종료 차년도 1/4분기
↓		
사업결과평가	• 종료사업에 대하여 CSO코디네이터, KOICA 본부 및 현지사무소(KOICA-CSO데스크) 혹은 공관이 종합적으로 실시함.	사업종료 차년도 1/4분기
↓		
사업결과 공유포럼 및 사업설명회 개최	• 당기 사업 참여단체 및 차기 사업응모 단체 포함 관련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결과를 공유하는 포럼 개최 • 차기 사업설명회 동시 개최	사업종료 차년도 1/4분기

3. 창의적개발을 위한 환경조성

가.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

창의적(innovative)개발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한국 CSO들이 주로 수행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사업 방식을 넘어 다른 분야, 형식, 지역 및 내용의 다양한 개발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진행되는 KOICA의 '민간단체지원사업'에는 기존의 해원협 회원단체 중심의 전통적인 개발NGO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각계 각층의 관심과 참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향후 KOICA의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는 전통적인 개발NGO

외에 다양한 성격의 많은 CSO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 특히 여성단체, 협동조합단체, 주민조직운동단체, 공정무역단체, 교사·의사·간호사 등 직능별단체, 과학기술단체, 학술단체, 사회복지단체, 인권단체, 교육기관, 장애인단체, 종교단체, 보건의료단체 등은 이미 국내외에서 나름대로의 전문성에 기반하는 사업을 수행한 경험과 역량이 있을 것이다.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다양한 시민사회의 개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창의적'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영국 CSO들을 지원하는 영국의 'GPAF(Global Poverty Action Fund)-Innovation Window'사업에 대해 DFID는 〈박스 6-2〉와 같이 '창의(Innovation)'를 정의한다.

<박스 6-2> 영국 GPAF-Innovation Window 사업이 규정하는 '창의'[145]

"Innovation does not necessarily mean 'brand new' but could be an approach **applied for the first time** in a particular country or countries : or **new ways** of applying·adapting·developing an existing technique or initiative. We also understand innovation to mean **experimentation**, with the risk of failure (as long as lessons are clearly learned and the implications of failure are appropriately considered) : **inspiration** which is the creative process of looking at entrenched problems with fresh eyes : **genuine participation** of people most affected by a problem to release more energy for ideas : and from **looking more at what works and why**."

"창의(Innovation)는 반드시 새로운 것(brand new)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신 특정한 국가나 많은 국가들에서 처음으로 적용하는 하나의 접근법(applied for the first time)이 창의가 될 수 있다. 또는 기존의 기술이나 전략을 신청·적용·개발하는 새로운 방법들(new ways)을 창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창의를 실패의 위험을 갖고 있는 실험(experimentation)이라고 이해한다. 이를 통해 교훈을 명확하게 얻었을 때나 실패가 갖는 함의가 적절히 고려되는 한 창의라고 할 수 있다. 또는 신선한 관점으로 이미 확립된 문제들을 창의적인 과정으로 바라보는 영감(inspiration)을 창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이디어들에 대해 더 많은 에너지를 발산하게 하는 문제들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진정한

145) http://www.dfid.gov.uk/Documents/funding/gpaf/glob-pov-act-fnd-innov-gnt-guide-appls.pdf

참여(genuine participation)를 창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창의는 무슨 일을 하는지와 왜 하는지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는 것에서부터(looking more at what works and why)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영국의 사례를 적용해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의 범주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사업, 기존의 사업 기술이나 방식을 새롭게 적용 및 발전시킨 사업, 개발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방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새로운 지역에서의 사업, 창의적인 개발사업 수행형태'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표 6-9〉는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의 요약된 내용이다.

<표 6-9>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

구성	내용
성격	• 전통적인 방식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을 넘어선 다른 분야, 형식, 지역 및 내용의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다양한 CSO를 지원함.
지원조건	•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 • 신규단체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단체들은 사업 2년차 이상인 CSO만 참여 가능 • 기존 KOICA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연구기관, 학회 및 대학
선발방식	• 연 1회 공모방식
실행기관	• KOICA
사업기간	• 단년
사업비	• 사업당 연간 5천만~1억 원 (최대 3개 사업 1억5천만~3억 원)
대응자금비율	• 80%(KOICA) : 20%(자부담)
간접비	• 10% (인건비로 100% 사용가능)
사업비지급시기	• 계약 후 70%, 중간보고 후 30%
단체당 지원가능 사업 수	• 3개
심사	• KOICA 관계자, 시민사회 전문가, 개발협력 전문가 및 지역, 분야, 기술 전문가로 구성 •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KOICA 현지사무소와 같이 공인된 기관 혹은 단체나 개인을 통해 사업장 현장방문 조사 실시 • 심사기준은 '민간단체지원사업'의 내용을 참고하되,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사업안들을 심사할 수 있도록 창의성에 중점을 둔 기준 마련
평가	• KOICA가 직접 또는 독립적인 외부 기관(개인)을 위촉하여 수행

사업접수	• 온라인 접수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예산계획서, 단체소개서, 법적 등록증
중요사항	•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은 수원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그 범주에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로이 제안해 심사함. 그러나 종교적 포교나 정치 관련 및 영리적 목적을 위한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제한함.
중요사항	•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전체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지 않게 함. •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으로 발전된 사업은 중견단체 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 발전하도록 유도함.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은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들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신규단체들은 사업수행 경험이 2년차 이상인 단체들만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KOICA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연구기관, 학회 및 대학 등도 참여할 수 있다.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은 KOICA 내 관련 부서가 전담하며, 연 1회 공모제도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단년제 사업이며, 1개 단체 당 최대 3개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의 사업비 규모는 사업별로 연간 5천만~1억 원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1개 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비 규모는 총 3개, 1억 5천만~3억 원이다. 그리고, 다양한 CSO들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전체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의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지 않게 한다. 사업비 지원은 사업 착수 시 70%, 중간평가 후 30% 지원하며, 사업비 대응(매칭)비율은 KOICA가 80%를 지원하고 CSO가 20%를 부담한다. 간접비는 지원사업비의 10%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인건비로 100%까지 활용가능하다.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는 KOICA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하며, 기본적으로 KOICA 관계자, 시민사회 인사 및 개발협력 전문가, 분야, 지역 및 기술 전문가가 참여한다. 사업심사는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사업현장방문을 한다. 사업현장방문조사는 필요시 공인된 기관 및 개인 즉, KOICA 현지사무소나 관련기관, 개인을 통해 실시한다. 사업심사기준은 현재 KOICA의 '민간단체지원사업'에서 활용하는 내용을 참고하되,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사업안

들을 심사할 수 있도록 창의성에 중점을 둔 기준을 설정한다. 한국 개발NGO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행해 온 사회적 서비스 제공 사업보다는 수원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좀 더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 사업 및 새로운 지역, 대상, 내용, 형태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 재활, 사회적 기업, 적정기술, 주민조직, 협동조합, 위험국가, 정책애드보커시, 소외자 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창의적개발지원 사업을 심사,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창의'라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활용하여 정치적·이념적 활동, 종교 포교 및 영리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응모하여 지원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개발NGO보다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경험이 적은 CSO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초기에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사업 성격과 수행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진행하고 이에 참여한 단체만 응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평가는 KOICA가 직접 또는 독립적인 외부기관이나 개인을 위촉하여 수행한다. 중간평가는 사업수행 3/4분기에 실시하고, 사업결과평가는 사업 차년도 1/4분기에 실시한다.

<그림 6-8>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 수행절차 및 시행 일정

업무단계	주요내용	시행일정
사업설명회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반적 내용 •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 취지, 배경 • 사업시행 내용과 일정	전년도 1/4분기
↓		
교육	• 참석대상은 사업담당자 필수 • 기간은 2일 이상으로 구성 • 내용 - 국제개발협력사업 일반 - CSO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특징 - 사업발굴, 형성, 실행, 모니터링, 평가 - 사업 보고서작성 및 회계 관련사항 - 현지사업수행자 및 본부 담당자 업무 관련사항	전년도 1/4분기
↓		

사업기본계획서 접수	• KOICA가 온라인으로 접수	전년도 3/4분기
↓		
현지타당성조사	• CSO코디네이터, KOICA 현지사무소(KOICA-CSO데스크) 혹은 공관과 협력하여 실시	전년도 4/4분기
↓		
사업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실시	전년도 4/4분기
↓		
사업계획수립	•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전년도 4/4분기
↓		
사업계획 심의·승인	• KOICA 이사회 의결 및 외교통상부 장관 승인, 사업선정결과 단체에 통보	전년도 4/4분기
↓		
사업실행계획서 접수	• 심사내용, 지원금확정내용 반영한 사업 실행계획서 접수	당해년도 1/4분기(1월)
↓		
약정체결	• KOICA 이사장과 단체대표간 체결	당해년도 1/4분기
↓		
1차 자금 지원	• 약정체결 이후 14일 이내 지원금의 70% 지급	약정 후 14일 이내
↓		
사업착수	• 약정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 착수	약정 후 2개월 이내
↓		
사업착수보고서 제출	• 사업착수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송금확인증, 현지사용영수증, 사진)	사업착수 14일 이내
↓		
사업중간보고서 제출	• 약정체결 시 KOICA가 지정하는 날짜까지의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 1개월 이내 제출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 영수증 포함)	당해년도 3/4분기
↓		
2차 자금 지원	• 중간보고 검토완료 후 14일 이내 지원금의 30% 지급	당해년도 3/4분기
↓		
결과보고서 제출	• 총 사업기간 동안의 실적을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 영수증 등 포함)	차년도 1/4분기(1월)
↓		

사업결과평가	• 종료사업에 대하여 CSO코디네이터, KOICA 본부 및 현지사무소(KOICA-CSO데스크)혹은 공관이 종합적으로 실시함.	차년도 1/4분기
↓		
사업결과 공유포럼 및 사업설명회 개최	• 당해년도 사업참여 단체 및 차년도 응모단체 포함 관련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결과를 공유하는 포럼개최 • 차년도 사업설명회 동시 개최	차년도 1/4분기

영국의 DFID는 2010년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인 'Global Poverty Action Fund (GPAF)의 Innovation Window'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빈곤퇴치를 위해 기존의 사업과는 다른 형식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Service delivery'와 'Empowerment and accountability', 그리고 'Conflict, security and justice'라는 세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한다. 〈표 6-10〉는 'GPAF-Innovation Window'의 내용을 보여준다. 이를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에 참고할 수 있다.

<표 6-10> 영국의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인 'GPAF-Innovation Window'[146]

구성	내용
규모	• GPAF 전체의 10% (연간 US$ 644만)
목적	• 빈곤감소에 대한 창의적 접근 장려
위험도	• 고-중 위험도 지역
지역	• DFID가 지정한 Innovation 사업대상 국가
지원금 범위	• 사업 당 약 US$ 40만 • 단체 당 2개 사업 지원가능
기간	• 3년
매칭	• 100% 지원
자격	• 영국의 소규모 CSO • 지난 3년간 평균 수입이 US$ 80만 이하인 단체

〈박스 6-3〉은 영국의 여성CSO인 WOMANKIND worldwide가 CSCF를 통해 수원국의 여성들이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을 돕는 정책 애드보커시 사업으로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의 좋은 예이다.

WOMANKIND worldwide는 CSCF를 통해 지원받는 2건의 사업 모두 이와 같이 전

146) http://www.dfid.gov.uk/Working-with-DFID/Funding-opportunities/Not-for-profit-organisations/Global-Poverty-Action-Fund/

통적인 사회적 서비스 제공 사업보다는 정책애드보커시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다. 이 같은 WOMANKIND worldwide의 사업은 기존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직업훈련,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과는 달리 여성의 자력화(empowerment)를 통해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여성들이 사회구조적인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과 계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빈곤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박스 6-3> CSCF를 통한 WOMANKIND worldwide의 여성지원사업[147]

○ 사업 1
- 제목 : 페루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해결 : 정책과 실천 강화
- 지역 : 페루
- 내용 : 이 프로젝트는 정부의 정책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모니터하는 여성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해 여성의 빈곤과 배제, 그리고 주변부화(poverty, exclusion and the marginalisation)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사업기간 : 2009.10.~2011.12.

○ 사업 2
- 제목 : 성 불평등의 결과로써 나타난 가나 여성들의 HIV 감염에 대한 민감성 감축
- 지역 : 가나
- 내용 :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현재 성 불평등으로 생기는 HIV 감염에 불균형적으로 민감한 여성의 수를 줄이기 위해 가나 정부가 실행하는 'ABC 프레임워크(ABC framework)'에 대안(alternative)을 제시하는 것임.
- 사업기간 : 2009.10.~2011.12.

이러한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은 수원국의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OECD/DAC 회원국 중 영국과 오스트리아, 스웨덴은 CSO의 개발사업지원 시 반드시 수원국의 CSO와 협력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은 수원국의 CSO와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결과적으로 수원

147) www.dfid.gov.uk/Documents/funding/ongoing-cscf-projects.xls

국의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스 6-4〉는 연구팀이 지난 4월에 방문한 네팔 현지조사 중 영국의 CSCF 지원을 받는 CSO인 Disability and Development Partners의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이 단체는 네팔의 장애인 관련 정책애드보커시 단체인 Disabled Human Rights Center를 지원하고 있다. 이 내용을 통해 CSCF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관련된 네팔의 시민사회 역량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박스 6-4> 영국 CSCF를 통한 네팔의 장애인분야 시민사회 활성화 사례

○ 영국의 Disability and Development Partners가 CSCF를 통해 2002년부터 네팔의 장애인 정책애드보커시 단체인 Disabled Human Rights Center를 지원함.

○ Disabled Human Rights Center는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주로 다음과 같은 애드보커시사업을 진행함.
- 장애우 법적권리 인지제고, 무료 인권교육
- 주간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 (Radio Nepal)
- 월간지 발간
- 지식보급 : 마을 방문을 통해 지역주민이 지역정부에게 직접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카트만두의 법적 프레임이 지역 정부에서도 실행될 수 있도록 그 차이를 줄이는 것이 목표임.

○ Disabled Human Rights Center는 CSCF 지원을 통해 다음의 이점을 얻음
-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점.
- 전/후 비교하여 역량이 현저히 강화되었음.
- 프로포절 작성, 프로젝트 계획수립, 사업 관리능력, 단체인력양성, 조직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됨.

이와 같이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은 기존의 개발NGO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해 본 CSO가 새로운 내용, 방식, 형태 및 지역에서 다양한 창의성을 가진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다소 실험적이어도 의미가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심사단계에

서 시민사회의 특성과 사업을 잘 이해하는 주체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이 된 사업들은 중견단체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4. ODA정책보완

가. 특정 지역 및 분야 지원프로그램

특정 지역 및 분야 지원프로그램은 CSO의 사업이 정부의 원조정책과 긴밀한 관련성을 맺고 조화(harmonization)를 이루어 정책적 보완을 하도록 특정한 지역이나 분야에서 CSO의 개발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빈곤퇴치기여금사업'의 특성과 같은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향후 정부의 원조정책 변화에 따라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KOICA사업에 NGO들이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t)로 참여한 성격과 같은 맥락이다. 역량 있는 NGO들이 특정 지역 및 분야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을 발휘하고 개발도상국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표 6-11> 특정지역 및 분야 지원프로그램

구성	내용
성격	• 정부가 원조정책과 긴밀한 관련성을 맺고 정책적 보완을 위해 특정한 지역이나 분야에서 CSO가 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향식(top-down)으로 추진함.
지원조건	•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 • 신규단체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단체들은 사업 2년차 이상인 CSO만 참여 가능
선발방식	• 연 1회 공모방식
실행기관	• KOICA
사업기간	• 3년 1회 공모
사업비	• 사업당 연간 1억 5천만원~3억원(3년간 총 4억 5천만~9억원)
대응자금비율	• 90%(KOICA) : 10%(자부담)
간접비	• 8%(인건비로 100% 사용가능)
사업비지급시기	• 계약 후 70% 중간보고 후 30%
단체당 지원가능 사업 수	• 1개

심사	• KOICA 관계자, 시민사회 전문가, 개발협력 전문가 및 지역, 분야 전문가로 구성 •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KOICA 현지사무소와 같이 공인된 기관 혹은 단체나 개인을 통해 사업장 현장방문 조사 실시 • 심사기준은 '민간단체지원사업' 및 '빈곤퇴치기여금사업'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마련
평가	• KOICA가 직접 또는 독립적인 외부 기관(개인)을 위촉하여 수행
사업접수	• 온라인 접수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예산계획서, 단체소개서, 법적 등록증
중요사항	• 정부의 원조정책에 따라 수요가 급증할 수 있음. 이에, 관련 지역 및 분야에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CSO를 주로 선정해야 함.

특정 지역 및 분야 지원프로그램은 정부의 원조정책에서 요구하는 필요에 따라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CSO의 역량을 제고할 기회가 주어지기보다는 이미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단체의 참여가 우선시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는 신규단체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년차 단체를 제외하고 2년차 이상의 단체들이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CSO들이 참여할 수 있다.

특정 지역 및 분야 지원프로그램은 KOICA가 직접 수행하며, 참여하는 단체의 선발은 3년 1회 공모제도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업기간은 3년을 주기로 하고, 1개 단체 당 지원 가능한 최대 사업 수는 1개로 제한한다. 개별 사업 당 지원하는 사업비 규모는 1.5억~3억원으로 설정한다. 한 단체 당 3년간 총 4억 5천만원~9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비 지원은 사업 착수 시 70%, 중간평가 후 30% 집행한다. 사업비 대응(매칭)비율은 KOICA 지원이 90%이며, 단체 자부담은 10%로 한다. 이는 정부의 원조정책상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CSO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간접비는 지원사업비의 8%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인건비로 100%까지 활용가능하다.

특정 지역 및 분야 지원프로그램의 사업심사는 KOICA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한다. 심사위원회는 KOICA 관계자, 시민사회 인사, 개발협력 전문가, 특정지역 및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심사는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필수로 한다. 사업현장방문조사는 필요시 공인된 기관 즉 KOICA 현지사무소나 관련기관, 개인을 통해 실시한다. 사업심사기준은 현재 KOICA가 '빈곤퇴치기여금'과 '민간단체지원사업'에서 활용하는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지역이나 분야에 대한 정부의 국별지원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포함한 원조정책 중 주요관련 내용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사업접수는 온라인 접수를 기본으로 하며, 신청서류는 사업계획서, 사업예산계획서, 단체소개서 및 법적 등록증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한다. 사업평가는 KOICA가 직접 또는 독립적인 외부기관이나 개인을 위촉하여 수행한다. 중간평가는 사업수행 2차년도 3/4사분기에 실시하고, 사업결과평가는 사업 종료 후 차년도 1/4사분기에 실시한다. 특정 지역 및 분야 지원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원조정책에 따른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된다.

특정 지역 및 분야 지원프로그램은 하향식(top-down)사업으로 원조정책의 변화에 따라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많은 수의 사업단위가 신설될 수 있으므로 기존에 다양한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갖춘 CSO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원조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사업효과성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기획 및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지역 및 분야 지원프로그램은 정부정책과의 깊은 연계성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민간단체지원사업'과는 사업성격 및 수행방식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 응모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충분히 그 특성을 숙지하고 참여토록 한다.

<그림 6-9> 특정 지역 및 분야 지원프로그램 수행절차 및 시행 일정

업무단계	주요내용	시행일정
사업설명회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반적 내용 • 특정지역 및 분야 지원 프로그램 취지, 배경 • 사업관련 정부 ODA정책 • 사업시행 내용과 일정	전년도 1/4분기
↓		
교육	• 참석대상은 사업책임자 및 실무자 필수 • 내용 - 국제개발협력사업 일반 - 정부ODA사업과의 연계성 - CSO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특징 • 사업발굴, 형성, 실행, 모니터링, 평가 • 사업 보고서작성 및 회계 관련사항 • 현지사업수행자 및 본부담당자 업무 관련사항	전년도 1/4분기
↓		

사업기본계획서 접수	• KOICA가 온라인으로 접수	전년도 3/4분기
↓		
현지타당성조사	• CSO코디네이터, KOICA 현지사무소(KOICA-CSO데스크) 혹은 공관과 협력하여 실시	전년도 4/4분기
↓		
사업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실시	전년도 4/4분기
↓		
사업계획수립	•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전년도 4/4분기
↓		
사업계획 심의·승인	• KOICA 이사회 의결 및 외교통상부 장관 승인, 사업선정결과 단체에 통보	전년도 4/4분기
↓		
사업실행계획서 접수	• 심사내용, 지원금확정내용 반영한 사업실행계획서 접수	당해년도 1/4분기(1월)
↓		
약정체결	• KOICA 이사장과 단체대표간 체결	당해년도 1/4분기(1월)
↓		
1차 자금 지원	• 약정체결 이후 14일 이내 지원금의 70% 지급	약정 후 14일 이내
↓		
사업착수	• 약정체결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착수	약정 후 2개월 이내
↓		
사업착수보고서 제출	• 사업착수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송금확인증, 현지사용영수증, 사진)	사업착수 14일 이내
↓		
사업중간보고서 제출	• 약정체결시 KOICA가 지정하는 날짜까지의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 1개월 이내 제출(사업비집행내역, 증빙 영수증 포함)	당해연도 3/4분기
↓		
2차 자금 지원	• 중간보고 검토완료 후 14일 이내 지원금의 30% 지급	당해연도 3/4분기
↓		

결과보고서 제출	• 총 사업기간 동안의 실적을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 (사업비집행내역, 증빙 영수증 등 포함)	차년도 1/4분기(1월)
↓		
사업평가	• 종료사업에 대하여 CSO코디네이터, KOICA 본부 및 현지사무소(KOICA-CSO데스크) 혹은 공관이 종합적으로 실시함.	차년도 1/4분기
↓		
사업결과 공유포럼 및 사업설명회 개최	• 당해년도 사업참여 단체 및 차년도 응모단체 포함 관련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결과를 공유하는 포럼 개최 • 차년도 사업설명회 동시 개최	차년도 1/4분기

5. 국제개발파트너십

가. 국제 및 현지CSO지원 프로그램

국제 및 현지CSO지원 프로그램은 전문성을 가진 국제 및 수원국의 현지CSO를 지원하여 수원국의 빈곤퇴치와 사회·경제적 발전에 더욱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수원국에서 다양한 이유로, 한국정부가 현지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를 직접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한국ODA 사업 및 한국CSO 사업과 연계성 및 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지원하여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특징이 있다.

<표 6-12> 국제 및 현지CSO지원 프로그램

구성	내용
성격	• 국제적 추세 및 수원국의 필요에 맞는 국제 및 현지CSO를 지원하여 효과적으로 수원국의 빈곤퇴치와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함.
지원조건	• 수원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한 경험이 있으며, 수원국 정부에 법적 등록이 되어 있는 CSO • 국제CSO의 경우 UN 및 각종 국제기구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
선발방식	• 연 1회 공모방식
실행기관	• KOICA 현지사무소(혹은 공관)
사업기간	• 단년제(최대 지원가능 기간은 3년)
사업비	• 사업당 US$ 1만~30만

대응자금비율	• KOICA 100% 지원
간접비	• 8%(인건비로 100% 사용가능)
사업비지급시기	• 계약 후 70%, 중간보고 후 30%
단체당 지원가능 사업 수	• 1개
심사	• KOICA 현지사무소 내에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은 KOICA 현지 사무소 한국인 직원, 현지인 직원 및 필요시 KOICA 본부 직원 및 시민사회 전문가, 개발협력 전문가, 지역, 분야 전문가로 구성 • 신청금액이 US$ 10만 이상 시 KOICA 본부의 관련 부서에서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결정 • 서류심사, 면접심사 및 현지 방문심사를 기본으로 실시 • 심사기준은 '민간단체지원사업'의 기준을 참고하되 사업을 시행하는 국별로 호주 등 KOICA 사무소가 주재한 수원국에서 국제 및 현지 CSO지원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국가들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평가	• KOICA 현지사무소가 직접 또는 독립적인 외부 기관(개인)을 위촉하여 수행
사업접수	• KOICA 현지사무소 방문접수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예산계획서, 단체소개서, 법적 등록증 • 국제CSO의 경우 국제기구와의 사업협약 관련 문건
중요사항	• 수원국 현지의 상황 상 한국 ODA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회, 경제적 영역부분이나, 한국ODA사업 및 한국CSO의 사업과 연계성이 있어 사업효과성이 높을 경우 지원 • 현지에서 실질적인 검증장치를 두어 적절한 대상 단체에 대한 지원 실시

국제 및 현지CSO지원 프로그램은 3년 이상 수원국 현지에서 사업을 한 경험이 있으며, 수원국 정부에 법적 등록이 되어 있는 CSO단체를 지원한다. 특별히 국제CSO의 경우 ECOSOC(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포괄적 협의자격 여부 등 UN기구의 NGO 파트너십 제도 및 각종 국제기구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로 한정한다.

국제 및 현지CSO지원 프로그램은 공모제도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수원국 내의 KOICA 현지사무소가 전담하며, KOICA 현지사무소가 없는 국가의 경우 공관에서 담당한다. 이 프로그램은 단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한 단체 당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한 단체 당 지원가능 사업 수는 1개로 제한한다. 사업비 규모는 개별 사업 당 US$ 1만~30만으로 설정한다. 사업비 지원은 사업 계약 후 70%, 중간보고 후

30%를 지원한다. 사업비 대응(매칭)비율은 KOICA지원 100%로 한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간접비 지원은 지원사업비의 8%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인건비로 100% 활용 가능하다.

국제 및 현지CSO지원 프로그램의 심사는 기본적으로는 KOICA 현지사무소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심사위원회는 KOICA 현지사무소 한국인 직원 및 현지인 직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KOICA 본부의 관련 부서 직원도 참여한다. 그러나 사업비 규모가 크고(US$ 10만 이상), 한국의 원조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KOICA 본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사무소와 협의한 후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KOICA 관계자, 시민사회 전문가, 개발협력 전문가 및 필요시 해당 국가, 지역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심사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및 방문심사를 기본으로 한다. 심사기준은 '민간단체지원사업'의 기준을 참고하되 사업을 시행하는 국별로 호주 등 KOICA 사무소가 주재하고 있는 수원국에서 국제 및 현지CSO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국가들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다.

이 프로그램의 평가는 KOICA 현지사무소가 직접 또는 독립적인 외부기관(개인)을 위촉하여 수행한다. 중간평가는 사업당해년도 3/4분기에 실시하고, 사업결과평가는 사업종료 후 차년도 1/4에 실시한다. 사업접수는 KOICA 현지사무소 방문접수를 기본으로 한다. 신청서류는 사업계획서, 예산계획서, 단체소개서 및 법적 등록증, 국제CSO의 경우 국제기구와의 협의적 지위 혹은 사업 참여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을 기본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그림 6-10〉과 같은 시행일정을 따라 진행된다.

<그림 6-10> 국제 및 현지CSO지원 프로그램 수행절차 및 시행 일정

업무단계	주요내용	시행일정
사업설명회	• 한국 ODA의 일반적 내용 • 국제 및 현지CSO지원 프로그램 취지, 배경 • 사업시행 방식 및 일정	전년도 2/4분기
↓		
사업기본계획서 접수	• KOICA 현지사무소 방문접수	전년도 3/4분기
↓		

현지타당성조사	• CSO코디네이터, KOICA 현지사무소(KOICA-CSO데스크) 혹은 공관과 협력하여 실시	전년도 4/4분기
↓		
사업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실시	전년도 4/4분기
↓		
사업계획수립	•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전년도 4/4분기
↓		
사업계획 심의·승인	• KOICA 이사회 의결 및 외교통상부 장관 승인, 사업선정결과 단체에 통보	전년도 4/4분기
↓		
사업실행계획서 접수	• 심사내용, 지원금확정내용 반영한 사업실행계획서 접수	당해년도 1/4분기(1월)
↓		
교육	• 참석대상은 사업책임자 및 실무자 필수 • 내용 - 사업 보고서작성 및 회계 관련사항 - 현지사업수행자 및 본부담당자업무 관련사항	당해년도 1/4분기
↓		
약정체결	• KOICA 현지사무소장(혹은 대사관 직원)과 단체대표간 체결	당해년도 1/4분기
↓		
1차 자금 지원	• 약정체결 이후 14일 이내 지원금의 70% 지급	약정 후 14일 이내
↓		
사업착수	• 약정체결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착수	약정 후 2개월 이내
↓		
사업착수보고서 제출	• 사업착수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송금확인증, 현지사용영수증, 사진)	사업착수 14일 이내
↓		
사업중간보고서 제출	• 약정체결시 KOICA가 지정하는 날자까지의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 1개월 이내 제출 (사업비집행내역, 증빙 영수증 포함)	당해년도 3/4분기
↓		
2차 자금 지원	• 중간보고 검토완료 후 14일 이내 지원금의 30% 지급	당해년도 3/4분기
↓		

결과보고서 제출	• 총 사업기간 동안의 실적을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 (사업비집행내역, 증빙 영수증 등 포함)	차년도 1/4분기(1월)
↓		
사업결과평가	• 종료사업에 대하여 CSO코디네이터, KOICA 본부 및 현지사무소(KOICA-CSO데스크) 혹은 공관이 종합적으로 실시함.	차년도 1/4분기
↓		
사업결과 공유포럼 및 사업설명회 개최	• 당해년도 사업참여 단체 및 차년도 응모단체 포함 관련자 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결과를 공유하는 포럼 개최 • 차년도 사업설명회 동시 개최	차년도 1/4분기

국제 및 현지CSO지원 프로그램은 기존에 KOICA가 유사한 사업방식을 시행한 경험이 없지만 수원국에서는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사업이다. KOICA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시 많은 국제 및 현지CSO들이 지원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과중한 업무 부담이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 사업수행을 담당할 KOICA 현지사무소나 공관은 현재 이러한 방식의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없으며, 인적, 조직적, 제도적 준비가 부족하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작업 없이 진행할 경우 큰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제 및 현지CSO지원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3인 이상이 근무하는 2~3개의 중점협력대상 국가에서부터 시작하여 프로그램 시행 준비가 된 국가로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박스 6-5〉는 연구팀이 방문한 네팔의 호주대사관에서 운영하는 Direct Aid Program을 수행하는 AusAID 직원 및 현지인 직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호주는 작은 규모이지만 현지CSO를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박스 6-5〉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성공적인 국제 및 현지CSO지원 프로그램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사업수행경험이 있는 현지인 직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박스 6-5> 호주의 네팔CSO지원 DAP프로그램관련 인터뷰[148]

"DAP에 매년 100여개의 네팔CSO가 지원하는데 이중 10~20개의 CSO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개별CSO들에게는 약 US$ 2만 규모로 지원한다."

"단체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신뢰성이 있고, 재정적으로 믿을 수 있으며, 실제 사무실을 두고 일을 하는 기관으로 호주의 공공외교정책과 맞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단체이다."

"사업관리와 관련된 일은 네팔현지인 직원 1인이 전담하며, 최종선정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다. 위원회는 외교관 1인, AusAID 직원 1인, 그리고 현지인 직원 1인으로 구성한다."

6. CSO개발역량강화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CSO들이 전문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량강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CSO개발역량강화' 분야에서는 다양한 CSO들이 수원국 현장에서 효과적인 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세 개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첫째는 '사업기초조사(baseline survey)', 둘째는 'CSO코디네이터', 셋째는 'KOICA-CSO데스크'이다. 이 중 CSO코디네이터와 KOICA-CSO데스크는 서로 긴밀히 연계되는 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CSO들은 수원국 개발사업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49]

가. 사업기초조사(baseline survey)지원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많은 CSO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발굴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적인 사업기초조사과정을 통한 사업발굴은

148) 연구팀이 2011년 4월 20일 네팔의 카투만두시의 호주대사관에서 실시하였다.

149)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한국해원원조단체협의회가 한국국제협력단의 위탁을 받아 실행하고 있는 NGO역량강화 사업은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다. 2011년 한국해원원조단체협의회는 개발NGO역량현황 분석과 역량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단순히 개발사업의 시작을 잘하는 것 이상으로 사업수행의 전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업기초조사지원 프로그램'은 〈표 6-13〉과 같은 내용으로 CSO들의 사업수행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표 6-13> 사업기초조사지원 프로그램

구성	내용
성격	• 전문성 있는 사업발굴 및 기획과정을 지원하여 CSO의 개발사업수행 활성화 및 역량강화에 기여
지원조건	•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CSO 중 전략적 파트너 및 국제 및 현지CSO를 제외한 모든 단체
선발방식	• 연 1회 공모방식
위탁 운영기관	• KOICA의 공개경쟁 선발과정을 통해 사업관리를 위탁받은 운영기관
사업기간	• 1년
사업비	• 사업 당 최고 2천만 원
대응자금비율	• KOICA 100% 지원
사업비지급시기	• 계약 후 100%
단체당 지원가능 사업 수	• 신규단체지원 프로그램 최대 3개(1년차 단체는 1개) • 중견단체지원 프로그램 최대 3개 •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 최대 3개 • 특정지역 및 분야 지원프로그램 최대 1개
심사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KOICA 관계자, 시민사회 전문가, 개발협력 전문가, 지역 및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사 •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기본으로 수행 • 심사기준은 실현 타당성과 본 사업과의 연계성, 적정 전문가 참여여부를 중심으로 구성
평가	• 위탁운영기관이 직접 또는 독립적인 외부 기관(개인)을 위촉하여 수행. 결과는 KOICA에 보고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함. • 중간평가는 없고 결과평가만 시행
사업접수	• 온라인 접수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예산계획서, 단체소개서, 법적 등록증

사업기초조사지원 프로그램은 KOICA의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들이 참여가능하다. 단 전략적 파트너와 국제 및 현지CSO는 제외한다. 〈박스 6-6〉과 〈박스 6-7〉은 각각 덴마크와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CSO사업기초조사 지원제도이다. 이를 통해 CSO들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업조사, 연구,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등을 별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사업기초조사지원 프로그램은 연 1회 공모제도 방식으로 진행하며,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은 KOICA의 공개경쟁 선발과정을 통해 사업관리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수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단년제이며, 단체 당 지원가능한 최대 사업 수는 신규단체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체는 최대 3개(1년차 단체는 1개), 중견단체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체는 최대 3개이다.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체는 최대 3개이며, 특정지역 및 분야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체는 최대 1개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기초조사지원 프로그램은 1개 사업 당 최대 2천만 원이다. 이 지원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업기초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비용, 현지 조사 및 국내에서의 연구, 워크숍, 세미나 등을 중심으로 사용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서 CSO직원의 항공비 등은 일정비율로 제한할 수도 있다. 사업발굴지원 금제도는 〈그림 6-11〉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사업기초조사지원 프로그램의 심사는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하며, KOICA 관계자, 시민사회 인사, 개발협력 전문가, 지역 및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심사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한다. 사업결과평가는 위탁운영기관이 직접 또는 독립적인 외부기관(개인)을 위촉하여 수행하고 결과는 KOICA에 보고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별다른 중간평가 없이, 사업종료 후 결과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접수는 온라인 접수를 기본으로 하고, 신청서류는 사업계획서, 예산계획서, 단체소개서, 법적 등록증을 기본으로 한다.

<그림 6-11> 사업기초조사지원 프로그램 수행절차 및 실시 일정

업무단계	주요내용	시행일정
운영기관선정	KOICA의 공개경쟁 선발과정 통해 사업을 위탁관리할 운영기관을 선정	전전년도 4분기
↓		
사업설명회	• 사업기초조사지원 프로그램 취지, 배경 • 사업시행 방식 및 일정	전년도 2/4분기
↓		
사업기본계획서 접수	• 운영기관이 온라인으로 접수	전년도 3/4분기
↓		

현지타당성조사	• CSO코디네이터, KOICA 현지사무소(KOICA-CSO데스크) 혹은 공관과 협력하여 실시	전년도 4/4분기
↓		
사업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실시	전년도 4/4분기
↓		
사업계획수립	•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전년도 4/4분기
↓		
사업계획 심의·승인	• KOICA 이사회 의결 및 외교통상부 장관 승인, 사업선정결과 단체에 통보	전년도 4/4분기
↓		
사업실행계획서 접수	• 심사내용, 지원금확정내용 반영한 사업 실행계획서 접수	당해년도 1/4분기
↓		
교육	• 참석대상은 사업책임자 및 실무자 필수 • 내용 - 사업 보고서작성 및 회계 관련사항 - 현지사업수행자 및 본부담당자업무 관련사항	당해년도 1/4분기
↓		
약정체결	• KOICA 현지사무소장(혹은 대사관 직원)과 단체대표간 체결	당해년도 1/4분기(1월)
↓		
자금지원	• 약정체결 이후 14일 이내 지원금의 100% 지급	약정 후 14일 이내
↓		
사업착수	• 약정체결 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착수	약정 후 1개월 이내
↓		
결과보고서 제출	• 총 사업기간 동안의 실적을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 (사업비집행내역, 증빙 영수증 등 포함)	당해년도 4/4분기
↓		
사업결과평가	• 종료사업에 대하여 CSO코디네이터, KOICA 본부 및 현지사무소(KOICA-CSO데스크) 혹은 공관이 종합적으로 실시함.	당해년도 4/4분기
↓		
사업결과 공유포럼 및 사업설명회 개최	• 당해년도 사업참여 단체 및 차년도 응모 단체를 포함하여 관련자 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결과를 공유하는 포럼 개최 • 차년도 사업설명회 동시 개최	차년도 1/4분기

<박스 6-6> 덴마크의 Project fund 사업조사지원금[150)]

- 덴마크는 Project fund의 4가지 구성 중 하나인 사업조사(appraisal)지원금을 통해 CSO들의 성공적인 사업제안서 작성을 돕고 이를 통해 사업의 성공적 기획을 지원함.
- Project fund 사업조사지원금은 최대 US$ 1만 4천을 지원함.
- Project fund 사업조사지원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여행경비, 최대 2명의 일비, 숙식비, 교통비 및 여비
  - 2주간의 출장을 1회 지원
  - 사업형성을 위한 현지 파트너에 의한 연구, 설문조사
  - 현지전문가 참여
  - US$ 3,800은 워크숍, 연구 등에 사용
- 두 개 이상의 덴마크 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3명 이상 파견함. 또한 조사요원이 장애인이어서 특별비용이 발생 시 최대 US$ 1,700 지원 가능

<박스 6-7> 일본의 NGO사업 보조금 제도

- 취지 : 일본NGO의 전문성 및 사업실시 역량 향상을 통해 NGO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 담당 : 일본 외무성
- 대상 :
  - 수원국의 개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 일본 내에 사무실이 있는 단체
  - 수원국 내에 일본인 직원을 파견한 단체
  - 수원국 내에 사업 현장에서 2년 이상의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단체
  - 연간 예산이 US$ 1만 3천(¥ 100만) 이상인 단체
  - 관리 능력이 있는 단체
- 기간 : 1년
- 지원규모 : 건당 US$ 3,900~26,000
  1건당 총사업비의 1/2규모 이하

150) Project Advice And Training Centre가 발간한 The Project Fund 2011 guideline에서 설명하고 있다.

• 내용 :
  - 사업 연구 조사비 : NGO가 수원국에서 수행할 개발협력사업을 잘 준비하기 위한 사전 조사 작업 지원
  -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국내 활동비 : 일본 국내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촉진을 위한 관련 연구조사 수행, 워크숍,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 사업 활동 : 수원국 내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 수행, 워크숍,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나. CSO코디네이터 프로그램

CSO코디네이터 프로그램은 CSO가 수원국에서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정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한국 및 국제, 현지 CSO간의 네트워크 형성, 사업 발굴 및 평가 지원 등을 통해 CSO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수행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수원국 현장에서 많은 CSO들이 협력체제, 정보, 교육 부족으로 효과적인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CSO들은 CSO코디네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전문적인 개발사업 수행에 도움을 얻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KOICA-CSO데스크 프로그램과 연계성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이 된다. 먼저 초창기에는 CSO코디네이터가 파견되어 활동을 하고 해당 국가의 KOICA 현지사무소에 공간적 개념인 KOICA-CSO데스크가 설치될 시 CSO코디네이터가 KOICA-CSO데스크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이후 CSO코디네이터는 KOICA의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CSO사업의 타당성조사, 중간·결과평가에 참여할 수도 있다. CSO코디네이터 프로그램은 〈표 6-14〉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 된다.

<표 6-14> CSO코디네이터 프로그램

구성	내용
성격	• CSO의 개발사업 활성화 및 역량강화 지원을 전담할 인력을 파견하여 CSO를 지원
역할	• 수원국 현지에서 한국, 국제 및 현지 CSO간의 네트워크를 구축 및 관리 • 수원국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CSO직원이나 NGO봉사단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 수원국 현지에서 CSO사업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유

역할	• 수원국 현지 CSO 사업 발굴 및 관리(KOICA-CSO데스크 업무 수행도 가능 :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CSO사업의 타당성조사, 중간 및 결과평가)
관리	• CSO코디네이터의 소속은 KOICA 현지사무소이며, 관리감독권은 KOICA 현지사무소 책임자가 가짐. • 위탁운영기관은 CSO코디네이터의 선발과 파견 관련 행정사항만을 담당함.
선발대상	•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경험이 5년 이상인 자
선발방식	• 2년 1회 공모방식
위탁 운영기관	• KOICA의 공개경쟁 선발과정을 통해 사업관리를 위탁받은 운영기관
사업기간	• 2년
사업비	• KOICA 봉사단관리요원에 준하는 수준
대응자금비율	• KOICA 100%지원
심사	• 위탁운영기관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KOICA 관계자, 시민사회 전문가, 개발협력 전문가 지역 및 분야 전문가가 참여 •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기본으로 함. • 심사기준은 'KOICA봉사단 관리요원' 선발기준을 참고하되, 개발협력 현장 및 사업이해, CSO사업이해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함.
평가	• 위탁운영기관이 직접 또는 독립적인 외부 기관(개인)을 위촉하여 수행. 결과는 KOICA에 보고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함.
사업접수	• 온라인 접수
신청서류	• 지원서, 활동증명서, 이력서

CSO코디네이터의 자격은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한다. 수원국의 개발현장에서 다양한 CSO들의 사업수행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CSO코디네이터 프로그램은 KOICA의 공개경쟁 선발과정을 통해 사업관리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진행한다. CSO 코디네이터의 선발은 매 2년 1회 공모 제도를 통해 선발하며, 운영기관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 심사위원회에는 KOICA 관계자, 시민사회 전문가, 개발협력 전문가, 지역 및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CSO코디네이터의 임기는 2년이며 교육, 파견 및 관련 제반 행정업무는 운영기관이 담당한다. CSO 코디네이터의 소속은 KOICA 현지사무소이며, 관리감독은 KOICA 현지사무소 책임자가 가진다.

CSO코디네이터에 대한 지원은 현재 진행되는 KOICA봉사단원 관리요원에 준하며, KOICA지원으로만 진행한다. CSO코디네이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위탁운영기관이 직접 또는 독립적인 외부 기관(개인)을 위촉하여 수행하며, CSO코디네이터의 활동 1년

차에 중간평가를, 임기가 종료된 후에 결과평가를 한다. 운영기관은 CSO코디네이터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KOICA에 보고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 CSO코디네이터 지원은 온라인 접수를 기본으로 하고, 신청서류는 지원서, 활동증명서 및 지원자의 이력서를 기본으로 한다.

CSO코디네이터 프로그램은 〈그림 6-12〉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그림 6-12> CSO코디네이터 프로그램 수행절차 및 실시 일정

업무단계	주요내용	시행일정
운영기관선정	KOICA의 공개경쟁 선발과정 통해 사업을 위탁관리할 운영기관을 선정	전전년도 4분기
↓		
사업설명회	• CSO코디네이터 프로그램 취지, 배경 • 사업시행 방식 및 일정	전년도 2/4분기
↓		
지원서접수	• 운영기관이 온라인으로 접수	전년도 2/4분기
↓		
지원서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실시	전년도 3/4분기
↓		
사업계획수립	• 선발자 결정	전년도 3/4분기
↓		
사업계획 심의·승인	• KOICA 이사회 의결 및 외교통상부 장관 승인, 사업선정결과 통보	전년도 3/4분기
↓		
파견자 교육	• CSO코디네이터 파견자 교육실시 • 1~2개월간 교육 • 내용 - 국제개발협력 일반 사항 - 활동 수원국의 언어, 생활 및 일반사항 - CSO에 대한 일반사항 및 사업 이해	전년도 4/4분기
↓		
파견	• 활동 수원국으로 파견	전년도 4/4분기
↓		
활동시작	• 현지적응(언어 및 기타 생활) 1개월 • 활동 시작	사업1년차 1/4분기(2월)
↓		

중간평가	• 운영기관이 활동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	사업1년차 4/4분기
↓		
사업결과평가	• 운영기관이 활동에 대한 결과 평가하여 KOICA에 보고	사업종료 차년도 1/4분기(1월)
↓		
사업결과 공유포럼 및 사업설명회 개최	• 당기 사업참여자 및 차기 사업응모자 포함 관련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결과를 공유하는 포럼 개최 • 차기 사업설명회 동시 개최	사업종료 차년도 1/4분기

다. KOICA-CSO데스크 프로그램

수원국에서 KOICA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KOICA 현지사무소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그러나 현재 KOICA 현지사무소의 인적 구성 및 업무 분장시스템으로는 CSO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욱 체계적인 시민사회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KOICA 현지사무소에 CSO관련 업무를 전담케 하는 제도인 'KOICA-CSO데스크'를 설치한다. 이는 공간적 개념인 동시에 실제 담당인력이 활동을 하는 개념이다. 실제 근무자로는 CSO코디네이터 혹은 KOICA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한국인 직원이 해당된다. KOICA 현지사무소의 상황에 따라 공간으로서의 KOICA-CSO데스크가 설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에 파견된 CSO코디네이터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추후 KOICA-CSO데스크가 설치되었을 때 그 공간에 근무하도록 한다.

KOICA-CSO데스크의 내용은 〈표 6-15〉와 같이 진행된다.

<표 6-15> KOICA-CSO데스크 프로그램

구성	내용
성격	• CSO의 개발사업 활동을 지원할 전담인원이 근무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CSO의 개발사업 활성화를 지원
역할	• 국제 및 현지CSO지원 프로그램 진행 •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참여 CSO의 사업타당성 조사, 중간 및 결과평가 진행

역할	• 수원국 내에서의 한국CSO의 사업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지원 (CSO등록 및 법적, 행정적 지원) • 수원국 정부의 외국 CSO관련 정책 대응 및 정보제공 • 한국 CSO간 정보공유 지원 • 수원국에서 활동하는 UN, 국제기구 등의 CSO지원정책 공유 • KOICA 현지사무소와 CSO의 정기 간담회 진행 • 수원국 내 한국 CSO협의회와 파트너십 • 수원국 내 한국 CSO에 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진행
근무대상	• KOICA 현지채용 한국인 직원 • CSO코디네이터 • 자격은 국제개발협력 경험이 5년 이상인 자
선발방식	• 2년 1회 공모방식
실행기관	• KOICA
사업기간	• 2년
사업비	• KOICA 봉사단관리요원에 준하는 수준
대응자금비율	• KOICA 100%지원
심사	• KOICA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KOICA 관계자, 시민사회 전문가, 개발협력 전문가 지역 및 분야 전문가가 참여 •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기본으로 함. • 심사기준은 'KOICA봉사단 관리요원' 선발기준을 참고하되, 개발협력 현장 및 사업이해, CSO사업이해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함.
평가	• KOICA가 직접 또는 독립적인 외부 기관(개인)을 위촉하여 수행. 결과는 KOICA에 보고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함.
사업접수	• 온라인 접수
신청서류	• 지원서, 활동증명서, 이력서

KOICA-CSO데스크의 역할은 수원국 내에서의 한국 CSO의 개발역량강화와 사업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국제 및 현지CSO지원 프로그램 수행, ② KOICA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CSO의 사업타당성 조사, 중간 및 결과평가업무 진행, ③ CSO 등록을 포함한 법적·행정적 지원 등 현지정부 관련 활동, ④ 수원국 정부의 국제 CSO관련 정책 대응 및 정보를 한국 CSO에 제공, ⑤ 한국 CSO간 정보공유 지원, ⑥ 수원국에서 활동하는 UN·국제기구 등이 시행하는 CSO지원정책을 한국 CSO에 제공, ⑦ KOICA 현지사무소와 CSO와의 정기 간담회 개최, ⑧ KOICA 현지사무소와 한국CSO협의회와의 파트너십 증진, ⑨ 수원국 내에서 활동하는 한국 CSO에 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진행이다.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KOICA-CSO데스크에서 근무할 대상이 되는 자격은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경험이 5년 이상인 경우로 한다.

KOICA-CSO데스크제도는 KOICA가 직접 관리 및 운영을 한다. KOICA-CSO데스크 제도는 CSO코디네이터 프로그램과 연계성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통합된 한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진다. 데스크에 전문성을 가진 CSO코디네이터가 배치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내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KOICA-CSO데스크에서 근무할 담당자를 선발하는 방식은 첫째, CSO코디네이터가 KOICA-CSO데스크에서 근무하거나 둘째, 파견이 어려울 경우 담당자를 수원국 현지에서 채용한다. 현지채용의 경우 공모 제도를 통해 선발하며, CSO코디네이터의 경우 위탁운영기관이 진행하는 절차를 통해 선발된 이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회에는 KOICA 관계자, 시민사회 전문가, 개발협력 전문가, 지역 및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선발과정에 KOICA 현지사무소의 관계자도 가능한 한 참여토록 한다. KOICA-CSO데스크 담당자의 임기는 2년이며, 선발은 매 2년 1회이고 교육, 파견 및 관련 제반 행정업무는 KOICA가 담당한다. KOICA-CSO데스크에 대한 지원은 현재 진행되는 KOICA봉사단원 관리요원에 준하게 하며 KOICA가 100% 지원한다. KOICA-CSO데스크에 대한 평가는 KOICA가 직접 또는 독립적인 외부 기관(개인)을 위촉하여 수행하며, KOICA-CSO데스크에 대한 평가는 활동 1년차에 중간평가를, 임기가 종료된 후에 결과평가를 한다. KOICA-CSO데스크의 지원은 온라인 접수를 기본으로 하고, 신청서류는 지원서, 활동증명서 및 지원자의 이력서를 기본으로 한다.

KOICA-CSO데스크 프로그램은 〈그림 6-13〉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그림 6-13> KOICA-CSO데스크 프로그램 수행절차 및 실시 일정

업무단계	주요내용	시행일정
사업설명회	• KOICA-CSO데스크 프로그램 취지, 배경 • 사업시행 방식 및 일정	전년도 2/4분기
↓		
지원서 접수	• KOICA가 온라인으로 접수	전년도 2/4분기
↓		
지원서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실시	전년도 3/4분기
↓		

사업계획수립	• 선발자 결정	전년도 3/4분기
↓		
사업계획 심의·승인	• KOICA 이사회 의결 및 외교통상부 장관 승인, 사업선정결과 통보	전년도 3/4분기
↓		
파견자 교육	• KOICA-CSO데스크 근무자 교육실시 • 1~2개월간 교육 • 내용 - 국제개발협력 일반 사항 - KOICA 본부 및 현지사무소 일반사항 - 활동 수원국의 ODA사업 시민사회 협력사업 - 활동 수원국의 언어, 생활 및 일반사항 - CSO에 대한 일반사항 및 사업 이해	전년도 4/4분기
↓		
파견	• 활동 수원국으로 파견	전년도 4/4분기
↓		
활동시작	• 현지적응 (언어 및 기타 생활) 1개월 • 활동시작	사업1년차 1/4분기(2월)
↓		
중간평가	• KOICA가 활동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	사업1년차 4/4분기
↓		
사업결과평가	• KOICA가 활동에 대한 결과 평가 실시	사업종료 차년도 1/4분기(1월)
↓		
사업결과 공유포럼 및 사업설명회 개최	• 당기 사업참여자 및 차기 사업응모자 포함 관련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결과를 공유하는 포럼 개최 • 차기 사업설명회 동시 개최	사업종료 차년도 1/4분기

다음의 〈표 6-16〉은 지금까지 제안된 5개 분야 9개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개괄적으로 종합한 내용이며, 〈표 6-17〉에서는 각 프로그램의 상세설명에서 제안된 실행일정 연도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표 6-16> 5대 분야 9개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내용

이름		실행주체	사업기간	지원가능 한도	지원가능 사업 수	자금규모	대응자금비율 KOICA : CSO	간접비
특성에 따른 지원	신규단체 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기관	1년	3년	• 1년차 1개 • 2, 3년차 3개	• 최대 1억 원	80:20	15%
	중견단체 지원 프로그램		3년	제한 없음	3개	• 사업 당 연1~2억 원 (3년간 총 3~6억 원 최대 3개 사업 총 9~18억원)		10%
	전략적파트너 지원 프로그램	KOICA	3년		단체 당 1개 협약	• 사업 당 연 6~20억 원 (3년간 총 18~60억 원)		5%
창의적개발을 위한 환경조성	창의적개발 지원 프로그램		1년		3개	• 사업 당 5천만~1억 원 (최대 3개 사업 1억 5천만~3억 원)		10%
ODA정책보완	특정지역, 분야 지원 프로그램		3년		1개	• 사업 당 연 1억 5천만~3억 원 (3년간 총 4억 5천만~9억 원)	90:10	8%
국제파트너십 강화	국제 및 현지CSO 지원 프로그램		1년	3년	1개	• 사업 당 연 US$ 1만~30만 (3년간 총 US$ 3~90만)	100:0	8%
CSO개발역량 강화	사업기초조사 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기관	6개월 ~1년	제한 없음	• 신규단체 최대 3개 • 중견단체 최대 3개 • 창의적개 최대 3개 • 특정지역 및 분야 최대 1개	• 사업 당 최대 2천만 원 (최대 3개 사업 6천만 원)		해당 없음
	CSO 코디네이터		2년	해당 없음	국별 1명	• KOICA 봉사단관리요원에 준함		
	KOICA-CSO 데스크	KOICA	2년	해당 없음	국별 1개	• KOICA 봉사단관리요원에 준함		

7. 프로그램 실행 일정

<표 6-17> 5개 분야 9개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실행 일정

프로그램명		2011	2012	2013	2014	2015
특성에 따른 지원	신규단체 지원 프로그램	• 사업 준비작업 진행 • 4분기 위탁운영기관 선정	• 1분기 사업설명회 개최 • 1분기 교육실시 • 3분기 사업계획서 접수 • 4분기 사업승인	• 사업시작 • 1분기 약정체결 • 1분기 사업비 70% 지원 • 3분기 중간평가 • 3분기 사업비 30% 지원	• 1분기 사업결과평가 • 1분기 사업결과공유 포럼 개최	• 2014년도 사업 후속 작업 진행
				• 2014년도 사업준비 절차 진행	• 2014년도 사업 진행	• 2015년 사업진행
					• 2015년도 사업준비 절차 진행	• 2016년 사업준비 절차 진행
	중견단체 지원 프로그램	• 3분기 사업계획서 접수 • 4분기 사업승인	• 사업시작 • 1분기 약정체결 • 1분기 사업비 70% 지원 • 1분기 사업시작	• 3분기 사업중간 평가 • 3분기 사업비 30% 지원	• 4분기 사업종료 • 3분기 위탁집행기관 선정	• 1분기 사업결과평가 • 사업결과공유 포럼 개최
					• 2015~2017년도 사업준비 절차 진행	• 2015~2017년도 사업 절차 진행
	전략적파트너 지원 프로그램	• 사업 준비작업 진행	• 사업 준비작업 진행	• 사업 준비작업 진행	• 2분기 사업설명회 개최 • 3분기 기본계획서 접수 • 4분기 사업심사 • 4분기 사업승인	• 사업시작 • 1분기 약정체결 • 1분기 사업비 지원 • 1분기 사업시작
창의적개발을 위한 환경조성	창의적개발 지원 프로그램	• 사업 준비작업 진행	• 1분기 사업설명회 개최 • 1분기 교육실시 • 3분기 사업계획서 접수 • 4분기 사업심사 • 4분기 사업승인	• 사업시작 • 1분기 약정체결 • 1분기 사업비 70% 지원 • 3분기 중간평가 • 3분기 사업비 30% 지원	• 1분기 사업결과평가	• 2014년 사업 후속 작업 진행

창의적개발을 위한 환경조성	창의적개발 지원 프로그램			• 2014년 사업준비절차 진행	• 2014년 사업진행	• 2015년 사업진행
					• 2015년 사업준비 절차 진행	• 2016년 사업준비 절차 진행
ODA정책보완	특정지역 및 분야 지원 프로그램	• 사업 준비작업 진행	• 1분기 사업설명회 개최 • 1분기 교육실시 • 3분기 사업계획서 접수 • 4분기 사업승인	• 사업시작 • 1분기 약정체결 • 1분기 사업비 70% 지원 • 1분기 사업시작	• 3분기 사업중간 평가 • 3분기 사업비 30% 지원	• 4분기 사업종료
						• 2015~2017년도 사업준비 절차 진행
국제파트너십 강화	국제 및 현지CSO 지원 프로그램	• 사업 준비작업 진행	• 2분기 사업설명회 개최 • 3분기 사업계획서 접수 • 4분기 사업심사 • 4분기 사업승인	• 사업시작 • 1분기 교육실시 • 1분기 약정체결 • 1분기 사업비 70% 지원 • 1분기 사업시작 • 3분기 중간평가 • 3분기 사업비 30% 지원	• 1분기 사업결과평가	• 2014년 사업 후속 작업 진행
				• 2014년 사업준비 절차 진행	• 2014년 사업진행	• 2015년 사업진행
					• 2015년 사업준비 절차 진행	• 2016년 사업준비 절차 진행
CSO개발역량 강화	사업기초조사 지원프로그램	• 사업 준비작업 진행 • 4분기 위탁집행기관 선정	• 2분기 사업설명회 개최 • 3분기 사업계획서 접수 • 4분기 사업심사 • 4분기 사업승인	• 사업시작 • 1분기 교육실시 • 1분기 약정체결 • 1분기 사업비 100% 지원 • 2분기 사업시작	• 1분기 사업결과평가	
				• 2014년 사업준비 절차 진행	• 2014년 사업진행	• 2015년 사업진행
					• 2015년 사업준비 절차 진행	• 2016년 사업준비 절차 진행

CSO개발역량 강화	CSO 코디네이터	• 사업 준비작업 진행 • 4분기 위탁집행기관 선정	• 2분기 사업설명회 개최 • 2분기 지원서 접수 • 3분기 지원서 심사 • 3분기 사업승인 • 4분기 파견자 교육 • 4분기 파견	• 사업시작 • 1분기 현지적응교육 실시 • 1분기 활동 시작 • 4분기 중간평가	• 4분기 활동종료 • 2015년 사업준비 절차 진행	• 1분기 사업결과평가 • 2015년 사업진행
	KOICA-CSO 데스크	• 사업 준비작업 진행	• 2분기 사업설명회 개최 • 2분기 지원서 접수 • 3분기 지원서 심사 • 4분기 사업승인 • 4분기 파견자 교육 • 4분기 파견	• 사업시작 • 1분기 현지적응교육 실시 • 1분기 활동 시작 • 4분기 중간평가	• 4분기 활동종료 • 2015년 사업준비 절차 진행	• 1분기 사업결과평가 • 2015년 사업진행
인증제도		• 사업 준비작업 진행	• 2분기 인증제도 집행기관 선정(안) 마련 • 2분기 인증제도 집행기관 선정 설명회 • 3분기 인증집행기관 응모신청서접수 • 4분기 인증제도집행기관 선정	• 사업시작 • 2분기 인증제도 사업설명회 • 3~4분기 인증제도 시작 인정제도 지원단체 접수 및 심사	• 1/4분기 인증결과 공개 인증단체 발표 • 연중 인증작업 진행	• 1/4분기 인증결과 공개 인증단체 발표 • 연중 인증작업 진행

참고 문헌

1. 국내문헌

김채형. 1992.「OECD회원국의 NGO활동 : 개발원조를 중심으로」.
서울 : 한국국제협력단 (연구자료 92-13-63)

남수정. 2011.「OECD 원조작업반 결과와 의의」『ODA Watch Letter』56호 (8월 2일)

마이클 에드워즈. 2004.『시민사회, 이론과 역사, 그리고 대안적 재구성』.
서울 : 동아시아.

박재창 외. 2009.『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서울 : 오름.

손혁상 외. 2010. 『NGO지원사업종합평가』. 한국국제협력단

이연호. 2010. 『발전론』.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조희연, 정태석. 2002.“한국 민주주의 변동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분석 틀”,
조희연 편.『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서울 : 나눔의 집.

한재광. 2010.“국제개발NGO발전의 흐름과 한국 개발NGO에의 시사점”.
국제개발협력학회 정기학술회의 자료집 - 한국의 DAC가입과 HLF개최의 의미와 과제.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2010.『2009 한국 국제개발협력 NGO 편람』.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2. 해외 학술 문헌

Advisory Group on Civil Society and Aid Effectiveness. 2007. Civil Society and Aid Effectiveness - Issues Paper.

Alan Fowler. 1998. ‘Authentic NGDO Partnerships in the New Policy Agenda for International Aid : Dead End or Light Ahead?’.
Developmental and Change. vol.29.

_____. 2000. 'NGO futures : beyond aid : NGDO values and the fourth position'. Third World Quarterly. vol.21 No.4.

Brian Pratt., Jerry Adams and Hannah Warren. 2006. 'Official Agency Funding of NGOs in Seven Countries : Mechanisms, Trends and Implications.' INTRAC Occasions Papers Series No : 46 : 8.

David Lewis. 1998. 'Development NGOs and the Challenge of Partnership : Changing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Vol.32 No.5.

David Lewis and Nazneen Kanji. 2009.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Development. NewYork : Routledge.

DCD/DAC. 2011. How DAC Members Work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 An Overview. Paris : OECD.

Degnbol-Martinussen, Engberg-Perdersen. 2003. Aid : Understand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London : Zed Books.

Edwards M., and Hulme, D. 1995. Beyond the Magic Bullet : NGO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in the Post-Cold War World. London : Earthscan.

Jude Howell. 2002. 'In their own image : donor assistance to civil society'. Lusotopie vol.1

Ian Smillie and Henny Helmich. 1999. Stakeholders : Government-NGO Partnership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London : Earthscan Publications Ltd.

Leen Nijs, Robrecht Renard. 2009. 'Reforming Government Funding of Development NGOs - a Comparative Analysis of Eight European Donors'. Institute of Development Policy and Management.

Lou Stamberg, Ann Hudock, John Grant and Gregory Perner. 1996. USAID Support For NGO Capacity-Building : Approaches, Examples, Mechanisms. Washington : USAID.

Michael Edwards, David Hulme. 1996. 'Too Close for Comfort? The Impact of Official Aid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orld Development. Vol.24.

OECD. 2001. Citizens as Partners :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Paris : OECD.

_____. 2009. Managing Aid : Practice of DAC Member Countries. Paris : OECD.

3. 국내외 정부발간 문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7-1호). 국무총리실

AECID. 2009. Sp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IDA. 1997. CIDA's Policy on Meeting Basic Human Needs.

_____. 2011. Report on Plan and Priorities.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2. Participation of non-state actors in EC development policy.

DFID. 2006. Civil Society and Development, 'How DFID works in partnership with to deliver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_____. 2009. White Paper. Eliminating World Poverty : Building Our Common Future.

DGCS : the Committee of Ministries. 2010. ITALIAN DEVELOPMENT CO-OPERATION 2011-2013 : Programming guidelines and directions.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FDFA). 2011. ABC of Development Policy.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 2011. German development policy at a glance.

French Ministry of Foreign and European Affairs. 2011. Development Cooperation : a French Vision : Framework Document.

Federal Ministry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Austria. 2007. NGO Cooperation

Federal Ministry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Austria. 2009. Three-Year Programme on Austrian Development Policy

Government of Japan. 'Japan's Medium-Term Policy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ebruary 4, 2005.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09. 'Pluralism. Policy for support to Civil Society in developing Countries within Swedish Development Cooperation'.

_____. 2009. 'Strategy for support via Swedis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2010-2014'.

IPAD. 2006. Portuguese Cooperation strategy.

_____. 2006. Strategic Vision for Portuguese Development Cooperation.

_____. 2010. Apoio a Intervencao Das ONGD No Dominio Da Cooperacao Para O Desenvolvimento.

Lux-Development. 2009. Annual Report 2008.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Finland. 2010. Guidelines for Civil Society in Development Polic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Cooperation, Spain. 2009. Third Master Plan of Spanish Development Cooperation for 2009-201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New Zealand. 2010. New Zealand Aid Programm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2008. 'Strategy for Danish Support to Civil Society in Developing Countrie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Greece. 2004. Hellenic Aid Action Plan for Cooperation and Harmoniz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pan. 2011.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White Paper 2010 - Japan's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Norad. 2009. Principles for Norad's Support to Civil Society in South.

NZAID and CID. 2009. Strategic Policy Framework for relations between NZAID and New Zealand NGOs.

NZAID. 2010. Guideline Working With Civil Society Organisations.

SDC. 2001. Funding from SDC to Swiss NGO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____. 2007. NGO Politik.

Sida. 2003.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Framework Organisations'.

____. 2004. 'Civil Society and Poverty Reduction'.

____. 2007. 'Sida's support to civil society in Development Cooperation'.

____. 2010. 'Sida's Instructions for Grants from the Appropriation Item Support via Swedish Civil Society Organisations'.

The Belgian Development Cooperation. 2007. "Plan for the Harmonization and the Alignment of Aid –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the Belgian governmental bilateral aid". The Federal Public Service Foreign Affairs, Foreign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_____. 2010. 'the DGD Annual Report 2009'. The Federal Public Service Foreign Affairs, Foreign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The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2006. Joint statement by the Council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States meeting within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mmission on European Union. Development Policy : 'The European Consensu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 46/1.

The Netherland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0. 'Letter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utlining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_____. 2011. 'Letter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presenting the spearheads of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4. 인터넷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http://www.koica.go.kr

AFD (France) http://www.afd.fr

AECID (Spain) http://www.aecid.es

Association ONG Italiane (Italy) http://www.ongitaliane.org

AusAID (Australiza) http://www.ausaid.gov.au

Belgium Diplomatie (Belgium) http://deplomatie.belgium.be

CCC (Cambodia) http://www.ccc-cambodia.org/certification-system.html

CIDA (Canada) http://acdi-cida.gc.ca

Congde (Spain) http://www.congde.org

Cooperazione Italiana allo Sviluppo (Italy)
http://www.cooperazioneallosviluppo.esteri.it

Coordination SUD (France) http://www.coordinationsud.org

DFID (UK) http://www.dfid.gov.uk

European Union http://europa.eu

Euroresources http://www.euroresources.org

France Diplomatie (France) http://www.diplomatie.gouv.fr

F3E (France) http://f3e.asso.fr/

Hellenicaid (Greece) http://www.hellenicaid.gr

JICA (Japan) http://www.jica.go.jp

Minbuza (Netherlands) http://www.minbuza.nl

MOFA (Japan) http://www.mofa.go.jp

NORAD http://www.norad.no

NZAID (New Zealand) http://www.aid.govt.nz

SIDA (Sweden) http://www.sida.se

The Project Advice and Training Center http://www.prngo.dk/eng

The Terra Viva Grants Directory http://www.terravivagrants.org

Ulkoasiainministerio (Finland) http://www.formin.fi

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

[부 록]

부록 목차

Ⅰ. OECD/DAC 24개국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현황

1. OECD/DAC 24개국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 169

가. 그리스 ····· 169

나. 네덜란드 ····· 170

다. 노르웨이 ····· 172

라. 뉴질랜드 ····· 173

마. 덴마크 ····· 174

바. 독일 ····· 176

사. 룩셈부르크 ····· 177

아. 미국 ····· 178

자. 벨기에 ····· 178

차. 스웨덴 ····· 180

카. 스위스 ····· 181

타. 스페인 ····· 181

파. 아일랜드 ····· 183

하. 영국 ····· 183

거. 오스트리아 ····· 186

너. 이탈리아 ····· 188

더. 일본 ····· 189

러. 캐나다 ····· 190

머. 포르투갈 ····· 192

버. 프랑스 ····· 193

서. 핀란드 ····· 195

어. 호주 ····· 196

저. EU 대표부 ····· 197

2. OECD/DAC 24개국 시민사회협력 목표, 우선지역·분야 및 협력 프로그램 조사 자료 ····· 202

가. CSO 협력 목표 및 우선순위 ····· 202

나. 우선 지역 및 우선 분야 ····· 203

다.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 205

Ⅱ. 설문조사 ····· 211
1. 국내 NGO 설문조사 ····· 211
가. 응답단체의 특성 ····· 213
나. 설문조사 내용 ····· 216
다. 설문지 ····· 234

Ⅲ. 국내외 인터뷰 ····· 240
1. 국내외 인터뷰 대상자 ····· 240
가. 국내 인터뷰 대상자 ····· 240
나. 해외 인터뷰 대상자 ····· 242
2. 해외현지조사 자료 1 : 영국 ····· 245
가.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 245
나. British Overseas NGOs for Development (Bond) ····· 249
다. Action Aid ····· 251
라. Triple Line ····· 252
마. International NGO Training and Research Centre(INTRAC) ··· 254
바. War on Want ····· 256
사. Christian Aid ····· 257
3. 해외조사 자료 2 : 스웨덴 ····· 259
가. Sweden Mission Council ····· 259
나. Sida Partnership Forum ····· 263
다. Sida ····· 265
라. Forum Syd ····· 269
마. Africa Group of Sweden(AGS) ····· 271
4. 해외조사 자료 3 : 호주 ····· 274
가. Sexu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Australia ····· 274
나. AusAID ····· 277
다. ACFID ····· 283
라. Interplast AUSTRALIA & NEW ZEALAND ····· 289

마. IDSS ····· 293
바. Plan Australia ····· 295
사. OXFAM Australia ····· 300
5. 해외조사 자료 4 : 네팔 ····· 303
가. AIN ····· 303
나. JICA ····· 305
다. DFID ····· 307
라. Love Green Japan ····· 310
마. AusAID ····· 313
바. DHRC ····· 318
사. Shia ····· 322
아. Caritas Nepal ····· 327
자. HDCS ····· 331
차. SWC ····· 334
카. ActionAID ····· 337
타. 네팔 현지 한국 개발NGO 간담회 ····· 341
6. 간담회 회의록 ····· 352
가. 1차 개발NGO 워킹그룹 간담회 ····· 352
나. 개발NGO 현지사업 경험자 간담회 ····· 355
다.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이사회 간담회 ····· 360
라. 2차 개발NGO 워킹그룹 간담회 ····· 364
마. 자문회의 ····· 369
바. 공개 심포지엄 ····· 372

Ⅰ. OECD/DAC 24개국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현황

1. OECD/DAC 24개국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가. 그리스

1) DP(Development Program)

개발도상국의 극심한 빈곤의 퇴치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규모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는 이사회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 6만 이하 사업, 총회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 6만 이상의 사업, 사업의 집행을 위한 보증문서를 필요로 하는 € 10만 이상의 사업이다. 1년 사업으로 매칭 비율은 모두 75%이며, 지원금은 3단계로 분할 지급된다.

이 프로그램은 그리스 CSO만을 지원하며 다른 OECD국가의 CSO를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조건으로는 동일한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와 유럽 CSO들과 현지 CSO들과 협력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신청서류로 신뢰할 수 있는 현지 CSO의 사업에 대한 서면 동의서와 수원국 당국이 발행한 프로그램 수행 지지문서가 포함된다. 심사기준으로 OECD/DAC의 원칙과 MDGs달성 양립 여부 및 그리스 정부가 매해 작성하는 양자간 원조국에 대한 개발원조계획의 우선분야와 지역을 고려한다.

2) CTH(Activities Aiming at Comb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인신매매에 대항하는 프로그램)

인신매매 퇴치는 경제·사회적 개발 측면에서 그리스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진다. 이에 Hellenic Aid는 CSO나 기타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재정을 지원한다.

3) HFA(Humanitarian and Food Aid Programs)

인도주의적인 원조와 식량 원조프로그램을 위한 재정 지원프로그램으로 신청하는 기관에게 75%의 매칭비율로 지원한다.

4) DPA(Development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Raising Activities, 개발교육과 인지증진 활동)

일반 대중에게 MDGs를 알리고,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글로벌 이슈와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관계에 관련한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CSO를 지원하며 그리스 내에서의 활동을 지원한다.

나. 네덜란드

1) MFSⅡ(Co-financing System)

이 프로그램은 CSO와의 공동재원조달 프로그램으로서, 구조적 빈곤감소와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의 확립과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2011-2015년 기간 동안 MFSⅡ가 진행 중이며, 해당 기간 프로그램 총 예산은 약 US$ 307억이다.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독립적, 비영리 CSO라면 지원 자격을 갖추나, 같은 기간 외무부로부터 core-funding을 받는 단체는 지원할 수 없다. 사업 기간은 3-5년이며, 5년 기준으로 최소 약 US$ 1,400만 규모로 사업진행이 가능하다. 단, 단체 연간수입의 최소 25% 이상은 외무부가 아닌 다른 출처로 부담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CSO단독지원이 아닌 다른 단체와의 공동그룹(alliance)을 형성해서 지원해야 한다. 현재 20개의 공동그룹이 참여하고 있다.

심사는 첫 번째 단계에서 지원 단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를 만족한 최대 100개 단체를 선정한다. 이 단체들에 한하여 두 번째 단계의 프로그램 심사를 진행하며, 이는 맥락적 분석, 목적 및 전략, 모니터링, 책무성 및 평가, 조화 및

보완, 프로그램의 효율성, 지속성의 기준으로 평가된다.

2) COF(Choices and Opportunities Fund)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SRHR)와 HIV/AIDS 분야의 국제 정책 수립을 위한 기금으로, 2011년에서 2014년까지 4년간 진행된다. 프로그램 총 예산은 약 US$ 5억 8천만이며, 현재 4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SRHR, HIV/AIDS 분야의 국제 CSO가 지원할 수 있으며, 네덜란드에 등록된 단체는 제외된다. 지원 단체는 정책개발, 로비, 애드보커시, 기술원조, 서비스 제공 및 리서치 분야 중 최소한 2개 분야에서 활동하여야 하며, 단체의 연간 수입의 최소 25% 이상은 외무부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3) MDG3 Fund

MDGs의 세 번째 목표인 여성에 대한 향상된 기회 및 권리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2008~2011년까지는 'MDG3 Fund'라는 이름으로 운용되며, 2012~2015년에는 FLOW(Funding Leadership and Opportunities for Women)가 후속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기금의 규모는 총 US$ 1억이며, 현재 전 세계 99개국에서 총 45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내, 지역, 국제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기관 및 기업, 특히 개발도상국의 모든 CSO가 지원가능하다.

외무부가 아닌 개발컨설팅회사인 Pricewaterhouse Coopers(PwC)가 제안서를 접수, 기금운용 및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심사는 양성평등 전문가, 외무부 인사, 외부독립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진행하며, 기존의 조직 및 사업 평가 이외에 MDG3 에 맞는 평가기준이 적용된다.

4) PDP(Productive Development Partnership Funds(PDP Fund Against Poverty-Related Diseases))

2011-2014년 진행되는 총 € 7천만 규모의 기금으로, 시장실패 때문에 상업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빈곤 관련 질병퇴치를 위한 의약품(약, 백신, 진단 및 기타) 개발

에 목적을 둔다. 현재 7개 단체를 지원 중이고, 매칭비율은 50%이며, 나머지 50%는 다른 채널로부터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5) SFD(Standard Framework for Development Cooperation)

개발도상국의 구조적 빈곤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네덜란드 및 국제 CSO가 지원 가능하며, 개발도상국의 현지 CSO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의 규모와 기간의 최소/최대는 프로그램 제안서에 따라 상이한데, 단체의 연간 수입 대비 최대 75% 이상 지원할 수 없으며, 그 규모가 프로그램 규모의 최대 50%까지 허용된다.

심사는 신청기관과 신청서의 질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특히 기관의 경우 재정 및 행정 관리, 그동안의 업적, 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신청서는 해당 사업이 구조적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지, 특정 테마, 국가, 지역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 SMART(Specific, measurable, acceptable, realistic, and time-bound) 기준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결과와 사업의 지속성 등이 평가된다.

다. 노르웨이

1) IA(Individual Agreement)

노르웨이 정부원조기구인 NORAD가 노르웨이 CSO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가장 보편적인 지원체제로 신규신청 단체나 중소 규모의 CSO를 대상으로 연간 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신규신청 단체는 NOK 50만(약 US$ 9만) 이상은 지원받을 수 없다. 대응자금비율은 정부지원이 90%이며, 지원 금액의 8%까지를 행정비로 활용 할 수 있다.

2) CA(Cooperation Agreement)

NORAD와 협력협정을 맺고 있는 대표적인 CSO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로서,

3~5년 단위의 다년간 협정이 이루어진다. 대응자금비율은 90%이며, 지원 금액의 8%까지를 행정비로 활용할 수 있다.

라. 뉴질랜드

1) SDF(Sustainable Development Fund)

개발도상국 CSO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도상국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환경 문제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SDF가 승인한 뉴질랜드의 비영리기관이면 신청가능하며, 개발도상국 내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보건과 교육, 식수와 위생 등을 중점 분야로 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2년에서 4년까지 가능하며, 총 예산의 70%까지만 지원가능하다. 다년도 지원일 경우에는 진행사항에 대한 연간 리포트 요약본을 제출해야 하며, 종료 리포트는 활동 종료 후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 과정은 크게 5단계로 구성된다. 승인된 CSO의 지원서 제출에 따라 뉴질랜드 외교통상부(MFAT)는 관련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의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며, 이 과정에 현지 대사도 참여 가능하다. 이후 MFAT의 원조 프로그램 관계자와 외교부의 외부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원서 검토 및 기금에 관한 조언을 한다. 이 조언을 MFAT이 승인하면 지원서의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선정된 사업은 제안서에 따라 표준 SDF GFA(Grant Funding Arrangement)의 초안이 작성되며 계약을 위해 뉴질랜드 기관에 송부된다.

MFAT는 방문 감사를 실행할 수 있으며, 표준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된다. 또한 SDF가 승인한 기관 대표자 3명을 자문단으로 구성해 SDF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마. 덴마크

1) FA(Framework Agreements)

덴마크 정부가 사업수행능력 및 재정능력 등을 기반으로 역량을 인정받은 6개의 덴마크 대형 CSO(MS Danish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DanChurchAid / Danish Red Cross / IBIS / Save the Children Denmark / Care Denmark)를 Framework Organization으로 규정하고, 다년간 기본협약을 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은 덴마크 CSO가 협의된 지원 예산으로 장기간 동안 유연성 있는 계획과 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덴마크 정부가 사업비의 90%를 지원하며, 2009년에는 6개의 Framework Organization에 DKK 43백만(약 US$ 83십만)~DKK 153백만(약 US$ 3천만)을 지원했다.

2) PA(Programme Agreements)

지리적, 분야 또는 주제별로 분명한 목표를 가진 CSO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단일 사업보다는 다각적이고 지속가능한 효과를 목표로 한 포괄적인 프로그램형 사업을 지원한다.

3) IP(Individual Project)

Programme Agreement에 참여하지 않는 대규모 단일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후 Programme Agreements나 Framework Agreements로 확대 발전된다.

4) AP(Alliance Programmes)

연구기관과 비즈니스 기관처럼 각자 전문 분야의 단체들이 다른 분야와의 상호학습과 협력을 통해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Programme-implementing alliance이고, 다른 하나

는 국제적인 주제별 애드보커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alliance이다.

5) MP(Mini Programme Agreements)

덴마크 정부는 중소규모 CSO지원을 목적으로 Mini Programme Agreements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5개의 주관단체(Project Advice and Training Centre (PATC), Danish Council of Organizations of Disabled People(DSI), Danish Youth Council(DUF), Danish Mission Council Development Department, MS Danish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를 통해 실행된다. 5개의 주관단체(Host Organization)들이 중소규모의 CSO들이 신청한 소규모 사업에 대한 심사·선정·모니터링·평가 등 일련의 모든 과정을 수행한다. Project Advice and Training Center(PATC)는 Mini Project Fund를, MS-Danish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은 Recycling for the South를 수행한다. Danish Council of Organizations of Disabled People(DSI)과 Danish Youth Council(DUF), Danish Mission Council Development Department는 Mini Programmes를 수행한다.

6) PF(Project Fund)

Project Advice and Training Centre(PATC)가 덴마크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실행하는 중소 CSO지원 프로그램이다. 1인당 GDP가 외교부의 공식빈곤기준 이하인 나라에서 활동하는 CSO만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지의 다양하고, 역동적이면서 민주적인 시민사회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사전평가(appraisals) 지원사업, 파트너십활동 지원사업, 소규모 및 대규모개발 사업지원 등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되며 지원 규모는 US$ 1.4만~95만까지이고, 분야에 따라 지원규모가 다르다. 사전평가 지원사업은 DKK 6만 5천~8만(약 US$ 1.4~1.7만), 파트너십활동 지원사업에는 DKK 50만(약 US$ 3.8~9.5천), 소규모개발 사업지원은 DKK 50만(약 US$ 3.8~19만), 대규모개발 사업지원은 DKK 50만~3백만(약 US$ 19~95만)까지 모두 100% 지원한다.

7) LGA(Local Grant Authority)

수원국의 현지 CSO가 덴마크 대사관과의 현지협약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원 규모는 최대 DKK 5백만(약 US$ 1백만)까지이다. 신청되는 모든 사업은 'Priorities of the Danish Government for Danish Development Cooperation'에 명시된 덴마크 개발 정책의 원리와 목적을 따라야 한다.

바. 독일

1) SSP(Small-scale projects for NGOs)

해외 파트너와 협력하는 독일의 CSO에 의해 수행되는 소규모 사업으로 규모는 € 12,500에서 € 37,500 사이(매칭 75%)이고, 최대 사업기간은 1년이다. 신규지원단체는 이 사업에만 지원할 수 있고 이 사업을 종료해야 더 큰 규모의 사업을 지원하는 Large-scale projects for NGOs에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1차적으로 Bengo라는 자문회사에 사업 아이디어와 콘셉트를 제출하며, Bengo는 예비신청서를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한다. Bengo를 통해 예비신청서가 통과되면, BMZ에서 최종 심사를 한다. 총 인건비와 일반비용(regular cost)이 총 사업비용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2) LSP(Large-scale projects for NGOs)

해외파트너와 협력하는 독일에 기반한 CSO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BMZ는 이들이 수행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며, 최대지원금은 € 50만(매칭 75%)로 최대 4년까지 지원된다.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Small-scale project에 승인받았거나, 이미 종료해야 한다. 신청과정은 소규모 사업 신청기관과 동일하며, 심사기준으로는 소규모 사업 지원과는 다르게 지난 3년간 예산과 기금 모금활동 등으로 해당 사업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총 인건비와 일반비용(regular cost)은 총 사업비용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3) SSEP(Small Scale Embassy Project)

독일의 연방정부가 독일 재외공관에 지원하는 기술협력분야의 소규모 사업을 위한 지원으로, 재외공관은 이 지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기술 장비 및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한다. 최대지원금은 € 2만 5천이고 매칭 비율은 100%로서 자체부담이 권고되나 필수조건은 아니다. 최대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사업은 지원받는 해와 동일한 회계연도 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지원조건은 Grassroots level에서의 자립주도형 사업을 하는 현지기관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인건비나 행정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사. 룩셈부르크

1) CF(Co-funding of NGO Projects)

룩셈부르크 CSO의 개별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공동재정기금이다. 룩셈부르크 외무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가된 비영리 CSO 및 단체가 지원가능하다. 공식적으로 인가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혹은 사업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발도상국 CSO의 경우, 룩셈부르크 CSO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의 연간 예산 중 최대 € 3천만까지만 지원가능한데, 사업이 실행되는 국가가 룩셈부르크의 협력대상국인지 여부에 따라서 단체의 자부담 비율이 상이하다. 우선협력대상국의 경우는 75%까지 지원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66.7%까지 지원한다.

2) FA(Framework Agreements)

룩셈부르크 CSO에게 다년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Framework Agreement를 맺고 지원하는 공동재정기금으로, 빈곤감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만 지원한다. 재정지원의 차별화를 통하여 주요 파트너국에서 활동하도록 유도하지만, 이것이 의무는 아니다. 이미 외교부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역량 있는 룩셈부르크 단체

만 지원가능하며, 개발도상국 CSO의 경우는 파트너십을 통하여 지원가능하다.

개별자금규모는 외교부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그 규모는 지원시기 이전 연도 공동재정활동 총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매칭은 80%이며, 사업기간은 2-5년이다.

아. 미국

1) DGP(Development Grants Program)

신생 PVO/NGO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3년 이상의 사업을 수행할 단체와 협력약정(Cooperative Agreement)을 체결해서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CSO로 직접자금을 더 많이 제공하여 이 과정을 통해 USAID의 역량증진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원 규모는 최대 US$ 200만이고, 현지 CSO는 자체 대응자금(matching) 10%, 미국 PVO는 15%이다. 심사기준으로 기능적인 측면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심사과정으로는 최초 접수 시 콘셉트페이퍼를 제출하고 심사 후 완성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 후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2) FOG(Fixed Obligation Grants)

예측 가능하고 위험성이 적은 사업에 한해서 예측 가능한 범위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금은 최대 US$ 20만이며 사업 기간은 1년이다. 재정지급 방식은 선집행 후 지급(reimbursement)이고, 심사과정은 DGP와 동일하다.

자. 벨기에

1) CFP(Co-financing of Programmes

벨기에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된 NGDO의 사업 및 프로그램 공동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North Line과 South Line으로 구분된다. North line은 벨기에 정치·경제·사회의 활동가를 장려하고, 남-북 연대와 연계된 CSO의 활동을 지원함으로

써 평등하고 견고한 남-북 관계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South line은 역량강화 또는 CSO 지원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남반구에서 장애인구의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벨기에의 Royal Decree of 14. 12. 2005에서 정의된 DGCD로부터 인정받은 벨기에 CSO라면 지원가능하다. North와의 사업은 최소 5만 6천불, South와의 사업은 최소 17만불이 지원가능하며, 이 경우 매칭 비율은 80%이다. 프로그램의 경우 최소 최대 규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사업의 사업기간은 최대 2년이며, 프로그램은 3년이다.

2) CoS(Consolidation of Society)

벨기에의 공식적 협력대상국의 CSO를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초업무와 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현지 인력에 대한 교육,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하고자 하는 CSO의 목표가 직접적인 다자개발협력의 목표와 부합하고, 충분한 재정신용도와 자체자금을 갖추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사례를 볼 때 최대 € 50만까지 지원가능하다. 현지 벨기에 대사관을 통하여 지원하며, DGDC가 실행한다.

3) BFFS(Belgian Fund for Food Security)

기존 Belgian Survival Fund를 이어 2010년부터 새로 시작된 식량안보기금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와 식량위험에 처해있는 벨기에의 개발협력 우선대상국을 지원한다. Royal Decree of 14. 12. 2005에 의해 인증받은 벨기에 CSO 및 다자협력의 국제적 파트너인 기관이 지원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단체마다 상이하며, 단체의 성격에 따라 매칭 비율 또한 상이하다. 벨기에 CSO는 최대 85%, 기부로 진행되는 기금이나 UN프로그램의 사업은 최대 60%, 기금으로 진행되는 UN의 전문에이전시에 의한 사업은 최대 85%, 다자간 차관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최대 45%, BTC는 최대 90%까지 지원가능하다.

4) CPPC(Conflict Prevention and Peace Consolidation)

기존의 예방외교 프로그램인 'Preventive Diplomacy Service'와 분쟁방지외교 프로그램인 'Conflict Prevention Service'가 통합되어 2006년 말 시작되었으며, 분쟁방지와 평화구축 사업을 지원한다. 분쟁 이전·중·이후의 개입이 모두 가능하며, '예방외교예산'으로 되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1년이고, '분쟁방지예산' 사업은 일반적으로 3년간 진행된다.

법적 지위를 갖춘 벨기에, 국외, 국제 CSO 및 비영리기관 및 대학, 고등교육기관 및 기타 연구기관이 지원 가능하다. 100% 매칭으로 진행되며, 사업규모는 최소 US$ 14만, 최대 US$ 200만까지이다.

차. 스웨덴

1) FO(Framework Organization)

스웨덴 CSO들은 FO제도를 통해 수원국 현지 CSO와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2011년 15개의 FO들을 통해 스웨덴 CSO 및 수원국 현지 CSO들에게 US$ 2억 4천만이 지원되었다. 종교, 지역, 분야별 특성을 가진 15개의 FO가 회원단체 및 수원국 현지 CSO들의 상황과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금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FO는 각 단체의 사업성격에 따라 다양한 재정규모로 지원을 하고, 총 지원금 가운데 행정비는 8%를 차지한다. 지원기간은 안정적인 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90% 매칭으로, 8~10년간 중장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Sida의 현지 CSO지원은 모두 FO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웨덴 CSO와 협력하고자 하는 현지 CSO는 15개 FO 중 한 기관과 접촉하여야 한다. FO의 역할은 CSO를 선정하고, Sida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다. 또한 지원기관의 모니터링과 종료사업에 대해 평가하여 Sida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Sida의 시민사회 관련 조직은 CIVSAM으로 CSO들과 협력하는 형태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Umbrella Organization과의 협력으로 이는 CIVSAM으로부터 재정을 받아 회원기관들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둘째는 Framework Organization과의 협력으로 지원받은 재정을 현지 파트너에게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FO가 직접 사업

을 담당한다. Africa Group of Sweden이 이에 해당되고 Forum Syd의 경우 위 두 형태에 모두 해당된다. 셋째는 Sida의 국별지원전략에 따르는 사업에 경쟁력 있는 CSO가 참여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Sida와 직접 계약을 맺고 진행하며 Sida의 직접 개입이 강하다.

현재 Sida와 Framework Agreement를 맺은 가장 큰 스웨덴 기관은 Forum Syd로서 개발협력사업을 하는 약 200개의 CSO를 위한 Umbrella Organization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카. 스위스

1) Program Block Grant

다른 SDC의 프로그램이나 Umbrella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있는 스위스 CSO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규모는 연간 최소 US$ 3만에서 최대 US$ 20만까지(자체대응자금 50%)이고 지급 최대기간의 제한은 없다. 신청은 일 년에 두 번, 2월과 9월에 공모로 이루어진다. SDC의 지원대상 CSO는 ZEWO(Swiss Specialist Body for Charitable Organizations that Collect Donations)에서 인증(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접수 통지를 받은 후 두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전문가의 평가를 받는다. 심사기준에는 사업에 개입된 사람들에 적용하는 기준, 현지 파트너 기관에 적용하는 기준, 사업 구성과 내용에 적용하는 기준, 사업 영향과 배경에 적용하는 기준, 사업의 실행가능성에 적용하는 기준이 세워져 있고, SDC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도 설정되어 있다.

타. 스페인

1) CAP(Convocatoria abierta y permanente(a Permanent Open Tender, CAP))

매년 특정 우선순위를 선정해 그에 맞는 다양한 주제에 따른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것으로, 최대 18개월까지 지원가능하며, 총 € 590만 중 상황에 따라 지급한다.

아래 8가지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

1. Basic social services – 건강, 식수, 교육, 식량, 인재
2. 인프라 증축
3. 생산력 증대
4. 인권 보호, 균등한 기회 제공, 여성의 사회 참여, 소수자 보호, 아동 노동, 난민 보호 등
5. 민주주의 및 시민사회 확대
6. 환경, 재사용,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7. 문화적 다양성
8. 과학 연구 및 어플리케이션 지원

법정 나이 이상인 개인 또는 법적으로 등록된 단체가 지원가능하며, AECID에 미등록된 단체도 지원가능하다. 사업 적정성, 질 등을 바탕으로 평가되며, Narrative report와 재정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2) GP/GA(Grants for Projects and Agreements)

CSO와 AECID간의 협력 프로그램으로 Projects와 Agreements로 나눠 2가지의 재정지원 방식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

Agreements는 다양한 지역과 분야를 다루며, 1개 이상 나라의 활동을 지원한다.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에 최고 € 500만을, CSO당 총 € 2천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총예산의 20% 이상을 CSO가 담당해야 한다.

Projects는 1개국 1개의 개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공표된 지원 규모는 2010년 € 1억, 2011년 € 1억 5천만, 2012년 € 1억 2천만, 2013년 € 1억5 백만이다. 예산 중 20% 이상을 CSO가 담당하며, 스페인 정부의 우선지역 A, B, C를 바탕으로 우선 선정된다.

프로젝트는 매년 초에 공모를 하며, 지난 2010년에는 4월 7일에 마감하였다. 그리고 Agreements 지원은 지난 2010년 3월에 종료됐으며, 다음 신청기한은 2012년에 시작될 예정이다.

파. 아일랜드

1) MAPS(Multi-Annual Programme Scheme)

아일랜드 정부와 소수의 대형 CSO간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장기간 예측가능한 펀드를 제공하여 CSO들의 장기 개발사업 지원한다. 현재까지 5개의 아일랜드 CSO가 MAPS에 참여하고 있다. 지원금이 제공되는 기간은 5년이며, 2010년에는 5개 CSO에 € 56,694,218을 지원했다.

2) CSP(Civil Society Fund)

유동성이 강한 펀드로서 개발관련 CSO뿐만 아니라 교육단체 등 다른 단체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연간 최대 € 20만이며(자체대응자금 최대 70%) 사업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지원가능하다. 지원자격으로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를 하는 목적의 사업을 강조하고 있으며, 심사기준으로는 정부-비정부기관의 파트너십과 위기관리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심사과정에서 기술평가 시 외부 전문가 및 관련 기술 담당자를 활용하고, 심사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Civil Society Approvals Committee가 수행한다.

하. 영국

1) CSCF(Civil Society Challenge Fund)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CSO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DFID가 영국 CSO의 국제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주요 수단으로 경쟁 심사를 통해 자금 지원이 결정되고 있다. 특히 CSCF는 소규모이면서 비주류에 속하는 영국 시민단체들도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최대 5년이며,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강화 사업이 주가 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수원국 현지 시민사회 파트너와 협력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영국기반의 비영리 기관이고, 사업 당 최대 US$ 82만까지 지원하며 DFID가 자금을 100%로 지원한다. 민

간 컨설팅사인 Triple Line이 사업의 관리, 진행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단체 선정 시 역량 등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현재 CSCF는 종료되어 신청할 수 없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종료시점인 2015년까지만 존재한다. 이를 대신해 사회적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에 더욱 중점을 둔 Global Poverty Action Fund (GPAF)가 진행되고 있다.

2) GPAF(Global Poverty Action Fund)

향후 종료될 CSCF를 대체할 GPAF는 2010년에 새로 출범된 제도이다. 빈곤감소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통한 MDGs 달성추구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지원하는 수요주도형(demand-led) 지원제도이다. 민간 컨설팅사인 Triple Line사가 GPAF을 운용하고, KTMG 같은 회계컨설팅사가 평가에 참여하기도 한다.

GPAF는 성격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되어 지원된다.

가) Global Poverty Action Fund – Innovation

빈곤감소를 위한 혁신적인 접근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2011년 예산은 £ 3백만 규모로 기존의 CSCF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3년간 평균 £ 50만 이하의 수입을 가지는 소형 규모의 단체이며, 지원 규모는 3년간 최대 £ 25만으로 DFID가 100%를 지원한다. 한 단체 당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 지역과 관련하여 DFID는 혁신적 사업 수행가능 지역을 'Innovation Project Countries' 리스트에 명시해 놓았다. 혁신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프로그램이지만 'Innovation'의 정의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나) Global Poverty Action Fund – Impact

빈곤감소와 MDGs의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산은 2011년의 경우 £ 36백만 규모로 사회적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체 당 지원규모는 최소 £ 25만 부터 최대 £ 4백만을 3년간 지원하는데, 지원금액의 제한기준은 신청

단체의 연간수입의 4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DFID는 75%를 지원하고, 단체 당 최대 3개 사업까지 지원가능하다. 중형 규모의 영국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PPA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수행 가능 지역을 'Impact Organization and Project Countries' 리스트에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 중 사업을 수행할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3) PPA(Partnership Programme Agreements)

개발도상국에서 장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영국 CSO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역량이 입증되고 인지도가 높은 영국의 CSO들에게 DFID가 전략적인 무상자금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PPA는 DFID의 시민사회협력사업 규모 중 2/3을 차지하고 있다.

CSO가 참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연간 수입이 £ 5천만이어야 하고, PPA를 통한 지원금이 수입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 협약기간은 3년~6년이다. 2010년에는 총 27개 단체가 DFID와 협약을 맺었으며, 연간 £ 9천만에 달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심사를 위한 Scoring System이 있고,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단체에게는 사유를 제시한다.

모든 PPA단체들에게는 독립적인 평가가 진행되는데 평가를 통해 상위 그룹은 지원금의 10%가 증대되며, 중간 그룹은 비슷한 규모로 유지되고, 하위 그룹은 10% 정도 감축된다. 이러한 단체 구분의 중요한 요소는 사업서류 작성능력, 필수 이행사항 준수 여부, 효과적인 지원자금 운용능력이다.

4) CGI(Common Ground Initiative)

영국 내 소규모 단체나 이주민 단체(디아스포라)을 통해 모국인 아프리카 개발을 지원하는 £ 2천만 규모의 프로그램으로, DFID가 공동재정지원을 하고, 코미디언이 설립한 Comic Relief가 운용하는 제도이다.

지원 자격으로는 소규모 단체의 경우 이전 2년간 £ 1만 이하의 운영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주민 단체(디아스포라)의 경우에는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다. 사업의 범위는 아프리카나 아프리카 그룹들 내에서의 사업으로 한정된다.

5) DRF(Disability Right Fund)

장애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Tide Foundation이 운용한다. 지원 규모는 US$ 2만이며 1년간 지원한다.

6) RAG(Responsible and Accountable Garment Sector Challenge Fund)

이 프로그램은 의류생산 분야에서 일하는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지원 사업으로, 이를 위해 일하는 회사, 노동조합, CSO들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 시장에 물건을 제공하는 아시아(중국 제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의 중·저소득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지원금이다. DFID가 사업비의 약 67%를 지원하며 규모는 £ 5~25만 범위이다. 사업기간은 보통 2~2년 반 정도이다. 2011년의 경우 4개 국가(방글라데시, 인디아, 네팔, 레소토)에서 12개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거. 오스트리아

1) NMP(NGO Micro-project)

ADC나 연방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는 제외한 신규단체를 위한 제도로 총 사업비용은 € 2만 이내여야 하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 5천이다. MDGs 달성 및 Three-Year Programme(3개년 단위의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관련 전략)과 일치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1년이다. 연중 수시접수하며, 사업 총 비용 중 50% 이상을 조달물품이나 건설 관련 경비로 지출할 수 없다. 간접비는 8%까지 지원하고, 현지 직원 및 타깃 그룹을 위한 훈련비용과 인지제고를 위한 비용(최대 직접경비의 10%)을 포함할 수 있다.

신청서류에 환경영향평가 체크리스트와 양성평등 설문지가 포함되고, 심사기준 중 효과성(무엇을 성취할 것인가)과 효율성(cost-benefit ratio)은 이 사업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2) IPS(Individual projects South)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개선, 개발에 대한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인지제고, 빈곤감소를 돕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CSO와 해당 국가의 파트너 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사업이다.

사업지역은 DAC에서 정의한 남부 지역에 속하는 국가에 중점을 두되, 흑해 지역과 다뉴브 지역은 제외한다. 사업 최대비용은 € 25만이며, 사업 당 최대 € 10만을 지원한다. 중점협력국가일 경우 사업비의 50%를, 기타 국가인 경우 25%를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2~3년이며, 매년 2회(4월 15일/10월 15일)에 걸쳐 사업신청을 받는데, 해당 지역 내에서 이미 ADC의 Framework programme 지원을 받은 단체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서류에는 신청서와 상세예산안, 환경평가 체크리스트, 양성평등질문지 외에 logical framework이 포함되는데 신규단체의 경우 요구하지 않는다. 심사기준에 선행사업에서의 책무성을 포함한다. 간접비는 10%이며, 전체 사업비의 5%까지 리뷰나 평가를 위해 쓸 수 있다.

3) IPE(Individual projects East)

사업지역 외의 기본적인 사항은 Individual projects South와 동일하다. 사업지역은 DAC에서 정의한 남동유럽, 동유럽,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지역이며 중점협력국과 기타 국가간의 사업비 매칭 비율은 각각 50%, 25%이다. 사업공모기간은 Individual projects South와 달리 연간 1회이며, 매년 2월 28일에 신청을 마감한다.

4) FP(Framework Programmes)

남부 및 동부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다년간 사업을 지원한다. 주력 활동에 대한 3년 이상의 개발협력 경험이 있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분야 및 주제별 연계와 시너지 효과를 수반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 신청기관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신

청기간은 연간 1회(2월 28일까지)이다.

최저지원금은 연간 € 30만이고, 사업비 매칭 비율은 ADA와 신청기관간 협의에 따라 달라지며 70~80%까지이다. 사업지원금 범위 결정기준에 지난 3년 동안의 평균 framework programmes 예산(신규 신청자는 제외)과 신청기관의 개발협력 분야 연간 총 사업규모를 포함한다. 사업기간은 최소 3년이며, 사업신청서 제출 후 ADA와의 미팅(5월)을 통해 사업 목적 및 지원범위를 결정한 후 상세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 사업은 세 개의 하부 범주가 있는데 Category Ⅰ은 일정한 기한을 가진 주제별, 지역별 사업을, Category Ⅱ는 새로운 분야, 시스템, 방식, 주제 등으로 실행되는 혁신적 사업을, Category Ⅲ는 다른 사업이나 도너들, 현지 조직 등과의 시너지 효과, 사업 지역 및 국가에서의 구조적 변화, 지식경영 및 노하우 전수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각 기관들은 연간보고서를 제출하고 ADC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를 받는데, 예산계획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간접비는 사업비의 최대 10%까지 가능하지만 € 16만을 초과할 수 없다.

너. 이탈리아

1) CF(Co-financing of NGOs)

이탈리아 정부가 직접 CSO 사업을 지원하며, 총 지원규모 중 15% 이상은 CSO가 담당해야 한다. 지원은 이탈리아 정부뿐만 아니라 관련 지역사무소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동안 최대 € 84만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러 CSO들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최고 € 165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건축, 자재비 등은 40%를 넘지 못한다.

이탈리아의 Law No. 49에 인증된 단체로 Articles 14, 36 and 39 of the Italian civil code에 준한 단체만 지원가능하며, 3년간의 경력을 요구한다. 또한 사업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주기적인 감사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의절차는 크게 4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외교부에 등록된 개발NGO는 사업계획서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이후 75일 내로 개발협력국의 7과(Office VII)가 사업제안서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는 프로그램 목표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우선순위가 기준이 된다. CSO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추가사항은 30일 이내에 CSO에 서면요청을 한다. 이후 개발협력국 내 기술전문팀(UTC, Cental Technical Unit)에서 사업제안서를 기술적인 차원에서 90일 이내에 검토하게 된다. 이 부서는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서로, 해외에 25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부여작업을 사무국에서 마친 후, 운영위원회에 상정된다. 운영위원회는 외교부 장관 또는 차관이 주도하며, 외교부 내 모든 국장과 재경부 및 경제개발부의 담당국장이 참석해 각 사업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을 한다.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후 15일내로 CSO는 지원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게 된다.

더. 일본

1) GAJNP(Grant Assistance for Japanese NGO Projects)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사회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일본 CSO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본부가 일본 국내에 있는 일본단체로, 임의단체였던 기간을 합쳐, 단체로서 2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에 한해 지원가능하다. 사업 규모는 사업의 내용, 단체의 역량 및 실적에 따라 상이하며, ¥ 2천만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신청한 단체는 일정 수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사업규모의 100%까지 지원가능하나, 자기 자금이 있는 경우나 당초 자기 자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해당 프로그램의 자금만으로 사업을 완성시킬 예정이었는데, 총 사업비가 당초 예산을 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사업기간은 단년을 기준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3년의 한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되기도 한다.

2) GGP (Grant Assistance for Grass-roots Human Security Projects, 외무성 지역사회 안전보장 무상자금협력)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89년에 도입된 제도로 해당국의 대외공관이 주축이 되어 진행된다. 국적을 불문한 국내/국제 CSO, 지방자치단체, 공립학교, 교육 및 기타 비영리단체가 고안한 소규모 프로그램에 무상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Basic Human Needs 분야 및 인간안전보장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심사는 사업의 영향력과 지속성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인건비 및 운영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3) JPP(JICA Partnership Program, JICA 풀뿌리 기술협력)

ODA를 통하여 수원국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JICA가 개발도상국의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을 일본의 CSO, 대학,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의 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한다. JICA 및 제안단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진행되며, 기존의 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풀뿌리파트너, 풀뿌리협력지원방식, 풀뿌리협동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지원조건, 선발방식 및 사업규모가 상이하다. 각 예산 규모 내에서 진행할 시 100% 매칭이 이루어지지만, 자기자금을 통하여 사업예산규모를 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JPP에 의해 커버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러. 캐나다

1) VSF(Voluntary Sector Fund)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접근을 하는 다양한 파트너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캐나다 내 등록된 법인 CSO를 대상으로 사업 당 최대 CAD 50만(매칭 75%)을 지원한다. 최대 사업기간은 3년이며 3개 사업까지 지원가능하다. 지원조건의 하나로 국제개발 사업에 최소 2년의 경험이 포함된다. CIDA의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은 VSF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서류 중에 필요시 환경평가서가 요구

되기도 한다. 심사기준은 CIDA의 5대 주요 핵심 목표인 거버넌스, 의료/보건, 기본교육, 환경, 수원국의 민간부문 개발 중 하나 이상 부합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심사는 Project Advisory Committee가 지원 대상의 사업을 심사 및 선정하며 CIDA 내의 타 부서로부터 국별 전략, 기술자문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한다.

2) VSP(Voluntary Sector Program)

캐나다 CSO뿐만 아니라 국제 CSO, 전문기관, 협동조합, 정책 파트너, 청소년 자원봉사 협력기관 등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캐나다에 등록된 법인이어야 하며, 투명한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국제개발 사업에서 최소 3년의 경험이 요구된다. 최소 CAD 50만(매칭 75%)을 지원하며 최대 사업기간은 5년이다.

이 프로그램 내에서 특정한 국제 CSO나 정책 파트너에게 3년 동안 조건 없이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

3) Partner for Development Program(Under $2M)

CIDA의 Partnerships With Canadians Branch(PWCB)에서 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CAD 200만(매칭 75%)까지 지원한다. 5년 동안 CAD 10만부터 누적하여 CAD 200만까지 지원하는데 한 기관 당 두 개의 사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으로 최소 2년 동안 개발도상국에서의 사업경험이 요구되고, 이 사업의 신규 신청기관에게는 매칭 비율 80%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관의 부담금은 캐나다 재원만 인정하며, 개발도상국 파트너 기관의 기부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청서는 제공되는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추가로 제출되는 서류는 부패방지 신고서와 현지 파트너의 정보 등이다. 심사기준과 과정은 5단계로 진행되는데, 신청서류제출, 자격기준 적합여부 판단, 제안서의 merit 평가, 신용위험 및 경영능력 평가, 계약의 단계를 가진다. 간접비는 CIDA가 제공하는 사업비용의 최대 12%까지 지원한다.

4) Partner for Development Program($2M and over)

CIDA의 Partnerships With Canadians Branch(PWCB)에서 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최대 5년 동안 최소 CAD 200만 이상(자체대응자금 75%)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최소 3년 이상의 사업경험이 요구되며, 신규 신청기관에게는 최대 85%까지 지원한다.

신청 서류와 심사과정은 Partner for Development Program(CAD 2백만 이하)과 동일하다. 이 두 프로그램 모두에서 CIDA는 CIDA의 중점 20개국과 3개의 테마에 일정 비율의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머. 포르투갈

1) NGDO CF(NGDO Co-financing)

포르투갈 정부원조기구인 Portuguese Institute for Development Assistance (IPAD)가 개발도상국 현지 기관과 협력하는 포르투갈 개발NGO의 개발사업에 공동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 2만부터 € 25만(자체대응자금 75%) 범위에서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2-3년이다. 지원조건으로 CSO로서 3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포르투갈 CSO만을 지원하며 IPAD에 등록된 CSO여야 한다. 우선 지원 국가는 포르투갈어 사용 국가이며, 지원 분야는 굿거버넌스, 참여와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퇴치, 개발 교육 분야이다. 신청심사는 IPAD가 담당하며 사업의 평가는 외부평가로서 사업의 특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전문가가 수행한다. Portuguese Platform of NGDOs는 약 50개 포르투갈 개발NGO를 위한 Umbrella 기관으로서 신청기관은 지원금 신청을 위해 이 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다.

2) FPP(Small Project Fund)

개발도상국의 포르투갈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자국 CSO들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사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단기 소규모 사업에 최대 € 1만까지 지원된다.

버. 프랑스

1) FSD(Social Development Fund)

주로 수원국의 현지 지역 커뮤니티의 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펀드로, 풀뿌리 수준의 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개발 수혜자들의 독립성 및 수혜국의 시민사회 역량강화와 소수자 및 장애인뿐만 아니라 대학 및 행정가들을 위한 지원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지원기간은 따로 명시된 것은 없고, € 7천에서 € 30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중 30% 이상은 CSO가 담당해야 하며, 사업수행 가능성과 사후관리 지속가능성, 그리고 각 국가 SCAC(Cooperation and Cultural Action Service) 사항을 고려해 선정된다. 특히 심사는 재정 및 사업 목표 일치성, 적절성 및 영향력 등을 평가해 대사관이나 SCAC가 최종 결정한다. 이 펀드는 현지 CSO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FISONG(Sectoral Innovation Facility for NGOs)

프랑스와 국외 CSO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Coordination SUD와 협의를 통해 정해진 주제에 관련한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한다. 현지 CSO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3년에서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에 € 500만 정도, 2개의 사업은 € 150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심사 시 수혜국 정보, 개혁성, 방법론, 목적, 결과 산출, 효과 및 위험성, 단체 및 수원국 접근성, 수혜국 파트너십, 재정 평가서, 지속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심사과정은 먼저 컨셉 노트(Concept Note)의 제출과 이에 대한 평가로 시작된다. 이후 AFD는 작은 CSO들 또는 컨소시엄을 선정해 공식 지원서와 예산안을 요청한다.

2010년의 주제는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서비스, 지방자치 또는 민간지원, 성과 생식, 건강을 위한 시민사회기관 지원이었다. 2011년의 주제는 영양실조 예방과 도시의 영양공급, 농업 생산물 마케팅 과정 등이다. 공모가 시작되면 CSO들은 4-5 페이지 분량의 예비제안서와 법인 등록 및 행정적인 문서를 제출한다.

3) FP(Field Projects, 파트너국 및 현지CSO 역량강화)

국제연대 및 지원개발을 우선순위로 하며, 개발교육을 함께 하는 사업이다. 사회개발기금(FSD)를 보완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지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다. 개발도상국 내의 개발협력 프로젝트 또는 프랑스 내 개발 교육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프랑스의 Statute Law of 1901에 준한 단체만 지원가능하며, 3년 동안의 경력과 재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AFD의 NGO위원회가 의사 결정을 하고, NGO파트너십 부서가 관리한다. 3년에서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예산의 15% 이상은 CSO가 담당해야 하고, AFD의 지원은 50%를 넘지 못한다.

4) CP(Convention Programmes)

지역 및 분야를 우선시하며, 남반구와 북반구의 파트너십 증대와 지식 공유를 목표로 한다. 3년에서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CSO협력국과의 교류 정도와 수원국 CSO의 요청 메일을 필수로 한다.

5) CMSP(Concerted multiple-stakeholder programme)

민관 협력과 CSO와의 파트너십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AFD가 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한다.

6) INTER-NP(Inter-NGO Programmes)

남·북반구 협력을 위한 커뮤니티 수준의 지원 프로그램이다. 4년 동안 최대 € 20만까지 지원되며, 최소 3개 이상의 단체가 연합해 신청 가능하다.

7) PRA-OSIM(Support Programme for Migrant Solidarity Organisations)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건강과 사회개발, 식수 및 위생, 환경, 문

화, 교육 및 직업훈련, 경제개발 및 지역개발, 그리고 시민사회 역량강화와 인권강화 등을 우선분야로 선정해 지원한다.

최대 € 12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CSO는 최소 10% 이상을 담당해야 한다. AFD는 최대 70%까지 지원가능하다.

8) Local Small Grants(NWLC)

AFD는 최근 소규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분권화된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그 일환으로 FSD를 보충하는 자금지원 프로그램인 현지 지원 기금(Local Small Grants, NWLC)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서는 AFD 현지 본부에 제출하며, 현지 본부는 AFD 본사와 함께 사업 준비에 관해 조정한다. 이 기금은 각 국가 단위에서 AFD에 의해 관리되는 기금으로 정부와 민간, CSO, 커뮤니티 기관이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예산 범위는 € 30만에서 € 75만이다. 지원자는 AFD 현지 본부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이 선정되면 AFD의 현지 담당자가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대사관의 조언도 받을 수 있으며, AFD의 현지 본부가 지원을 최종 결정한다.

8) Projects in Development Education and International Solidarity(인지제고)

남·북반구 이해 및 세계화 이해 교육, 그리고 연대 및 개발협력 캠페인 등의 인지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3년에서 4년까지 지원가능하다.

서. 핀란드

1) PAS(Partnership Agreement Scheme)

각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파트너 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현재 11개의 파트너 기관이 지원받고 있다. 파트너 기관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진행되며, 파트너 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2년간의 역량검증기간이 요구된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CSO들이 개발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활용의 유연

성, 장기적인 사업계획 및 관료제의 감소라는 개선이 이루어졌다.

사업의 최대·최소 규모는 정해져있지 않으나, 연간 € 2만 이상의 규모일 경우 엄격한 회계감사를 요구한다. 매칭은 85%까지 가능하며, 장애인 관련 단체의 경우 92.5%까지 지원한다. 사업기간 또한 최대·최소의 제한이 없는데, 재정지원은 1번에 1년의 사업비가 지급되며, 예외의 경우는 존재한다.

어. 호주

1) ANCP(Ausaid – NGO Cooperation Program)

CSO 지원을 통한 빈곤감소를 목적으로 호주 CSO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원자격은 9-12개월이 소요되는 OAGDA(Overseas Aid Gift Deductibility Scheme)를 거친 후,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서명하고 AusAID에 인증을 받아야 ANCP의 지원자격을 갖추게 된다.

지원규모는 Base인증의 경우 AUD 15만이고, Full인증의 경우에는 CSO의 RDE에 따라 보조금 금액을 결정한다. ANCP 지원금 중 10%는 호주 국민 개발인지 증진사업에, 5%는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 10%는 행정비로 책정된다. 1:5의 매칭비율로 지급되며 사업기간은 3년이다.

ANCP Innovation은 AusAID 인증단체 중 비교적 규모가 작은 단체의 혁신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원규모는 AUD 2만~15만이고, 40개 단체에게 AUD 3백만을 지원하고 있다.

Partnership Agreement는 역량 있는 단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것으로 2010년 7월에 실시되었으며, 5개 CSO와 5년간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2) CC2A(Community Call to Action)

미 인증단체를 지원하며 호주 지역사회 단체의 지역사회 접근성을 통한 효과적인 국제개발사업을 위한 제도이다. 단체별로 지원규모는 AUD 2만 5천~15만이고 사업기간은 1년이다. 파일럿 프로그램으로서 2011년에는 시행하지 않았다.

3) DAP(Direct Aid Program)

호주 정부의 파트너국 CSO 지원프로그램으로 수원국의 소규모 개발 사업과 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신청은 AusAid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호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원금은 AUD 5천~3만 정도의 규모이지만, DAP의 개별 사업 당 정해진 최소 혹은 최대 지원금에 대한 제한은 없다.

해당되는 사업은 보건, 교육, 소규모 인프라 구축, 위생, 농촌 개발, 환경 개발, 양성평등 등을 포함한다. 제안서에 모든 사업으로 인한 개발의 결과를 나타내어야 하며 비교적 단기간 내에 실행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신청서의 평가는 DAP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저. EU

1) EDF(European Development Fund)

아프리카, 카리브해와 미국의 태평양 그룹 (ACP)에 개발 지원을 하는 기금이다. 개정된 코토누 계약(Cotonou Agreement)에 설명이 되어있는 것과 같이, 그 목적은 평화와 안보,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정치 환경을 증진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ACP 국가의 경제적, 문화적 및 사회적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협력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목표와 세계 경제에 ACP 국가의 점진적 통합과 일치, 빈곤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5년을 기간으로 진행한다. 9기의 기금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0기의 기금은 2008년에서 2013년으로 진행되고 있다. 평균 € 37억 8천만을 1년 동안 지원하고 있으며, 10기의 총예산은 € 227억이다.

우선지원 대상은 국가마다 다르며, 국가 정책문서에 명시된 기준을 따른다.

2) DCI (Development Cooperation Instrument-geographic programmes, Thematic Programmes)

지리와 테마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기금으로, 기금의 목적은 MDGs를 포함한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개발, 민주주의 증진, 굿거버넌스, 인권 및 법 질서 향상 등이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남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아시아,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리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기금은 € 10조 570억이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테마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기금은 € 55억 9천 6백만 이다.

독립성과 책임감을 갖춘 비영리, 비정부 기관이 지원 가능하며, 경험이 적은 CSO는 EC의 지원을 받는 다른 CSO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권고 받는다. 주니어 파트너 기관은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없이 경험 및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규모와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업마다 상이하다. 사업은 통상 2-3년을 기본으로 한다.

컨셉 노트 및 지원서를 제출하되, Restricted call일 경우에는 컨셉 노트 통과 후 전체 지원서를 제출하며, Open call일 경우에는 컨셉 노트와 전체 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한다.

지리 프로그램은 남미의 사회통합, 아시아의 보건의료 강화, 중동의 아동 포함 인권 강화, 남아프리카의 빈곤감소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테마 프로그램은 국가별 지원프로그램이 아닌 특정한 테마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으로, 다(多)국가 활동도 지원가능하다.

3) ENPI (European Neighbourhood and Partnership Instrument-Country/ multi-country programmes, Cross-border Co-operation)

유럽 주변국 정책은 EU의 남부, 동부의 16개 이웃 국가에 대한 정치적인 결합, 무역과 경제통합 강화 등의 가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EU는 16개 국가 중 13개 국가와 연맹 협약 또는 파트너십과 협력 협약을 맺으며 관계를 강화한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 1,120억이 사용될 예정이며, 국가와 다국가 프로그램과 국경간 협력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지원된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와 다국가 프로그램에는 € 1조 260억이 사용될 예정이다.

비정부기관, 국가 또는 소수자 및 지역 시민 등을 대표하는 단체, 지역협력 및 통합에 관련된 조직, 소비자 단체, 여성 및 청소년 단체, 교육, 문화, 연구 및 과학 기관, 대학, 교회, 종교 단체와 사회, 미디어, 국경 단체, 비정부 단체 및 독립 재단 등이 모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규모와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업마다 상이하다. 사업은 통상 2-3년을 기본으로 한다.

컨셉 노트 및 지원서를 제출하되, Restricted call일 경우에는 컨셉 노트 통과 후 전체 지원서를 제출하고, Open call일 경우에는 컨셉 노트와 전체 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한다.

또한 국가와 다국가 프로그램과 관련해 주요한 수원국에는 현지 재외공관 내 관리부서를 신설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EC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국경간 협력 프로그램은 JMA(Joint Management Authorities)에 의해 관리되며, EU 주변국가의 사회 경제 개발 강화와 환경 및 공공 문제 해결, 그리고 국경 보장과 시민사회와의 접촉 강화 등이 중요한 목표이다.

4) EIDHR(European Instrument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민주주의와 법,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되는 프로그램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예산은 € 1조 1,040억이다.

지원에 있어 시민사회 기관을 통한 참여와 대의민주주의 및 인권 강화, 인권보호와 민주주의 강화와 관련된 국제적인 프레임워크 강화, 민주적인 선거 프로세스의 신뢰성과 투명성 구축을 중요시 한다.

지원자는 European Economic Area의 소속 국가, EU의 공식 후보자 국가 및 가입 국가 기반 단체여야 하며, 또는 OECD/DAC에서 정한 개발도상국 단체여야 한다. 규모와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업마다 상이하다. 사업은 통상 2-3년을 기본으로 한다.

컨셉 노트 및 지원서를 제출하되, Restricted call일 경우에는 컨셉 노트 통과 후 전체 지원서를 제출하고, Open call일 경우에는 컨셉 노트와 전체 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된다.

5) EU의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심사과정 및 평가

가) 심사과정 :

① 제안서 등록 : 제안 요청이 인터넷에 게시되면 이에 따라 기관은 제안서를 등록한다.

② 공개 단계 및 관리자 확인 : 모든 제안서는 동시에 개봉하며, 평가 위원회 서기관은 제안서 개봉을 감독한다. 제안서는 관리자의 확인을 거치고 체크리스트의 모든 항목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③ 예비제안서 평가 : 예비제안서는 활동계획과 관련성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 시 각국 EU대표단으로 전달되어 같은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30점 이상을 받은 컨셉 노트를 선발한다.

- 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가 이뤄지며, 마지막 평가 등급은 평가위원회에 제출된다.
- 컨셉 노트의 평가 기준은 활동의 적절성(25점), 활동의 지속성과 방법(15점), 운영능력(10점)으로 총점 50점이다.

④ 지원서 평가 : 지원서는 평가 등급에 의해 평가되며, 서기관은 점수에 따라 순위를 매긴 모든 제안서 리스트를 준비하고, 각각의 지원서에 완결된 평가 등급을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자격 검증 : 필요한 증빙서류에 따른 적격성을 평가하며, 지원자와 파트너가 계획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⑥ 평가위원회의 결론 : 평가자가 모든 제안서를 평가한 후에 평가위원회는 조언을 하며, 모든 결정은 평가 리포트에 기록된다.

- 평가위원회는 평가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기관이 정한 순위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만약 위원회가 평가자의 점수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경우 이 결정은 평가 리포트에 해명되어야 한다.
- 최종평가 리포트는 평가위원회의 최종 회의에서 결정되며, 승인을 위해 계약 당국으로 보내진다.

나) 모니터링 및 평가 :

① 내부 모니터링은 사업수행을 책임지는 사람이 수행하며, 외부 모니터링은 매니지먼트와 모니터링 기능이 분리되어 독립적인 모니터 담당자가 수행한다.

② 평가, 모니터링, 회계감사에 따라 평가 책임자와 평가 시기가 상이하다.

③ EC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개발 사업과 프로그램은 그 성과에 대한 ROM (The Results-Oriented Monitoring)을 받음.

- 현지 방문을 수행하며, 핵심 사업문서 평가와 수혜자를 포함한 관련 이해 관계자를 인터뷰 한다.
- 보고서의 투명성을 위해 EU는 사업 매니저와 파트너 정부에 보고서를 배포한다.

2. OECD/DAC 국가의 CSO 협력 목표 및 협력프로그램 조사 자료

가. CSO 협력 목표 및 우선순위

국가	자료
그리스	• http://www.hellenicaid.gr/frontoffice/portal.asp?cpage=NODE&cnode=14&clang=1 • http://www.hellenicaid.gr/frontoffice/portal.asp?cpage=RESOURCE&cresrc=29&cnode=13&clang=1
네덜란드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Netherlands. 2010. Letter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utlining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2010. p.12. • http://www.minbuza.nl/en/Key_Topics/Development_Cooperation/Partners_in_Development/Support_via_Non_Governmental_Organisations • Working together on global challenge – the Netherlands and Mult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0. P.56-58. • KOICA. 2011.『선진공여국 NGO 지원사업』. p.46-47.
노르웨이	• KOICA. 2011.『선진공여국 NGO 지원사업』.p.43.
뉴질랜드	• NZAID. Guideline Working With Civil Society Organisations. 2010. p.4. • NZAID and CID. Strategic Policy Framework for relations between NZAID and New Zealand NGOs. 2009.
덴마크	• Danida. 2010. General Guidelines for Grant Administration Throug Danish Civil Society Organization. • Danida. 2018. Strategy for Danish Support to Civil Society in Developing Countries. p. 7.
독일	• BMZ. 2011. German Development Policy at a Glance. p.12. • http://www.gtz.de/en/unternehmen/1734.htm
룩셈부르크	• KOICA. 2011.『선진공여국 NGO 지원사업』.p.90.
미국	• USAID. 2002. Policy Guidance, USAID-U.S. PVO Partnership. • USAID. 2006. Policy Framework For Bilateral Foreign Aid. • USAID. 2007. Grants Manaul.
벨기에	• Belgian Development Cooperation. 2010. Annual Report 2009. p.16, 73.
스웨덴	• http://www.Sida.se/English/Partners/Civil-Society-/Funding-support-to-civil-society-organisations--/Framework-organizations-/ • Sida. 2010. Sida's Instruction for Grants from the Appropriation Item Support via Swedish Civil Society Organization.
스위스	• FDFA. 2011. ABC of Development Policy. p.14.
스페인	• http://www.aecid.es/web/es/ongd/
아일랜드	• Irish Aid. 2010. Guidelines for Report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projects funded under The Civil Society Fund (CSF). p.1. • Irish Aid. 2010. Civil Society Fund(CSF) Guidelines for Applicant Organisations. p.5. • Irish Aid. 2008. Civil Society Policy. p.9.

영국	• DFID. 2011. DFID Civil Society Department Operational Plan 2011-2015. p.2. • http://www.dfid.gov.uk/Global-Issues/Emerging-policy/Civil-Society/
오스트리아	• Federal Ministry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ADA. 2007. NGO Cooperation - Austrian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document. p.10
이탈리아	• DGCS : the Committee of Ministries. Italian Development Co-operation 2011-2013 : Programming guidelines and directions. 2010. p.26.
일본	• JICA. 2007.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NGOs'. p.3.
캐나다	• CIDA. 1997. CIDA's Policy on Meeting Basic Humna Needs. p.6, p.12 • CIDA. 2011. Report on Plan and Priorities 2011-2012 p.3 • KOICA. 2011.『선진공여국 NGO 지원사업』. p.188.
포르투갈	• IPAD. 2006. Strategic Vision for Portuguese Development Cooperation p.19, p.44-45 • KOICA. 2011.『선진공여국 NGO 지원사업』. p.198
프랑스	• http://www.diplomatie.gouv.fr/en/france-priorities_1/ngo-non-governmental-or>%20ganization_2500/index.html • http://www.afd.fr/jahia/Jahia/home/AFD/nospartenaires/ONG/AFD-et-ONG • http://www.diplomatie.gouv.fr/en/france-priorities_1/civil-society-ngos_2500/relations-with-civil-society_7378/index.html • French Ministry of Foreign and European Affairs. Strategy 2011 : Development Cooperation : a French Vision : Framework Document. 2011. p.28. • French Ministry of Foreign and European Affairs. Development Cooperation : a French Vision : Framework Document. 2011. p.28.
핀란드	• http://formin.finland.fi/public/default.aspx?nodeid=15409&contentlan=2&culture=en-US • FORMIN. Guidelines for Civil Society in Development Policy.
호주	• AusAID. 2006. Australian Aid: Promoting Growth and Stability, A White Paper on the Australian Governments Overseas Aid Program. p.64.
EU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 46. THE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 Joint statement by the Council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States meeting within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mmission on European Union Development Policy : 'The European Consensus'. 2006. p.4.
한국	• KOICA. 2010.『NGO지원사업종합평가』.

나. 우선 지역 및 우선 분야

국가	자료
그리스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Greece. 2008. Auual Report 2008. p.64. (우선지역)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Greece. 2009. Annual Report 2009. p.18. (우선분야)
네덜란드	• 없음

노르웨이	• KOICA. 2011.『선진공여국 NGO 지원사업』.p.43.
뉴질랜드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New Zealand Aid Programme. 2010. p.1. (우선지역) • http://www.aid.govt.nz/what-we-do/working-with-ngos.html (우선분야)
덴마크	• Danida. 2010. General Guidelines for Grant Administration Through Danish Civil Society Organization.(우선지역, 분야)
독일	• BMZ. 2011. German Development Policy at a Glance. p.12. (우선지역/분야를 정하고 있지 않음을 명시)
룩셈부르크	• KOICA. 2011.『선진공여국 NGO 지원사업』.p.90.
미국	• USAID. 2011. Request for Applications (RFA) Number M-OAA-GRO-EGAS-DGP-11-0001 "Development Grants Program (DGP)". (우선 지역, 분야)
벨기에	• KOICA. 2011.『선진공여국 NGO 지원사업』. p.106.
스웨덴	• http://www.Sida.se/English/Partners/Civil-Society-/Funding-support-to-civil-society-organisations--/(우선분야)
스위스	• OECD. 2007. DAC Peer Review of Swiss. p.22-23.(우선분야)
스페인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Cooperation. Third Master Plan of Spanish Development Cooperation for 2009-2012. 2009. p.38-39. (우선지역) • AECID. Sp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09. p.3. (우선지역)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Cooperation. Third Master Plan of Spanish Development Cooperation for 2009-2012. 2009. p.28-34. (우선분야) • AECID. Sp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09. p.9. (우선분야)
아일랜드	• Irish Aid. 2011. Background Note for the Minister of State. p.2. (우선 지역,분야)
영국	• DFID. 2011. Bilateral Aid Review Results: country Summaries.(우선지역) • DFID. 2011. DFID Civil Society Department Operational Plan 2011-2015. p.3. (우선분야)
오스트리아	• Federal Ministry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2009. Three-Year programme on Austrian Development 2009-2011. p.15 (우선 지역) • Federal Ministry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2009. Three-Year programme on Austrian Development 2009-2011. p.16 (우선 분야)
이탈리아	• DGCS : the Committee of Ministries. Italian Development Co-operation 2011-2013 : Programming guidelines and directions. 2010. p.26 (우선지역/우선분야)
일본	• 없음
캐나다	• http://www.acdi-cida.gc.ca/acdi-cida/ACDI-CIDA.nsf/eng/CEC-722111726-KXG#partners (우선지역/분야)
포르투갈	• IPAD. 2006. Strategic Vision for Portuguese Development Cooperation. p.25. (우선지역) • IPAD. 2006. Strategic Vision for Portuguese Development Cooperation. p.26-28. (우선분야)
프랑스	• http://www.euroresources.org/index.php?id=416 (우선지역 /분야)

핀란드	• 없음
호주	• AusAID. 2006. Australian Aid : Promoting Growth and Stability. p.26-31. (우선지역)
EU	• http://www.euroresources.org/index.php?id=414 (우선지역/분야)
한국	• 손혁상 외. 2010.『NGO지원사업종합평가』. 한국국제협력단 사업평가실

다.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국가	프로그램	자료
그리스	Development Program	• http://www.hellenicaid.gr/frontoffice/portal.asp?cpage=NODE&cnode=19&clang=1 • http://www.euroresources.org/guide/funding_programmes_open_to_national_applicants/gr_1_development_programmes.html • KOICA. 2011.『선진공여국 NGO 지원사업』. p.39-45.
	Activities Aiming at Comb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 http://www.hellenicaid.gr/frontoffice/portal.asp?cpage=NODE&cnode=86&clang=1
	Humanitarian and Food Aid Programmes	• http://www.hellenicaid.gr/frontoffice/portal.asp?cpage=NODE&cnode=53&clang=1
	Development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Raising Activities	• http://www.hellenicaid.gr/frontoffice/portal.asp?cpage=NODE&cnode=55&clang=1
네덜란드	MFS Ⅱ	• KOICA. 2011.『선진공여국 NGO 지원사업』. p.48-49. • http://www.minbuza.nl/mfs • Minbuza. “Policy Framework Dutch Cofinancing System Ⅱ 2011-2015”
	Choices and Opportunities Fund	• http://www.minbuza.nl/en/Key_Topics/Development_Cooperation/Grant_Programmes/Choices_and_Opportunities_Fund • Minbuza. Grants Framework Choices and Opportunities Fund 2011-2014
	MDG 3 Fund	• http://www.minbuza.nl/en/Key_Topics/Development_Cooperation/Grant_Programmes/MDG3_Fund • http://www.minbuza.nl/en/Key_Topics/Development_Cooperation/Dutch_development_policy/Millennium_Development_Goals_MDGs/Dutch_aim_for_MDG_3/MDG3_Fund/MDG3_Fund_Investing_in_Equality
	Funding Leadership and Opportunities for Women (FLOW)	• http://www.minbuza.nl/en/Key_Topics/Development_Cooperation/Grant_Programmes/FLOW_Funding_Leadership_and_Opportunities_for_Women • Minbuza. FLOW Policy Themes ‘Policy rules : assessment and application procedures’.

네덜란드	PDP Fund	• http://www.minbuza.nl/en/Key_Topics/Development_Cooperation/Grant_Programmes/PDP_Fund_against_poverty_related_diseases_2011_2014 • Minbuza. PDPs 2011-2014 Grants Framework.
	Standard Framework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http://www.minbuza.nl/en/Key_Topics/Development_Cooperation/Grant_Programmes/Standard_Framework_for_Development_Cooperation • Minbuza. Standard Framework for Development Cooperation.
노르웨이	Individual Agreement (IA)	• http://www.euroresources.org/guide/funding_programmes_open_to_national_applicants/no_2_multi_year_framework_agreements.html • KOICA. 2011.『선진공여국 NGO 지원사업』 p.45.
	Cooperation Agreement (CA)	• http://www.euroresources.org/guide/funding_programmes_open_to_national_applicants/no_2_multi_year_framework_agreements.html • KOICA. 2011.『선진공여국 NGO 지원사업』 p.45.
뉴질랜드	Sustainable Development Fund (SDF)	• http://www.aid.govt.nz/what-we-do/nz-ngo-contestable-funds.html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Trade. Sustainable Development Fund Guidelines. 2010.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Trade. Humanitarian Response Fund Guideline. 2010.
덴마크	Framework Agreements(FA) Programme Agreements(PA) Individual Project(IP) Alliance Programme(AP) Mini Programme Agreements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2008. Strategy for Danish Support to Civil Society. p.38-39.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2006. Administrative Guidelines for Danish Framework Organisations. • KOICA. 2011.『선진공여국 NGO 지원사업』 p.74-76.
	Project Fund	• KOICA. 2011.『선진공여국 NGO 지원사업』 p.78-80. • PATC. 2011. The Project Fund. p.13-20
	Local Grant Authority (LGA)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2008. Strategy for Danish Support to Civil Society. p.38- • http://www.euroresources.org/index.php?id=328
독일	Large-Scale Projects for NGOs	• http://www.euroresources.org/index.php?id=357
	Small-Scale Projects for NGOs	• http://www.euroresources.org/index.php?id=356
	Small-Scale Embassy Project	• http://www.euroresources.org/index.php?id=326
룩셈부르크	Co-funding of NGO Projects	• http://www.euroresources.org/guide/funding_programmes_open_to_national_applicants/lu_1_co_funding_of_ngo_projects.html • KOICA. 2011.『선진공여국 NGO 지원사업』 p.92-93.

룩셈부르크	Framework Agreement	• http://www.euroresources.org/guide/funding_programmes_open_to_national_applicants/lu_2_framework_agreements.html • KOICA. 2011.『선진공여국 NGO 지원사업』. p.92-93.
미국	Development Grants Program (DGP)	• USAID. 2011. Request for Applications (RFA) Number M-OAA-GRO-EGAS-DGP-11-0001, Development Grants Program (DGP).
	Fixed Obligation Grants (FOG)	• USAID. 2010. Fixed Obligation Grant (FOG) Entity Eligbility Checklist : A Mandatory Reference for ADS Chapter 303. • USAID. 2010. Awarding Fixed Obligation Grants t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 An Additional Help Document For ADS Chapter 303.
벨기에	Co-financing Of Programmes	• http://diplomatie.belgium.be/en/policy/development_cooperation/grants/co-financing_ngos/ • KOICA. 2011.『선진공여국 NGO지원사업』.p.107-114.
	Consolidation of Society	
	Belgian Fund for Food Security	
	Conflict Prevention and Peace Consolidation	
스웨덴	Framework Organization (FO)	• http://www.euroresources.org/index.php?id=398 • http://www.Sida.se/English/Partners/Civil-Society-/Funding-support-to-civil-society-organisations--/Framework-organizations-/ • KOICA. 2011.『선진공여국 NGO지원사업』.p.57-63
스위스	NGO지원사업	• SDC. 2001. Funding from SDC to Swiss NGO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스페인	Convocatoria abierta y permanente (a Permanent Open Tender, CAP)	• http://www.aecid.es/es/que-hacemos/ONGD/ • http://www.euroresources.org/guide/funding_programmes_open_to_all_applicants/es_1_permanent_open_tender.html
	Grants for Projects and Agreements	• http://www.euroresources.org/index.php?id=363 • Ministry of Foreing Affairs and Coooperation. Third Master Plan of Spanish Development Cooperation for 2009-2012. 2009.
아일랜드	Multi-Annual Programme Scheme (MAPS)	• Irish AID. 2010. Mid Term Review of Irish Aid's Multi-Annual Programme Scheme 2006-2011.
	Civil Society Fund (CSF)	• Irish AID. 2010. Civil Society Fund(CSF) Guidelines for Applicant Organisations. • Irish AID. 2010. Guidelines for Report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under the Civil Society Fund(CSF). • Irish AID. 2010. CSF Financial Report.

영국	Civil Society Challenge Fund (CSCF)	• http://www.dfid.gov.uk/Working-with-DFID/Funding-opportunities/Not-for-profit-organisations/CSCF/ • KOICA. 2011.『선진공여국 NGO 지원사업』. p.82-87.
	Global Poverty Action Fund - Innovation	• http://www.dfid.gov.uk/Working-with-DFID/Funding-opportunities/Not-for-profit-organisations/CSCF/ • http://www.dfid.gov.uk/Working-with-DFID/Funding-opportunities/Not-for-profit-organisations/Global-Poverty-Action-Fund/
	Global Poverty Action Fund - Impact	• http://www.dfid.gov.uk/Working-with-DFID/Funding-opportunities/Not-for-profit-organisations/Global-Poverty-Action-Fund/
	Partnership Programme Agreement (PPA)	• http://www.dfid.gov.uk/Working-with-DFID/Funding-opportunities/Not-for-profit-organisations/PPA • KOICA. 2011.『선진공여국 NGO 지원사업』. p.80-81.
	Common Ground Initiative (CGI)	• http://www.dfid.gov.uk/Working-with-DFID/Funding-opportunities/Not-for-profit-organisations/Common-ground/
	Responsible and Accountable Garment Sector Challenge Fund (RAG)	• http://www.dfid.gov.uk/Working-with-DFID/Funding-opportunities/Business/Responsible-and-Accountable-Garment-Sector-RAGS-Challenge-Fund-/ • http://www.dfid.gov.uk/Working-with-DFID/Funding-opportunities/Business/Responsible-and-Accountable-Garment-Sector-RAGS-Challenge-Fund-/RAGS-projects/
오스트리아	NGO Micro-project	• ADA. NGO Micro-Projects Funding Guidelines.
	Individual projects South	• ADA. NGO Individual Projects South Funding Guidelines.
	Individual projects East	• ADA. NGO Individual Projects East Funding Guidelines.
	Framework Programmes	• ADA. NGO Framework Programmes. • KOICA. 2011.『선진공여국 NGO 지원사업』. p.160-163.
이탈리아	Co-financing of NGOs	• Direzione Generale Per La Cooperazione Allo Sviluppo : Italian Development Co-operation 2010 –2012. Programming guidelines and directions. • http://www.cooperazioneallosviluppo.esteri.it/pdgcs/italiano/Partner/ONG/intro.html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Cooperation. Progetti promossi da Ong Procedure di presentazione e gestione Approvate dal Comitato direzionale con delibera n. 73 del 9-10-2006.
일본	Grant Assistance for Japanese NGO Projects	• MOFA. '日本NGO連帯無償金協力 申請の手引き'.
	Grant Assistance for Grass-roots Human Security Projects	• MOFA. Grant Assistance for Grass-roots Human Security Projects. (팜플렛)

일본	JICA Partnership Program	• MOFA. Outline of JPP. • ICA. Application Guide for JICA Partnership Program. • http://www.jica.go.jp/partner/kusanone/index.html • http://www.mofa.go.jp/mofaj/gaiko/oda/shimin/oda_ngo/shien/kusanone.html
캐나다	Voluntary Sector Fund (VSF)	• http://www.acdi-cida.gc.ca/acdi-cida/acdi-cida.nsf/eng/RAC-12124516-NTU • KOICA. 2011.『선진공여국 NGO 지원사업』. p.191-193.
	Voulntary Sector Program (VSP)	• http://www.acdi-cida.gc.ca/acdi-cida/acdi-cida.nsf/eng/RAC-12124516-NTU • KOICA. 2011.『선진공여국 NGO 지원사업』. p.191-193.
	Partner for Development Program(under $2M)	• CIDA. 2010. CIDA-PWCB Partners for Development Program Guidelines(Uner $2M).
	Partner for Development Program($2M and Over)	• CIDA. 2010. CIDA-PWCB Partners for Development Program Guidelines($2M and Over).
포르투갈	NGDO Co-financing	• http://www.euroresources.org/guide/funding_programmes_open_to_national_applicants/pt_1_ngdo_co_financing.html
	Small Project Fund(FPP)	• http://www.terravivagrants.org/Home/view-grant-makers/government-organizations/portuguese-institute-for-development-support
프랑스	Social Development Fund	• http://www.euroresources.org/guide/funding_programmes_open_to_all_applicants/fr_1_social_development_fund.html
	Sectoral Innovation Facility for NGOs (FISONG)	• http://www.afd.fr/jahia/Jahia/cache/offonce/home/AFD/nospartenaires/ONG/Financement-ONG/FISONG/actualites-fisong;jsessionid=6F5559A1AE9C54A725E1A61D536AC537
	Field projects	• http://www.euroresources.org/guide/funding_programmes_open_to_national_applicants/fr_3_field_projects.html
	Convention Programmes	• http://www.diplomatie.gouv.fr/en/france-priorities_1/civil-society-ngos_2500/relations-with-civil-society_7378/index.html • French Ministry of Foreign and European Affairs. Strategy 2011. Development Cooperation : a French Vision : Framework Document. 2011. • http://www.euroresources.org/guide/funding_programmes_open_to_national_applicants/fr_4_convention_programmes.html • http://www.euroresources.org/guide/funding_programmes_open_to_national_applicants/fr_5_concerted_multiple_stakeholder_programme.html • http://www.euroresources.org/guide/funding_programmes_open_to_national_applicants/fr_8_support_programme_for_migrant_solidarity_organisations_pra_osim.html • http://www.euroresources.org/guide/funding_programmes_open_to_national_applicants/fr_7_projects_in_development_education_and_international_solidarity.html • KOICA. 2011.『선진공여국 NGO 지원사업』. p.210.
	Concerted multiple-stakeholder programme	
	Inter-NGO Programmes	
	Support Programme for Migrant Solidarity Organisations (PRA-OSIM)	
	Projects in Development Education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핀란드	Partnership Agreement Scheme	• http://www.euroresources.org/guide/funding_programmes_open_to_national_applicants/fi_1_ngo_co_financing.html • http://www.formin.fi/public/default.aspx?nodeid=15436&contentlan=2&culture=en-US
호주	AusAID - NGO Cooperation Program (ANCP)	• AusAID. NGO Cooperation Program (ANCP) Guidelines. • AusAID. 2009. ANCP Streamlining and Reform Agenda. • AusAID. 2006. Summary of AusAID NGO Cooperation Program (ANCP) Review Recommendations. • AusAID. 2011. Agency Profile Full Accreditation.
	Community Call to Action	• AusAID. 2009. Community Call to Action Funding Guideline.
	Direc Aid Program(DAP)	• http://www.dfat.gov.au/direct_aid_program/dap_guidelines.html
EU	European Development Fund (EDF)	• EU. 2010. Practical Guide to Contract procedures for EU external actions. • http://www.euroresources.org/guide/funding_programmes_open_to_all_applicants/eu_4_european_development_fund.html
	Development Cooperation Instrument (DCI-geographic programmes, Thematic Programmes)	• http://ec.europa.eu/europeaid/work/ap/aap/2011_en.htm#theme • http://www.euroresources.org/guide/funding_programmes_open_to_all_applicants/eu_5_dci_geographic_programmes.html
	European Neighbourhood and Partnership Instrument (ENPI - Country/multi-country programmes, Cross-border Co-operation)	• http://ec.europa.eu/europeaid/work/ap/index_en.htm • http://ec.europa.eu/europeaid/work/ap/awp/2011_en.htm • http://www.euroresources.org/guide/funding_programmes_open_to_all_applicants/eu_1_enpi_countrymulti_country_programmes.html • http://www.euroresources.org/guide/funding_programmes_open_to_all_applicants/eu_2_enpi_cross_border_co_operation.html
	European Instrument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EIDHR)	• http://www.euroresources.org/guide/funding_programmes_open_to_all_applicants/eu_3_eidhr.html • http://ec.europa.eu/europeaid/work/ap/awp/2011_en.htm

Ⅱ. 설문조사

1. 국내 NGO 설문조사

○ 본 설문조사는 총 136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 이는 KOICA에 등록한 단체를 기준으로 해원협 소속 단체와의 중복단체 및 설문응답을 거부한 단체를 제외한 모집단 수임.

○ 설문조사에는 총 79개 단체가 참여하여 58%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해원협 소속 단체는 52개, 해원협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는 27개임.

○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응답 시 설문응답자의 개별 의견이 아닌 단체의 의견으로 간주됨을 명시하여 반드시 국제개발협력사업 담당자가 응답하거나 담당부서의 의견을 취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음.

<표 1> 설문조사 단체 목록[151)]

	해원협 단체	비 해원협 단체
1	DSI	KOCUN
2	한국JTS	국경없는교육가회
3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국제결핵연구소
4	KVO	글로벌비전
5	한국YMCA전국연맹	나눔인터내셔날
6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	날개달기운동본부
7	광성	더프라미스
8	국제아동돕기연합	메디피스
9	국제옥수수재단	미래숲
10	국제의료협력단	보금자리
11	굿네이버스	봄

151) 비 해원협 단체 명단에 있는 단체 중 설문조사 당시에는 해원협 회원이 아니었으나 그 후 회원가입을 한 단체도 있음.

12	굿피플	새누리좋은사람들
13	글로벌케어	서비스포피스
14	기아대책	선한봉사센터
15	다일복지재단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16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아시아공동체
17	동서문화개발교류회	아이씨씨코리아
18	라파엘클리닉인터내셔널	엄홍길휴먼재단
19	로터스월드	열린의사회
20	밝은사회클럽국제본부	월드채널
21	방글라데시개발협회	지라니문화사업단
22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라오스친선협회
23	세계선린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4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한국카톨릭의료협회
25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한미친선좋은친구협회
26	아시아협력기구	한울안운동
27	아프리카미래재단	한중앙아시아교류진흥회
28	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	
29	어린이재단	
30	월드비전	
31	월드쉐어	
32	월드투게더	
33	웰인터내셔널	
34	위드	
35	은평천사원	
36	인구보건복지협회	
37	장미회	
38	지구촌공생회	
39	지구촌나눔운동	
40	코피온	
41	태화복지재단	
42	팀앤팀	
43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44	푸른아시아	
45	플랜한국위원회	
46	하트하트재단	
47	한마음한몸운동본부	
48	한민족복지재단	
49	한베재단	

50	한국해비타트	
51	한국헬프에이지	
52	한국희망재단	

가. 응답단체의 특성

○ 설문에 응답한 단체 중 국제개발사업 수행연도가 3년~5년인 단체가 27개(35.1%), 10년 이상이 21개(27.3%), 6년~10년이 15개(19.5%), 3년 미만이 14개(18.2%)임.

○ 자체 역량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여부의 경우 45개 단체가 (62.5%) 자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27개 단체는(37.5%) 자체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교육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국제개발사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모금·홍보·재정·회계 등의 행정 실무 교육은 제외) 참여 여부는 42개 단체가(56.0%) 참여했으며, 33개 단체는(44.0%)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30명(39.0%), 여자 47명(61.0%)이 응답했으며, 연령대의 경우 30세~34세 26명(33.8%), 45세 이상 17명(22.1%), 25세~29세 14명(18.2%), 40세~44세 11명(14.3%), 35세~39세 9명(11.7%)이 설문에 응답함.

<표 2> 설문응답 단체의 특성

항목		빈도	백분율(%)	항목		빈도	백분율(%)
성별	남	30	39.0	자체 수행하고 있는 조직 및 인적 역량강화 교육 혹은 프로그램 수행여부	아니오	45	62.5
	여	47	61.0		예	27	37.5
	합계	77	100.0		합계	72	100.0
연령대	30세~34세	26	33.8	예 일때 역량강화교육의 기타의견	Global action		
	45세 이상	17	22.1				
	25세~29세	14	18.2		결핵 및 건강증진 기초 및 임상		
	40세~44세	11	14.3		정기적인 워크숍 실시		
	35세~39세	9	11.7		현지 활동에 직접 참여케 하고 수시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고 있음		
	합계	77	100.0				

국제 개발 사업 수행 연도	3년~5년	27	35.1	교육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국제개발사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여부 (모금·홍보·재정·회계 등의 행정 실무 교육은 제외)	예	42	56.0
	10년 이상	21	27.3		아니오	33	44.0
	6년~10년	15	19.5		합계	75	100.0
	3년 미만	14	18.2				
	합계	77	100.0				

○ 주로 활동하는 분야는 의료보건 23개 단체(31.5%), 지역개발 17개 단체(23.3%), 교육 15개 단체(20.5%), 사회복지 6개 단체(8.2%), 아동 5개 단체(6.8%), 문화교류 3개 단체(4.1%), 환경 2개 단체(2.7%), 농업 2개 단체(2.7%)로 나타남.

<표 3> 주요활동분야

항목		빈도	백분율(%)
주로 활동하는 분야	의료보건	23	31.5
	지역개발	17	23.3
	교육	15	20.5
	사회복지	6	8.2
	아동	5	6.8
	문화교류	3	4.1
	환경	2	2.7
	농업	2	2.7
	합계	73	100.0

○ 출범배경의 경우 종교 기반 단체 23개(34.3%), 시민사회 단체 18개(26.9%), 사회복지 단체 13개(19.4%), 국제NGO의 한국 사업체 11개(16.4%), 기타 2개(3.0%)로 나타남.

<표 4> 응답단체의 출범배경

항목		빈도	백분율(%)
출범배경	종교 기반 단체	23	34.3
	시민사회 단체	18	26.9
	사회복지 단체	13	19.4
	국제NGO의 한국 사업체	11	16.4
	기타	2	3.0
	합계	67	100.0

○ 조직 및 인적 역량강화와 관련한 세부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자체적으로 조직 및 인적 역량강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 단체는 20개(37.7%), 실시 계획이 없는 단체는 33개(62.3%)로 나타남.
- 자체적으로 조직 및 인적 역량강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은 세미나 직원연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과 현안 등 흐름, 지원국가 현황에 대한 교육, 인성교육, 현지적응, 인력양성, 활동가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 실무 및 사업 계획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국내외 전문가 초빙), 해외사업관련 위기관리교육,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관련 교육 등으로 나타남. 현재는 인원부족과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계획만 있는 상황임.

<표 5> 조직 및 인적 역량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의 자체적인 실시 계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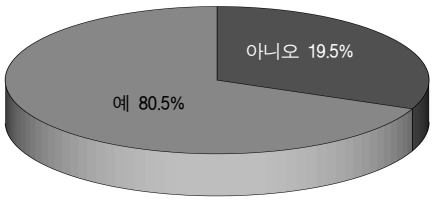
항목		빈도	백분율(%)
자체적으로 조직 및 인적 역량강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오	33	62.3
	예	20	37.7
	합계	53	100.0

나. 설문조사 내용

1. NGO 지원사업에 있어 일정한 기준에 따라 NGO들을 그룹화하고 그룹에 따라 특성을 달리하여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예 62개(80.5%), 아니오 15개(19.5%) 순으로 나타남.

<표 6, 그림 1> NGO 그룹화 및 특성에 따른 지원제도 도입 필요 여부

구분	빈도	백분율(%)
예	62	80.5
아니오	15	19.5
합계	7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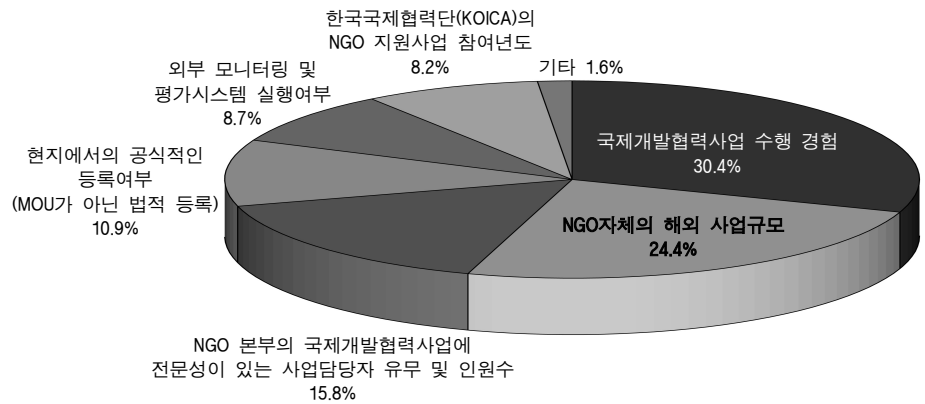
○ 1번 문항에서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 구체적 사유는 다음과 같음.

- NGO가 그룹화되는 것보다 NGO의 특성을 살린 지원이 필요함.
- NGO는 자유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각각 특성을 띄고 일하고 있기에 굳이 NGO들을 '제도'라는 틀에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 그룹화를 통해 NGO별 사업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 시민단체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신규 단체의 사업참여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룹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잘 모르겠음.
- NGO들은 유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로 규정되기 어려움.
- 한국 NGO들의 역량이 세부적인 기준에 맞춰서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강화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함. 또한 세부적인 기준에 맞춰 교육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만, 국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업하지 않는 단체들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적어지게 되며, INGO가 아닌 토종 NGO가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라 판단됨.

2. NGO들을 그룹화하고 그룹에 따라 특성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그 그룹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경험 56개(30.4%), NGO 자체의 해외 사업규모 45개(24.4%), NGO 본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사업담당자 유무 및 인원수 29개(15.8%), 현지에서의 공식적인 등록 여부(MOU가 아닌 법적 등록) 20개(10.9%), 외부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실행 여부 16개(8.7%),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NGO 지원사업 참여년도 15개(8.2%), 기타 3개(1.6%) 순으로 나타남.

<표 7, 그림 2> NGO 그룹화 및 특성에 따른 지원 시, 그룹의 구분 기준

구분	빈도	백분율(%)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경험	56	30.4
NGO자체의 해외 사업규모	45	24.4
NGO 본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사업담당자 유무 및 인원수	29	15.8
현지에서의 공식적인 등록여부(MOU가 아닌 법적 등록)	20	10.9
외부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실행여부	16	8.7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NGO 지원사업 참여년도	15	8.2
기 타	3	1.6
합 계	18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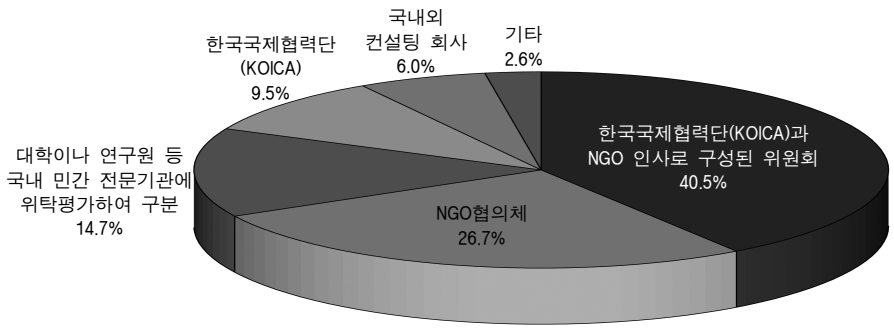
○ 기타 기준으로 사업분야, 사업목적, 사업방식, 기존활동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급자 위주의 기준보다는 수요자의 관점(수원국 NGO)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

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경제개발·교육·보건 등 원조분야 특성적 구분, 혹은 대상국가나 전문지역의 분류)

3. 사업참여 NGO를 구별하여 그룹화한다면, 분류작업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KOICA와 NGO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 47개(40.5%), NGO협의체 31개(26.7%), 대학이나 연구원 등 국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평가하여 구분 17개(14.7%), 한국국제협력단(KOICA) 11개(9.5%), 국내외 컨설팅 회사 7개(6.0%), 기타 3개(2.6%) 순으로 응답함.

<표 8, 그림 3> NGO 그룹화 분류의 주체

구분	빈도	백분율(%)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NGO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	47	40.5
NGO협의체	31	26.7
대학이나 연구원 등 국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평가하여 구분	17	14.7
한국국제협력단(KOICA)	11	9.5
국내외 컨설팅 회사	7	6.0
기 타	3	2.6
합 계	1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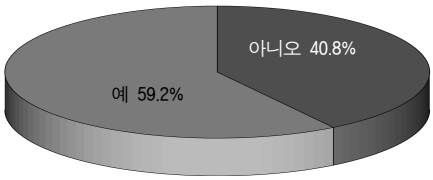


○ 분류주체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첫째, NGO 전수조사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정부기관에 제안하는 방식과, 둘째, 사업수행주체는 NGO가 되며 필요시 추후 KOICA가 조정하는 방안, 셋째, 이해관계가 없는 공정한 전문기관이 수행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4. 새롭게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액 상한이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예 45개(59.2%), 아니오 31개(40.8%)로 응답함.

<표 9, 그림 4>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단체를 위한 지원액 상한이 있는 제도의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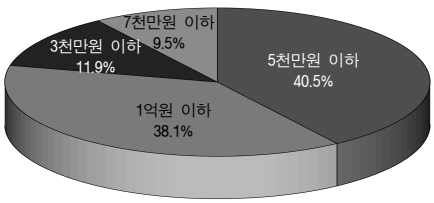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예	45	59.2
아니오	31	40.8
합계	76	100.0



4-1. (4번 문항에서 '예'라고 대답한 경우) 처음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 지원방식의 적절한 지원상한선에 대해 5천만 원 이하 17개(40.5%), 1억 원 이하 16개(38.1%), 3천만 원 이하 5개(11.9%), 7천만 원 이하 4개(9.5%) 순으로 응답함.

<표 10, 그림 5> 처음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를 위한 소액 지원방식의 적절한 지원상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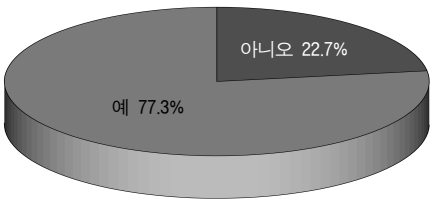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5천만원 이하	17	40.5
1억원 이하	16	38.1
3천만원 이하	5	11.9
7천만원 이하	4	9.5
합계	42	100.0



5. 빈곤퇴치 기여금제도와 같은 NGO 지원사업 외 정부 지정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예 58개(77.3%), 아니오 17개(22.7%) 순으로 나타남.

<표 11, 그림 6> NGO 지원사업 외 정부 지정 지원사업 확대 필요 여부

구분	빈도	백분율(%)
예	58	77.3
아니오	17	22.7
합계	7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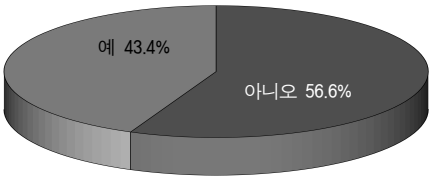
○ 정부 지정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으로 다음을 제안하고 있음.

- 수행사업평가·사후관리사업
- 지역조사수행 지원사업
- MDGs 달성을 위한 집중 사업
  (HIV/AIDS 또는 아프리카 지역 질병퇴치 사업, 초등교육 사업 등)
- 의료 및 보건 관련 사업(무료진료소 개발 및 운영, 현지의료진 정착사업 등)
- 해외진출 한국기업, 한국인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사업
- 기후변화 펀드 등 분야별 사업지원
- 새마을운동 OD
- NGO 협회 및 기금기구 건설, 해외사업 진출기업의 국제사회공헌 사업
- 아시아 저개발국 의료낙후지역, 보건의료인 육성, 의료교육지원센터 설립
  (현지 or 국내-국내의 경우 다문화병원과 결합한 국제의료센터 방식)
- 차상위계층 일자리창출 분야, 1인 창업교육 및 자금지원
-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여성, 어린이를 위한 사업
- 아시아 지역과 중남미 지역 지원
- 한국의 개발노하우를 개발도상국과 공유할 수 있는 중점지원 분야 선정 및 공모

6. 현재 수행되고 있는 NGO지원사업 외 NGO협의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의 도입의 필요에 대해 아니오 43개(56.6%), 예 33개(43.4%) 순으로 응답함.

<표 12, 그림 7> NGO협의체를 통한 사업 지원 방식 도입 필요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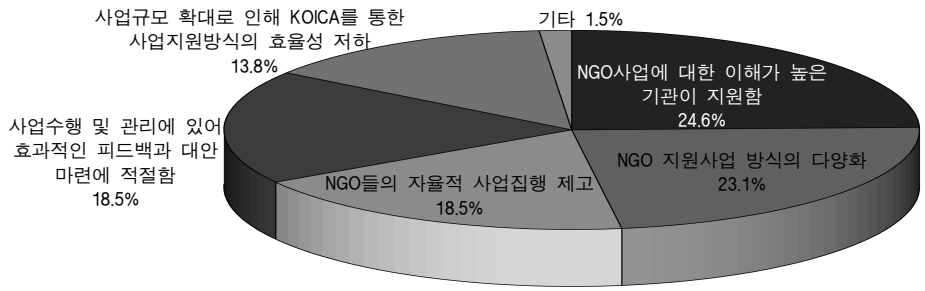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예	33	43.4
아니오	43	56.6
합계	76	100.0



6-1. (6번 문항에서 '예'라고 대답한 경우) NGO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방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NGO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기관이 지원함 16개(24.6%), NGO 지원사업 방식의 다양화 15개(23.1%), NGO들의 자율적 사업집행 제고 12개(18.5%), 사업수행 및 관리에 있어 효과적인 피드백과 대안 마련에 적절함 12개(18.5%), 사업규모 확대로 인해 KOICA를 통한 사업지원방식의 효율성 저하 9개(13.8%), 기타 1개(1.5%) 순으로 나타남.

<표 13, 그림 8> NGO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방식이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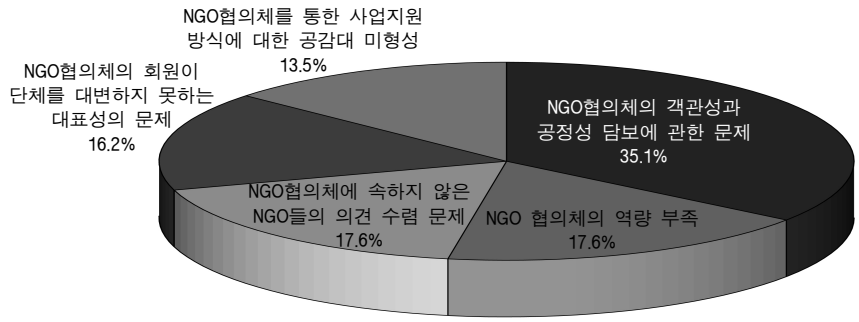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NGO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기관이 지원함	16	24.6
NGO 지원사업 방식의 다양화	15	23.1
NGO들의 자율적 사업집행 제고	12	18.5
사업수행 및 관리에 있어 효과적인 피드백과 대안 마련에 적절함	12	18.5
사업규모 확대로 인해 KOICA를 통한 사업지원방식의 효율성 저하	9	13.8
기 타	1	1.5
합 계	65	100.0



6-2. (6번 문항에서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 NGO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방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NGO협의체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에 문제가 있음 26개(35.1%), 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 방식을 담당할 NGO협의체의 역량 부족 13개(17.6%), NGO협의체에 속하지 않은 NGO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함 13개(17.6%), NGO협의체의 회원이 아닌 단체들이 제기할 수 있는 대표성의 문제 12개(16.2%), NGO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 방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함 10개(13.5%) 순으로 나타남.

<표 14, 그림 9> NGO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방식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NGO협의체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에 관한 문제	26	35.1
NGO 협의체의 역량 부족	13	17.6
NGO협의체에 속하지 않은 NGO들의 의견 수렴 문제	13	17.6
NGO협의체의 회원이 단체를 대변하지 못하는 대표성의 문제	12	16.2
NGO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 방식에 대한 공감대 미형성	10	13.5
합 계	7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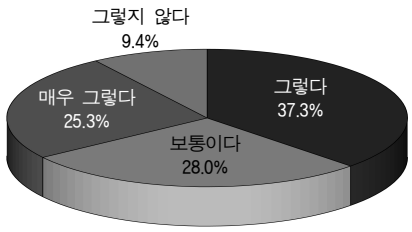
○ NGO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 방식이 필요하지 않은 기타 이유로는 이러한 사업방식의 도입에 따른 관리부처가 필요하다는 것과 수행절차상의 번거로움을 들고 있으며, 전문인력 보강이 지원된 후 협의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KOICA와 NGO 사이에 또 하나의 벽이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의견도 있음.

7. 현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NGO 지원사업은 주로 개발NGO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발NGO 외에 민주주의, 인권, 여성 등의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그렇다 28개(37.3%), 보통이다 21개(28.0%), 매우 그렇다 19개(25.3%), 그렇지 않다 7개(9.4%) 순으로 나타남.

또한 이 설문에 대한 응답을 5점 척도로 변환시 3.79가 도출되는데, 이는 평균점인 3보다 높은 것으로 시민사회단체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점을 보여줌.

<표 15, 그림 10> 개발NGO 외 민주주의, 인권, 여성 등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필요 여부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다	28	37.3
보통이다	21	28.0
매우 그렇다	19	25.3
그렇지 않다	7	9.4
합계	7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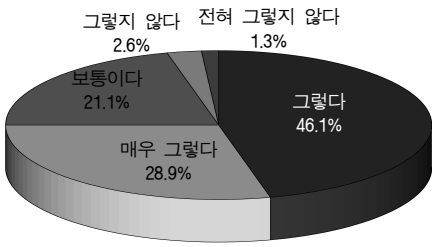
○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단체들이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음.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NGO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현지 국가에서의 사업경험이 없는 점에 대한 우려, 기존 개발NGO의 사업 내용 속에 이미 인권이나 여성 등의 이슈를 담고 있으므로 특정 분야의 시민단체 참여가 불필요하다는 점, 지원체계의 정착과 관리 없이 양적 확대만 하는 것은 오히려 내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임.

8.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시 현지에서 BHN(Basic Human Needs) 외에 인권 및 시민적 권리와 의무, 여권신장 등에 대한 교육 혹은 이와 연계된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35개(46.1%), 매우 그렇다 22개(28.9%), 보통이다 16개(21.1%), 그렇지 않다 2개(2.6%), 전혀 그렇지 않다 1개(1.3%) 순으로 나타남.

이 설문에 대한 응답률을 5점 척도로 변환해보면 그 값이 3.99에 이르고 있음. 이는 인권 및 시민적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교육 및 연계 사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의미함.

<표 16, 그림 11> BHN(Basic Human Needs) 외 인권 및 시민적 권리와 의무, 여권신장 등에 대한 교육 혹은 이와 연계된 사업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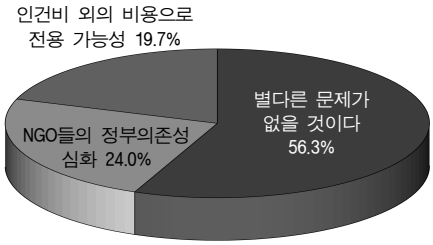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다	35	46.1
매우 그렇다	22	28.9
보통이다	16	21.1
그렇지 않다	2	2.6
전혀 그렇지 않다	1	1.3
합계	76	100.0



9. NGO지원사업의 간접비 비율(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40개(56.3%), NGO들의 정부 의존성 심화 17개(24.0%), 인건비 외의 비용으로 전용가능성 14개(19.7%) 순으로 응답함.

<표 17, 그림 12> 간접비 비율(인건비 지원) 확대 시 우려되는 사항

구분	빈도	백분율(%)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40	56.3
NGO들의 정부 의존성 심화	17	24.0
인건비 외의 비용으로 전용 가능성	14	19.7
합계	7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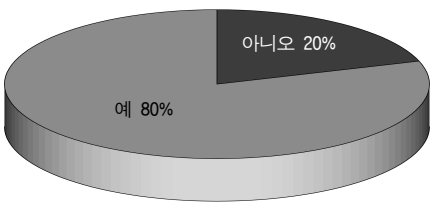


○ 이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대체로 사업의 전문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확대가 검토되어야 하고 간접비 역시 사업진행에 있어 필수적인 만큼 일정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간접비 확대 시 관리에 대한 우려가 나타남.

10.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원조공여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현지 NGO 직접 지원 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예 60개(80.0%), 아니오 15개(20.0%) 순으로 응답함.

<표 18, 그림 13> 개발도상국 현지 NGO 직접 지원 사업 도입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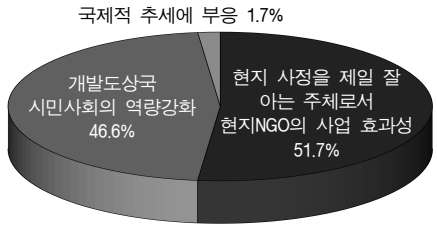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예	60	80
아니오	15	20
합계	75	100.0



10-1. (10번 문항에서 '예'라고 대답한 경우) 개발도상국 현지 NGO 직접 지원 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현지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주체로서 현지 NGO의 사업 효과성 30개(51.7%),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27개(46.6%), 국제적 추세에 부응 1개(1.7%) 순으로 응답함.

<표 19, 그림 14> 개발도상국 현지 NGO 직접 지원 사업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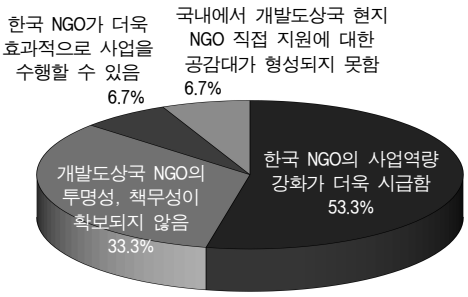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현지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주체로서 현지NGO의 사업 효과성	30	51.7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27	46.6
국제적 추세에 부응	1	1.7
합계	58	100.0



10-2. (10번 문항에서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 개발도상국 현지 NGO 직접 지원 사업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한국 NGO의 사업역량 강화가 더욱 시급함 8개(53.3%), 개발도상국 NGO의 투명성·책무성이 확보되지 않음 5개(33.3%), 한국 NGO가 더욱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1개(6.7%), 국내에서 개발도상국 현지 NGO 직접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함 1개(6.7%) 순으로 나타남.

<표 20, 그림 15> 개발도상국 현지 NGO 직접 지원 사업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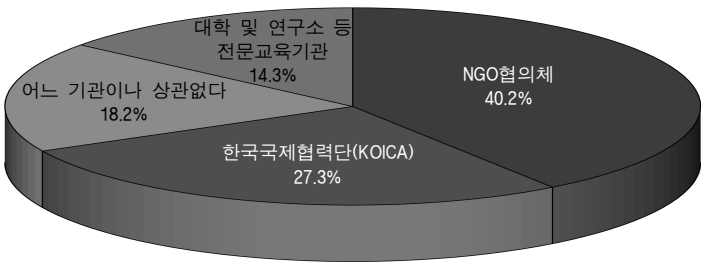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한국 NGO의 사업역량 강화가 더욱 시급함	8	53.3
개발도상국 NGO의 투명성, 책무성이 확보되지 않음	5	33.3
한국 NGO가 더욱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1	6.7
국내에서 개발도상국 현지 NGO 직접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함	1	6.7
합계	15	100.0



11.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NGO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의 수행주체에 대해 NGO 협의체 31개(40.2%), KOICA 21개(27.3%), 어느 기관이나 상관없다 14개(18.2%), 대학 및 연구소 등 전문교육기관 11개(14.3%) 순으로 나타남.

<표 21, 그림 16> NGO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의 수행주체

구분	빈도	백분율(%)
NGO협의체	31	40.2
한국국제협력단(KOICA)	21	27.3
어느 기관이나 상관없다	14	18.2
대학 및 연구소 등 전문교육기관	11	14.3
합 계	7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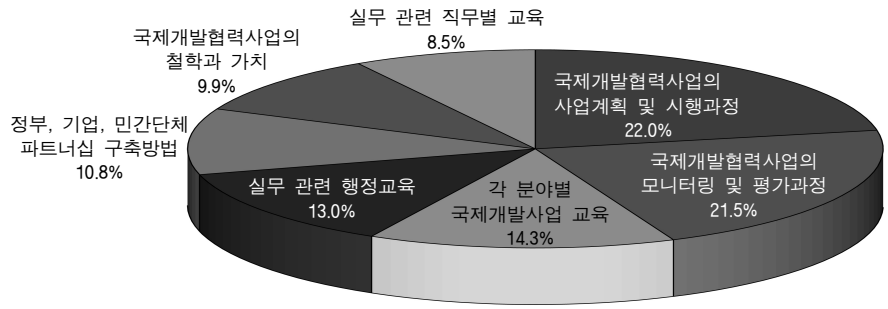


12.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NGO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사업계획 및 시행과정 49개(22.0%),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과정 48개(21.5%), 각 분야별 국제개발사업 교육 32개(14.3%), 실무 관련 행정교육 29개(13.0%), 정부, 기업, 민간단체 파트너십 구축방법 24개(10.8%),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철학과 가치 22개(9.9%), 실무 관련 직무별 교육 19개(8.5%) 순으로 나타남.

이 밖에 기타 필요한 교육으로 현장이해교육과 주민조직기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표 22, 그림 17> NGO 역량강화를 위한 중요한 교육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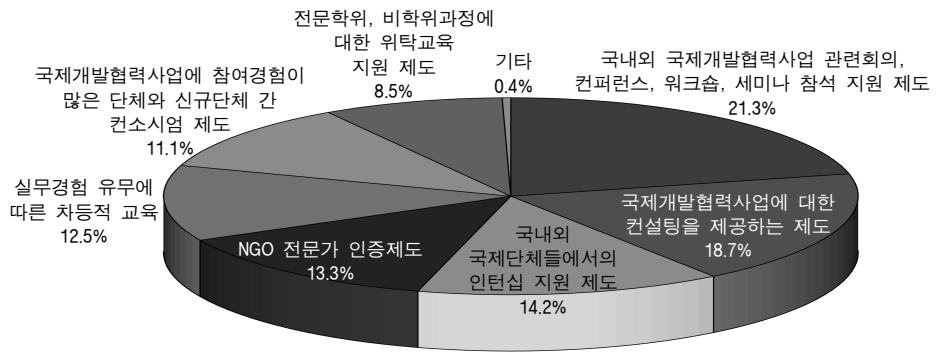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사업계획 및 시행과정 (PCM, 로그프레임, 수요파악 등)	49	22.0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과정 (분야별 평가측정을 위한 지표, 평가방법 등)	48	21.5
각 분야별 국제개발사업 교육 (보건의료, 지역개발, 수자원 등)	32	14.3
실무 관련 행정교육 (회계, 사업계획서 작성, 보고서작성, 조직관리 등)	29	13.0
정부, 기업, 민간단체 파트너십 구축방법	24	10.8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철학과 가치	22	9.9
실무 관련 직무별 교육 (모금, 홍보, 회원관리, 온라인사업 등)	19	8.5
합 계	223	100.0



13.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에 대해 국내외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회의, 컨퍼런스, 워크숍, 세미나 참석 지원 제도 48개(21.3%),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 42개(18.7%), 국내외 국제단체들에서의 인턴십 지원 제도 32개(14.2%), NGO 전문가 인증제도 30개(13.3%), 실무경험 유무에 따른 차등적 교육 28개(12.5%),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경험이 많은 단체와 신규단체 간 컨소시엄 제도 25개(11.1%), 전문학위, 비학위과정에 대한 위탁교육 지원 제도 19개(8.5%), 기타 1개(0.4%) 순으로 나타남.

<표 23, 그림 18> 전문가 양성 및 NGO 역량강화에 필요한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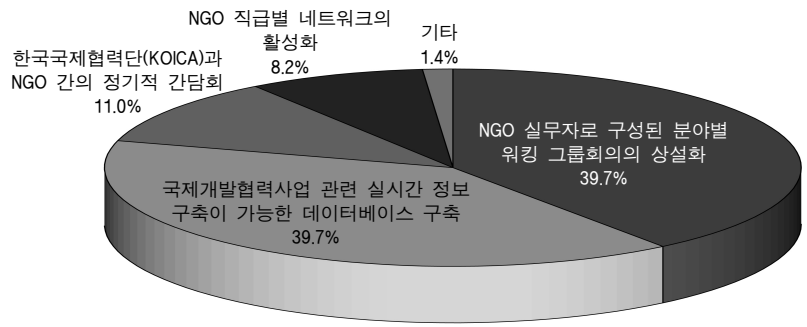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국내외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회의, 컨퍼런스, 워크숍, 세미나 참석 지원 제도	48	21.3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	42	18.7
국내외 국제단체들에서의 인턴십 지원 제도	32	14.2
NGO 전문가 인증제도	30	13.3
실무경험 유무에 따른 차등적 교육	28	12.5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경험이 많은 단체와 신규단체 간 컨소시엄 제도	25	11.1
전문학위, 비학위과정에 대한 위탁교육 지원 제도	19	8.5
기 타	1	0.4
합 계	225	100.0



14. 교육 이외에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NGO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에 대해 NGO 실무자로 구성된 분야별 워킹 그룹회의의 상설화 29개(39.7%),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실시간 정보 구축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9개(39.7%), KOICA와 NGO간의 정기적 간담회 8개(11.0%), NGO 직급별 네트워크의 활성화 6개 (8.2%), 기타 1개(1.4%) 순으로 응답함.

<표 24, 그림 19> 교육 외 NGO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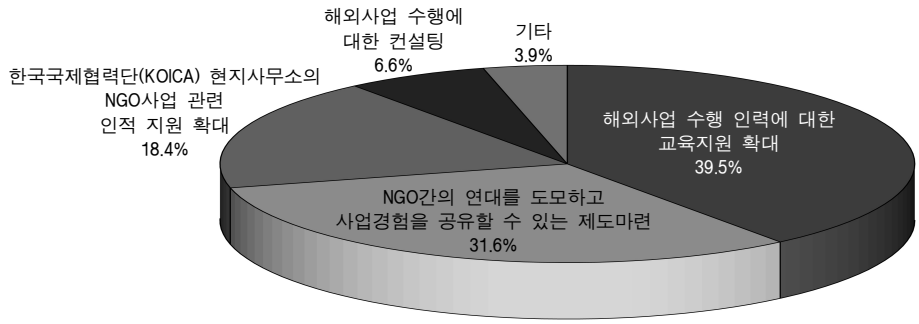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NGO 실무자로 구성된 분야별 워킹 그룹회의의 상설화	29	39.7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실시간 정보 구축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9	39.7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NGO 간의 정기적 간담회	8	11.0
NGO 직급별 네트워크의 활성화	6	8.2
기 타	1	1.4
합 계	73	100.0



15. NGO 현지사업장의 사업수행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해외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30개(39.5%), NGO간의 연대를 도모하고 사업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 마련 24개(31.6%), KOICA 현지사무소의 NGO사업 관련 인적 지원 확대 14개(18.4%), 해외사업 수행에 대한 컨설팅 5개(6.6%), 기타 3개(3.9%) 순으로 응답함.

<표 25, 그림 20> NGO 현지사업장의 사업수행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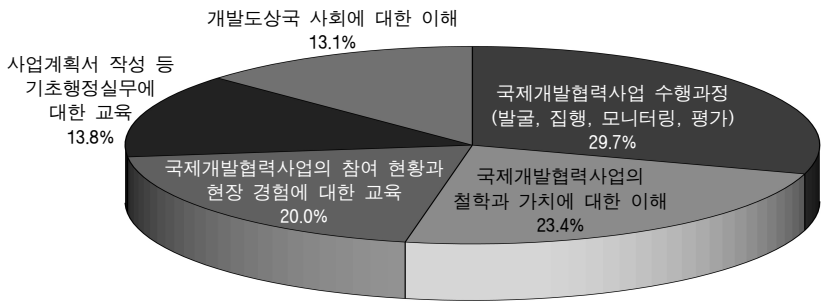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해외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30	39.5
NGO간의 연대를 도모하고 사업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마련	24	31.6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현지사무소의 NGO사업 관련 인적 지원 확대	14	18.4
해외사업 수행에 대한 컨설팅	5	6.6
기 타	3	3.9
합 계	76	100.0



16. 신규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실무자들이 가장 먼저 받아야 할 교육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과정(발굴, 집행, 모니터링, 평가) 43개(29.7%),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이해 34개(23.4%),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참여 현황과 현장 경험에 대한 교육 29개(20.0%), 사업계획서 작성 등 기초행정실무에 대한 교육 20개(13.8%), 개발도상국 사회에 대한 이해 19개(13.1%) 순으로 응답함.

<표 26, 그림 21>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신규단체 실무자들이 가장 먼저 받아야 할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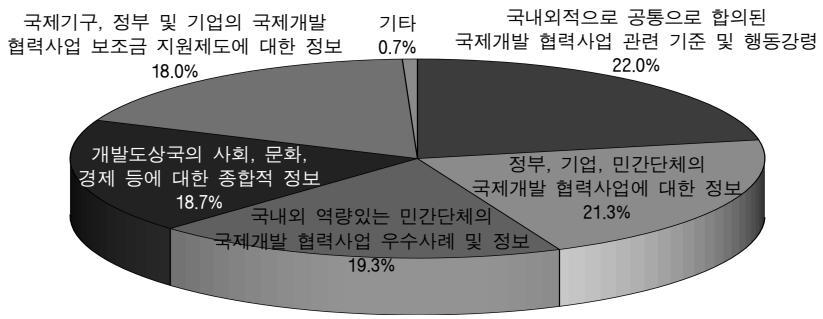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과정(발굴, 집행, 모니터링, 평가)	43	29.7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이해	34	23.4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참여 현황과 현장 경험에 대한 교육	29	20.0
사업계획서 작성 등 기초행정실무에 대한 교육	20	13.8
개발도상국 사회에 대한 이해	19	13.1
합 계	145	100.0



17. NGO의 사업수행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국내외적으로 공통으로 합의된 국제개발 협력사업 관련 기준 및 행동강령 33개(22.0%), 정부, 기업, 민간단체의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 32개(21.3%), 국내외 역량있는 민간단체의 국제개발 협력사업 우수사례 및 정보 29개(19.3%), 개발도상국의 사회, 문화, 경제 등에 대한 종합적 정보 28개(18.7%), 국제기구, 정부 및 기업의 국제개발 협력사업 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27개(18.0%), 기타 1개(0.7%) 순으로 응답함.

<표 27, 그림 22> NGO의 사업수행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

구분	빈도	백분율(%)
국내외적으로 공통으로 합의된 국제개발 협력사업 관련 기준 및 행동강령	33	22.0
정부, 기업, 민간단체의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	32	21.3
국내외 역량있는 민간단체의 국제개발 협력사업 우수사례 및 정보	29	19.3
개발도상국의 사회, 문화, 경제 등에 대한 종합적 정보	28	18.7
국제기구, 정부 및 기업의 국제개발 협력사업 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27	18.0
기 타	1	0.7
합 계	150	100.0



다.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KOICA의『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공공(公共)대학원 연구팀(연구책임자 : 손혁상)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 연구는 OECD/DAC 가입과 함께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통한 개발협력정책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NGO 지원사업(역량강화 포함)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하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본 설문조사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 또는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의 소중한 경험을 조사·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현황조사의 일환입니다. 아래의 설문지에 귀 기관의(국제사업책임자와의 협의 후) 입장을 반영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설문의 내용은 어떠한 정답도 존재하지 않으며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자료는 단지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일체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처리됨을 약속드리며 다만 귀하께서 느끼시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을 성심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귀하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설문에 응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3월 29일

◆ 조사자 :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 연구팀』
(연구책임자 손혁상 교수)

◆ 설문조사 담당자 : 이주희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대리 /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 연구팀』연구원)

◆ 설문조사 담당자 연락처 : 010-9072-0355

◆ 설문조사 담당자 E-mail : jhyi@ngokcoc.or.kr

1. NGO 지원사업에 있어 일정한 기준에 따라 NGO들을 그룹화하고 그룹에 따라 특성을 달리하여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 (1번 문항에서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 구체적 사유 기입)
( )

2. 만약 NGO들을 그룹화하고 그룹에 따라 특성에 따른 지원을 한다면, 그룹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문항에서 3개를 골라 주십시오.
①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경험
② NGO 본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사업담당자 유무 및 인원수
③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NGO 지원사업 참여년도
④ NGO자체의 해외 사업규모
⑤ 현지에서의 공식적인 등록 여부 (MOU가 아닌 법적 등록)
⑥ 외부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실행 여부
⑦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

3. 사업참여 NGO를 구별하여 그룹화한다면 분류작업의 주체는 누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문항에서 2개를 골라 주십시오.
① 한국국제협력단(KOICA)
② NGO협의체
③ 대학이나 연구원 등 국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평가하여 구분
④ 국내외 컨설팅 회사
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NGO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
⑥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

4. 새롭게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액 상한이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1. (4번 문항에서 '예'라고 대답한 경우) 처음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 지원방식의 지원상한선은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3천만원 이하 ② 5천만원 이하
③ 7천만원 이하 ④ 1억원 이하

5. 빈곤퇴치 기여금제도와 같은 NGO 지원사업 외에 정부 지정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 지정 지원사업이란 정부의 ODA 정책과의 전략적 연계에 기반하여 특정 지역과 분야, 혹은 ODA프로젝트의 후속관리사업 등을 지정하여 이에 응모하는 NGO를 지원하는 방식을 말함.
① 예 ② 아니오

5-1. (5번 문항에서 '예'라고 대답한 경우) 정부 지정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면 어느 지역, 분야, 방식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빈곤퇴치기여금 사업, ODA 프로젝트 사후관리사업
( )

6. 현재 수행되고 있는 NGO지원사업* 외에 특정 NGO협의체에 위임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봉사단 사업, 역량강화사업을 제외한 프로젝트 지원사업
① 예 ☞ 6-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포함)
☞ 6-2 번 문항으로

6-1. (6번 문항에서 '예'라고 대답한 경우) NGO 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방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문항에서 2개를 골라 주십시오.
① 사업규모 확대로 인해 KOICA를 통한 사업지원방식의 효율성 저하
② NGO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기관이 지원함
③ NGO들의 자율적 사업집행 제고
④ NGO 지원사업 방식의 다양화
⑤ 사업수행 및 관리에 있어 효과적인 피드백과 대안 마련에 적절함
⑥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

6-2. (6번 문항에서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 NGO 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방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문항에서 2개를 골라 주십시오.
① 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방식을 담당할 NGO 협의체의 역량 부족
② NGO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 방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함
③ NGO협의체에 속하지 않은 NGO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함
④ NGO협의체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에 문제가 있음
⑤ NGO협의체의 회원이 아닌 단체들이 제기할 수 있는 대표성의 문제
⑥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

7. 현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NGO 지원사업은 개발NGO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NGO외에 민주주의, 인권, 여성 등의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7-1. 7번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8.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시 현지에서 BHN (basic human needs) 외에 인권 및 시민적 권리와 의무, 여권신장 등에 대한 교육 혹은 이와 연계된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9. NGO지원사업의 간접비 비율(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NGO들의 정부 의존성 심화
② 인건비 외의 비용으로 전용가능성
③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④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

10.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원조공여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현지NGO 직접지원 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10-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10-2번 문항으로

10-1. (10번 문항에서 '예'라고 대답한 경우) 개발도상국 현지 NGO 직접 지원 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② 현지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주체로서 현지NGO의 사업 효과성
③ 국제적 추세에 부응
④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
⑤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

10-2. (10번 문항에서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 개발도상국 현지 NGO 직접 지원 사업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한국 NGO의 사업역량 강화가 더욱 시급함
② 한국 NGO가 더욱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③ 개발도상국 NGO의 투명성·책무성이 확보되지 않음
④ 현재 예산 규모상 시행하기에 한계가 있음.
⑤ 국내에서 개발도상국 현지 NGO직접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함
⑥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

11.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NGO들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의 수행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역량강화란 개발NGO가 효과적인 개발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조직·현지사업 수행 분야와 관련된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함.
① 한국국제협력단(KOICA)
② NGO협의체
③ 대학 및 연구소 등 전문교육기관
④ 어느 기관이나 상관없다

12.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NGO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주제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문항에서 3개를 골라 주십시오.
① 실무 관련 행정교육(회계, 사업계획서 작성, 보고서작성, 조직관리 등)
② 실무 관련 직무별 교육(모금, 홍보, 회원관리, 온라인사업 등)
③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철학과 가치
④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사업계획 및 시행과정(PCM, 로그프레임, 수요파악 등)
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과정(분야별 평가측정을 위한 지표, 평가방법 등)
⑥ 각 분야별 국제개발사업 교육(보건의료, 지역개발, 수자원 등)
⑦ 정부, 기업, 민간단체 파트너십 구축 방법
⑧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

13.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문항에서 3개를 골라 주십시오.
① 실무경험 유무에 따른 차등적 교육
② NGO 전문가 인증제도
③ 국내외 국제단체들에서의 인턴십 지원제도
④ 국내외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회의, 컨퍼런스, 워크숍, 세미나 참석 지원 제도
⑤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
⑥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 경험이 많은 단체와 신규단체간 컨소시엄 제도
⑦ 전문학위, 비학위과정에 대한 위탁교육 지원 제도
⑧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

14. 교육 이외에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NGO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NGO 실무자로 구성된 분야별 워킹그룹회의의 상설화
② NGO 직급별 네트워크의 활성화
③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NGO 간의 정기적 간담회
④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실시간 정보구축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 : Development Gateway)
⑤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

15. NGO 현지사업장의 사업수행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현지사무소의 NGO사업 관련 인적 지원 확대
② 해외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
③ 해외사업 수행에 대한 컨설팅
④ NGO간의 연대를 도모하고 사업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 마련
⑤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

16. 신규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실무자들이 가장 먼저 받아야 할 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문항에서 2개를 골라 주십시오.
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이해
② 사업계획서 작성 등 기초행정실무에 대한 교육
③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과정 (발굴, 집행, 모니터링, 평가)
④ 개발도상국 사회에 대한 이해
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참여 현황과 현장 경험에 대한 교육
⑥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

17. NGO의 사업수행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문항에서 2개를 골라 주십시오.
① 정부, 기업, 민간단체의 국제개협력사업에 대한 정보
② 국제기구, 정부 및 기업의 국제개발 협력사업 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③ 국내외적으로 공통으로 합의된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기준 및 행동강령
④ 개발도상국의 사회, 문화, 경제 등에 대한 종합적 정보
⑤ 국내외 역량있는 민간단체의 국제개발 협력사업 우수사례 및 정보
⑥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에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여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하십니까?
① 25세~29세 ② 30세~ 34세
③ 35세~39세 ④ 40세~ 44세
⑤ 45세 이상

3. 귀 단체의 국제개발사업 수행연도는 얼마나 되십니까?
① 3년 미만 ② 3년~5년
③ 6년~10년 ④ 10년 이상

4. 귀 단체는 교육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국제개발사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모금·홍보·재정·회계 등의 행정 실무 교육은 제외)
① 예 ② 아니오

5. 현재 귀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직 및 인적 역량강화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있으십니까?
① 예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주십시오 :
)
② 아니오 ☞ 5-1로

5-1. 귀 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직 및 인적 역량강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예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주십시오 :
)
② 아니오

6. 귀 단체가 주로 활동하는 분야는 어디에 속하는지 1개만 골라 주십시오
① 사회복지 ② 의료보건
③ 교육 ④ 여성
⑤ 환경 ⑥ 지역개발
⑦ 농업 ⑧ 문화교류
⑨ 아동
⑩ 기타에 속하시는 경우 해당 활동 분야를 적어 주십시오.
( )

7. 귀 단체의 출범배경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지 1개만 골라 주십시오.
① 종교 기반 단체
② 사회복지 단체
③ 시민사회 단체
④ 국제NGO의 한국 사업체
⑤ 기타에 속하시는 경우 해당분야를 적어 주십시오.
( )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III. 국내외 인터뷰

1. 국내외 인터뷰 대상자

가. 국내 인터뷰 대상자

1) 1차 개발NGO 워킹그룹

번호	이름	소속
1	김 나 연	월드투게더 팀장
2	김 현 숙	은평천사원 팀장
3	문 후 정	하트하트재단 팀장
4	옥 세 영	더프라미스 팀장
5	이 경 신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팀장
6	이 수 경	굿네이버스 팀장
7	장 문 희	월드비전 과장
8	최 은 정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팀장

2) 개발NGO 현지사업경험자

번호	이름	소속
1	김 민 영	지구촌나눔운동 팀장
2	김 학 용	다일복지재단 국장
3	오 원 기	코피온 간사
4	이 선 미	한베재단 팀장
5	지 은 희	피스빌리지네트워크 팀장
6	최 윤 희	한국희망재단 팀장

3)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이사회

번호	이름	소속
1	김 기 진	한국JTS 대표
2	김 노 보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회장
3	남 부 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4	노 시 선	어린이재단 부회장
5	민 경 일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상근이사/부본부장
6	박 용 준	글로벌케어 회장
7	윤 현 봉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
8	이 창 식	한국해비타트 회장
9	정 정 섭	한국기아대책 회장
10	조 현 세	한국헬프에이지 회장

4) 2차 개발NGO 워킹그룹

번호	이름	소속
1	김 나 연	월드투게더 팀장
2	문 후 정	하트하트재단 팀장
3	옥 세 영	더프라미스 팀장
4	이 수 경	굿네이버스 팀장
5	최 은 정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팀장

5) 자문회의 참석자

번호	이름	소속
1	송 진 호	한국YMCA전국연맹 대외협력실장
2	윤 현 봉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
3	이 동 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4	이 명 신	월드비전 해외사업 본부장

6) 공개 심포지엄 토론자 및 주요참석자

번호	이름	소속
1	김 노 보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회장
2	묘 장 스 님	더프라미스 상임이사
3	문 영 기	한국선의복지재단 회장
4	백 숙 희	한국국제협력단 민관협력실장
5	송 진 호	한국YMCA전국연맹 대외협력실장
6	신 재 은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과장
7	이 성 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8	이 창 식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장
9	한 충 식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나. 해외 인터뷰 대상자

1) 영국

번호	기관명	인터뷰 대상자	
		이름	부서/직책
1	DFID	Steve Nally	Deputy Programme Manager of Civil Society Department
2	BOND	Susie Prince	Learning&Training Manager
		Jona Hamilton	Donor Advocacy Officer
3	Action Aid	Rebecca Ingram	PPA Manager
4	Triple Line	David G.V. Smith	Director
		Ceinwen Giles	Manager
5	INTRAC	Brian Pratt.	Executive Director
		Paula Haddock	Training Manager
6	War on Want	Garcela Romero	Director
7	Christian Aid	Robin Greenwood	Head of Asia and Middle East Division
		David Morton	Programme Funding Manager-Asia Middle East

2) 스웨덴

번호	기관명	인터뷰 대상자	
		이름	직책
1	Sweden Mission Council(SMC)	Anders Malmstigen	Head of Development Cooperation Unit
2	Sida Partnership Forum	Alexy	Manager of Sida Partnership forum
3	Sida	Carl-Johan Smedeby	Manager of Sida CIVSAM
4	Forum Syd	Maria Feleman	Head of International Programmes
5	Africa Group of Sweden(AGS)	Gabi Bjorsson, Kanslichef	Director

3) 호주

번호	기관명	인터뷰 대상자	
		이름	직책
1	AusAID	Russell Miles	Director, NGO and human Rights Policy and Engagement Section
		Ruth Megrian	Assistant Director, NGO and human Rights Policy and Engagement Section
		Anna Clancy	Program Manager, Africa Multilateral Section
		Sandra Kraushaar	NGO Partnership Manager
2	ACFID	Susan Harris Rimmer	Manager, Advocacy & Development Practice
		Alex Oates	Policy Advisor
		Ann Tothill	Learning and Development Facilitator, Member Service Team
3	IDSS	Marc Kron	Senior Project Manager
		Carol Bellew	Operation Manager
		Atiq Rahman	Project Manager
4	Interplast AUSTRALIA & NEW ZEALAND	Terese Karran	Senior Program Activities Coordinator
5	Sexu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Australia (SHFPA)	Naomi Knight	CEO of the SHFPA
6	Oxfam Australia	Richard Ledbury	Institutional Funding Manager
7	Plan Australia	Dave Husy	Director, Child Centered Community Development

4) 네팔

○ 정부원조기관 및 CSO

번호	기관명	인터뷰 대상자	
		이름	직책
1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NGOs (AIN)	Lucky Gurung	Secretariat Office Manager
2	JICA	Take Toru	Senior Representative
		Tomohiro Arima	Representative
		Noriko Sato	NGO Desk Coordinator
3	DFID	Bandhu Ranjan	Programme Manager
		Gobinda Neupane	Community Support Programme Coordinator
4	Love Green Japan	Tomoko Suzuki	Representative
5	AusAID	Benjamin Reese	First Secretary, AusAID
		Krishna Bahadur Karki	Program & Research Officer, AusAID
6	Disable Human Rights Center(DHRC)	Maheshwar Ghimire	General Secretary Executive Director
7	Shia	Shiva Rayamajhi	Country Coordinator
8	Caritas Nepal	Raju Pradhan	Disaster Manager
9	HDCS	SP Kalaunee	Acting Executive Manger
10	Social Wefare Council (SWC)	Madan Prasad Rimal	Director
		Chhewang N.Lama	Member Secretary
11	ActionAID	Nanda Kaudargwa	Team Leader ActionAID Nepal
		Narayan Sitaula	Monitoring and Evaluation Officer

○ 한국 개발NGO 현지 사업 담당자

번호	이름	소속
1	고 성 훈	굿네이버스 지부장
2	김 윤 정	전 Save the Children Korea 담당자
3	박 연 심	Service for Peace 과장
4	이 건 동	Service for Peace 매니저
5	이 정 원	함께하는 사람들 지부장
6	이 하 늬	품 프로그램 매니저
7	정 혜 림	코피온 센터장
8	최 민 욱	지구촌공생회 프로그램 매니저
9	홍 순 덕	엄홍길 휴먼재단 지부장

2. 해외현지조사 자료 1 : 영국

가.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DFID)

- 날짜 : 2011년 3월 21일 월요일
- 시간 : 14~16시
- 현지조사팀 : 손혁상, 한재광
- 인터뷰 대상 : Steve Nally, Deputy Programme Manager of Civil Society Department, DFID
- 장소 : DFID 사무실 (Glasgow)
- 소개 : PPA, CSCF, GPAF등 다양한 영국 시민사회협력사업 수행

1) DFID 시민사회협력사업의 일반적 특성

가) 일반적 특성

- 영국의 대 시민사회지원 규모는 연간 £4억 임.
- DFID 내의 Civil Society Department가 DFID의 모든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관리함.
- DFID는 PPA, CSCF, GPAF 및 기타 주제별 프로그램으로 시민사회와 협력함.

나) 프로그램별 특징

- 중소규모의 CSO를 지원하는 CSCF는 컨설팅사인 Triple Line이 사업의 관리, 진행을 DFID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함. 지원단체를 선정할 시 단지 사업비용 측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의 역량 등을 중요하게 판단함.
- 사업내용에 있어 정책옹호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CSCF는 사회주의 성격의 노동당 정부시절 시작되었으나, 보수당 정부 등장 이후 사회적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에 더욱 중점을 둔 Global Poverty Action Fund(GPAF)을 출범시켰으며, 이는 Impact와 Innovation으로 구성됨.

- GPAF-Impact는 2011년 £ 36백만 규모로 사회적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이 주 내용이며, 중형규모 단체들이 참여하며, 참여 CSO가 자부담 50%해야 함. GPAF-Innovation은 2011년 £ 3백만 규모로 기존의 CSCF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소형규모의 CSO를 지원함. 이 프로그램에서는 DFID가 CSO에 75% 재정지원을 함. 'Innovation'에 대한 정의가 쉽지 않음. 기존에 CSCF에 참여하여 100% 재정지원을 받던 단체가 2011년 CSCF 프로그램의 종료 이후 2년부터 GPAF Innovation에 25%의 자부담을 하며 참여하기는 매우 부담됨. GPAF는 컨설팅사인 Triple Line사가 운용함. KTMG 같은 회계컨설팅사가 평가에 참여하기도 함.
- 현 정부는 사업결과가 바로 도출되는 Water Supply, Humanitarian Assistance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 프로그램을 선호함.
- Disability Right Fund(DRF)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민간재단인 Tide Foundation이 운영함.
- Common Ground Initiative(CGI)는 영국 내 개발도상국 이주민 단체가 모국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코미디언이 설립한 Comic Relief가 운영함.
- 영국정부는 1970년대에 Block Grant방식으로 CSO를 지원함. 이는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쉬운 장점이 있음. 이는 대규모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CSO에 보고서 제출대신 비용지출 리스트만 제출을 요구함. 매년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후 3개월 지나면 예산의 1/4을 활용해야 함.

2) PPA 프로그램 관리의 특성

- PPA는 DFID의 시민사회협력사업 중 전체 규모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PPA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연간 수입이 £5천만 이상이어야 함. PPA가 해당CSO 수입의 40%가 넘으면 안 됨.
- PPA에 지원할 때는 포트폴리오가 매우 중요함.
- PPA와 CSCF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함. 첫째는 5

페이지 규모의 Concept Note를 제출해야함.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필리핀 단체들 470개가 지원서를 제출했으나 자격미달로 170개가 탈락함. 둘째 과정으로는 제출한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과정을 거침.

- PPA를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한 Scoring System이 있으며,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단체에게는 그 이유를 제시함. 2011년 전 세계적으로 109개의 단체가 지원함. 정식 지원 시 12페이지의 사업제안서와 log-frame을 포함해야 함.
- 단체 사정(appraisal)시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여 점수를 부여함. Green색은 잘 구성된(Well Conceptualized)그룹이며, Amber색은 합리적이나 더욱 자세한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한 그룹이며, 마지막 Red색은 탈락그룹임.
- DFID는 2010년 1월부터 PPA에 지원하는 CSO들을 구분하는 새로운 Indicator를 개발하고 있으며, Green색 그룹에 도달하려는 CSO들은 평가양식을 통한 점수 부여가 매우 중요함.
- 모든 PPA 단체들에게는 독립적인 평가가 진행됨. 상위그룹은 10% 정도 증대되며, 중간그룹은 비슷한 규모로 유지되며, 하위그룹은 10% 정도 감축됨.
- DFID 내의 Civil Society Department 내 7명의 직원이 연간 £ 20백만 규모의 PPA예산을 운용하며 42개 CSO를 관리하는데, 때로는 컨설턴트를 고용하기도 함.
- PPA에 대한 참여가 반드시 CSO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님. 단체들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PPA와 CSCF를 선택함.
- PPA자금 배분 시, DFID Civil Society Department에서 10명이 100여개 단체를 담당하여 자금배분과정을 진행함. 이 과정은 1단계, 2단계로 진행되는데 첫째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1단계에서 10개에 대한 작업을 담당하고, 그 후 둘째 평가자가 동일한 10개 단체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함. 작업 후 2인이 동일 10개 단체에 대한 평가내용을 가지고 협의하여 최종결정함. 이 단계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올시 부서장이 결정함.
- DFID Civil Society Department에서 운용하는 자금배분기준은 2011년 4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굉장히 복잡함. 총 4개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음. 평가결과는 1. Worry, 2. No but OK, 3. Good, 4. Excellent로 표현됨. CSO에 대한 평가 결과 2. No but OK가 나오는 단체는 매우 우려됨. 이 새로운 자금배분 메커니즘에 의해 평가를 했더니 실제로 전년보다 지원

자금 규모가 축소된 단체도 나옴.

- PPA에 참여하는 단체의 구분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사업서류작성 능력, 필수 이행사항 준수여부, 효과적인 지원자금 운용능력임.

3)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과 Country Program과의 협력 관계

- DFID의 Civil Society Department는 DFID 내 국별 프로그램 및 주제별 프로그램 부서가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CSO를 사업수행 책임자로 활용할 시 해당 CSO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그러나 수원국에 있는 DFID 사무소가 본부의 Civil Society Department에 CSO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고 직접 CSO에 접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음.
- Civil Society Department는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진행 시 평가단계에서 파트너국 주재 DFID 사무소에 검토를 요청함. 이는 다음과 같이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됨.
  - 첫째 단계는, Proposed List
  - 둘째 단계는, Proposal
  - 셋째 단계는, Final List.

  이 과정에서 파트너국 주재 DFID 사무소가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음.

[시사점]

① CSO들이 자신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추진되고 있음.

② PPA는 CSO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indicator를 가지고 체계적인 자금 배분 메커니즘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갖추어짐.

③ PPA는 CSO에게 큰 규모의 사업비를 100% 지원하나, 큰 규모의 자금 지원이 CSO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미 자체규모, 역량이 있는 단체를 지원함.

④ 시대의 흐름에 따라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이 변화하고 있음.

[자료]

① Civil Society and Development, How DFID works in partnership with to deliver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나. British Overseas NGOs for Development(Bond)

- 날짜 : 2011년 3월 22일 화요일
- 시간 : 10~12시
- 현지조사팀 : 손혁상, 한재광
- 인터뷰 대상 : Susie Prince, Learning & Training manager. Bond Jona Hamilton Donor 애드보커시 Officer. Bond
- 장소 : Bond 사무실 (London)
- 소개 : 영국 개발NGO체로서 다양한 교육훈련 및 정책옹호활동전개

1) Bond의 현황과 특징

- Bond는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영국 CSO들의 협의체로, 370개 회원이 있음.
- Bond가 1993년 설립될 시 DFID가 funding 등에 있어 깊이 관련함.
- Bond의 역할은 회원단체들의 관계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임. 최근 정부가 사회적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등 직접사업수행에만 관심을 가지며, Bond의 역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음.
- Bond는 세 가지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영국 CSO강화, 컨설팅, 애드보커시임.
- Bond는 5년 전부터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함.
  - Quality with people.
  - Relationship with funder
  - Human resource management
  - Orientation and governance
- Bond는 2년 전 회원단체들이 DFID의 자금지원을 받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래 2가지의 프로그램을 시작함.
  - Self Assessment : 이는 재정, 조직, 거버넌스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public accountability 제고와 관련성을 가짐.
  - Im-prove it! framework : 이는 CSO가 공여자에게 사업의 효과성을 증

명하기 위한 내용으로 역량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음. 또한 현지 파트너십에 의한 사업수행 시 현지에서의 사업효과성 제고와 관련성을 가짐.

- Bond는 회원단체를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는데, 카테고리의 구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단체의 상황을 보고 내부의 합의에 따라 결정함.
- Bond는 컨설팅을 통해 중소규모 CSO를 지원함.
- Bond 회원단체들 사이에서도 사회적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 그룹과 애드보커시 그룹 및 큰 단체와 소규모 단체간에 자금배분 등에 있어 갈등이 있음.
- Bond는 소규모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

2) Bond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 교육연수 프로그램은 3개로 Advocacy & Campaign, NGO effectiveness, Fundraising Managing임. 일반 교육과 특정단체가 요청하는 In-house 프로그램이 있음.
- 교육내용 중에는 EU의 사업프로포절 작성 교육도 있음.
- Bond 회원은 1/3 할인, 비회원은 전액부담, Bond 내 소형, 중형, 대형 단체에 따라 비용부담액이 다름.
- Bond는 요청하는 단체의 분야, 규모 등에 따라 In-house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
- 최고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회원단체들로부터 나옴. Bond내에 16~17개의 주제별 워킹그룹이 있음. 정책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3~4개의 특별그룹이 있음.
- 역량강화 교육은 1~2일 일정으로 이루어지며 전직 CSO 직원 및 기술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내부 강사진으로 진행됨.

[시사점]
① CSO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② 다양한 연구작업을 통해 CSO들의 효과적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진행함.

③ 회원단체 중 대형 단체와 소형 단체, 사회적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과 애드보커시 단체간의 협력과 조화 및 조정을 위해 노력함.
④ 다양한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회원단체들 상호간에 도움을 받음.

[자료]
① Quality Standards Report
② In-house training 소개 리플릿
③ Finding Frames : New ways to engage the UK public in global poverty

다. Action Aid

- 날짜 : 2011년 3월 22일 화요일
- 시간 : 10~12시
- 현지조사팀 : 손혁상, 한재광
- 인터뷰 대상 : Rebecca Ingram. PPA manager. Action Aid
- 장소 : Action aid 사무실 (London)
- 소개 : PPA에 참여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개발NGO

1) Action Aid의 활동현황

- 2003년부터 PPA에 참여하고 있음. 2008~2011년 PPA사업의 예산규모는 £ 4백만임.
- Action Aid는 PPA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전 세계의 Action Aid기관을 통해 개발 사업을 수행함. 즉 PPA는 Action Aid에게 있어 Joint Funding Scheme임.
- PPA사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2008년 개발한 Action Aid 전체 조직을 아우르는 Monitoring Evaluation Framework를 각자 자국에 맞게 적용하여 활용함. 이를 통해 영국 납세자에 대한 accountability를 제고함.
- Monitoring Evaluation Framework은 자금배분을 할 때에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됨.
- Action Aid를 포함한 영국의 8개의 대형 CSO들은 'British Aid Group'을 구

성하여 영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애드보커시 활동을 전개함. Oxfam, Christian Aid, Action Aid, Save the Children 등이 포함됨.

- Action Aid는 파트너로 일하는 수원국의 소규모 현지 CSO 및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tool kit을 운용함. 여기에는 '권리에 기반한 접근법(Rights-Based Approach)'과 모니터링, 평가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음.
- Action Aid는 권리에 기반한 접근법을 통해 주민들이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잘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수행함. Action Aid는 이를 위해, Literacy and Empowerment for social change의 성격을 가진 'REFLECT'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별로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과 Rights-Based Approach 사이에 긴장이 있는 경우가 있음.
- Action Aid는 정부가 단체의 사업효과성을 평가할 시 숫자에만 집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함. 사회적 변화를 위한 사업은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임.

[시사점]

① 국제CSO는 PPA 제도를 전 세계의 동일 단체들에 사업을 지원하는 Joint Funding Mechanism으로 활용 함.

② Rights-Based Approach를 활용하여 개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진행함.

③ 자체적인 사업효과성 측정, 평가 프로그램인 Monitoring Evaluation Framework을 운영함.

[자료]

① Promoting Rights in School

라. Triple Line

- 날짜 : 2011년 3월 23일 수요일
- 시간 : 10~11시 30분
- 현지조사팀 : 손혁상, 한재광

- 인터뷰 대상 : David G.V. Smith Director. Triple Line Ceinwen Giles Manager. Triple Line
- 장소 : Triple Line 사무실 (London)
- 소개 : DFID로부터 CSCF, GPAF운영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영국의 컨설팅 회사

1) Triple Line의 활동 현황

- Triple Line은 DFID와 CSO 사이에서 중계자 역할(intermediary role)을 하며, DFID fund를 아웃소싱으로 시민사회, 정부, 기업의 영역을 뛰어넘어 사업 기획 및 평가업무 등을 실행함.
- DFID가 사업에 지원한 CSO들의 사업을 screening하고 기획, 평가를 지원함으로서 양질의 개발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함.
- DFID 입장에서는 Triple Line에게 아웃소싱하는 것이 비용대비 효과적이며 융통성이 있음.
- Triple Line에는 현재 15명이 근무함. CSCF, GPAF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며, 최종결정은 DFID가 하도록 함. CSCF, GPAF에 지원한 CSO들에 대한 사정(appraisal)을 한 결과인 'Big Book'을 작성하여 지원CSO들의 랭킹을 매겨 DFID가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함. 탈락 CSO들에게 내용을 feedback함.
- 평가 기준은 Triple Line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준과 DFID의 기준을 둘 다 활용함. DFID가 guideline을 작성하여 프로세스를 주관하고 Triple Line은 실행을 함.
- Triple Line은 CSCF 사업관리에 있어 양적인(numerical) 방법과 질적인 지수(indicator)를 혼용하여 활용함. 명확한 기준이 매우 중요함. 이러한 점수화(scoring)는 매우 조심스럽고 비밀스러운 작업임.
- Triple Line은 DFID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필드 현지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필드 관리자들은 매우 어려워 함.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을 현지에 파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Triple Line의 담당자들은 DFID의 CSCF 담당자와 사업관리에 대해 지속

적으로 협의를 함.

- Triple Line은 CSO들에게 사업지원에 대해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함.
- Triple Line은 CSCF 외에도 GPAF, Governance & Transparency 사업의 관리도 담당함.
- DFID의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하여 Triple Line 외에 LSE, 에딘버러, 브래드포드 등 대학과 KPMG 등이 참여함.

[시사점]
① CSO 협의체가 아닌 원조사업에 대한 경험이 풍성한 전문적인 컨설팅 회사가 정부원조기관의 사업을 관리함. 이는 향후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큼.
② 효율적인 사업관리와 효과성제고를 위한 다양한 기법들을 개발하여 활용함.

[자료]
① Introduction Triple Line

마. INTRAC

- 날짜 : 2011년 3월 24일 목요일
- 시간 : 12~13시 40분
- 현지조사팀 : 손혁상, 한재광
- 인터뷰 대상 : Brian Pratt. Executive Director. INTRAC Paula Haddock. Training Manager. INTRAC
- 장소 : INTRAC 사무실 (Oxford)
- 소개 : CSO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주로 하는 교육훈련전문기관

1) INTRAC의 활동 현황

- INTRAC은 CSO의 역량강화를 통해 수원국의 역량강화를 지원함.
- INTRAC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25%가 영국 CSO이며, 75%는 해외 CSO임. 75% 중 50%는 EU 국가이며, 25%는 INGO의 아프리카사무소 직

원, 그리고 15%는 중앙아시아에서 참석함.

- 교육은 3~5일 일정으로 진행됨. 프로그램이 성격은 참여자 주도형 모델임. 한 그룹에 최대인원이 18명임.
- INTRAC은 Organizational development, Monitoring & Evaluation, Impact Assessment, Advovacy & Campaign, Gender analysis and Planning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In-house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 교육 강사진은 개발협력 분야에서 경험을 20년 이상 쌓은 전문가, 35명 중 교육내용에 맞는 이를 초빙하여 진행함.
- 교육에 참여한 이들과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하기도 함.
- INTRAC은 DFID로부터 독립적임. 자신들은 DFID의 재정지원(core funding)을 받지 않음. INTRAC에게는 세 가지 수입원이 있는데 첫째는 교육 참가자 수입, 둘째는 기부, 셋째는 컨설팅 수입임.
- DFID가 진행하는 큰 규모의 CSO와 작은 규모의 CSO에 대한 차등화 정책은 영국과 한국의 상황(context)이 달라서 적용하기 어려움. 또한 CSO를 카테고리별로 순위를 매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어려움.
- CSO를 역량별로 구분하여 순위를 매기는 것은 자칫하면 공여자에 대한 CSO의 의존성을 심화할 수 있음(hostage화).

[시사점]

① CSO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훈련기관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② CSO를 카테고리화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주의점을 제공함.
③ 한국의 CSO 실무자들의 교육연수 참여에 대해 관심을 보임.

[자료]

① Annual Report 2008/2009

바. War on Want

- 날짜 : 2011년 3월 25일 금요일
- 시간 : 10~11시 30분
- 현지조사팀 : 손혁상, 한재광
- 인터뷰 대상 : Garcela Romero. Director. War on Want
- 장소 : War on Want 사무실 (London)
- 소개 : CSCF에 참여하는 노동운동단체

1) War on Want의 활동현황과 주요 문제의식

- 모든 시민들이 정부의 ODA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War on Want는 DFID의 사업인 CSCF와 GPAF의 Impact 사업에 참여함.
- War on Want는 CSCF사업 외에 사회적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 중심의 사업인 GPAF Impact 사업에도 참여하며, 여기에도 애드보커시 성격의 사업을 포함시킴.
- DFID가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파트너국의 작은 CSO들을 지원하는 것을 전략으로 하고 있으나 쉽지 않음.
- War on Want는 현지 파트너를 선정할 시 정치적 비전을 공유하고, 원조를 통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연대(solidarity)를 추구함.
- 현재 DFID의 프로그램들이 요구하는 제도 안에는 로그프레임 등을 요구하는 등 효율성만을 추구하나 이것만이 중요한 전부는 아니라고 판단함.
- 로그프레임에서 추구하는 효율성은 북반구의 가치이며, 이보다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판단함. 모든 과정을 통해 사람과 조직이 얼마나 강화되었느냐가 중요함.
- War on Want는 GPAF Impact 사업을 통해 수원국에 주려는 것이 자선인지, 사회적 서비스인지, 연대인지, 시민사회 강화인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함. GPAF Impact 사업을 통해 정부, 젠더, 무역 등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 애드보커시 중심의 활동을 해온 단체로서, War on Want는 개발사업 수행

과 관련한 방법론, 보고서 작성법, 캠페인, 연구 등에 어려움이 있음.

- War on Want가 파트너를 선정하는 기준은 첫째, 정치적 지향점이 같아야 하고, 둘째, 작은 규모의 풀뿌리(grassroots)단체, 셋째, 재정적 상황임.

[시사점]
① 전통적인 애드보커시 단체로서 정부의 원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기와 욕구, 관점 및 불만사항에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음.
②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기존의 개발NGO와 다른 관점과 접근법을 보임.

[자료]
① Annual Review 2011

사. Christian Aid

- 날짜 : 2011년 3월 25일 금요일
- 시간 : 14~15시 30분
- 현지조사팀 : 손혁상, 한재광
- 인터뷰 대상 : Robin Greenwood. Head of Asia and Middle East Division
  David Morton. Programme Funding Manager-Asia Middle East. Christian Aid
- 장소 : Christian Aid 사무실 (London)
- 소개 : 영국의 대표적인 종교에 기반하는 개발NGO로 다양한 활동전개

1) Christian Aid의 활동 현황

- Christian Aid는 PPA 이전에 소수의 CSO들이 Block Grant를 받을 때부터 영국 정부의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함.
- 2000년 영국 원조기관이 ODA에서 DFID로 전환될시 시작한 PPA를 지원받음.
- Christian Aid는 종교에 기반한 단체(Faith Based Organization, FBO)이며, 수원국의 시민사회 강화를 중요한 목표로 활동함.
- 애드보커시를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활동하며 무역, 부채, 세금, 기후변

화 등의 이슈를 위해 활동함.

- Christian Aid는 40개의 에큐메니칼 교회가 지원하는 기독교 CSO이지만, 개종을 강요하거나 기독교 단체만을 지원하는 등 배타적이지 않으며, 빈곤을 도덕적 이슈로 판단함.
- 'SPHERE'를 Code of Conduct로 활용함.
- PPA를 전체 프로그램의 한 파트로 활용하지, 그 자체가 전체 프로그램은 아님. 즉 PPA는 Christian Aid의 전체 프로그램 중 한 구성요소임.
- 영국 대외원조의 국별 프로그램에도 참여함. (DR콩고, 인도 등), 분쟁, 인도주의지원 등의 사업은 국별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진행함.
- 파트너 기관과 일할 시 자신들의 가치와 일치되어야 협력함. 예를 들어 빈곤에 대한 인식이 같아야 함.
- 초기부터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여 활동해 온 전통이 있으며, 파트너 기관의 사업을 지원함.
- 파트너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중앙의 프로그램은 없으나 구체적인 주제별 프로그램으로 진행함.
- PCM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하나, 고유의 개발사업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함.
- Christian Aid는 DFID가 파트너국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PPA는 작은 단체들에게는 부담이라고 판단함.
- DFID로부터의 재정 의존성이 심화될 수 있기에 아일랜드, EC, 미국 등 다양한 주체로부터 지원을 받음.

[시사점]

① 기독교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대형 CSO이지만, 선교 등에는 집착하지 않고 파트너 자원을 우선순위에 놓음.

② 정부와의 협력에 적극적이면서도 의존성을 높이지 않으려고 다양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음.

[자료]

① Turning Hope Into Action : Strategic Framework 2010-12

② Christian Aid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08

3. 해외현지조사 자료 2 : 스웨덴

가. Sweden Mission Council(SMC)

- 날짜 : 2011년 3월 16일 수요일
- 시간 : 14~16시
- 현지조사팀 : 손혁상, 한재광
- 인터뷰 대상 : Anders Malmstigen. Head of Development Cooperation Unit. SMC
- 장소 : SMC사무실 (Stockholm)
- 소개 : 스웨덴의 Framework Organization 중 하나로 종교기반단체들을 지원함

1) Framework Organization(이하 FO)로서의 SMC의 역사

- SMC의 FO 참여의 배경에는 교회가 해외선교활동에 참여한 오랜 역사의 배경이 있음. SMC는 1980년대 FO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선교나 개발활동을 수행하는 36개의 선교단체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었음.
- 1980~90년대 들어 SMC는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 많은 기관이 선교만 하기보다는 개발활동을 병행하게 됨.
- 22~25개 회원단체들이 Sida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가 되고, 2개는 이미 그 자체가 FO임(PMU Interlife, The Church of Sweden). 이들의 회원과 SMC의 회원은 중복되지 않음. The Church of Sweden은 개별교회가 회원이며, SMC는 교회, 선교 관련 조직이 회원임. 그리고 선교 관련 또 다른 조직인 디아코니아는 교파가 다른 멤버들이 참여함. SMC와는 정체성이 다름.
- Sida 내 시민사회담당 부서는 CIVSAM이며 Sida예산의 9~10% 정도를 집행함. CIVSAM이 CSO들과 협력하는 형태는 아래 세 가지임.
  - Umbrella Organization으로 CIVSAM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자신의 회원들을 지원하는 형태임. SMC가 해당.
  - Framework Organization으로 CIVSAM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개발

도상국의 현지 파트너들에게 재정지원을 함. 즉, 자신의 직접사업을 담당하는 Africa Group of Sweden이 이에 해당됨. Forum Syd는 두 개의 경우에 다 해당됨.

- Sida의 국별지원전략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의 사업수행에 가장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서 NGO가 참여하는 경우임. 이 경우 Sida와 직접 계약을 맺고 진행함. Sida의 직접 개입이 강함.

- 최근 유럽의 추세는 자국 CSO지원보다 역량이 있는 현지 및 INGO를 지원하는 경향임.

2) FO로서의 어려움

- Sida가 각 CSO들의 보고 수준을 점차 높일 것을 요구함.
- FO 제도 초기에는 재정관리에 대한 내용이 쉬웠지만, 최근에는 엄격해지고 있음.
- SMC는 반은 Sida 입장을 대변, 반은 회원단체 입장을 대변함. Sida와 회원단체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단체들을 대변해 Sida와 업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함.

3) 종교단체로서의 FO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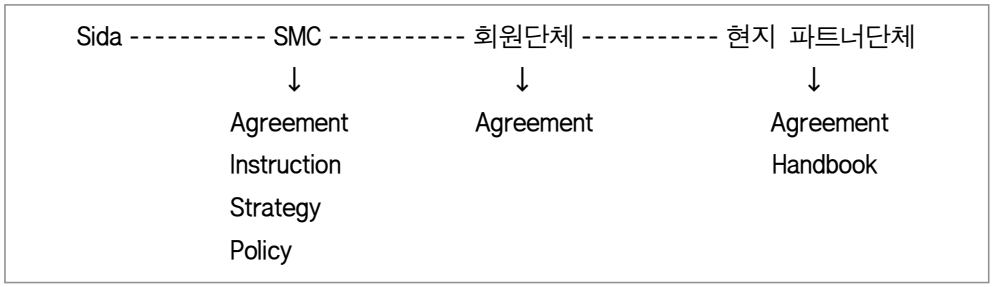
- SMC는 기독교기반 단체로 부가된 가치(added Value)인 기독교가 있음. 과거에 Sida의 자금을 지원받아 단체들이 자꾸 다른 목적으로(선교) 활용하여 이에 대한 조사가 있었음. 그러나 현재는 회원단체들이 Sida의 자금으로는 개발 사업에 활용함.

4) 회원단체의 자격, 등록 등

- SMC는 회원단체들에게 설립된 지 5년 이상, 스웨덴 거주단체, 국제사업을 하는 단체 등의 기준이 있음. 현재 회원은 36개인데, 22-25개 단체는 Sida의 재정지원을 받고, 10개는 재정지원을 안 받고 자체 선교관련 활동(국제

개발은 안함).

- SMC는 각 회원단체와 계약을 맺고 FO로서 활동을 하는데 계약내용은 각 단체마다 내용이 다름.



- SMC는 회원단체가 사업조사, 계획안 작성, 평가 시 조언을 함.

5) 회원 회비, 제공 서비스 등

- 회비는 회원단체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Sida로부터 받은 자금 규모 및 국제활동 규모를 고려하여 1% 이하로 받음.
- 회원단체들에게 워크숍, 세미나, 개발방법론, 지원서 및 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을 제공함.

6) FO로서의 역량강화지원

- 특별히 FO로서의 역량강화지원 교육을 받는 것은 없음. FO의 담당자들은 주로 CSO 출신들이 하며 특별히 교육받는 것은 없음.
- SMC는 회원단체들이 권리에 기반한 접근방식(RBA)를 실행한 사례들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여 배우는 방법을 통해 회원단체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함.
- 매년 연례총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4개의 단체들이 연간 4차례 조직개발세미나를 개최함.

7) Sida로부터의 지원

- Sida로부터 사업수행행정비를 전체 사업비의 8% 지원받음. SMC는 이를 회

원단체에게 지원하는 교육, 감사 등의 활동에 사용함. SMC는 행정비는 따로 모금한 비용으로 활용함. 타 단체의 경우는 행정비로 활용한다고 알고 있음. 보통 8~10%임.

- 회원단체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SMC가 이 총계를 Sida에 신청함. 이후 재정지원을 받는데 이 비용의 8%가 행정비임.

8) Sida 보고 체계

- 3년차 사업의 경우 1년차 간단히, 2년차 자세히, 3년차 종합보고서 제출함. 보고서는 내러티브 형식과 재정보고를 같이 함.

9) FO 제도 개선 필요성

- Sida가 점차 보고형식을 강화하려 함. 이를 통해 재정적 통제를 하려고 함. 개발도상국에서는 부패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감.

10) 기타

- 스웨덴의 경우 대중운동 단체들이 정부의 대외원조 정책에 영향을 끼친 역사가 깊음.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매우 좋은 편이나, 계속 견제를 해야 함. 스웨덴 정부의 CSO를 통한 재정지원의 목적은 시민사회강화임. 그러나 FO 제도 외에 직접 계약을 맺는 사업의 경우 CSO가 정부 정책실현의 수단이 되는 경향이 있음.

[시사점]
① FO인 SMC가 통해 중소규모의 기독교 기반 단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
② FO 자체가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하며 회원단체의 사업의 효과성제고를 위한 노력을 전개함.
③ 스웨덴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좋은 편이나 지속적인 견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자료]
① The church needs to be human
② 2007 The OD Booklet : useful models and practices in organizational development

나. Sida Partnership Forum

- 날짜 : 2011년 3월 16일 수요일
- 시간 : 12~13시
- 현지조사팀 : 손혁상, 한재광
- 인터뷰 대상 : Alexy, manager of Sida Partnership Forum
- 장소 : Sida Partnership Forum (Hanosand)
- 소개 : 스웨덴의 Sida 산하기관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1) Sida Partnership Forum 소개

- CIVSAM과 Sida Partnership Forum(SPF)이 원래 한 부서였다가 SPF가 독립함. 이유는 SPF가 CSO뿐 아니라 local government, private sector, state authority 등 다양한 행위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임.
- ATHA는 인도주의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함. 초기에는 하바드 대학에서 관련했으나 현재는 웁살라 대학에서 진행함.
- CIVSAM은 Sida 직원 + 학자 +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CSO 지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상설 기구임. 3년 임기 후 해산되고 재구성됨.

2) Sida Partnership Forum 교육프로그램 소개

- SPF에서 외국에 파견되는 개인에 대한 Pre-departure 교육을 3개월 과정으로 실시함. 숙식 무료, 교통비는 단체가 지원함.
- 교육내용은 다음의 4가지로 구성됨.
  - Organizational development (tools & methods)

- Gender
- Sustainability
- Connection

- 교육은 Sida 내부 직원과 외부인이 실행함.
- SPF는 Organization Specific Initiative, 즉 단체에서 요청하는 교육도 수행함(ex : woman to woman).
- SPF는 주제별 교육을 우선시하며, 수원국 현지에서 스웨덴 CSO + 파트너 CSO 교육을 실시함. ex) 잠비아에 대한 4개의 스웨덴 CSO와 잠비아 CSO가 참여하는 Anti-corruption 교육 실시.
- SPF에서 assessment, planning, monitoring, evaluation에 대한 교육을 개발도상국 현지에 가서도 실시함.
- 컨설턴트는 Sida, FO, Government, Academic, CSO 출신들임. 이들에 대한 Terms of Reference는 자격보다 경험을 중요시 함.
- FO가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함.

3) 기타

- SPF는 원조체계(aid architecture)에 대한 연구 등 정책연구 및 이론연구도 수행함. 최근 Road to Busan을 발행함. 2003년엔 정책일관성을 강조한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를 발행함. 현재 파리선언을 CSO와의 관계에 적용하는 모델을 연구함.
- 현재 정부가 보수당 정권이기 때문에 PPP 등 기업의 참여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음(정치적인 이유).
- Sida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캠페인도 증가함. 이 과정에서 이익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도 있음.

4) 한국에 대한 교훈

- 파트너 단체 및 국가에 해를 끼치지 않는 'Do No Harm'이 중요함.
- Sida의 역사 및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

- 한국 이미지가 좋지 않은 면도 있음. 한국이 식민지 운영 경험이 없어서 이미지가 좋을 수 있으나, 짐바브웨 등지에서 북한이 지원을 한 경험이 있기에 'KOREA'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음. 권력투쟁(Power Relation)에 참여한 경험 때문임.
-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에 중점을 두면 좋음.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한 경험을 활용하면 좋음.

[시사점]
① 정부 산하에 독립적인 전문 교육훈련기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② 수원국 인사에 대해서는 무료로 교육을 지원함.
③ 수원국에 가서 교육을 실행하기도 하며 스웨덴 CSO + 현지 CSO 교육을 병행함.

[자료]
① Sida Partnership Forum 리플렛

다. Sida

- 날짜 : 2011년 3월 17일 목요일
- 시간 : 13~15시 30분
- 현지조사팀 : 손혁상, 한재광
- 인터뷰 대상 : Carl-Johan Smedeby. Manager of Sida CIVSAM
- 장소 : Sida 본부 (Stockholm)
- 소개 : 스웨덴 원조기관으로 15개의 FO를 지원함.

1) Sida 및 FO의 역사

- Sida는 스웨덴의 대중운동(popular movement)이 정부에 압력을 넣어 1965년에 설립됨. 그 당시 Sida의 직원은 CSO 및 각종 정부기관 등에서 파견되어 구성됨.
- 1976년 Swedish Cooperate Center와 Trade Union이 첫 FO였고, SMC는 1982년 출범함.

- FO는 주로 행정적인 이유로 시작되었음. 즉 효과적으로 CSO들과 협력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되었음.

2) Sida의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현황과 특성

- Sida에서 17명의 직원이 CSO 관리업무를 담당함.
- Sida의 시민사회 지원전략은 문건 'Pluralism'에 나타나 있으며, 시민사회 담당부서인 CIVSAM은 이를 Sida 내의 타 부서에게도 적용하게 함.
- Sida는 CSO를 자체의 역할을 가진 독립적인 행위자로 간주하지만, 동시에 정부역할에 맞게 적용함.
- Sida는 CSO를 판단할 시 질적(qualitative) 방식으로 함. 이를 위해 상황분석(context analysis), 행위자 분석(actor analysis),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 작업을 수행함.
- Sida는 국제 CSO(CIVICUS, IBON, CCIC, INTRAC)들도 지원함.
- Sida는 직접자금협력 방식(direct funding)로 INGO, Loacl CSO, 스웨덴 양자 원조 및 지역기반지원, 주제별 지원 등에 대해 협력하여 지원함.
- Sida의 CSO 협력사업은 CSO Appropriation, Humanitarianism Work, Direct Support(지역 및 주제별 지원사업 포함) 세 가지로 구성되며 총예산은 5.5 billion SEK이고, 이 중 CSO Appropriation은 1.5billion, Direct Support가 1 billion SEK임.
- Direct support에 대한 Sida의 CIVSAM의 역할은 Sida의 국별팀이 CSO 지원사업을 실행할 시 이를 분석하고 조언하는(advisory)역할을 수행함.
- CSO Appropriation의 자부담은 예전엔 20%였으나 10%로 낮아짐. 이는 정치적인 결정(political decision)임.
- Sida의 CSO에 대한 많은 지원은 CSO를 망치(spoil)거나 의존성을 증대시킴.
- Sida는 CSO에 대해 8%의 행정비를 지원함.
- 민주주의나 인권을 위해 현지 기관을 지원하는 것은 드러내지 않고(confidential) 지원함(예를 들어 남아공의 ANC, 벨라루스, 이티오피아).
- CSO 지원은 US$ 60억이고 이는 Sida 예산의 30%임. CSO에 대한 예산 배분의 주요 기준은 Show result, Internal good control system, Relevant

work, Good quality임.

3) FO 제도의 현황과 특성

- FO 지원에 대한 결정은 CIASAM이 주로하며 때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기도 함.
- Sida가 FO의 제안서를 평가하며, 사업평가 후 자금을 반환하기도 함. 또한 회원단체가 문제를 일으키면 FO가 자격을 잃을 수도 있음(라틴아메리카 지원단체 사례). 페널티로 3년 지원이 2년으로 줄어들기도 함. 그래서 내부관리(internal control)와 반부패(anti-corruption)가 중요함. 라틴아메리카 그룹의 경우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함.
- FO가 회원단체를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행정비 지원의 경우 10~20%로 업무량에 따라 다르게 지원함. Forum Syd의 경우 회원단체가 많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함.
- FO를 선정하는 새로운 기준(criteria)을 개발 중이며, 여름 이후에 적용할 것임.
- 2005~2011 여름까지의 기준은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내부관리체제(internal control system), 권리에 기반한 접근법(right-based approach)임.
- FO 지원은 3년 + 1년 + 3년임. 라틴아메리카를 지원하는 FO가 탈락하고 최근 3개의 단체가 FO로 합류했음.
- 자금을 배분, 지원하는 Umbrella 조직은 4개로 Africa Group of Sweden, Palme Center, Forum Syd, SMC이며 PMU, SHIA는 Umbrella와 Frame Organization 양쪽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4) 스웨덴 CSO의 역량강화

- Sida는 별도로 컨설팅 회사를 사용치 않음. FO가 사전사정 및 평가(assessment, evaluation) 등을 모두 수행하며 실제적인 컨설팅 회사의 역할을 수행함.
- Sida는 Sida Partnership Forum을 통해 CSO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함.
- 초기에는 CSO들에게 많은 재정지원을 해서 역량강화를 지원했으나, 최근

에는 그렇게 하지 않음.

- Sida는 CSO 역량강화의 실질적인(tangible) 성과를 필요로 함.
- 5년 전에는 주제, 실행, 평가에 관련한 역량강화를 지원함.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method of evaluation work, evaluation, thematic, anti-corruption work, work with risk-management, work in conflict'에 대해 다룸.
- Method development forum 등을 개최하여 학계, 컨설턴트 등이 정기적으로 참여했음.

5) 기타

- Forum Syd는 주로 FO에서 관리되지 못하는 작은 단체들을 관리함.
- Forum Syd는 1995년 BIFO와 Sweden Volunteer Service가 통합되어 설립됨. 초기 Forum Syd에는 Sida 직원과 CSO 직원이 합류하였음.
- Sida가 Forum Syd에 전체 지원비 중 8%는 활동 행정비로 지원하고, 10~20%의 행정비는 추가로 지원함.

[시사점]
① Sida는 FO 제도를 통해 다양한 스웨덴 CSO를 효과적으로 지원함.
② FO 제도는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긴 협력과 신뢰의 역사 가운데서 발전해 온 제도임.
② FO 자체가 스웨덴 CSO에 대한 컨설팅사 역할을 하므로 전반적으로 자율성과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자료]
① Pluralism
② Strategy for support via Swedis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2010-2014
③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frame organizations

라. Forum Syd

- 날짜 : 2011년 3월 18일 금요일
- 시간 : 10~11시 40분
- 현지조사팀 : 손혁상, 한재광
- 인터뷰 대상 : Maria Feleman, Head of International Programmes. Forum Syd
- 장소 : Forum Syd 본부 (Stockholm)
- 소개 : 스웨덴 FO 중의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단체로 중소규모의 단체를 지원함.

1) Forum Syd의 현황

- Forum Syd는 본부 외에 아프리카, 발칸반도, 콜롬비아, 캄보디아에 지부를 두고 활동함.
- Forum Syd는 1995년 Sida가 남반구 CSO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제3의 지원기관으로 설립함. 현재 183개의 회원이 있으며, 비회원단체도 지원함.
- Forum Syd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전 지구적 가치(global value)를 추구하며, 스웨덴 정부에 대한 로비와 애드보커시를 실행하여 스웨덴 정부가 책무성을 담보토록 함.
- Forum Syd는 'social accountability, strengthen local capacity, lobby against government' 업무를 수행함.
- Forum Syd는 1년에 한번 5월에 application meeting을 함.
- Forum Syd의 회원은 무조건 Sida의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받음. 회비는 평균 SEK200임. 회원단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검토, 연간보고서 검토 등을 통해 함. 기준은 웹페이지에 있음.
- Forum Syd는 외부 컨설턴트는 활용하지 않음.
- Forum Syd의 아프리카 케냐지부의 직원 2인이 새로운 지원자(아프리카 단체)들에 대해 사정작업(accessing)을 한 후 최종보고서(내러티브 형식)를 본부로 보냄. 최종보고서에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 행정, 조직개발(organizational development)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영국의 회계관리 지

원 CSO인 'Mango'가 실행한 보고서도 포함됨.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함. 그 평가와 회계감사는 Sida의 기준을 따름.

- 회계감사와 관련해 현지파트너 CSO들은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함. 회계감사를 KPMG가 수행하기도 하며, 현지 회계감사회사가 참여할 수도 있으며, 그럴 시에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함. ISO 2000 등의 기준을 따라야 함.
- 2006/2007년의 경우 행정비는 자부담 90% 중 8%인데, 이 비용은 파트너 기관들을 지원하는데 활용(교육 등)함. 90% 이외의 Sida로부터의 지원비용은 연간 32million SEK이며 아프리카 등 현지사무소 운영비, 인건비 등임.
- Forum Syd 내부적으로 연간 2번의 정기 모임이 있어서 그곳에서 다양한 회원단체들이 규칙 등을 논의하고 대표선출 등을 함. 대표는 매년 바뀌고, 이사회는 2년 임기제임.

2) Forum Syd의 역량강화 교육

- 역량강화교육은 주제별, 위험관리, 보고체계, 양성평등, 사업관리(structure of project support)를 실행함.
- Forum Syd의 아프리카 사무소의 경우 국제기구에서 직접 재정을 지원받아 진행하기도 함.
- Forum Syd는 단체요청에 따른 맞춤형(tailer made) 역량강화 교육은 하지 않음. 역량강화 교육의 내용 중 인권, 민주주의 교육 등을 실시함. 기존의 수요기반 접근(needs based approach)에서 권리기반 접근(rights based approach)로 전환함.

[시사점]
① Forum Syd는 중소규모의 다양한 CSO들을 지원함.
② 수원국 현지에서도 지부를 가지고 현지 CSO를 지원함.
② 인권, 민주주의 관련 지원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함. RBA를 활용함.

[자료]
① Can challenging change the world?
② Building Democracy through Strong Partnership
③ Forumsyd Annual Report 2008 : More Democracy Less Poverty

마. Africa Group of Sweden(AGS)

- 날짜 : 2011년 3월 18일 금요일
- 시간 : 14~15시 30분
- 현지조사팀 : 손혁상, 한재광
- 인터뷰 대상 : Gabi Bjorsson, Kanslichef/Director. Africa Group of Sweden
- 장소 : AGS 본부 (Stockholm)
- 소개 : 스웨덴 FO 중 아프리카 지역만을 지원하는 유일한 FO

1) AGS의 역사와 현황

- Africa Group of Sweden(AGS)은 1960년대 포르투갈 식민지인 모잠비크, 앙골라 및 나미비아, 남아공, 짐바브웨 등의 독립투쟁을 지원하는 것을 계기로 시작됨. 현재는 양성평등, 생계지원, 민주화, HIV/AIDS 등을 지원함.
- AGS는 재정의 85~90%를 Sida로부터 지원받음. 10~15% 정도는 스웨덴 내의 다른 조직으로부터 지원받음.
- 2년 전 보수당 정권 등장 후 애드보커시를 진행함.
-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 지원보다 자국의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있음. 예를 들어 유럽과 아프리카의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EPAs)가 있음. 이는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보다는 무역을 위한 것이며, 아프리카의 CSO와의 소통을 위한 애드보커시 재정지원을 삭감함.
- 개발도상국 파트너들을 지원하는 것은 'Public Movement Aid'임. 이는 연대(solidarity)에 기반한 운동이며 60~70년대 노동운동, 종교기관, 교회 등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더 공정한 세상(more fair world)'에 대한 공동의 관점을 가진 운동임.

2) AGS의 사업수행

- 현재 아프리카에 있는 40개의 파트너를 선정하는 주요 기준은 Vision of Just world, 역량(planning, monitoring, evaluation)임.
- 아프리카 파트너 그룹으로부터는 사업결과 보고서를 내러티브 형태의 보고서로 받음. 현지의 큰 감사회사로부터 감사를 받게 함.
- 5개 국가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음(앙골라, 케이프타운, 짐바브웨, 마부토, 나미비아). 남아공의 경우 50명의 직원이 있고, 8명의 스웨덴 직원이 있음.
- AGS 본부에는 14명의 전일 근무(full-time) 직원과 2명의 비전일 근무(part-time) 직원이 있음.
- AGS는 나미비아의 CSO협의체(umbrella organization)를 지원하고 있음.
- AGS는 자금지원기관(funding organization)으로서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AGS는 연간 적어도 1회 이상의 정기 모임을 하고 있으며, HIV, 생계, 소액대부, 교육 등을 실행함.
- AGS는 Sida로부터 8%의 행정비를 지원받음. 스웨덴 내의 회원들은 교회 성가대, 노조 등이며 이들로부터 연간 250,000SEK를 회비로 지원받음. 아프리카 파트너들로부터는 연간 250SEK를 회비로 받음. 스웨덴 회원 단체들이 아프리카 파트너들과 결연을 맺기도 함.
- AGS는 지역사무소에 설치한 역량강화자금(capacity building fund) 제도를 활용하여 현지의 파트너 단체를 선정함. 3년 계획으로 현지 파트너 단체를 직접 접촉하여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사정함. 이 과정에서 파트너 단체들에 대한 '인내'가 필요함.
- AGS는 이사회 아래에 실행위원회(operational committee)가 파트너 단체 선정을 담당함. 여기에는 3명 이상의 이사와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음. 사무국에서 파트너 단체들의 신청서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실행위원회가 결정함.
- Sida는 2008~2009년 'partnership and efficiency evaluation'을 실시함. 파트너 FO들은 더욱 동등한 파트너십을 요구함.
- AGS는 파트너들과 관계를 끊기 전에 오랜 기간을 두는 'phasing out' 정책을 폄.

- Sida로부터의 지원이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변동이 있어 왔음.

3) 한국 정책에 대한 조언

- 어떻게 파트너를 선정할 것인지가 중요함 : 동일한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을 하는 단체에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해야 함.
- 구체적인 계획에서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함.
- 현실적이어야 함 : 모니터링은 빈틈없이 해야 하며, 실질적인 성과와 동반되어야 함. 3~4년간은 기다려야 함.
- 한국에 주는 조언은 소수의 효율적인 CSO를 지원하는 것보다 다양한 분야의 CSO들을 지원하는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함.

[시사점]
① 아프리카 국가의 CSO 지원에 대한 오랜 역사와 방법 및 철학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함.
② 아프리카 CSO들을 수혜자가 아닌 파트너로 대하고 있음.
③ 아프리카 파트너 CSO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오랜 경험에 바탕한 전문성이 있음. 이는 지역별 지원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자료]
① Program and Long term Plan 2006-2012

4. 해외현지조사 자료 3 : 호주

가. Sexu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Australia (SHFPA)

- 날짜 : 2011년 4월 18일 월요일
- 시간 : 10~12시
- 현지조사팀 : 손혁상, 이주희
- 인터뷰 대상 : Naomi Knight, CEO of the SHFPA
- 장소 : SHFPA 사무실 (Canberra)
- 소개 : Full Accreditation CSO로 모자보건, 가족계획, 성 관련 정보 등의 특화된 사업 진행

1) SHFPA 소개

- 설립된 지 17년 되었으며, 국내사업을 먼저 시작함.
- 해외사업은 태평양 지역에서 시작하여 후에 아시아 지역으로 옮김.
- 회원단체인 Family Planning Global Network(IPPF)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CSO로 152개 국가에 178개의 회원단체로 이루어져 있음.
- 2009년 입찰과정을 거쳐 New South Walew Family Planning이 하도급 계약을 맺어 사업을 수행하였고, SHFPA는 관리 및 서류검토를 담당함.
- 주요사업은 간호사 교육과 지역역량 강화임.

2) 인증

- 1990년 첫 인증을 받았으며, 2010년 재인증을 받음.
- AusAID 인증을 위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AUD 6만 5천을 들여서 직원 1명을 고용, 직원이 수행하는 만큼의 업무량을 CEO도 같이 수행해야 했음.
- 인증기준 관련 몇 가지 서류는 SHFPA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은 것도 있었음. 특히 4번째 기준인 'Linkages with the Australian Community'이 그에 해당함.

-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1:5 매칭비율이 SHFPA와 같은 작은 단체에게는 너무 높은 기준임.
- 인증CSO가 적은 이유
  - 인증 관련 업무량이 과도하게 많음.
  -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있음.
- Review Team
  - 주로 CSO 관련 배경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며 주로 학계나 일반기업 출신이 많음.
  - 회계/재정의 경우 5년간의 기록을 심사, 그러나 버마와 같이 어떤 특정 국가의 경우 회계/재정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는 국가사업도 있으나 이러한 것이 고려가 안 됨.
  - Review Team이 자료를 심사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AusAID로 제출함.
- 인증과정을 통해서 SHFPA가 호주 지역사회와의 연계, 전략적 의사결정에 신경쓰지 못 했으며 사업의 과정에만 집중했음을 알 수 있었음.
- 인증과정이 하나의 컨설팅 과정이 됨.
- 기본인증을 위한 조건
  - 상근직원(AUD 6만 5천)
  - RDE AUD 7만 5천 이상(3년 동안)
  - 20% 대응자금, AUD 15만 이내. 대응자금 때문에 더 큰 액수의 지원금을 요구할 수 없음
  - 대응자금은 사업별이 아니라 ANCP 전체 지원금에 해당됨.

3) AusAID와 CSO

- 호주 정부는 국제기구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호주 CSO 지원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2009년부터 CSO 지원경향이 바뀌면서 CSO의 정책 및 옹호 역할을 중요시 함. 단지 사회적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을 개발도상국에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인식.
- CSO 지원금이 곧바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쓰일 수 있는 접근성

때문에 CSO와 협력함.

4) ACFID

- ACFID 시민사회 지원이 큰 도움이 됨.
  - 해외여행 관련 정책/안전 정보, 애드보커시, 워킹그룹(특히, 태평양 지역 워킹그룹이 도움이 되었음).
  - 가장 큰 도움은 네트워크임.
- 역량강화 강좌가 유용함.
  - DE[120], 애드보커시, 인사교육, 투명성 등의 교육이 특히 유용했음.
- 정책개발과 COC(Code of Conduct) 관련 역할이 중요
- COC를 위반한 단체의 경우 그 지위를 잃음. 그러한 전례가 있었음.

5) IPPF

- IPPF는 작은 CSO를 위한 정책이 개발되어 있음.
- IPPF는 규모가 다른 CSO의 네트워크임.
- 이사회 멤버 교육을 위한 자료가 따로 있음.

6) ANCP

- ANCP에서 10% 지원금을 지원하는 개발인지제고 사업은 대중의 인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체 이름으로는 수행할 수 없음.
- ANCP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RDE의 경우, 그 기준이 너무 복잡함.
- 지역 CSO나 지역단체를 제3자로 파트너를 맺을 경우 필요한 것이 Cooperation Agreement이고 최종책임은 호주 CSO에게 있음.
- 위와 같은 CA로 인해 호주정부는 호주 CSO를 원조기금이 지역으로 전달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채널로 여김.

120) DE의 정의 : 지역공동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서비스 제공.

7) CDC

- AusAID, ACFID, CSO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음.
- 주로 어떤 절차나 정책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하는 역할을 함.

[시사점]
① IPPF의 작은 규모의 CSO 지원방안
② CDC와 같은 정부-시민사회 채널이 규모가 큰 단체로만 이루어질 경우 작은 CSO는 이러한 채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함.
③ 인증과정이 까다롭고 업무량이 많다고 하지만 SHFPA처럼 2명의 직원으로도 FULL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과정임.
④ 인증과정 자체가 하나의 컨설팅 역할을 함.

[자료]
① SHFPA ADP Plan 2010-11 (ANCP 지원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② SHFPA ADP Plan 2009-2010 (ANCP 지원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③ IPPF, Welcome on board, A handbook to help IPPF Member Association improve their governance
(IPPF에서 회원단체 이사회 교육이 가능하도록 배포한 자료)

나. AusAID

- 날짜 : 2011년 4월 18일 월요일 / 2011년 4월 19일 화요일
- 시간 : 14~16시 30분 / 14~16시
- 현지조사팀 : 손혁상, 이주희
- 인터뷰 대상 : 18일 - Russell Miles, Ruth Megrian, Anna Clancy
  19일 - Sandra Kraushaar
- 장소 : AusAID 사무실 (Canberra)
- 소개 : 호주 원조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1) Ruth Megrian, 인증 담당자

가) 사회적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에서 CSO 협력으로 호주 정부의 정책이 변함.

- Simons Report(1996), OECD DAC peer review(2008), White Paper (2006)[121]의 영향
  - 개발사업에 다양한 참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외교부에서도 호주 지역사회와 접근성에 있어 CSO가 유용하다고 인정
-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CSO 파트너십을 통해서 보조금만 지원하도록 정책이 변화됨.
- 인증제 전에 AusAID는 CSO 협력에 있어 직접지원 프로그램만 있었음.

나) 인증제 기준

- 인증제 기준은 점수화를 위한 것이 아님.
  - 5개의 기준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
  - 인증제 기준은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갖추었음을 단체가 증명을 하는 것임.
- 다섯 가지 기준 중 거버넌스를 강조
- 다섯 가지 기준은 ANCP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지를 볼 수 있도록 선정된 것 임.

다) 인증제도에 지원하기 위한 조건

- 세금감면 혜택 : OAGDA, Oversea Aid Git Deductibility Scheme[122]
- Code of Conduct 서명
- 최소한의 RDE

121) 1997에 나온 이 review가 마지막이며, 아직 여전히 review가 진행 중임.

122) 기업체도 개발 사업을 위한 별도의 지원금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감면 가능, 50% 이상이 개발을 위해 쓰여야 함. 자선활동(charity)나 복지는 안 됨. 예를 들어, 고아원 자체는 안 되지만 그 안에서 교육과 보건 프로그램은 가능함.

라) CDC

- CDC는 AusAID, ACFID, CSO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음.
- CDC가 아마도 인증 개발에 주요 역할을 맡았을 것임.

마) 인증 평가

- 5가지 기준이 작은 규모의 단체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 임. 그러나 인증은 역량강화 시스템이며, 이를 통해 단체의 역량강화가 가능함.
- 인증 CSO 숫자가 적은 이유는[123]
  - 작은 CSO는 인증기준에 맞지 않음.
  - 큰 규모의 CSO는 AusAID 보조금에 큰 관심이 없음.
  - 그러나, 담당자 역시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대답함.
- 인증제의 간소화 필요. ANCP 간소화를 위한 계획은 CDC로 5월이나 6월에 CDC로 넘어갈 것임. 그러나 이는 기준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방문심사에 더 집중하기 위함임.
- CSO가 인증제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재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단체의 명성 때문이기도 함.

바) Review Team

- AusAID와 계약한 컨설턴트로 구성된 팀
- Review Team의 심사평가에 대한 CSO 반응
  - 주로 거의 동의함.
  - Review Team은 주로 인증불가보다는 Full 대신 Base 인증을 하도록 권고
  - 감사보다는 건설적인 조언과 역량강화에 도움을 주는 방향을 제시해 줌.
  - CSO는 심사·평가를 통해 본인 단체의 위치를 알 수 있음.
- 인건비는 AUD 3만 5천으로 이는 1인당이 아닌 팀 전체에 지급하는 금액임. 이 금액에는 출장지원비부터 심사필요경비까지 모두 포함.
- Review Team은 단체가 평가받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가 심사되어야 하

123) 세금감면 CSO 170개, COC 서명 CSO 중 121개 CSO만 인증받음.

는지를 결정함. AusAID는 그 자료를 통해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며 질적인 평가를 위주로 함.

사) 인증 지원

- AusAID는 인증제 관련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
- 2009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므로,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기임.

아) ANCP 보조금 집행방법

- RDE에 따라 보조금 금액을 결정함.
  - RDE가 높더라도 한 단체가 전체 ANCP 예산의 35% 이상은 가져갈 수 없음.
- CSO가 먼저 보조금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AusAID에 제출
- 그 후, AusAID가 검토하여 CSO와 상의하여 최종으로 보조금 집행계획을 세움.

자) Cooperation Agreement

- CA는 나라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국가 사무소에 따라 자금규모가 달라짐.
- CA는 ANCP와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임.

차) 보조금 의미 : CSO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자금

2) Anna Clency, Partnersip / Cooperation Agreement 담당자

가) ACFID와 PA

- CSO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음.
- ACFID 보조금은 AusAID와 협력할 수 있는 사업에만 지원 : Code of Conduct, CSO 역량강화, 조사연구, 학계 연계프로그램 등
- 보조금은 매우 유동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ACFID 보조금으로 애드보커시 사업진행은 하지 못 함.

- 보조금 액수는 연간 대략 AUD 320만임.
- ACFID와 1년에 1번 정기적인 회의를 가짐.

나) 집단평가(Cluster Evaluation)

- 42개 CSO와 400여개 정도의 협력사업을 진행함.
- 독립적 집단평가(independent cluster evaluation) : 5개의 CSO와 협력하여 5개의 기준에 따라 진행하는 평가로, 그 기준은 인증 기준과 비슷하나 좀 더 광범위함.
- 평가보고서를 위해 컨설턴트와 계약하는데 이 중 일부는 반드시 ACFID와 협력해서 진행
- 매년 테마를 주제로 진행(theme approach)하며, 이를 통해 ANCP가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가 가능함.
- 한 개 국가를 기준으로 그 국가에서 시행되는 다른 종류의 사업을 평가, 현재까지 캄보디아, 동티모르, 인도 등에서 진행
- 이러한 평가결과는 포럼을 통해서 공유됨.

다) CSO 협력사업 보고방법

- MDGs에 기여한 요소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준 및 요소 적용은 유동적임.
-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접근성을 중시함.
- 보고사항은 gateway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유함.

라) 인증(accreditation)

- 일단 인증을 받은 CSO는 협력 사업에 있어 모니터링이나 평가에 있어 어느 정도 유동성을 적용함.
- 인증과정은 일종의 컨설팅이라 할 수 있음.

3) Sandra Kraushaar, CSO 파트너십 담당

가) ANCP

- 과정

  OAGDS(9-12month, tax deduction) → (COC)[124] → Accreditation → ANCP

  * OAGDA(Overseas Aid Gift Deductibility Scheme)
- 호주 정부는 CSO에게 개방적임.
- ANCP 시행된 지 30년 정도 되었음.
- 10% 행정비(제한사항 없음), 인지강화, 계획, 모니터링과 평가
- ANCP는 본인 담당이 맞지만 그 외의 국가별 CSO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그 국가담당부서에서 관리
- 규모는 AUD 67백만이며, 그 외의 지원금은 다른 파트너십 또는 협력 프로그램에서 사용

나) Agreement with CSO

- Head Agreement는 AusAID-CSO간의 법적 계약서(업무실행계약서)

  Partnership Agreement : 법적 계약이 아닌 일종의 성명서
- 현재 PA 맺은 CSO는 6단체, 곧 7단체가 될 것임.
- 그 외 인도주의적 파트너십 협약(humanitarian partnership agreement)이 있음.
- 위의 모든 파트너십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주된 목적으로 함. 각 파트너십간의 조화가 중요함.

  → 특히 모든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담당부서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화가 중요
- AusAID 지원금 사업의 지적 재산권은 AusAID에게 있음.
- 정부 개발 사업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개발사업(Country-Country Aid Program)이지만 CSO 개발사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개발사업(People-People Aid)임.

124) AusAID에서 진행하는 과정이 아니므로 괄호처리

다) 파트너십 협약(Partnership Agreement)

- 지역 CSO와의 협력 중시
- 장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중시

라) 복지(Welfare)와 Development(개발)

- 복지사업(welfare) 또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은 수혜자에 대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
- 복지와 개발을 구분하는 것은 아주 복잡한 문제임.
  ex) 어린이를 위한 학교는 개발이지만 성인을 위한 학교는 복지

[시사점]

① 인증제 기준은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갖추었음을 단체가 증명을 하는 것임.
② 인증제는 감사가 아닌 일종의 컨설팅 및 역량강화 절차로 볼 수 있음.
③ 복지사업(welfare) 또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 / 개발사업의 분류
④ 인증과정과 기준이 힘든 만큼 일단 인증 CSO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간소화

[자료]

① Simons Report(1996), OECD DAC peer review(2008), White Paper(2006)
② Gender equality and the AUstralian aid program
③ Promoting Gender Equlaity through the MDG
④ Women leading change, AusAID support for women's leadership and decision making

다. ACFID

- 날짜 : 2011년 4월 19일 화요일
- 시간 : 10~12시
- 현지조사팀 : 손혁상, 이주희

- 인터뷰 대상 : Susan Harris Rimmer, Manager, Advocacy & Development Practice Alex Oates, Policy Advisor Ann Tothill, Learning and Development Facilitator, Member Service Team
- 장소 : ACFID 사무실 (Canberra)
- 소개 : 호주 해외원조단체 협의체

1) Code of Conduct

가) COC 배경

- ACFID는 AusAID보다 먼저 설립되었으며, 역사가 깊음.
- 한 CSO의 스캔들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짐. CSO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짐.
  - COC는 무너진 신뢰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됨.
  - 처음에는 월드비전, 적십자 등 6개의 큰 CSO를 중심으로 시작
  - 그 후, 인증제와 COC 연계
- COC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즉, COC 위원회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음.
  - ACFID나 ACFID 이사회는 COC 위원회에 관여하지 못 함.
- COC는 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도구가 될 수 있으며, 단체의 자발적 규제도구도 됨.
- COC에 대한 호주 대중의 인식이 높음.
  - 국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CSO는 최소한 COC 서명을 해야 할 정도
- CSO 운영을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바로 COC임.

나) 개정 COC

- 개정 COC는 호주뿐만 아니라 현지 사회에서의 책임성, 투명성 증진을 위한 조항을 포함함.
  - 기존 COC는 호주 사회에만 집중했으나, 개정 COC는 현지 사회도 고려
  - 호주 국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파트너국 국민들에게 책임성 및 투명성 확대를 위해 개정

- 개정한 이유
  -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해 개정
  - 기존 COC가 11년 동안 지속되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짐.
- 개정과정에서 원칙과 의무를 연계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음.
- COC는 호주 국내법, 국제법과 모두 연계되어 있음.

다) ACFID 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

- 복지는 개발과 구분되기 때문에 단체 자신이 개발NGO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임.
- 단체가 너무 작기 때문임.
- 120개 서명 단체 중 70개 단체가 ACFID 회원

라) COC의 감독과 모니터링

- 보고서에만 의지할 때는, 보고서를 통해서만 감시하는 것이 어려웠음.
- 감시/모니터링 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여전히 가장 힘든 단계임.
- Public complaint System : 대중고발은 흔하지 않은 경우임. 그러나 가장 강력함.
- 보고서는 독립적인 COC 사무소에서 접수 및 감시
- Pass-Fail 제도임. 점수화 하지 않음.
- COC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위반한 단체에 관한 정보를 AusAID로 전달하고, 이러한 단체는 명성이 떨어짐. 호주의 대중에게 COC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 현재까지 대략 5개 단체가 COC를 지키지 않아서 서명 단체의 지위를 잃음.
- 종교기반 단체의 경우 COC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움. 종교기반 단체를 위한 COC는 개별적으로 필요함.

마) Membership / 조직

- 각 단체의 예산규모에 따라 ACFID 회비를 차별적으로 책정
- 월드비전과 같이 규모가 아주 큰 단체는 회비가 많은 만큼 투표권을 2장 가짐.

- ACFID가 없으면 AusAID는 규모가 큰 단체와만 파트너십을 원할 것임.
- ACFID는 단체의 분야별 사업수행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바) 인증제에 대한 CSO 반응

- 인증제를 단체 전문화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
- 대부분 인증제를 긍정적으로 인식
  - 대부분의 CSO는 인증제를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학습단계(Learning Process), 전문화(Professionalism)로 인식
- ACFID는 인증제 관련 정보를 회원단체에게 지원하지만 인증을 받으라고 권하지는 않음.
  - 인증제 관련 정보 제공은 회원단체가 아니어도 제공함.
- 인증 받지 못한 단체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있으나, 극히 미비함.
- ACFID의 목적은 회원단체에게 어떠한 종류의 지원금이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ANCP는 주로 규모가 큰 CSO, Full 인증을 받은 CSO 지원에 집중되어 있음.
- 애드보커시 단체는 세금감면을 받지 못 함.
  - 세금감면은 인증제를 받기 위한 요구조건 중 하나임. 예를 들어, 인권단체, UN Women은 세금감면을 받지 못 함.

2) CDC

- 이사회에서 2명 선정, 선거를 통해 2명 선정
- AusAID의 Assistance Director General가 CDC 의장을 맡음.

3) Working Group

- 25개 워킹그룹 중 6개 정도가 가장 활발히 활동
  - 스리랑카 워킹그룹이 가장 활발히 활동함. 코디네이터를 위한 지원금을 직접 모금하기도 함.

• 아프가니스탄 워킹그룹은 보고서 발간

- ACFID 정책팀 전원(6명)이 워킹그룹을 맡고 있음.
- 새로운 워킹그룹은 제안서를 ACFID에 제출하면 됨.
- 몇 가지 워킹그룹은 회원단체에만 한해서 운영되지 않음. 워킹그룹 의장에 따라 달라짐.
- 워킹그룹 예산은 AUD 2만이며 공동재정지원방식임.
- 워킹그룹 자체가 단체의 전략이 될 수 있음.

4) 역량강화

- ACFID COC 트레이닝에 집중하고 있음.
  • 특히, 개정된 COC가 곧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트레이닝 수요가 높음.
- 코드 중 인권 등 섹터와 관련된 심화교육이 중요함.
- 젠더, 커뮤니케이션, 긴급구호, 어린이인권 등 섹터 교육도 중요
- 인터넷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아직 실행하고 있지는 못 함.
- 워크숍의 경우 2일 이상 진행 못 함.
  • 워크숍은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는 네트워크 장으로 인식
- 트레이닝 비용은 아주 저렴하거나 받지 않음.
- 분기별로 회원단체 대상 포럼 개최(MIF, member information forum)
- ACFID 외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체의 경우 CSO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사업별, 섹터별로 전문화 되어 있음.
  ex) Burnet Institute : 보건의료
  Mandela : 심리 및 정신 관련 교육
- 역량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자선활동이 아니고 개발전문 CSO라면 당연히 전문화가 되기 위해 역량강화를 해야 하기 때문임. 의사, 변호사, 기술자와 마찬가지로 교육 없이 전문화가 될 수 없음.

5) AusAID와의 파트너십

- AusAID 지원금은 다른 펀드에 비하면 적은 편
  - ACFID는 이미 내부적으로 정부지원금에 너무 기대지 않기로 함.
  - 독립적인 펀드가 필요함.
- 2009년 AusAID와 Partnership agreement한 단체는 연간 US$ 80만을 4년간 지원받고 있음.
  - 액수가 이렇게 정해진 이유는 40% 이상의 예산을 정부에게서 받지 않는다는 내부규정 때문임.
- AusAID와 high level partnership review working group meeting : AusAID에서 Director-General와 이사회가 참석하여 새로운 정책이나 국가별 전략 논의
- 매년 partnership review 워크숍 개최
- 집단평가
  - 5개 정도의 사업 DE를 독립적으로 검토, ACFID, 컨설턴트, AusAID 참가. 반응이 좋음.
  - 매년 테마를 정해서 진행, 2010년 G-8과 관련해서 캄보디아에서 소외계층에게 접근하는 방식과, 사업의 영향을 좀 더 넓게 하고 단순화된 형식으로 진행함.

[시사점]
① COC 운영방안 : COC 심사, 적용, 감시 등 모든 과정에 있어서 독립성 유지
② COC 기준은 점수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Pass & Fail임. 이는 인증제도도 마찬가지임.
③ 워킹그룹이 활성화되면 단체의 전략이 될 정도의 정보 공유 가능
④ 역량강화 필요성 : 단순 자선활동이 아니고 개발전문 CSO라면 당연히 전문가가 되기 위한 역량강화 필요

[자료]
① ACFID Code of Conduct
② ACFID Annual Report

③ Information Sheet : Overview of AusAID Accreditation
④ AusAID/NGO Committe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⑤ ACFID Learning & Development Program version (15/04/2011)
⑥ ACFID Strategic Framework 2011-2015
⑦ Working Better Together : An NGO Perspective on Improving Australia's Coordination in Disaster Response
⑧ Can Money Grow on Trees?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REDD) in developing countries, 2010 ACFID Research Paper (워킹그룹 보고서)
⑨ Is it for the long haul? : Delivering Australian aid to Afghanistan, ACFID Research in Development Series Report No.1 (워킹그룹 보고서)
⑩ Promoting Voice and Choice, Exploring Innovations in Australian NGO Accountability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워킹그룹 보고서)
⑪ Code of Conduct Implementation Guidance

라. Interplast AUSTRALIA & NEW ZEALAND

- 날짜 : 2011년 4월 21일 목요일
- 시간 : 10~12시
- 현지조사팀 : 손혁상, 이주희
- 인터뷰 대상 : Terese Karran, Senior Program Activities Coordinator
- 장소 : Interplast 사무실 (Melbounrne)
- 소개 : Base Accreditation CSO로 보건의료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1) Interplast 소개

- 1983년 설립, Royal Australian Collage of the Surgeons & Rotary와 협력해서 창립
- 개발사업은 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고 있음.
- Interplast America, Interplast Something은 다른 조직임.

2) 복지와 개발

복지사업(welfare)은 개발(development)과 구별되어야 함.

- 복지사업은 개발이 아님.
  - 임시방편적인 지원이나 멘토링은 개발이 아님.
  - 치료와 현지교육은 개발임. 그러나 치료의 경우, 현지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야지 호주에서 기계를 가지고 가는 것은 개발이 아님.
  - 개발을 위해 Interplast는 치료 외에도 지역사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 제공
  - 만일, 환자를 현지에서 호주로 데려와 치료할 경우, 그 비용으로 인해 현지에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 없음.
  - 환자를 현지에서 현지 자원을 이용해 치료하는 것이 Interplast의 목적임.
- Interplast는 자원봉사자가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 자원봉사자의 인식은 단체와 다름. 자원봉사자는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까지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음.
  -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시스템 및 체계 부족
- 위의 이유로 Interplast가 AusAID의 인증기준을 맞추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Full이 아닌 Base 인증을 지원한 것임.
- Interplast에게는 Base 인증이 Full 인증을 받기 전에 거치는 하나의 단계임.

3) 인증과정

- 1990년 중반에 처음으로 인증 받음. 6년 전에 재인증 받음.
- 인증과정은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야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음.
  - 인증 전에는 직원 수가 3명이었지만, 인증 후 직원 수가 7명으로 늘어남.
- AusAID는 일종의 컨설팅과 같이 2-3일 동안 인증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함.
  - Interplast는 이 서비스가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Review team은 단체 내에 2일 정도 머무르면서 심사 진행

4) Base Accreditation의 장점

- 작은 규모의 CSO에게는 Base 인증이 Full 인증을 위한 첫 번째 단계
  - 처음부터 Full 인증을 받는 것은 무리수이며, 작은 규모의 CSO의 경우 인증과정의 전체적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움.
- Base 인증 단체로서 Interplast는 자원봉사자들을 개발사업에 맞도록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 그러나 큰 규모의 CSO는 이미 Full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원과 인력이 있으므로 Base부터 시작할 필요 없음.

5) 인증목적

- 국민의 신뢰와 재원확보임. 인증 CSO는 호주 국민 사이에서 신뢰성을 가짐.

6) ACFID 회비

- 단체의 특성에 따라 ACFID의 회비는 달라지며, Interpalst 회비는 연간 US$ 4,500임.
- 분기별 포럼인 MIF를 참석하려면 추가회비를 지불해야 함.

7) Commercial Contracts

- 호주의과대학과의 협력 사업을 Commercial Contracts라 칭하고 AusAID와의 협력도 Commercial Agreement라고 칭함.

8) RDE

- RDE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지 않음.

9) 자원봉사 시스템

- 180여명의 자원봉사 인력 시스템 보유
- 이사회 멤버도 자원봉사
- 자원봉사 파견은 주로 파견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짐.
- 자원봉사 교육 : 문서로만 교육 진행(주로 문화와 관련된 교육)
- Interplast는 새로운 자원봉사팀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경험이 있는 봉사자가 섞여서 파견되기 때문에 Interplast 직원이 함께 파견되지는 않음.

10) Support for the Accreditation

- 새로 인증제를 지원하는 CSO는 AusAID와 계약을 맺은 전문 컨설턴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또는, CSO는 ACFID에 인증제 관련 질문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11) 역량강화

- ACFID에서 사업 분야별 교육을 제공하는데, 이는 신입 직원에게 중요한 교육임.
- 회계 및 재정, 커뮤니케이션, 이사회 교육 등이 ACFID 교육에서 유용하다고 평가됨.

12) Innovation Fund

- 지원 금액이 매우 적음.
- Interplast도 Innovation Fund 지원을 받기로 했지만 아직 실행조차 하지 못 했음.

13) AusAID 개선점

- AusAID 직원과의 개인적 친분이 지원 사업 관련 협약에 미치는 영향이 큼. 또한, 담당지역 직원이 바뀌는 경우 불리해짐.
- 장애인 지원 분야가 AusAID가 집중하는 사업 분야
  - AusAID와 Interplast가 추구하는 사업 방향이 다름. AusAID는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을 더 중요시 하나, Interplast는 자립을 위한 교육을 더 중시함.
- 인증과정 및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함.
- 6월에 ANCP 제안절차가 끝나지만, 주로 10월에 지원금을 받음.
- AusAID 지원금으로 사업수행 시 지원금이 남을 경우 AusAID로 반환 불가

[시사점]
① 복지사업(welfare)와 개발사업(Development)의 구분
② Base 인증은 Full 인증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 그러나 그 과정도 단체에게는 새로운 직원을 고용해야 할 정도로 업무부담이 큼 → 인증과정 및 절차의 간소화 필요
③ 인증을 받는 이유는 단체의 신뢰성 증진 및 재원 확보
④ 인증을 지원한 단체는 AusAID와 계약을 맺은 전문 컨설턴트 또는 ACFID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자료]
① Interplast Australia & New Zealand Annual Report
(AusAID 지원금 규모 확인 가능)

마. IDSS

- 날짜 : 2011년 4월 21일 목요일
- 시간 : 13~15시
- 현지조사팀 : 손혁상, 이주희

- 인터뷰 대상 : Marc Kron, Senior Project Manager
  Carol Bellew, Operation Manager
  Atiq Rahman, Project Manager
- 장소 : IDSS 사무실 (Melbounre)
- 소개 : 개발 및 국제협력 관련 컨설팅과 트레이닝 프로그램 제공하는 회사

1) 소개

- 호주에서 CSO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일한 컨설팅 회사임.
- 설립한지 26년이 되었으며, 원래는 Oxfam이 설립한 회사임. Oxfam이 더 이상 협력을 원하지 않으면서 독립함.
- 주로 cross-cutting 이슈와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음.
- 도너의 의뢰로 기술적 지원, 사업 관리, 전문적인 개발프로그램 진행 등의 사업을 진행함.
- 사업 예시 : CARE의 경우 CARE가 진행하는 ANCP 사업 중 지역 관련 사업만 IDSS와 하도급 계약을 맺음.

2) 역량강화

- 정규 트레이닝 외에 In-house, 맞춤교육 진행
-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아카데미 코스도 진행, 그러나 1년 과정인 이 코스는 작년 이후로 시행을 안 하고 있음.
- 기업 및 단체와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위의 1년 과정 학위코스는 더 이상 진행 안 함.
- 현재는 맞춤식 역량강화 교육에 집중하고 있음.
- 세계적인 재정위기로 인해 훈련 프로그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음.

3) 인증

- 호주 정부가 CSO를 보다 쉽게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고려함.

- 인증 CSO는 이미 정부지원금(ANCP)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여김.

4) ACCESS Project

- 15%를 역량강화 지원금으로 사용, 왜냐하면 사업의 목표에 지역 CSO의 역량강화가 포함되기 때문임.
- 인도네시아 8개 지역단체에서 시행 중임.
- 하도급 계약(sub-contract)을 통해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음. 워낙 방대한 규모의 사업이므로 학계 및 CSO와 협력이 필요함.

[시사점]
① 컨설팅은 CSO보다는 주로 도너(정부, IO 등)가 필요로 함.
②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주로 역량강화 관련 예산이 먼저 삭감됨.

[자료]
① IDSS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② IDSS Capability Statement
③ Aurecon 소개자료 (IDSS 모회사)

바. Plan Australia

- 날짜 : 2011년 4월 21일 목요일
- 시간 : 14~16시 30분
- 현지조사팀 : 손혁상, 이주희
- 인터뷰 대상 : Dave Husy, Director, Child Centered Community Development
- 장소 : Plan Australia 사무실 (Melbourne)

1) ANCP

가) ANCP 지원금 매칭

- 50,000명 정도의 후원자가 있는 Plan 호주는 어린이 결연사업 후원금을 지원금에 대한 대응자금(matching)으로 사용하지 않음. 그 이유는, 후원어린이가 ANCP 프로그램에 얼마큼 참여하고 있는지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어린이 후원금 외에 공공재원(public component)을 ANCP 매칭으로 사용함.
- 어린이 후원금을 지원금 매칭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호주 시민사회에서 보편적인 것은 아님.

2) 파트너십 협약(Partnership Agreement)

- 5개 CSO가 참여하며, 5년 협약을 맺음. 5년 협약을 위한 지원금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대략의 산출 금액임.
- 2010년 7월 실시함.
- 3가지 구성요소 : 정책학습(Policy Learning), 정책개입(Policy Engagement), 개발인지(Development Awareness)
  - 지역 영향 프로그램(Community Impact Program) : 호주 대중의 국제개발 참여 증진
  - 파트너십을 통한 플랜의 자체적 역량 강화
    → 개발효과성 스터디 등을 통한 정책 역량 강화
    → Annual Reflection Cycle : 사업에서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을 논의하여 그와 관련된 연구, 케이스 스터디 등을 진행
  - Plan 청년 프로그램(Plan Youth Program) : 개발인지 증진
- ANCP 지원금 내역
  - 10% : 호주 국민 개발인지 증진 사업
  - 5% : 모니터링 및 평가(정책 역량강화 포함)
  - 10% : 행정비

- 지원금 예산
  - 파트너십 협약 전 : 지원금 AUD 22백만
  - 파트너십 협약 후 : 지원금 AUD 32백만
  - 내년도 지원금 : AUD 52백만
- 현실적으로 ANCP는 Base – Full – PA 3단계로 구성됨
- 위의 세 가지 ANCP 단계 별로 편차가 심함.
  - Innovation fund는 40개 CSO에게 AUD 3백만 지원함. (지원규모가 아주 작음)
  - 전체 ANCP 예산에서 한 단체가 35% 이상 지원받을 수 없음.
- 그러나, 인도주의적 파트너십(Humanitarian Partnership)이나 다른 협약은 그 편차가 비교적 적음.
- Save the Children과 CARE는 파트너십 협약을 맺지 못 함.
  - Save the Children : 호주 국내 후원금 규모가 적음(본부 후원금이 많은 편임). RDE의 경우 호주 국내 후원을 의미함.
  - CARE : 지원금을 많이 받는 단체로서 전체 예산에서 국가지원금은 20% 이하여야 함
- 파트너십 협약을 맺은 시민사회 단체는 RDE를 증진시키거나 최소한 유지시켜야 함.
- 매년 5개의 새로운 단체가 AusAID와 파트너십 협약을 맺음.

3) AusAID와의 파트너십

- PFA (Periodic Funding Agreement) : AusAID가 개별CSO와 맺는 협약
  - 각 CSO가 AusAID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AusAID가 협약을 맺을 CSO를 선택
- HPA(Humanitarian Partnership Agreement)
  - 6개 CSO참여 : CARE, Caritas, Oxfam, Plan, World Vision, Save the Children
  - AusAID는 각 단체와 개별적인 협약관계를 맺음.
- 정부가 바뀌면 이러한 파트너십 정책이 바뀔 수도 있으며, 이는 현재 CSO

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임.

- 사실적으로 모든 파트너십 정책은 역량이 큰 CSO를 위한 프로그램임.

4) 인증

- 시민사회 반응
  - 중소규모 CSO는 인증과정과 기준을 단체의 전문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단계로 인정하여 긍정적으로 반응
  - 일단 확립된 기준에 대해서는 로비나 애드보커시가 힘듦. 설립 전까지는 다양한 활동이 있었으나, 일단 기준과 프로그램이 확립된 이후로는 긍정적으로 반응
- 인증기준 중 가장 어려운 요소
  - Global Program
  - AusAID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가 바뀜.
  -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는 기준이나 방법론에 있어 항상 어려움.
  - 모니터링 및 평가는 수행을 위한 지침이 없음.
- 18개월 후 재인증이지만, 보통 미리 재인증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함. 그 만큼 인증을 위한 과정이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함.

5) CSO의 역량

- 후원금이 많다고 해서 개발 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후원금 규모에 따라 그 단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 가능
- 정부지원금 규모에 따라 개발사업 운영 역량을 확인할 수 있음.
- 예산규모에서 얼마만큼이 국제개발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봐야 함.
  - 중요한 사항은 마케팅 능력을 보고 개발사업 수행을 판단할 수 없음.
  - 역량 있는 단체는 개발사업의 장기 목표가 확실해야 함.

6) Code of Conduct

- ACFID가 자체적으로 COC 준수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어서 배포하였으며, 아주 유용한 자료임.
- COC와 인증 이유 : 인증을 받지 못 하는 것은 단체에게 아주 큰 위험요소임.
  - 단체가 인증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은 역량, 전문화, 투명성 증진 등을 고려하여 당연한 것임.
- COC가 활발한 것은 아마도 인증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임.

7) 인증

- 인증과정을 연속적인 역량강화 과정으로 여김.
- Full 인증을 받는 것은 Plan에게도 엄청난 업무량을 요함.

8)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 두 가지 종류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in-house capacity building program)
  - 단체역량 강화 : 직원들에게 의무사항임.
    ex) 사업주제별 역량강화, 다양한 개발사업 접근론, 시스템 사용 등 기술적 부문 등
  - 부서와 직위에 따른 교육
- 인터넷 교육시스템을 갖춤. 이는 Plan 본부가 아닌 Plan 호주를 대상으로 함.
- 교육을 위한 강사는 주로 Plan 호주 내부에서 또는 Plan 본부를 통해 초빙

[시사점]
① 시민사회 단체 역량 기준 제시
  1) 후원금 규모로 단체의 사업역량 측정 못 함.
  2) 국내 후원금과 본부 지원금의 구분, 전체 예산에서 정부지원금 구분
  3) 마케팅 역량과 개발사업수행 역량 구분
② ANCP는 현실적으로 Base, Full, PA로 구분되며 그 편차는 심함.

③ 인증제에 대한 시민사회 반응 : 전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인정
④ Plan 자체 역량강화 단계별 프로그램
⑤ COC가 인증제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COC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자료]
① Plan 자체 역량강화 단계별 프로그램 표
② 연간보고서

사. Oxfam Australia

- 날짜 : 2011년 4월 21일 목요일
- 시간 : 16~18시 30분
- 현지조사팀 : 손혁상, 이주희
- 인터뷰 대상 : Richard Ledbury, Institutional Funding Manager
- 장소 : Oxfam 사무실 (Melbourne)

1) 면담자 소개

- Oxfam 영국에서 10년, Oxfam 호주에서 20년간 보조금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음.

2) 파트너십 협약(Partnership Agreement)

- Caritas, World Vision, Oxfam 이 먼저 시작
- 2009년 12월 4년 협약으로 시작
- PA라는 명칭 자체가 3번 바뀔 정도로 PA가 확립될 때 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음.
- 특히,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모니터링 및 평가는 힘듦.
- PA는 AusAID가 개별적으로 CSO와 협약을 맺는 것으로 AusAID의 체계와 기준을 강요하기보다는 CSO의 기준과 체계를 반영하여 합의점을 찾음.
- PA는 모니터링 및 평가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중요한 펀딩 소스임.

3) ANCP

- ANCP 체크리스트는 전체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함.
- ANCP가 규모가 큰 CSO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경우 위험성 대비가 지원금 분배에 있어 큰 고려 대상
- 의사소통 :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기 위해 정부에게 의사소통은 중요한 고려 대상임.
- 지원금 사용은 매우 유동적임.

4) 정부와 CSO

- 정부와 CSO의 관계가 좋은 편은 아님.
- DAC 논의 이후 CSO에 대한 중요성 인식으로 관계가 좋아짐.
- CSO와 파트너십의 목적은 공평성

5) 모니터링 및 평가

- AusAID는 Community Engagement 관련 모니터링 및 평가 가이드가 있음. 이 가이드라인은 Oxfam이 작성함.

6) 인증

-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지원금 지원과 단체의 신뢰성 증진을 의미함.
- 인증제는 정부가 CSO와 파트너십을 맺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임.
- 5가지 기준[125] 중 개발철학 관련 기준이 어려움 : Broad Agreement를 얻는 것이 힘듦.
-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인증을 받으면 이점이 있으나, 과정이 부담스러움.

125) ① agency identity and structure ② development philosophy and management practices ③ Partnership and development collaboration ④ Linkage with Australian Community ⑤ Financial System and Risk Management

7) Code of Conduct

- COC 기준 뿐만 아니라 연간 평가 모두 너무 광범위함.
- COC는 정책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음.

8) CSO의 역량

- 파트너 조직의 역량에 따라 사업방향이나 내용이 정해짐[126]
  - Oxfam은 파트너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가 있음.
  - Oxfam과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는 파트너 단체에서 역량평가를 반드시 해야 함.
- 신생 CSO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조직개발(organization development)임. 사업 관련한 과정 자체(proper business process and procedure)가 신생 CSO에게는 큰 과제임.

9)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 역량강화의 목적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목적이나 목표가 없음.

[시사점]
① Partnership Agreement는 프로그램 개발과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중요한 펀딩 요소
② 정부가 CSO와 협약을 맺을 때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 : 커뮤니케이션과 위기관리(Risk Management)
③ 인증제는 정부의 CSO management를 유용하게 해 줌.
④ 파트너 단체의 역량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

[자료]
① Oxfam Australia Partner Capacity Assessment Guidelines

126) 파트너의 역량에 따라 무엇이 실행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direction)은 없음.

5. 해외현지조사 자료 4 : 네팔

가. AIN

- 날짜 : 2011년 4월 18일 목요일
- 시간 : 14시 30분~15시 30분
- 현지조사팀 : 연구팀 – 한재광, 박보기, 김소위, KOICA – 장서희
- 인터뷰 대상 : AIN-Lucky Gurung (Secretariat Office Manager)
  e-mail) lucky@ain.org.np, tel) 977-1-422227/4229592
- 장소 : C/O Save the Children, China Town Complex JDA Building 5th floor

1)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NGOs(AIN) 소개

가) 1996년 INGO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조직으로 시작
- 이는 시민사회를 촉진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함임.

나) 2011년 현재 97개의 INGO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 9개의 주제별 워킹그룹 : HIV/AIDS, 보건, 평화, 교육, 기후, 역량강화 파트너십, 재난 관리, 의사소통, 안보
- 각 워킹그룹은 워크숍, 출판물 간행, 특별 이벤트, 전시회 등의 활동을 함.

2) Capacity Building Working Group(CBWG)

가) 처음 시작할 때 MS Nepal(스웨덴 단체)이 자금을 지원해 줌.
- 모든 INGO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1년 기간
- 현재도 진행 중이며, 또 다른 Funder를 찾고 있는 중
- 'Working through partners'에 집중
  → 책무성, 사회감사(social auditing), 거버넌스, 투명성 등 포함

나) SDC(스웨덴 단체)가 CBWG에 감명 받아 'Report on Diversity'에 대한 펀딩을 함. 이 사업은 거의 완료됨.

- 주로 투명성 및 사회감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
- 워크숍을 자주 개최하여, 각 기관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에 대한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하며, 서로의 책무성을 높임.

3) 기타

가) 한국 CSO

- 네팔에서 활동하는 한국 CSO의 경우, Social Welfare Council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
- AIN에 등록되어있는 한국 CSO는 굿네이버스 뿐임.
  - 굿네이버스는 AIN의 활동에 매우 활발히 참여함.
  - 이를 통하여 다른 기관과 아이디어를 공유·교환하며,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중복을 피할 수 있음.

나) 모니터링 및 평가

- AIN이 실행하지 않음.
- SWC가 모니터링 및 평가를 담당.
  - 이는 6개월짜리 사업을 마친 이후, 다음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의무적인 것임.

다) 훈련과정

- AIN은 워크숍을 개최하고, public material을 사용하기는 하나,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님.
- NGO Federation이라는 기관이 트레이닝 프로그램 제공함.

나. JICA 네팔사무소

- 날짜 : 2011년 4월 18일 목요일
- 시간 : 14시 30분~15시 30분
- 현지조사팀 : 연구팀 – 한재광, 박보기, 김소위, KOICA – 장서희, 박상백
- 인터뷰 대상 : JICA-Take Toru (Senior Representative), Tomohiro Arima (Representative), Noriko Sato (NGO Desk Coordinator)
- 장소 : Karmachari Sanchaya Kosh Bldg. Hariharbhavan, Lalitpur. Nepal

1) JICA와 CSO

- JICA 국내 사무소가 17개 존재함.
  - 지역단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조정함.
- JICA global plaza : 시민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 특히 학생들에게 국제개발협력교육, 에세이 콘테스트, 현장학습 등의 기회를 제공함.
- JICA Donation Fund : 일반 시민들로부터의 모금함. CSO로 전달됨.

2) CSO와의 협력방안

가) Japan Partnership Program (JPP)

- 일본 CSO를 대상으로 함.
- Proposal-based 프로그램
- 네팔 내에서 CSO가 사업하기 위해서는 Social Welfare Council에 등록한 후, 현지 CSO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함.
- 현재 993개의 협정(agreement)이 맺어져 있음.

나) JICA-NGO 데스크

(1) 위치

- 전 세계 JICA 현지사무소 내에 24개의 데스크 존재함.

- 데스크를 특정 국가에 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음.

(2) 과정

- 본부가 아닌 국내 JICA 지역사무소에 CSO가 제안서를 제출
- JICA의 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있게 함.
- 승인 후, JICA-NGO 데스크로 넘어옴.
- 현지 JICA 사무소의 분야별 스태프 (sector staff)에 프로포절이 전달되고 협의(consultation)가 제공됨.
- 추가 : 의욕만 있는 CSO의 경우, 실제 사업 진행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 데스크가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여 도움을 주는 것임.

(3) JICA 현지사무소의 역할

- 상담 제공
- 일본 CSO가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 (예 : 안보, JICA 전략, 현지정보 등)
  - 현지 일본 CSO들간의 연간 회의를 개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함.
  - 현지 직원을 채용하여, 현지 정보 수집에 용이하게 함.

다) 기타

(1) Technical Assistance Scheme

- JICA가 현지 CSO에게 제공하는 직접 지원금
- 전문성이 있는 현지 CSO에 한함.
- 이는 Japan Initiative를 위한 것임.

(2) CSO Grouping

- CSO의 능력(capacity)과 경험(experience)을 기준으로 나눔.
  - CSO 사업 예산 : 전년도 최대치
  - JPP는 파트너, 서포트, 지역정부 타입으로 구분됨.

(3) PMC : 일본 CSO는 참여하지 않음.

- Consultancy를 아웃소싱
- GGP(Grassroots Grant Project)와 JPP가 한 사업을 지원하는 경

우도 있음.

- 네팔에서 Non-project subsidies 프로그램의 하나로, 교육 사업이 시작됨.

(4) 기타

- 17개의 JICA 지역사무소가 트레이닝,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JICA 분권화 : 동경 이외의 전국에 퍼져 있음.
- 외무성 또한 GPP를 통하여 모든 CSO를 대상으로 grant 제공함. non-project grant로서 CSO 사업보조금으로 제공

[시사점]
① NGO-Desk :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자국 CSO에게 컨설팅 및 정보 제공
② JICA 현지사무소의 sector staff : 제안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

다. DFID 네팔사무소

- 날짜 : 2011년 4월 18일 목요일
- 시간 : 4~5시
- 현지조사팀 : 연구팀 – 한재광, 박보기, 김소위, KOICA – 장서희, 박상백
- 인터뷰 대상 : DFID-Bandhu Ranjan (Programme Manager)
  e-mail) b-ranjan@dfid.gov.uk, tel) 977-1-5542980
  Gobinda Neupane (Community Support Programme Coordinator)
  e-mail) g-neupane@dfid.gov.uk
- 장소 : DFID Nepal 사무소. Ekantakuna, Lalitpur, Nepal

1) INGOs 지원

가) INGO가 프로포절 제출하면 DFID Nepal이 이를 평가, DFID가 관심이 있는 사업일 경우 자금 지원

- 프로포절 평가와 함께 그 단체의 자금능력,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부분들도 함께 평가됨.
- 프로포절의 '평가'는 첫째, DFID의 country operational plan, 둘째, INGO가 제시한 아이디어가 혁신적인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짐.
- INGO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음.
- INGO에게는 도전기금 없음(No challenge fund).

2) 현지 CSO 지원

가) RDIF(Rights Democracy and Inclusion Fund) : basket fund, challenge fund.

- SDC, AusAID, Danida와 함께 진행함.
- 평가 과정
  - 약 700개의 단체가 지원. 스크리닝은 기술적으로 처리됨.
  - 콘셉트가 일정한지 평가
  - 조직의 자금, 투명성, 인력자원, 책무성, 거버넌스 등 영역 평가
  - 특히 자금역량 평가 : 자금운용을 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예) 100만 루피를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 그 단체의 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

나) Multi-Donor Trust Fund with World Bank

다) 기타

- Local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Facility(LGAF)
  - 네팔 Ministry of Local Development가 관리
  - 정부를 포함한 Multi-donor program으로 CSO 지원함. 일종의 challenge fund
  - 또한 Plan International이 진행했던 것처럼 CSO 역량강화를 시키려고 한다는 점에서 유사함.
  - Local governance development committee

- Enabling State Programme (ESP)
  - Advocacy CSO
- Community Support Programme
  - INGO와 현지 CSO를 통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
  - CSP의 목적 : improving basic services, economic growth for the rural poor, tackling social inclusion
  - 현재 진행 중인 Rural Reconstruction Nepal(RRN)이 지역수준의 서비스 제공

3) 역량강화 프로그램

가) 현재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없으나, 과거 Plan International과 Action Aid가 진행한 Capacity Building Strengthening Program이 있었음(4-5년짜리 프로그램).

나) 프로포절이 채택되면, 해당 CSO는 자금운영에 관련한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야 함. 한 번에 6-7개의 단체가 참여함. 이는 DFID Nepal에 의한 것이 아님.

4) CSCF, PPA와는 관련 없이, DFID Nepal 사무소만의 프로그램 진행.

- 지원대상은 영국 CSO, 현지 CSO를 구별하지 않음.

5) 현지 CSO 지원의 필요성

- 시민사회가 약하면,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사회도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INGO가 펀딩을 받고 사업이 끝나면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과는 달리, 현지 CSO의 지원은 실제 해당국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워 줌.
- 주요 지원 40%는 정부를 통하여, 나머지는 시민사회, 민간 영역을 통하여

제공됨으로서 지원의 균형을 이루게 함.

- 현지 CSO의 지원이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듦.

6) Monitoring and Evaluation

- 적절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정부가 직접 파트너국 CSO에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음.
- ESP의 경우 Double Check시행
  - Outsourcing monitoring system
  - DFID Nepal의 ESP 담당자가 다시 한 번 모니터링

7) 기타

- Save the Children의 Sandeep NGO Strengthening Program

[시사점]
① DFID 네팔사무소에서 직접 CSO 지원 프로그램 운용. 현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실행 가능
② 다른 양자원조기관과 함께 basket fund 운영
③ 또한 네팔 현지에 필요한 거버넌스 개선을 위하여 네팔 정부와 협력, Enabling State Programme 시행 중. DFID Nepal은 여기에 모든 재정 지원함.

라. Love Green Japan

- 날짜 : 2011년 4월 19일 화요일
- 시간 : 11~12시
- 현지조사팀 : 연구팀 – 한재광, 박보기, 김소위, KOICA – 장서희, 박상백
- 인터뷰 대상 : Love Green Japan–Tomoko Suzuki (Representative)
- 장소 : Love Green Japan, Nepal Country Office, Pulchock, Lalitpur, Nepal

1) Love Green Japan 네팔 사업

- Love Green Nepal과 함께 1991년에 설립
- JPP는 2010년 1월에 시작
- 우정국 지원금 수령했으나 2012년에 종료됨.
- 2003년도 MOFA와 일한 적이 있음. 당시 규정이 매우 엄격했음.

2) JPP에 참여하면서 얻는 이점

- JICA로부터 일본 사람들이 급료를 받는다는 점.
- 까다로운 보고시스템이 오히려 조직 역량 개선을 가져옴.

3) 회계보고 시스템

- 회계감사가 까다로움.
- 분기별 회계 보고서를 제출함.
- JPP 사업 보고서는 매 분기, 매해 제출함.

4) NGO데스크

- JICA 직원들은 매우 바쁘지만, CSO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JPP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용이함.
- 다음에 진행할 JPP 사업과 관련한 컨설팅을 해 줌.
- 특히 신생 CSO의 경우, CSO데스크가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해 줌.

5) 모니터링 시스템

- CSO데스크 직원이 사업 현장을 분기별로 방문
- 진행현황 체크하고, 지역주민들 인터뷰를 실시함 .

6) 역량강화

- Love Green Japan이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없음.
- 개인적으로 JANIC이 개설한 워크숍과 PCM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음.
- 현지 직원이 일본에서 JICA training program에 참여
- 개인적으로 받은 교육 중 PCM의 경우 매우 유용하였음.
- JICA가 PCM을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포절 단계에서부터 필요하며, 유용함.
- 재정 및 회계교육 받고 싶음.

7) 기타

- 대사관
  - 1년에 한 번씩 연간 회의를 개최하여 현지 일본 CSO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대사관의 재정지원은 엄격한 회계 요구사항이 있음.
- 사업의 1년 예산이 1천만인 경우, 3년 사업을 진행할 때, 1년 예산의 3배로 계산됨.
- Sectoral staff 및 전문가가 프로포절 단계에서 많은 도움을 줌. 현재 Love Green Japan이 도움을 받는 전문가는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아니며, 개인적인 지인 관계의 사람임.
- JICA 요코하마의 Advisor Program
  - 단체가 지원하면, JICA 본부가 승인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파견함.
  - 전문가가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으나, 쉽지는 않음.
- 일본 NGO 컨설팅 제도에는 JICA-NGO데스크, 본부의 자문관, 현장 순회 등이 있음.

마. AusAID

- 날짜 : 2011년 4월 20일 수요일
- 시간 : 10~11시
- 현지조사팀 : 연구팀 – 한재광, 박보기, 김소위, KOICA – 장서희, 박상백
- 인터뷰 대상 : AusAID-Benjamin Reese (First Secretary, AusAID)
  tel) 977-1-4371678, e-mail) ben.reese@dfat.gov.au
  Krishna Bahadur Karki (Program & Research Officer, AusAID)
  e-mail) krishna.karki@dfat.gov.au
- 장소 : Australian Embassy, Bansbari, Kathmandu, Nepal

1) AusAID의 CSO지원

가) 호주 본부

- accreditation(인증제) 실시함.
  - Registered CSOs
  - 공공으로부터 펀딩을 받고, 세금감면 혜택 있음.
  - 재정적 투명성 (financial openness)
- AusAID NGO Cooperation Program(ANCP)
  - 인증된 호주 CSO 지원(co-funding)
  - '인증'받기까지 보통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림.
    (국내수준 자원 동원 및 모니터·평가 등 시스템 구축해야 함)
- Direct Aid Program : 예) Save the Children

나) AusAID 현지사무소의 CSO 지원(local level)

- AusAID 네팔 사무소에서 프로그램 담당자가 5명뿐이어서, 재정검토, 사업검토 등 업무처리에 있어 네팔 시민사회와의 연계에 제약이 있음.
- Civil Society Grant Program
  - 소규모, 심화(in-depth) 프로그램
  - 펀딩 관리는 호주 외교부, 지원금 제공은 AusAID가 담당함.

- delegated partnership
  - AusAID 네팔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른 원조공여기관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진행함.
  - time intensive이며, 소규모 무상자금을 다수의 기관에게 전달하는 것은 행정적 역량이 낮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덴마크, 스위스, 영국과 함께 네팔 거버넌스 발전을 위해 RDIF (Rights, Democracy and Inclusion Fund) 운영

다) Direct Aid Program

- 네팔 현지 CSO에 각 AUD 2천 지원함.
- 교육, 보건, 여성 등 구체적인 분야 있음.
- 매해 약 100개의 단체가 지원하며 그 중 10-15개 단체를 선정
- 신뢰할 수 있는지, 단체의 역사, 회계, 실제 기관 혹은 유령기관인지 고려하여 선정함.
- 문제점
  - 네팔에는 약 1만 6천개의 CSO가 있음. 그 중 진짜 신뢰할 수 있을만한 단체를 가려내는 것이 관건임.
  - 단체와의 '신뢰'를 먼저 쌓은 다음에 재정 지원.
    예) Tilganga – 이 전 ANCP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eye care center임.
  - 현지 CSO와 일을 진행하는데, 이 경우, '신뢰'가 확인된 후에 지원을 계속함.
- 매해 5-7개의 단체 추가됨.
- 평가 : AusAID가 auditor를 통하여 CSO를 평가함. procure system,
- 보고서 제출
  - 중간, 종료보고서 두 번 제출함.
  - 중간보고서는 AusAID 네팔사무소가 사용하는 것으로 face-to-face conversation과 조언 등을 포함함.
  - 종료보고서는 AUD 300만 이상인 사업에 한해 온라인을 통해 AusAID 본부로 보내짐.

라) AusAID NGO Cooperation Program (ANCP)

- 문제점
  - CSO 실제 사업의 성과가 어떠한지, 혹은 CSO가 어떤 단체인지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보장이 없음.
- 그래서 '국가전략'과 일치되거나, '집중 분야'에 속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있음. 결국, 국내에서 좋은 명성이 있는 단체인 경우 ANCP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임.

마) Cooperation Agreements

- ANCP 프로그램의 존재는, 네팔에 신뢰할 만한 호주 CSO가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함.
- 현재 호주는 untied aid program을 제공하고 있음.
- 분야별 지원금을 진행하고 있음.

  예) Water and Sanitation 분야
  - 모든 CSO에게 제공 가능하나, ANCP는 호주CSO만을 대상으로 함.
  - 분야 설정할 때, 호주가 갖는 비교 우위 분야, 국가간 차이(gap)가 있는 분야, 국가 우선순위, 정부시스템(fragile country), 애드보커시 등 고려함.
  -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RDIF'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임.

바) 현지 프로그램 진행

- 현지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현지를 잘 아는 인력 필수임. 게다가 AusAID Nepal의 인력은 매우 적음.
- ANCP 기관인 'Water Aid'가 'NIWA'라는 네팔 단체와 함께 작업함.
- '수자원 분야'는 high level procurement이기 때문에 부패의 위험성이 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INGO와 함께 일을 하는 것임.

  예) WASH(Water Sanitation 분야)
- 네팔에 있는 INGO의 경우, 인원은 적으나, 현지CSO가 사업을 시작하고, 역량강화를 시작함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짐.
- INGO-Local CSO의 연계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할 경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임.

사) AusAID 네팔사무소 사업 진행

- 호주 CSO가 네팔 현지 CSO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요구조건은 아니지만, 이러한 방식이 부족한 AusAID 네팔 사무소 인력(관련 스태프 5명 존재)을 보충해 줄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 선호함.
- 최근 AusAID는 Aid Effectiveness Review를 진행하고 있으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수를 감소시키고 있는 추세임.
- Cooperation Agreements로 진행 중인 사업

  예) Water Aid project, Fred Haller Foundation(Tilganga eye care center), Save the Children 등
- Base 인증이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님. 그러나 Full의 경우, 역량·규모 면에서 현지수준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Full 인증 단체 지원이 많은 것임.

아) 역량강화

- 현재 시행 중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없음.
- 호주 CSO가 네팔 현지 CSO를 역량강화와 관련해 교육하고, 도와줄 것이라 생각함.

  예) RDIF는 현지 소규모 CSO를 지원함.

  • 이들 단체의 경우 사업서류조차 작성하지 못할 정도로 역량이 낮은 경우가 많음.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① basic concept note를 제출,

  ② preliminary approval이 이루어진 후,

  ③ basic concept을 project proposal로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 줌.

  ④ project implementation
- 개발NGO의 프로포절만 전문으로 쓰는 사람도 등장하였음.
- 보다 쉽게 프로포절을 쓸 수 있도록 '네팔어'로 작성하게 함.

- 과정 관리하는 인원은 1명
  - 단, 위원회가 그를 보조
  - 위원회 구성 : 외교관 1명, 재정관리 현지인 1명, AusAID 관계자 1명
  - 현장방문, 대화 등과 더블체크 시행

자) CSO와의 협력

- 정부-CSO간의 관계 변화 되고 있음.
- 시민사회의 효율성 : 현지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 AusAID 본부에 분야별 전문가가 있어, 현지 CSO 선택에 도움을 줌.
- 앞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다자기구, 양자간 원조 등 다양한 루트로의 지원을 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에도 지원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
- 좋은 정부-CSO 관계는 모두에게 상호이득(win-win)임.
- CSO는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정부는 대중에게 호주 정부가 투명하며, 개발이슈에도 관심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됨.
  예) 또한 네팔에서 진행 중인 WASH 사업의 경우, CSO 단체가 기자와 사진가를 고용하고 있어, AusAID 네팔사무소에 부족한 '홍보' 분야를 도와주고 있음.

[시사점]

① 네팔에서의 AusAID의 규모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수원국 지원을 위하여 RDIF basket fund (Rights Democracy and Inclusion Fund)를 활용함.
② 다른 양자원조기관과 협조로 RDIF 진행 중
③ 사업을 진행할 때 '신뢰'를 중시 여기고, 신뢰를 쌓은 다음 자금지원

바. DHRC

- 날짜 : 2011년 4월 20일 수요일
- 시간 : 13~14시
- 현지조사팀 : 연구팀 – 한재광, 박보기, 김소위, KOICA – 장서희, 박상백
- 인터뷰 대상 : DHRC-Maheshwar Ghimire
  (General Secretary Executive Director)
- 장소 : Nepal Disabled Human Rights Center, Battishputali, Kathmandu

1) Disabled Human Rights Center(DHRC) 소개

- 2000년 설립된 장애우의 권리와 관련한 advocacy 기관
- 자조조직(Self-help Organization).
- Public Interest Litigation(PIL)

2) DHRC 사업

- 주로 옹호활동을 진행함.
  - 장애우 법적 권리 인지제고, 무료 인권교육
  - 주간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 (Radio Nepal)
  - 월간지 발간, 인지제고 시킴
  - 지식보급 : 마을 방문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지역정부에게 직접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도움.
  - 단, 개발 서비스는 진행하지 않음. 사회적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은 정부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카트만두의 법적 프레임이 지역정부에서도 실행될 수 있도록 그 차를 줄이는 것이 DHRC의 목표임.
- 올해 Mental Health Issue에 관하여 Kushis와 함께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진행 중임.

3) 사업 형태

- 현지 기관과 연계하여 일함.
- DHRC는 단지 다른 기관들을 자극하고 장려하는 역할을 함.

4) 영국 CSCF 참여기관인 Disability and Development Partners(DDP)와의 파트너십

- 2002년 초 DDP는 당시 Jaipur Limb Campaign(JLC)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service delivery) 조직이었음.
- JLC는 자신의 기술을 다른 국가에게 전해 주려고 하는 상태였고, DHRC가 우연히 JLC의 설립자를 만나게 되었음. DHRC가 DDP에 접근
- 마침 DDP는 small portion으로 Right-based organization을 찾고 있었음.
- 2008년 CSCF 지원받게 됨.
  - 이 전, Comic Relief Funding 실패 : 방글라데시, 인도에서 사업하려 하였으나 실패함.
  - CSCF 지원하기 전에 유럽위원회와도 일을 하고 역량을 키웠던 터라, 프로포절을 잘 쓸 수 있었음.

5) Disability and Development Partners(DDP)

- 영국의 DDP는 실제 3-4 스태프로만 활동함.
- 따라서 인도에 있는 직원을 DHRC로 보내 컨설팅 일을 해줌.

6) CSCF 자금지원의 단점 및 개선점

- 자금지원을 해주는 기관, 혹은 자금 지원자와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없음.
  - 해외 CSO와 현지 CSO간의 상호 관심/이익 및 배울 점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CSCF와 같은 시스템은 agency와 현지 CSO간의 격차를

넓힐 뿐임.

- CSCF 자금의 3%는 모니터링/평가, 컨설팅 비용으로 DDP에게 제공되며, 97%가 DHRC에게 전달됨.

- Triple Line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
  - Triple line은 오직 서류검토로 기술적인 문제와 관리상의 문제에 집중함.
- DFID 네팔사무소는 CSCF의 지원을 받는 CSO들이 무엇을 하는지 완전히 알지 못함. 서로간의 격차가 큼.
  - DHRC → DDP → Triple Line → DFID 본부
- 지역 주민들의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해 주어야 함.

7) CSCF를 지원받는 기관으로서의 이점

-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점.
- 우선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는 기회 자체가 매우 실제적인 도움이 됨.
- Idea를 프로포절화 할 수 있음.
- CSCF지원 받기 전/후 비교하여 역량이 현저히 강화되었음.
  - 프로포절 작성, 사업 계획 세우는 것, 사업관리 능력, DHRC staff에게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가능하게 되었고, 조직의 목적달성에도 도움이 됨.

8) 조언

- 성과(outcome)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강제조항을 규정해 놓을 필요성 있음.
  예) 얼마나 많은 장애우들이 해당 사업을 통하여 이득을 받았는지 여부
- 정부는 보통 CSO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지원을 Action Aid와 같은 큰 단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더욱 열어둘 필요가 있음.
- Basket Fund를 통하여 현지 CSO를 직접 지원하는 것도 좋음.
- 중복지원(duplication)을 방지해야 함.
  - DHRC가 다른 장애우 INGO와 Voluntary Service Organization과 함께

펀딩에 지원하였던 적이 있는데, 이 장애우 INGO가 매우 기술적인 조직이어서, DHRC의 제안서를 다른 펀드에 제출하여 자금지원 받으려고 한 적이 있었음.

- Enlightened CSO에 펀딩이 가면, large part of the money goes to the overhead. 행정비가 늘수록 CSO에 가는 비용이 적을 수밖에 없음.
- Shia가 Sida로부터 받는 것처럼 initial grant를 제공하여, skill이 부족한 단체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음.

9) 보고 시스템

- DDP에게 분기별로 간단한 보고서를 제출함.
- 내용은 예산, 지출, 항목 등으로 2페이지 이내임.
- 활동했던 내용 보고 등
- 영수증은 DHRC에서 보관하며, 네팔 감사관이 후에 확인함.

10) DDP의 역할

- 역량강화에 도움을 줌.
- 직접 DDP 직원이 와서 도움을 줌. 자금조달파트너(channeling partner) 이상의 파트너
- Documentation, financial planning, getting up-to-date 하는 것에 대해 도움을 줌.

11) 기타

- 다른 장애우 CSO와 '느슨한 컨소시엄'을 구축하려 하였으나, 실패
- Log frame, PCM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었던 점이 펀딩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
- 현재 DHRC가 받는 매해 CSCF 펀딩은 다른 기관들로 받는 펀딩을 합한 것과 엇비슷함.

- 현재 진행하는 사업
  - 요리사를 초청하여 피자를 만드는 사업
  - Tracking campaign : 자금 모금을 위해 현지에서 장애우들과 함께 하는 캠페인
- 현재 지원받는 펀드 : OSI open society institute, Finnish Embassy, UNDP, Impact Foundation, Action Aid Nepal

[시사점]
① DHRC-DDP-TRiple Line-DFID 본부로 연결되는 구조라, DFID본부에서 DHRC의 일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
② 사업의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의무를 지니게 할 필요 있음(compulsory).
③ 정부의 지원은 이미 역량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단체에게도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임.
④ 수원국의 CSO인 Disability and Development Partners는 자금채널 이상의 파트너임.
- 사업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는 등 직접적인 역량강화에 도움을 줌.

사. Shia

- 날짜 : 2011년 4월 20일 수요일
- 시간 : 18~20시
- 현지조사팀 : 연구팀 – 한재광, 박보기, 김소위, KOICA – 장서희
- 인터뷰 대상 : Shiva Rayamajhi(Country coordinator)
  e-mail) usrayamajhi@gmail.com, tel) 977-985-111-2082
- 장소 : Royal Saino, Kingsway, Kathmandu

1) Sh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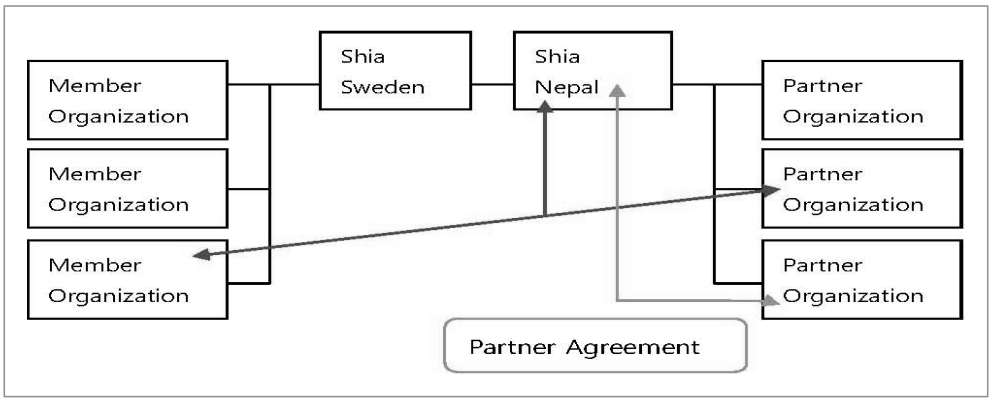
- 스웨덴의 15개 Framework Organization 중 하나임.
  - Shia 스웨덴은 현재 3개 대륙, 7개 국가에서 활동 중
  - 1991년 시작단계에서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 복지 분야 활동을 하였으나,

2010년에는 권리에 기반한 접근으로서, people with disability(PWD) 관련한 활동을 함.

- 현재 5개 파트너기관 중 3개가 네팔기관
  - National Federation of Deaf
  - Women with Disability
  - Nepal Disabled Women Association
- 현재 여성, 혈우병 이슈에 집중하고 있음.
  - Association of Hemophilia in Sweden
  - Neurological Disabilities Association
  - Swedish Deaf Association.
- 매칭펀드 : Sida 87%, 회원기관 13%.

2) Shia Nepal 역할

- Shia Nepal은 네팔의 파트너 기관과 Shia Sweden 산하의 멤버 기관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함.
  예) 네팔의 파트너 기관인 National Federation of Deaf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역량을 갖춘 스웨덴의 멤버 기관 Swedish Deaf Association을 연결해 줌. SDA는 disability movement와 fund raising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기관임.
- 자금지원 : Shia Sweden → Shia Nepal → Partner Org로 전달.



3) 파트너 기관 선정

- 파트너 기관 선정할 때, District Development Committee, Local Development Committee 등과 같은 외부자의 조언 및 평가를 받음. 이는 파트너 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이기도 함.
- Shia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 있음.
  - 기존 성과중심의 기준을 사용할 시, 파트너 기관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예) 사업비가 부족한 동일한 환경에서 A단체는 자금을 들이지 않는 방법을 찾아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힘쓴 반면, B단체는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의 기준으로는 A단체와 B단체의 차이점을 평가할 수 없음.
-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파트너 기관이 종종 펀딩 유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현장에서의 결과에 대해 파트너 기관이 입증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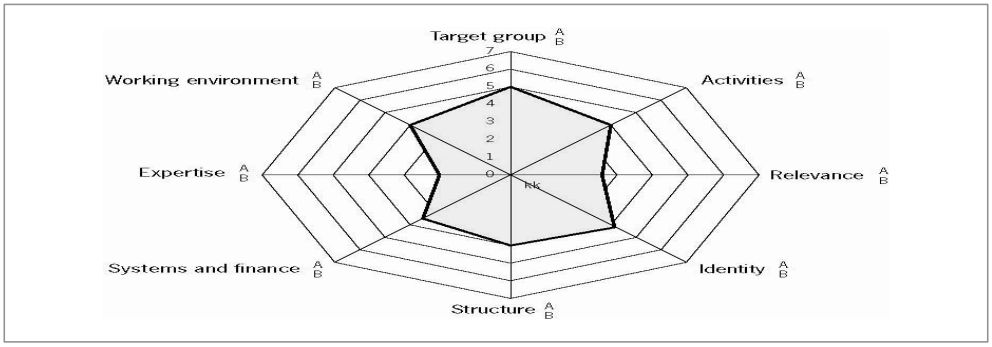
4) 평가

- 평가기간

1-1	1-2	1-3		2-1	2-2	2-3	

  - 3년 사업이 완료된 이듬해 한 해 동안 평가기간을 거침.
  - 이는 다음 사업을 위한 준비기간으로도 볼 수 있음.
  - 성과가 있으면, 계속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음.
- 평가 기준

  ① Octagon Assessment (조직평가) – Sida



- 조직을 4가지 영역의 8가지 기준으로 평가
  - 조직의 기초 : Identity, Structure
  - 조직의 활동(성과) : Implementation of activities, Relevance of activities
  - 조직의 역량 : Professional skills, Systems
  - 조직의 관계 : Acceptance and support of target groups, Relations with its external environment

② Technical Assessment

-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specific)이고 정형화된(customized) 평가 시행

  예)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앞의 글자를 맞추는 시험을 실시한다거나,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곡의 제목을 맞추는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각 기관 또한 마찬가지임.

- Octagon Assessment와 Technical Assessment를 동시에 적용하여 평가함.

③ Participatory organization Technical Assessment

- 남반구적 시각(Southern view)이 반영된 '참여'를 기초로 하는 평가임.

5) Reporting System

가) 파트너 기관의 Grant Managing Capacity에 따라 보고 기간이 상이함.

- 연 1회 Shia Sweden에 보고함.
- 3년에 1회 Final report(Financial report) 제출
- 파트너 기관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약 70여 가지 질문 및 내부 관리 시스템

나) Shia Nepal과 Auditing

- Shia와 Sida는 회계감사 실시

- Shia Nepal은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간적접인 방법을 통하여 파트너 기관의 역량을 체크함.
- Shia Nepal은 역량을 강화해주기 위한 역할을 할 뿐임. 격차를 찾아 그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함.

6) 기타

가) 사업 자금

- 사업 예산 및 행정비
- 현재 55%가 파트너 기관 사업 예산 및 행정비, 45%가 Shia로 전달됨.
- Sida 87%, 회원단체 13%의 매칭펀드
- Sida의 87% 중, 70%가 파트너기관 사업비, 30%가 행정비

나) 투명성

- Shia Nepal은 직원 4명 : Facilitator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직원은 불필요함.
- 투명성, 책무성, 효율성 등의 기준은 자기조직이 먼저 충족시켜야 함.

다) Joint Program

- 각 파트너 기관마다 각자의 사업이 있으나, 함께 국가수준의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함.

라) 역량강화

- 개인 인력 개발
- 조직 개발
- 사회/국가 개발

[시사점]

① Initial fund
사업 시작하기 전 1년 간 충분한 사전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줌.

② 평가년도
3년의 사업기간이 완료되면 약 1년간 전년도 사업을 평가하고 다음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제공됨.

③ 스웨덴 본부의 멤버 기관과 수원국 파트너 기관간의 브릿지 역할만을 시행함. 감시자의 역할이 아님.

④ Octagon assessment(조직평가) 및 기술적 평가 동시 시행.

⑤ 각 파트너 기관에 맞는 평가방법 실시

아. Caritas Nepal

- 날짜 : 2011년 4월 21일 목요일
- 시간 : 9~10시
- 현지조사팀 : 연구팀 – 한재광, 박보기, 김소위, KOICA – 장서희
- 인터뷰 대상 : Caritas Nepal–Raju Pradhan (Disaster Manager)
- 장소 : Caritas Nepal, Dhobighat, Latlitpur, Nepal

1) 자금지원

- Caritas 호주로부터 자금지원.

2) Caritas Nepal의 사업

- Integrated Best Management(IBM) : 유기농 농업과 관련된 분야
- 재난 관리

3) 역량강화

가) Caritas Australia로부터의 역량강화

- 1년 전 Caritas 호주로부터 2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실시함.
- 호주 내에서도 Caritas 네팔의 직원 교육이 이루어짐.
- 호주 → 네팔 → 호주식으로 번갈아가면서 양국에서 교육 실시됨.

나) Caritas Nepal의 역량강화

- 긴급구호
  - 파트너 기관이 없을 시, 즉시 PO를 찾은 다음, 일을 시작
  - 그 후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함.
- Animation and People's Organization
  - Caritas Nepal의 파트너 기관이 되고 싶어 하는 단체에게 Animation and People's Organization을 통하여 교육을 제공함.
  - 교육 후 Caritas Nepal과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파트너십을 이룸.
- 분야별 역량강화
  - Disaster management
  - Emergency relief training
  - Needs assessment training
  - Distribution training
  - Emergency response training
- IBM의 경우, IBM 기술자를 준비하고 3개월짜리 practical training 기간을 거친 후 사업을 시작함.
- Caritas 호주뿐만 아니라 다른 Caritas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음.
- Proactive Project 20%, Partnership Project 80%

4)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가) 보고 제도

- 보고 과정은 많이 복잡하지 않음.
- 양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 보고함. 제안서 또한 기존 양식에 맞추어 작성함.
- AusAID와의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Caritas Australia에만 보고함.
- 보고 시기는 사업의 기간에 따라 상이
  - IBM은 6개월에 한번씩, 긴급구호는 3개월에 한번씩 제출함.

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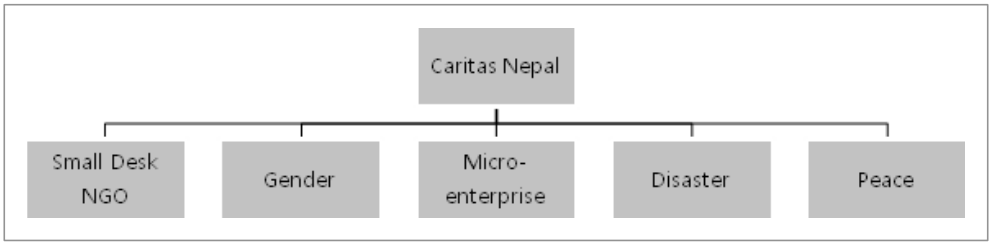
- Caritas 호주의 직원이 현장, 사무소 및 지역을 방문하여 모니터링·평가를 실시함.

다) 관련, 또는 필요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을 때, 네팔 국내외와 관계없이 직원을 파견하여 교육받게 함.

5) CSO 선정 기준

- Caritas Nepal 내에 영역별 전문가가 있으며, 각 영역별로 각자의 기준이 존재. 이 기준은 Small integrated projects와 깊은 관련이 있음.
  - 현재 Caritas Nepal에서 진행하는 Integrated Social Development Project는 정치경제사업으로서, Grassroots Community와 함께 이루어짐. 여기서 파트너십을 이루는 Grassroots Organization 혹은 장기간 펀딩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작은 규모의 CSO가 매우 중요함.
- 양성평등, 재해, 소수민족, 노동자 등의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함.
- 각 팀이 각자의 사업을 관리함.
- 파트너십을 맺을 CSO 선정 또한 각 팀의 권한

<Caritas Nepal 조직도>



6) 모니터링 및 평가

- 모니터링 및 평가 또한 각 사업에 대해 1년에 두 번 각 팀, 본부, 지역사무소 수준에서 이루어짐.
- Internal – Regional – External Consultants의 3단계에서 이루어짐.
- Focus Group Discussion 시행
- 직원, grassroot, NGO-PO, Regional, Headquarter International.

7) 조언

- 각 영역에 맞는 적절한 전문가가 필요
- 지역사회와 관련할 경우,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임.

[시사점]
① Caritas Australia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 실행
②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시, 장소 불문하고 직원을 파견하여 교육을 받게 함.
③ 파트너 기관 선정 시, 다른 기관에 어느 정도의 평가를 위임하고, 검증된 이후 파트너십 맺음.

자. HDCS

- 날짜 : 2011년 4월 21일 수요일
- 시간 : 10시 30분~12시
- 현지조사팀 : 연구팀 – 한재광, 박보기, 김소위, KOICA – 장서희
- 인터뷰 대상 : SP Kalaunee (Acting Executive Manger)
  e-mail : Spkalaunee@hdcsnepal.org, tel : 977-1-5592162
- 장소 : Human Development and Community Services (HDCS) PO Box 8975, EPC 1461, Kathmandu, Nepal

1) HDCS

- KOICA와 협력관계에 있는 네팔 CSO
- HDCS의 파트너 협력기관은 네팔 국내외에 존재함.
- 1991년 설립되었고, 1997년 등록
- 중점분야 : 보건, 교육, 지역개발
- 지역커뮤니티, 국제 CSO, 네팔 정부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

2) 사업 진행

- 초기, Social Service Department of Nepal Church로부터 Fellowship을 받았으나, 'Church'와 함께 일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1997년 새로이 개별 독립 단체로 등록하게 됨.
- 주로 교회기반의 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음. 또한 핀란드 및 독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원을 받음. DFID, DANIDA와의 협력도 점진적으로 계획하고 있음.
- 어려움
  - 다자간 공여자(multi-donor)에 의해 이루어지는 Basket Funds는 일종의 문화적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의 문제가 있음. 즉, 지역주민을 자력화(empowering)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좋으나,

이를 간과하고 있음.

- 단체는 자원활동가(volunteer)와 조언자(advisor) 두 역할을 모두 해야 함. 더 좋은 전문가나 조언자가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유는 한 번 의존적으로 되어버리면 결코 지속가능해질 수 없기 때문임.

3) 역량강화

- 별도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없음.
- 함께 일을 하면서 배워가는 방법을 지향함.
  예) 병원 사업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의사 1명이 방문, 다른 현지 의사들과 함께 일을 함. 그 과정에서 기술과 지식이 전달되고 확산됨. 그들간에 상호학습(mutual learning)이 이루어짐.
- HDCS의 사업들은 모두 상호적인 과정임.

4) 사업 계획

- 연간계획, 장기계획에 기초하여 매해 말 해당 년도의 업무·성과를 평가함.
- HDCS 내부의 검토평가(review evaluation) 과정임.
- 다음년도 사업을 위한 학습과정(learning pace)임.

5) 현지 파트너 기관 선택

- 공통된 비전이 기준이 됨.
- 서로 상호이해가 맞을 때 파트너십을 맺음.
- HDCS는 단순히 자금지원 기관이 아닌, 아이디어와 자원을 공유하는 존재임.

6) 보고 제도

- 정부와 해당 부처에게 매년 일회씩 보고함.

7) 모니터링 및 평가

- 매달 성과, 조직전반에 대한 내부평가(internal evaluation assessment)
- 회계감사(auditing) : 6개월에 한번, 내부감사
  - 1년에 한 번, 연례감사 : 공인된 네팔 회계감사관에 의함.
- 정부
  - 매 2.5년마다 : 정부에 중기평가 (mid-term evaluation)
  - 매 5년마다 : 정부에 최종평가보고 (final evaluation)
  - 이를 바탕으로 다음 사업의 지속여부가 결정됨.
- INGO : HDCS를 펀딩해 주는 INGO의 경우, 신뢰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외부평가가 요구되지 않음.

8) 향후 계획

- 병원으로서 서비스 제공
- 교사들을 위한 훈련센터 건립
- 연구 기관
- 대학

9) 어려움

- FBO 기관으로서의 편견/선입관이 있었으나, 그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라짐.

[시사점]
① FBO로서 신뢰를 받고 있는 기관
② HDCS가 진행하는 사업방식이 한국 종교기반 단체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임.

차. SWC

- 날짜 : 2011년 4월 21일 수요일
- 시간 : 14~15시
- 현지조사팀 : 연구팀 – 한재광, 박보기, 김소위, KOICA – 장서희
- 인터뷰 대상 : Madan Prasad Rimal (Director)
  Chhewang N.Lama (Member Secretary)
  e-mail) chhewang@yahoo.com, tel) 977-1-4495564
- 장소 : Samaj Sewa Bhanwan, Lainchour, Kathmandu, Nepal

1) Social Welfare Council

- 네팔 내 INGO를 위한 조정 기관
- 현재 약 230개 이상의 INGO, 약 32,000개의 네팔 CSO가 SWC에 등록되어 있음.

2) SWC 가입

- Pre-Consensus : 우선 해당 INGO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지역의 District Development Committee(DDC)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함. DDC는 해당 INGO를 승인하는 서류를 SWC에 보냄.
- 관련 부처에서 승인도 필요.
- 그 다음 SWC와 General Agreement를 맺음. 3개월 후, INGO가 project agreement를 제시해야 함.
- 제한 : 연간 약 1억 원(US$ 10만)의 예산이 있는 단체에만 해당.
- 세부사항
  - INGO 중, 네팔에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거나, SWC와 협정을 맺고 싶지 않은 경우, 현지 CSO로 직접 자금을 전달할 수 있음. 이러한 자금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지는 않음.
  - 그러나 INGO가 네팔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팔 CSO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함.

3) District Development Committee

- INGO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DDC와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함.
- DDC는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업을 진행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이드라인 및 조언도 제공함.
- DDC와의 충분한 협의는 동일 지역 내에서 동일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4) INGO에 대한 요구사항

- 프로그램을 디자인할 때, 자원의 20%는 행정비, 80%는 사업비로 배분되어야 함.
- Advisory Committee 구성
  - 사업 관련 부처의 인물들로 Center level Advisory Committee와 District Level Advisory Committee를 구성하여야 함.
  - 1년에 두 번 회의 진행
  - 기술적 지원(technical guidance)제공,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조언 등
- Log-frame Approach
  - 사업의 목표, 성과 등이 양적 수치(quantified term)로 표현되어야 함.
  - 이는 SWC가 사업의 진행사항 및 성과를 평가, 측정하는데 용이함.

5) SWC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

- SWC Act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NGO, CSO에 대한 강제성은 없음(no punishment).
- 이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게 Act를 수정해야 할 것이라 요구하고 있음.
- SWC는 통제기구(controlling body)가 아니라 조정기구(coordinating body)임.

6) 모니터링 및 평가

- 사업 기간에 따라 평가 시기가 상이함.
  - 5년 사업의 경우,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 1-3년 사업인 경우, 최종평가만 진행
  - 1년 이하의 사업인 경우, 간단한 모니터링만 진행
  - 평가비용은 사업비용에서 충당
- 평가단 구성
  - 외부 프로그램 전문팀 리더 1명(박사학위 소지자)
  - 외부 재정 전문가 1명
  - 관련부처 대표 1명
  - SWC 대표 1명
- 위 4명이 팀을 이루어 사업 현장 방문, SWC에 평가 보고서를 제출함.
- 그 후, 평가 보고서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INGO 및 SWC 참석. 이 때 프로그램 전문팀 리더가 해당 보고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실시
- 회의에서 오고간 피드백이 반영된 결과 보고서 작성
- INGO와 관련 부처에게 발송됨.
- 그러나 결과 보고서를 INGO의 본부로 바로 보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음.
- SWC가 INGO에 보내도, 이것이 INGO 본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임.
- SWC 웹사이트에 결과 보고서의 요약본을 게시하고 있으며, 원본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제공
- 모든 평가에 평가단이 구성되며, 1년 이하의 사업일 경우 팀 구성이 2-3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 매년 100개 사업을 평가함.

[시사점]
① INGO가 네팔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SWC에 단체등록한 후, 현지 CSO와의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함.

② 현재 한국 CSO들 중 대부분이 SWC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책 모색 필요
③ SWC에서의 사업 평가
전문성을 갖춘 외부 평가자를 포함(program expert, financial expert, 관련 부처, SWC)
④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District development committee와의 긴밀한 협조를 구축하여 지역에 대한 정보 및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음.

카. ActionAID

- 날짜 : 2011년 4월 21일 수요일
- 시간 : 15시 20분~16시
- 현지조사팀 : 연구팀 – 한재광, 박보기, 김소위, KOICA – 장서희
- 인터뷰 대상 : Nanda Kaudargwa (Team Leader ActionAID Nepal)
  Narayan Sitaula (Monitoring and Evaluation Officer)
  e-mail) narayan.sitaula@actionaic.org,
  tel) 977-1-443-6477
- 장소 : Apsara Marga 80 Lazimpat, Kathmandu, Nepal

1) ActionAid Nepal

가) 활동

- Enabling Right Holders(RBA) : 빈곤관련 교육 및 기법개발
- Mobilizing Civil Society : 지도자 1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 및 연합을 형성시킴.
- Pro-Poor Governance
  - 효과적/효율적으로 사람들을 돕기 위함.
  - 미디어 활용
  - 애드보커시, 로비, protest, 의사소통 등
    예) REFLECT : 문해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2) Funding Scheme

가) PPA ActionAid UK

- Change Monitoring Fund(2008년)
  - ActionAid Nepal의 사업진행 프레임워크
  - 기존의 Global Monitoring Fund(GMF)를 2008년 네팔의 맥락에 맞추어 2008년 Change Monitoring Fund로 바꾸어 진행.
    : Women's rights, education rights, HIV/AIDS등의 indicator를 PPA의 framework에 맞추어 진행.
    : 또한 파트너 기관의 트레이닝을 통하여 각 이슈들의 (그들 기관에서) 내재화를 꾀함.
    :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꾀함.
- PPA 관련한 보고서는 1년에 한번 제출. 그다지 복잡하지 않음.

② DFID UK

- ActionAid UK에 펀드를 제공하고, ActionAid UK가 이를 전 세계 ActionAid에 배분함.
- ActionAID UK가 다른 AA를 불러들여 PPA에 대한 설명 제공 : funding 기회를 알려주는 것임.
- DFID Nepal과는 관련이 없으며, ActionAID UK가 전반을 관리

3) 모니터링 및 평가

가) Appraisal package

- 파트너십 시작 전 사정작업(appraisal package) 적용
- 파트너 기관을 선정한 후, 협정을 맺음.
- 이 때 Participatory Review and Reflection Process(PRRP, Participatory context mapping 작업)를 실시 : 향후 파트너 기관의 변화양상을 볼 수 있음.
- 이 Context mapping을 사업 기간 중의 기초로 잡음.

나) Participatory Review and Reflection Process

- 기초적 지역개발 단위(base development community level)인 마을단위(village level)에서 이루어짐.
- Grassroot → Community → Partner level→ National Level (national level은 ActionAID Nepal이 조직함)
- 1년에 두 번 진행함.

다) 사회적 감사(Social Audit)

- 파트너 기관에 의해 조직됨.
-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함.
- 지역수준 및 국가수준의 모든 관련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감사임.

라) 기타

- 월별 업데이트
  - 파트너 기관에 의해 진행
- Bilateral Partner Management Meeting(BPMM)
  - 파트너 기관과 ActionAID에 의한 관리위원회(management committee)가 존재함.
  - 관리위원회는 1년에 두 번 개최됨.
  - CSO들이 갖는 불만과 이슈들을 논함.
- Participatory Reflection and Learning Meeting(PRLM)
  - ActionAid Level. 1년에 두 번.
- Program Coordination Meeting(PCM)
  -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ActionAid personnel와 concerned partner 2명 간의 미팅
  - 1년에 두 번 개최함(program level).
  -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진행사항, 성과 등에 대한 논의

4) Multiple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s

- Accountability learning and planning system
  - ActionAid는 이 시스템에 따라 M&E 진행함.
  - 지역주민들에게 책무성을 확인시켜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임.
- Change Monitoring Fund(CMF)
  - PRRP를 이용해서 집중분야에서 파트너 기관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평가
  - CMF를 이용하여 투명성 제고
- Child Sponsor Fund(CSF)
  - CSF는 너무 복잡해서 DFID 기금을 이용함.
  - ActionAid Nepal과 지역주민들이 프로그램을 디자인함.
  - 국가수준에서 프로그램이 책무성을 갖기 위해서 다양한 M&E가 필요함.

5) 역량강화

- ActionAid Nepal 직원 : 트레이닝 프로그램
- 파트너 기관
  - ActionAid Nepal과 파트너 기관의 협정에 역량강화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 CMF, PRRP, PCM 등 포함
  - 관련 오리엔테이션이 의무적으로 실시됨.
  - 기간 및 내용은 유연하며, 필요시 다양한 내용들이 함께 교육될 수 있음. 예) community planning + RBA를 동시에 교육

6) 파트너 기관 선택

- RBA 관점에서 접근
  - District :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어떤 지역인지 살펴봄. 즉, ActionAid Nepal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혜택 받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고려함. ActionAid Nepal이 선정한 right holders는 불가

촉주민(untouchable), 토지무소유자(landless) 및 아동 등이 있음.

• 파트너 기관 :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능력, 지식, 역량을 평가

[시사점]
① 다양한 수준의 모니터링/평가
grassroots-community-partner-national level에서 평가/리뷰가 이루어짐.
② CSO로서의 '책무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
③ 파트너 기관의 역량강화가 최초의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타. 네팔 현지 한국 개발NGO 간담회

• 날짜 : 2011년 4월 22일
• 장소 : 쿠시쿠시 리조트, 카트만두, 네팔
• 참석자 : ▷ 연구팀 1) 한재광 (ODA Watch 사무총장)
2) 박보기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3) 김소위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
▷ KOICA 1) 장서희 (한국국제협력단 민관협력실)
▷ CSO 1) 굿네이버스 고성훈 지부장
2) 지구촌공생회 최민욱 프로그램 매니저
3) Save the Children 김윤정 전SCK담당자
4) Service for Peace 박연심 과장
5) Service for Peace 이건동 매니저
6) 엄홍길 휴먼재단 홍순덕 지부장
7) 코피온 정혜림 센터장
8) 품 이하늬 프로그램 매니저
9) 함께하는 사람들 이정원 지부장

1) 조직 및 인력운영

- 조직의 규모, 담당 파트, 그리고 실질적 리더 역할인지 파견 직원으로 일하는지에 따라서 상이함.

- 인적자원 매니지먼트 : 현지 직원을 활용.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SSC, HR, Relief, PR 부분의 경우 외국에서 경험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이것이 기존 직원들을 자극시키는 요인이 되어 성장할 수 있게 되었음.
- 소규모 단체 : 큰 사업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전문성이 없는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음. 결국 이는 큰 단체와의 간극을 넓히게 될 수밖에 없음. 만약, 오지에서 고용하는 현지 직원인 경우, 역량이 낮기 때문에 트레이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음. 또한 임금을 일단 설정하면 추후 인상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으로만 고용하는 경우가 많음.
- 중간단계/매개체 : 중간단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어려움. 경험을 쌓고 난 후 보다 큰 단체로 넘어감. 또한 통용되는 임금 수급의 어려움
- 현지 파견 인력의 지속성
  - 사업을 담당한 인력이 해당 사업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임. 그러나 중간단계, 하층의 스태프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익힌 기술, 노하우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INGO의 경우, 현지 직원의 급여가 매우 높으나, 그 안에 팀워크, 동기부여, 인센티브 등이 없을 경우, 현지 직원의 의지는 꺾임.
  - 경험과 기술을 가진 현지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함. 인맥 등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CSO에서 인력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현지인 직원의 역량강화
  - 해당 CSO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필요.

    예) 현지 직원의 기본업무 중 하나가 영수증 처리임. 그러나 현지 직원의 경우 예산전체를 보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 및 행정에서 한국 직원과 충돌하는 경우 있음.
  - 국제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이해 또한 마찬가지임.
  - 관리자 훈련이 사실상 현지 직원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임. 채용하는 모든 현지 직원이 영어소통, 읽기, 서류작업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님.
  - 주인의식, 지도력이 결여된 부분 많음. 중간단계의 트레이닝, 전반적인 인력 교육 등이 필요함.

- 적정기술(벽돌만들기, 교육사업 등)에 대해서 현지 직원은 알지 못함. 이에 대해 분야별로 트레이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한국 CSO가 INGO로부터 트레이닝을 받아, 이를 현지 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여기서 창의성이 발휘되지는 않으나, 매뉴얼을 따라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것임.
- 서구적 사고관점으로만 교육을 받고 지식 축적 중심의 전문성만 있는 현지 직원들이 현지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유능한 현지 직원'이 현장경험이 없는 경우 본부로부터 조언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함. 결국 현지 직원을 다루는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되는 부분임.
- 임금 재조정 어려움. 사업 체계와 일의 전문적 성격에 맞게 인력수급을 하려다 보니, 기존의 체계로는 커버가 불가능. 임금을 지속적으로 조금씩 인상시켜줘야 하는데, 기관에는 부담이 됨.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업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음.

– 네팔의 특수성
- 네팔인이 갖는 CSO에 대한 인식의 한계 : 외국인을 많은 자본을 소유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음.
- 사업의 비전, 취지를 이해시키기가 어려움. 현지인들의 인식개선 또한 필요함.
- 초창기 공개채용을 통하여 소외계층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서 관리차원에서는 현재 안정되어 있으나, 이들과 사업 전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현지 파견 실무자
- 역량이 애매한 상태에서 현지 직원훈련이 어려움.
- 서울 본부 의견과 현지의 사업운영이 별개로 이루어짐.
- 내부평가 이외에도, 동일한 기준에 의해 모든 기관이 평가를 받아,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것이 조직운영과도 연계됨.

– 한국 본부와의 관계
- 본부에서 현지에 파견된 직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함.

예) 일본의 경우, 본부에서 파견한 일본 직원의 역량강화를 중요시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현지 직원이 현지어, 현지 정보 등에 있어 한국인보다 나음. 파견된 외국인으로서 기대되는 것은 코디네이션, 선진기술 등의 지원임.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훈련, 워크숍이 필요함. 그러나 한국 본부는 이를 인식하지 못함.

- 현장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도 서울 본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다른 국가의 CSO가 경쟁적/전문화 시키려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한국 CSO의 경우 사업개선의 여지 등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음.
- 역량강화

  예) INGO 한국 지부 : 한국인 직원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없어 이에 대한 사업비용에 책정되지 않음. 자비를 들여 해야 하는 상황임. KOICA측에서 예산의 일정 부분을 역량강화 비용으로 책정해야 할 것임.
- 본부는 현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음(가시적인 성과만을 중시) : 본부 직원들에게 CSO 활동에 대한 인식을 시킨 후 사업을 시작해야 할 것임. 혹은 본부파견 직원 수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수도 있음(사업, 재정 등 각 분야 담당).
- 현지 사업 진행함에 있어 모든 기준은 한국으로부터 전달됨. INGO, 현지 CSO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좋을 것임.

2) 재정운영

- 한국 본부와 현지 파견 사무소간 국제개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음.
- 본부에서 주어진 돈을 모두 써야하는 상황. 따라서 주어진 돈에 맞추어 사업을 이끌어야 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사업의 일관성이 이루어질 수 없음.
- 현장 중심의 사업운영이 아니라, 한국의 방식 강요. 가시적인 성과 위주. 기대하는 결과물 상이
- 지역주민의 필요 인식, 인프라 구축 등의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예) 과거 예산이 바로 충당되지 않아 제대로 된 프로포절, 계획을 할 수 없었음. 그러나 과거 현장에서 일했던 젊은 인력 등이 본부에 애드보커시

를 하였고, 본부에 변화가 나타남. 최근 지역 관리자 회의를 통하여 지부장들간의 의견교환 기회 있음. 2년 전부터 '적합한 지원'에서 '적합한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기초조사 할 때에 필요한 연구조사에 대한 예산배정도 필요.
- 현지 실무자들에게 의사결정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의사 결정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정보공유
  - 현지 한국 CSO간, KOICA-CSO간 제도적/정책적으로 정보공유를 지원할 필요성 있음.
    예) 자재 부분에 있어 KOICA는 비교책정을 하나, 신생단체의 경우 이에 대한 정보 없음.
- 교육
  - 한국 본부에서 교육기회가 있어도, 현장 직원들은 교육기회가 제한되어 있음(회계보고, 부기 등 기술적인 부분).
  - 예산부분에 대한 교육 필요함. 사업의 단기·장기계획을 세울 때 예산은 필수적인 부분이고 현지 수준에 맞는 예산안 작성이 필요하나, 한국 본부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
  - 본부 직원, 현지 파견될 직원 등에 교육 필요

3) 사업관리

- 본부의 사업관리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필요
  - 한국/현지의 사업 관리에 대한 인식 상이
    예) 허울뿐인 현지 주민참여 이루어지는 경우 많음.
    단기간/가시적 성과를 원하며, 실질적인 현지 주민의 요구를 들으려 하지 않음.
  - 각 단체마다 각자의 사업진행방식 있음. 통일된 기준이 없음.
    일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본부의 자금모금과 관련하여, 그것에 맞는 사업진행이 강요되는 측면이 있음.

예) 미국/일본/한국의 모금방식이 모두 다름. 한국은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이며, 이것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진행이 어려움.

- 각 CSO 수준
  - 현재 CSO의 특성상 돈이 없고, 사업실행을 위한 펀딩이 필요함. 따라서 공여자의 뜻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모든 사업이 비슷해질 수 있음. 각 CSO의 특성을 살려 사업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성공적으로 사업실행을 할 수 있는, 각 단체의 비전, 가치를 투영할 수 있는 체계(framework) 생성 필요
  - 섹터, 대상을 구분한 체계(framework)가 필요

4) 사업수행 관련

- Initial fund 필요
  - 충분한 사전조사 필요함. 충분한 사전조사가 실행된 후에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현재 리서치에 대한 예산이 전혀 주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
  - 주민들의 필요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
- 장기적인 사후평가
  - 사업의 성공/실패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
  - 사업종료 후, 해당 사업이 지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 각 지역/문화 등에 따라 동일한 사업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가 필요함.
- CSO 사업평가 전문 인력 보충 필요
  - CSO 및 CSO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 인력
  - 계량적 방법이 아닌 직접평가 등의 방법
  - 평가기법, 질적 평가에 대한 지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함. 지표는 매우 전문적인 부분이며, 현지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표를 만

들어야 할 것임.

- 파급효과, 영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가 필요

- 본부
  - 기관의 가치, 비전 등을 현장에 투영하기 위한 본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절실함. 그 후 현장에서 다듬어져야 할 것임.
- 인건비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건비도 포함되어야 함. 이를 피하기 위해 외부펀딩을 이용하기는 하나, 많은 경우 사업 수행비에 인건비는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함.

5) 파트너십

- 한국 CSO 특성
  - 현재 AIN에는 네팔, 서구기관들 일색. 아시아 계열은 굿네이버스가 유일함.
  - 각자의 사업에 대해 오픈되어 있지 않음.
- 한국 CSO간 네트워크
  - KONAN(네팔에서 활동하는 한국 CSO간의 협의체)이 유용함.
  - 그러나 소수 멤버여도 유지하기 어려우며,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없는 경우 힘들 것임.
  - 네트워크 모임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함.
  - AIN의 클러스터 그룹이 잘 지속되는 것은, 주도하는 기관에게 명예수여를 하기 때문임. 재정·인센티브는 아니나,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AIN, SWC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중소단체를 위하여, AIN 클러스터 모임에 가는 단체로부터의 정보공유, 자료공유도 필요할 것임.
  - AIN 그룹에 참여하는 기관의 이슈와 현재 CSO와의 이슈가 상이함. AIN의 이슈는 형평성에 입각하여 설정되는 것임. 'Work for Diversity'이슈인 경우, 현재 한국단체에게 적용하기 힘듦.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음.
  - Portal과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필요.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 인력이동
  - 본부 및 해외파견 담당자의 잦은 변동, 변화가 있음.
  - CSO 직원의 중도퇴직(turnover)에 대한 해결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 있음.
  -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남·녀 성역할의 문제)와 연관 있을 것임. 그러나 CSO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규제는 불가능함. 이는 책임자급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나 어려움이 있음.
- Pilot 사업
  - 현지 실무자들이 현지경험을 통하여 사업을 공모할 수 있는 채널
  -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시범(pilot) 사업 같은 기회가 필요함.

6) 역량강화

가) 현지어

- 현지어는 역량강화가 아니라 필수임.
- 본부에서는 현지어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 현지문화, 현지어를 익히기 위한 시간과 지원이 부족함.

나) 교육 기회

- 본부에서는 현지사업장의 요청이 있을 시 지원해 줄 의사를 가지고 있음. 구체적으로 네팔의 경우
  - 7회 현지 트레이닝의 기회가 있음(금융, 행정, 운영(operation) 2번, 3년차 넘을 때 받는 교육, 지부장 아시아/지역 훈련).
  - 사전행동계획(plannable action)도 지부장 선에서 끝남. 본부에서는 전반적인 것만 가이드
  - 기타 : 네팔 현지 직원 교육(3박 4일), 상하반기 각 사업별 트레이닝, 상하반기 평가

    해외에서 진행되는 트레이닝도 금액 상한기준 이하에서 가능함.
- INGO의 경우 해외 진행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그러나 현지(네팔)사람이 외국에서 교육받은 후, 현지에서 교육할 때에는 현지어로

진행됨. 또한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 그 경험을 공유할 기회가 많지 않음. 개인적으로 접근하여 정보를 얻어야 함.

다) 기타

- 후임 담당자에게 사업을 인수인계할 때, 전달이 잘 될수록 사업과 조직의 역량강화가 이루어지는 것임. 그 과정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이 필요함.
- 현지에 활동할 때 교육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짐.

7) 2010 PCM 교육 관련

- 장점
  - 지난 교육의 강사진이 매우 좋았음.
  - 방대한 자료 제공받았음.
- 한계
  - 실질적인 사업적용에 어려움
  - PCM에 대한 이해가 단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음.
  - 이론을 현장적용하기에는 여유가 없어, 기존의 사업 틀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음.
- 개선방안
  - 실질적으로 사업수행수준까지 지원을 해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임.
  - 실습교육 practice 추가

    day 1 : 이론　　day 2 : 실습

    day 3: 이틀째 실습에 대한 평가와, 이론　　day 4 : 실습
- 현지에서 PCM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맞음. 현장에서 PCM 적용하는 것이 쉽기 때문임. 카트만두에서 멀리 떨어질 경우, 참여율은 떨어질 것임.
- 잦은 직원의 이동이 있으나, 지부장이 사업장의 책임자로서 남을 확률은 높다는 점을 감안할 것
- 결국 CSO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분야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지속하는 것이 전반적인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임.

8) 기타 교육관련 사항

- KOICA
  - KOICA ODA 교육원 활용 : e-learning을 통하여 해외거주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길 원함.
  - 현재 진행되는 교육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 정리하여 제공함.
  - 현재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교육 방식
  - 한국어로 진행되는 방식이 훨씬 공감할 수 있음.
  - 교육과 훈련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키우는 기관 : 현재 KCOC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서비스가 현지까지 닿으려면 긴 과정이 될 것임.

9) 기타 논의

- Research fund
  - 신생단체 혹은 다년간 사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혹은 사전조사비용 사업채택 후 환급(initial fund)
- 각 지역간담회 활용
  - PCM, 사업발굴, 타당성, 평가 등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ODA 교육원의 교육내용을 CD/DVD를 KOICA 현지사무소에 전달하여, 지역간담회 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현지 정보
  - 현지사무소에서 현지정보를 도맡아 관리.
  - 오지지역에서 얻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면 이듬해 국가개발전략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
- 각 국가에의 역량있는 인재(resource person)를 찾아 현지에서 직접 교육시키는 방안

[시사점]

① 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 실적 위주의 프로그램 진행을 원하는 본부의 요구로 현지에 적합한 사업진행 어려움.
-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자금지원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현지 파견직원 역량강화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
- 사업 관리에 대한 인식 상이
- 본부의 모금과 관련하여, 그것에 맞는 사업진행이 강요되는 측면이 있음.

② 충분한 사전조사
- 주민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Sida가 제공하는 Initial fund와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

③ 사후평가
- 장기적인 사후평가
- 사업의 성공/실패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

④ Pilot 사업
- 현지 실무자들이 현지경험을 통하여 사업을 공모할 수 있는 채널
-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pilot 사업 같은 기회 필요함.

⑤ 역량강화
- 현지어 및 현지 문화 습득 필수인 반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현재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

6. 국내 간담회 회의록

가. 1차 개발NGO 워킹그룹 간담회

- 날짜 : 2011년 3월 8일 화요일
- 시간 : 16~18시
- 대상 : CSO 중견실무자
- 장소 : 가톨릭 청년회관 회의실
- 참석자 : 김나연 팀장(월드투게더) 김현숙 팀장(은평천사원)
  문후정 팀장(하트하트재단) 옥세영 팀장(더프라미스)
  이경신 팀장(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이수경 팀장(굿네이버스) 장문희 과장(월드비전)
  최은정 팀장(한마음한몸운동본부)

1) 증가하는 ODA기금의 사용

○ 다년도 사업을 단년도 사업과 구분하여, 그 특징과 진행방향에 맞춘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함.

○ 신생단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신생단체를 중견단체(middle-level)로 성장시키기 위한 지원이 요구됨.

○ ODA증가와 함께 CSO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NPO 운영 관련 자료는 많으나 CSO 운영 자료는 적기에 관련 자료 발간 및 번역이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한 역할은 해원협이 적절하다고 봄.

○ ODA증가에 따라 사업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인건비 지원도 필요함. 현재 CSO 봉사단이나 ODA 인턴 등이 좋은 예임.

2) CSO의 범주화

○ 다양한 민간단체가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 범주화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KOICA도 어느 단체에게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할지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기준

- 지원을 위한 범주화 기준으로는, 프로그램에 따른 기준이 있음. 예로 사업 특성상 지역이 중요한 프로그램은 국별로 범주를 나누고, 단체의 기본적인 사업수행 역량, 경험, 인력, 이전사업평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 해외 지부가 많은 단체의 경우, 지부별로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 단체별 범주보다 각 지부별 범주화가 필요할 것임.
- 규모가 큰 단체일지라도 국제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 있는 경우도 있기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사업수행 역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CSO의 개성을 어떻게 특성화하여 범주를 분리해 낼 것인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함.

○ 단체의 범주화는 그 기준과 주체에 있어 심사숙고해야 하며, 분류에 대한 다양성을 고민해야 함. 또한 분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분류와 그에 따른 지원방법을 연결해야 함.

3) 컨설팅 전문가의 활용

○ 신생사업 발굴 시 정보부족으로 객관적인 근거에 기준한 사업발굴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사업조사 단계부터 전문 인력이 필요함.

○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현장방문은 긍정적이나 일회성이거나 단기적이면 오히려 불안정할 수 있기에,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컨설팅을 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임.

○ 컨설팅 전문가의 자격으로는 국제개발연구와 직접사업수행 경험이 필요함. 이와 함께 분야별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데 이는 사업발굴 단계에서의 사업발굴 전문가, 사업에 따라서는 장애지원사업과 같은 분야별 전문가, 사업 이후 평가전문가로서의 역량이 요구됨.

○ 문제는 인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 현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국내로 정보가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에 인력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함.

4) 신규 지원 단체

○ 신규 지원 단체는 KOICA의 지원을 받기위해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전년도 사업수행보고서 중 좋은 예를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등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사업 평가 툴이 공개되었을 때 많은 도움이 되었음.

○ KOICA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각 단체를 위한 피드백을 통해 단체 개선사항을 찾는다면, 재지원 시 도움이 될 것임.

5) 역량강화

○ 현지 직원의 역량강화는 현지 지부의 역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역량강화가 필요함. 현재 한국 CSO의 현지 직원급여는 국제 CSO에 비해 적은 편이어서 역량 있는 현지 직원을 채용하기가 힘든 실정임.

○ 단체와 현장에 따라 역량강화를 위한 니즈가 조금씩 다름. 한국의 경우에는 사업수행기술이 요구가 많았으나, 현지에서는 다른 요구들이 있었음. 따라서 역량강화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함.

○ 현지 사업장에서 현지 역량강화의 요청이 있었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진행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

○ 국내외 사업장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인터넷 강좌 개설이 효과적일 것이며, 이 경우 사이버 대학과의 협력 등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

6) KOICA Framework

○ 현지 CSO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과 같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파트너십의 다양성이 인정된다면, 더욱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직접사업, 간접사업의 경우도 그 자체의 구분보다 사업의 내용과 단체의 사업기획능력으로 평가 되는 것이 중요함.

○ 사업과 파트너십 영역이 분리되어서 여러 형태의 사업과 파트너십이 인정되어야 함.

나. 개발NGO 현지사업 경험자 간담회

- 날짜 : 2011년 6월 15일 수요일
- 시간 : 15~18시
- 대상 : CSO 현지사업 담당자
- 장소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의실
- 참석자 : 김민영 팀장(지구촌나눔운동) 김학용 국장(다일복지재단)
  오원기 간사(코피온) 이선미 팀장(한베재단)
  지은희 팀장(피스빌리지네트워크) 최윤희 팀장(한국희망재단)

1) 신규단체 지원

○ 실제로 신규단체가 KOICA 사업의 지원을 받을 확률은 낮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은 옳다고 봄.

○ 지원금액은 자부담비율을 통하여 단체가 일정부분 책임도록 해야 함.

○ 신규인만큼 단체에 대한 확인/검증과정이 필요함. 그러나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분야를 정할 필요는 없음.

○ 신규단체의 기준은 국제개발 분야에서의 경험의 유무로 구분. ODA에 처음 참여하는 단체 또한 신규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신규단체의 지원/관리/감독을 위한 기관을 따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으나, 노하우가 없는 단체가 관리/감독하게 되는 우려가 있음. 이를 외부기관으로 위탁할 경우 현지에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기관과 매칭하는 것도 한 방법임.

2) 전략적 파트너

○ 전략적 지원을 위해 우선시 되는 CSO들의 그룹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 단체를 나누는 일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CSO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먼저 마련되어야 함.

○ 전략적 파트너를 위한 코어펀딩은 자금운용이 유연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틀을 다양화 하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나, 지원 종료 이후 사업을 자립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단체의 의존성을 키우게 될 수 있음. 이에 따라 매칭 비율을 적절히 조절해야 함.

○ 현장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업 진행상황이 쉽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전

략적 파트너로서 지원을 받아도 변하는 상황에 따라 CSO도 부담이 될 수 있음.

3) 국제 CSO 및 현지 CSO협력

○ 현지의 개발사업의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면에서 긍정적임. 캄보디아 현지 CSO의 경우 EU, 독일원조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또한 라오스의 호주 원조기관은 공모를 해서 현지에 있는 CSO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음.

○ 베트남 대사관은 현지 개발 사업을 하며 현지 기관들과 협력하는데 이는 실제 현지 사업 실행 시 정보력이나 현지적용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KOICA의 역할은 자금의 지원뿐만 아니라 현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사업 노하우를 수집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함.

○ 현지 CSO와 협력하고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국 CSO가 가지고 있지 않은 강점을 활용 할 수 있을 것임. 예로 현지인들의 돈의 가치는 한국인들과 다른데 이는 큰 강점이 될 수 있음.

○ 대상
- 현지의 강점과 한국의 강점을 매치시켜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현지 CSO를 지원
- 파트너국 정부로부터 정치·경제적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지 CSO에게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임.

○ 단점 : 현지 CSO를 지원하는 것이 현지화가 되는 것은 아님. 의존성 강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 예로 캄보디아에서 현지화에 성공하였다는 CSO를 보았으나 운영진만 현지인이고 펀딩이 모두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

○ 방법 : 한국 ODA의 특성을 살리는 현지 CSO지원이 되어야 함. 예로 70-

80년대 독일의 한 단체는 한국단체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시켰음. 한국의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접목시켜야 할 것임.

○ 지원 주체로서 현지 대사관 및 KOICA 사무소의 역할 : 대사관이 업무가 바빠서 추가되는 이 사업의 업무는 현지평가능력이 있는 전문단체가 관리 감독하는 것도 한 방법임.

○ 공동기금활용
- 한국이 주체가 되는 것은 어려우나 이미 조성된 공동기금에 참여할 수 있음.
- 분야에 따라 공동기금으로 해야만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예로 기후변화 같은 것은 공동으로 참여해서 아젠다를 익히는 것이 필요함.
- 역으로 기존의 공동기금을 한국 CSO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 이를 통해 한국 CSO가 국제기금을 얻는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기존의 공동기금은 기준이 까다로워서 현지에서도 체계가 있는 기관만 받을 수 있는데, 한국이 참여해서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긍정적임.

4) 시민사회 제 분야 단체들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 한국의 경우 사회적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이 주를 이루고 인권이나 현지 시민사회 활성화, 애드보커시 등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에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민사회 단체들을 지지해 주고 기회를 주어서 개발협력 사업을 하는 대상의 폭을 넓히는 것은 긍정적임.

○ 문제점
- 시민단체가 개발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KOICA가 지원을 한다면 연대가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음. 제도적 지원은 더 고려해 봐야 할 것임.

- 국내 시민단체들이 많이 시도 하고 있지만, 연대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각 분야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 각 나라마다 시민사회의 분위기가 다른데, 한국의 시민사회 분위기를 현지에 적용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5) CSO 협의체를 통한 지원

○ 긍정적인 의견
- CSO가 CSO를 더 잘 이해하고 의사소통도 원활할 것이라고 판단됨.
- 분야나 역량에 따라 사업을 배분하는 역할이 필요함. 그러나 하나의 협의체가 아니라 다양하게 생긴다면 서로 보완이 되고 우려하는 권력도 분산될 것임.

○ 부정적인 의견
- 우선 협의체가 발전이 되어야함. 아직은 이른 논의라고 생각함.
-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하나의 중간단계가 생기는 것으로 여겨짐.
- 협의체의 다양화는 한 단체가 여러 협의체에 등록할 수도 있기에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우려됨.

6) CSO의 현지사업수행 지원방안

○ 사전조사지원
- 새로운 지역에서는 기존단체라도 신규단체가 될 수 있기에 사전조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사업 발굴시 항상 사전조사비용에 대한 문제에 부딪힘. 자체평가는 내용이 협소해 질 수 있기에 사전조사도 협력해서 하는 것 역시 한 방법임.
- 사전조사 비용과 전문 컨설턴트의 지원이 동시에 요구됨.

○ 사업 진행여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함. 평가, 모니터링에 대한 지원사업도 별도로 있으면 효율적일 것임.

다.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이사회 간담회

- 날짜 : 2011년 6월 21일 화요일
- 시간 : 12~14시
- 대상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이사회
- 장소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의실
- 참석자 : 김기진 대표(한국JTS)
  김노보 회장(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남부원 사무총장(한국YMCA전국연맹)
  노시선 부회장(어린이재단)
  민경일 상근이사/부본부장(한마음한몸운동본부)
  박용준 회장(글로벌케어)
  윤현봉 사무총장(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이창식 회장(한국해비타트)
  정정섭 회장(기아대책)
  조현세 회장(한국헬프에이지)

1) 신규단체의 기준 및 자금지원 규모

○ 기준
- 첫해에는 보통 조사를 하고 두 번째 해에는 실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초 3년까지 신규로 보아야 함.
- 보통은 2년 정도의 경험이 있는 단체를 신규로 정하고 있음.

○ 지원규모 : 신생단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체제비용 100% 지원을 해주어야 함. 기존단체 또한 인건비(파견인력)에 대한 부분은 지원해야 함.

○ 방식
- 신규단체를 위한 틀을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는 자율성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함.
- 실적 위주로 단체 분류가 이루어진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에 신규단체 뿐만 아니라 분야, 전략적 파트너, Innovative/pilot 사업 등 많은 카테고리를 마련해서 다양한 방식의 참여를 도모해야 함.
- INGO로서 신규로 진입하는 단체들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함.
- 신규단체는 pilot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윤리강령을 제시해야 할 것임.

2) 중견단체와 전략적 파트너의 구분 기준

○ 실적, 사업기간, 규모, 활동국가 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사업 실적 면에서는, 국내와 국외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틀이 상이함에 따라 해외에서 사업수행기간 및 결과를 고려해야 함.

○ 특화된 분야, 지역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단체를 중견단체로 봐야 함. 양적(Quantitative)이 아니라 질적(Qualitative) 기준으로 단체를 구분해야 할 것임.

○ 전략적 파트너간 차등 배분/균등 배분
- 해외조사 결과로는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경우 동일하게 배분됨.
- 전략적 파트너 기준을 잘 설정해 놓았을 경우 동일하게 자금지원해야 함.
- 파키스탄의 경우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참여하는 CSO에게는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음.

○ 전략적 파트너의 다른 프로그램 중복지원 : 큰 규모 단체의 자율적인 자금활용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중소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야 함.

3) 협의체를 통한 지원프로그램

○ 해원협을 통한 지원에 대해서 KOICA에서 지속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음.

○ 의료분야의 경우 의료보험공단과 심사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존재함. 정부가 이 두 기관을 모두 관리하고 있음. 해원협도 이와 같지 않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심사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함.

○ 심사규제
- 일정한 틀 안에 해당되는 단체들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전략적 파트너 구분의 경우 KOICA에게 맡기고, 나머지 사업 심사 관련은 해원협이 담당

4) 국제 CSO, 현지 CSO에 대한 지원

○ 현재 국제 CSO들의 경우 현지 CSO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지 CSO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이에 한국의 현지 CSO지원을 통한 개발도 긍정적으로 여겨짐.

○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음. 따라서 현지 CSO지원의 직접지원이 아니라, 한국 CSO가 감독할 수 있어야 함.

5) 간접비 비율

○ 신생단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체제비용을 100% 지원해 주어야 함. USAID 경우 간접비를 100% 지원해 줌.

6) CSO 역량강화에 필요한 내용

○ 지원 초기 CSO들에게 필요한 역량강화가 필요함.

○ KOICA가 인적 인프라의 중요성 인식과 함께 역량강화 교육을 발전시켜야 함.

7) 컨설팅

○ 컨설팅은 제 3자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며 투명성, 계획성 측면에서 효과적임.

○ 적절한 국내 컨설팅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술적인 컨설팅 인력을 교육시켜나가야 할 것임

○ 영국은 컨설팅 비용이 지원되는 금액에 포함됨.

8) Code of Conduct

○ 먼저 CSO, INGO 등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단체를 구분하는 기준은 엄격히 설정해야 함.

○ 단체의 Code of Conduct가 아니라, 해원협 차원에서 규제를 마련하여 참여하는 단체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음. 지키지 않을 경우 규제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야 함.

○ 호주 ACFID의 경우 내부 위원회(변호사, 회계사 등)를 만들어 Code of Conduct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되는 CSO들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Code of Conduct에 서명을 한 단체에만 AusAID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Code of Conduct 도입에 관한 찬반 여부 : 국제 시민사회에서의 흐름이 이러하기 때문에, 반발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9) KOICA-시민사회 협력방식의 개선점

○ KOICA와 CSO간에 파트너십으로서의 관계를 정립

○ CSO 다수가 참여하는 정부의 정책설명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할 것임. 이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알리며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아가야 함.

○ 소수의 큰 규모 CSO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소규모 CSO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KOICA는 PPA와 같은 프로그램 수행이 유용할 것이나, 한국 상황에서는 중소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KOICA의 CSO 사업 제안서 검토방안이 기존의 방식에서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라. 2차 개발NGO 워킹그룹 간담회

- 날짜 : 2011년 6월 23일 목요일
- 시간 : 16~18시
- 대상 : CSO 실무자
- 장소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의실
- 참석자 : 김나연 팀장(월드투게더) 문후정 팀장(하트하트재단)
  옥세영 팀장(더프라미스) 이수경 팀장(굿네이버스)
  최은정 팀장(한마음한몸운동본부)

1) 신규단체지원

○ 기준

- 신규의 기준은 보통 해외사업 2년차 이상, 3년 이하가 적당함.
- 단체의 사업수행경험, 연차 수, 예산 규모 등 다양한 기준으로 역량이 평가되어야 함.
- 규모, 직원 수 등 눈에 보이는 기준 외에 내부적으로 쌓여가는 역량을 판단하기는 어렵기에 이를 위한 기준 마련도 고민해야 함.

- 어떤 종류의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신규단체의 선정도 달라져야 함. 예로 보건 분야의 경우 1년 안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으나, 교육 분야의 경우는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사업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음.
- 스스로의 역량평가를 통하여 신규/비신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가방법을 제공하면 도움이 될 것임.

○ 역량강화 : 자금 지원과 함께,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도 병행해야 함.

○ 신규단체 매칭비율(현재 7:3)
- 신규단체에게 자부담은 타격이 클 수 있기에 책임을 위한 최소한의 비율로 하되 기존 단체보다는 자부담 비율을 낮추어야 함.
- 신규단체를 성장시키려는 측면에서는 100%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음.
- 단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 매칭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임.

2) 중견단체와 전략적 파트너 구분

○ 구분하는 기준으로 규모가 아닌, 해외사업경험, 순수해외사업비용, 사업수행 국가 수, 해외사업담당 직원 수 등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을 충족시킨 단체에 한해 단체가 직접 자신이 들어갈 카테고리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 즉 단체 스스로의 역량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함. 사업에 대한 평가 또한 크로스 체크 되어야 함.

○ 영국의 PPA와 같은 제도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변형되어 반영시켜야 함. 영국에서 Oxfam이 자체 기금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영국의 특수성임. Oxfam에 대한 신뢰성 등이 형성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임.

○ 구분의 필요성 : 단체를 구분하기보다 협력방식을 다원화하면서 CSO가 필요로 하는 협력 프로그램과 시민사회가 원하는 ODA의 방향을 모색해야 함.

○ 예산 배분기준 : 한국 지형을 고려하여 상/하한선을 마련

○ 자율성 : 큰 규모의 펀딩을 받게 되는 전략적 파트너의 자율성은 매칭 비율을 조절하면서 확보되어야 함.

3) 혁신적 사업

○ 혁신적 사업의 시도가 있었으나, KOICA 민간단체지원사업 수행방식에 맞지 않아서 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있음. 혁신적 사업을 위한 지원 방식이 있다면 기존단체들이 검증하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에 투자하고 작은 규모라도 진행될 수 있을 것임.

○ 전략적 파트너가 큰 규모로 진행하기에는 risk가 큰 사업을 혁신적 사업으로 분리하여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

○ 혁신적 사업 평가주체
- 해당 사업 분야의 전문가가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임. 예로 적정기술사업의 경우 사업가, 청년벤처사업가, 사회적 기업가가 평가 주체가 될 수 있음.
- 민간단체가 심사를 주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심사/평가는 KOICA가 하되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시각으로 조금 더 유연하게 볼 수 있게 해야 함.

4) 국제 CSO 및 현지 CSO 지원

○ 긍정적 의견
-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점진적인 적용이 필요함. 초기 부작용 감소를 위해 KOICA 등록 단체에 의해 검증된 현지단체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그러나 이에 앞서 KOICA의 현지사무소가 이러한 제도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이 제고되어야 함.

- 자국의 ODA 기관을 Umbrella 조직으로 두고 아래 2-30개의 단체를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임.
- 이미 역량을 갖춘 국제 CSO와 현지에 익숙한 현지 CSO와 일하면서 한국단체들의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음. 따라서 국제/현지 CSO지원은 파트너십을 이루어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현지/국제 CSO측도 펀딩 제공과 함께 협력하는 것은 환영할 것임.

○ 부정적 의견
- INGO지원은 현재의 상황에 맞지 않음.
- INGO에게는 한국의 자금동원 조건이 까다롭고, 서로 모니터링/평가방식도 매우 달라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음.

○ 현지/국제 CSO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단체의 ODA 참여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며, 주도권이 파트너에게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됨.

5) 특별 지역 및 분야 지원

○ 국내 단체의 사업이 한정된 분야와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국제사회의 흐름과 이슈를 고려하여 특정 분야, 지역을 설정하여 유동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 이로 하여금 국내 단체들의 관심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함.

○ CSO는 정부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분야,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지원이 되어야 함.

6) 협의체를 통한 지원

○ 장기적으로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제/심사하는 것을 시민사회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바람직함.

○ 필요한 분야
- CSO 봉사단사업
-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과 같이 여러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사업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 협의체로서 역량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CSO 사업에 대한 이해의 정도 등
- 해원협이 신규단체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것은 이상적이라고 봄.
- KOICA의 도움을 받아 역량강화를 해나가야 할 것임.
- 해원협 또한 CSO로서 CSO 단체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지원해야 함.
- 해원협이 충분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회원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함.
- 민간단체들의 목소리를 연대하고,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7) 사업 활성화 지원(Initial Fund)

○ 전문가와 직원과 함께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내용을 다른 단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면 도움이 될 것임.

8) 간접비 비율·매칭비율

○ 모든 사업에 있어 인건비 비율은 올려야 할 것임. 특히 혁신적 사업의 경우에는 특히 전문 인력위주로 진행된다면, 인건비 비율을 올려야 함.

9) 컨설팅

○ 자체적으로 자문위원을 구축하여 더 나은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체 자부담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비용이 지원된다면 역량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마. 자문회의

- 날짜 : 2011년 7월 19일 화요일
- 시간 : 11~14시
- 대상 : 시민사회 전문가
- 장소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의실
- 참석자 : 송진호 대외협력 실장(한국YMCA전국연맹)
  윤현봉 사무총장(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이성훈 상임이사(한국인권재단)
  이명신 해외사업 본부장(월드비전)

1) 신규단체지원

○ 신규단체 구분 기준은 해외사업 경험이 3년이 되는 지가 중요함.

○ 신규단체로서 3년 정도의 기간을 두면서 그 기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엔 중견단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신규단체 지원 규모로 3억 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2) 전략적 파트너

○ 전략적 파트너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나 사업 규모가 커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도 함.

○ 대상으로는 큰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수 단체를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그러나 전략적 파트너에 관한 합의는 중견단체들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 전략적 파트너 프로그램이 큰 단체 위주로 된다면 단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길 수 있기에, 전략적 파트너의 범위를 넓혀서 많은 단체들에게 기회를 주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략적 파트너가 선정된 후 단체들간의 사업비 배분에 있어서 동일하게 지원될 것인지, 단체에 따라 다르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함.

○ 자금사용이 자율적이어서 인건비 지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과 인적 자원을 모두 갖출 수 있고, 인력이 갖추어진다면 장기적 측면에서 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비교적 지원금이 큰 전략적 파트너 프로그램의 대응자금비율은 그 자체가 진입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진행시켜야 함.

3) 국제/현지 CSO 지원

○ 국제 CSO와 현지 CSO를 구분하여 지원할 경우 복잡해서 실제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에 구분의 필요성을 재고해야 함.

4) 역량강화

○ 단체 지원 시 역량강화교육이 조건이 된다면 역량강화교육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기존 단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음.

5) 단체의 구분

○ 신규, 중견, 전략적 파트너 등 단어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함.

○ 신뢰할만하고,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진 주체에 의한 단체의 역량분석, 평가, 인증 등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구분하여 지원하는 방법론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한국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이를 위해 가장 이상적인 것에 근사치의 기준을 얻는 것이 필요함.

6) 단체의 등록/인증

○ 기본적으로 단체가 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기부금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정부와 CSO 사이의 상호적 책임성을 꾀하기 위해서 해원협의 역할이 필요함. 호주의 경우 해원협을 거치지 않으면 정부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7) 운영주체

○ KOICA와 해원협이 담당하는 것 이외의 프로그램의 경우는 입찰을 통해 선정

○ 영국의 Triple Line 같은 컨설팅회사나 덴마크 PATC와 같은 CSO 협의체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8) 회계감사

○ 규모가 작은 경우 회계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보통 각자 단체 안에서 감사를 하고, 외부공개를 하지 않는 단체도 있음.

○ 외부감사의 경우는 요구될 경우에 진행하나 비용이 많이 듦.

○ PPA와 같은 전략적 파트너가 되는 단체의 경우,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요구한다면 책임성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실행할 것으로 전망함.

바. 공개 심포지엄

- 날짜 : 2011년 8월 11일 목요일
- 시간 : 14~18시
- 대상 : 발표자·토론자 및 주요 참석자
- 장소 : 사랑의 열매회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하1층 강당
- 참석자 : 김노보 회장(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묘장스님 상임이사(더프라미스)
  문영기 회장(한국선의복지재단)
  박보기 연구원(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백숙희 민관협력실장(한국국제협력단)
  손혁상 교수(경희대 경희대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공공대학원)
  송진호 대외협력실장(한국YMCA전국연맹)
  신재은 과장(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이성훈 상임이사(한국인권재단)
  이창식 회장(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한충식 이사(한국국제협력단)
  한재광 사무총장(ODA Watch)

1) 역량강화

○ 현지 담당직원의 역량강화 또한 매우 중요함.

○ 사전 평가를 할 수 있는 컨설턴트 개발이 필요함.

○ 국제개발 협력분야에서 영어실력은 기본인 만큼 역량강화 교육은 영어로 진행해야 함.

○ 해원협의 역할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역량강화가 요구됨.

2) 단체구분

○ 신규단체 지원은 시민사회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중견/전략적 파트너는 개발 효과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제도의 목적이 상이함에 따라 신규, 중견, 전략적 파트너를 수평적으로 두는 것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 단체의 역사성, 대표성 및 대표자의 능력 등에 따라 단체의 특성과 역량이 상이함. 프로그램에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야 함.

3) 예산 분배

○ 매칭 비율은 상이한 비율을 적용해야 함. 예를 들어 소규모 단체의 경우 100% 지원해 주고, 큰 단체의 경우 매칭 비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음.

○ 간접비도 정량적인 비율이 아니라 단체의 특성과 사업비 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 있음.

○ 지원금으로 효율적인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KOICA 봉사단과 같이 현지 활동이 가능한 기본적인 현지 직원 파견비용이 지원되어야 함.

4) 책무성, 투명성 제고 노력 강화

○ 투명성 강화를 위해 평가지표, 역량인증 등이 이루어져야 함.

○ 10억 이상 규모의 단체들은 국세청 감사에 대한 의무가 있음. 신규단체의 경우 아직 감사 의무가 주어져있지는 않지만, KOICA의 지원을 받게 된다면 의무를 지니게 될 것임. 이는 단체들에게 부담이 될 것임. 투명성 제고가 필요함.

○ CSO가 정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을 지라도 독립적인 행위자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책무성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함.

○ 자기점검(Self-assessment)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5) 사업 발굴비 지원제도

○ 한국 자생단체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지원임. KOICA에서 적극적 지원이 요구됨.

6) KOICA-CSO Desk

○ 중점 협력국에 먼저 파견하고 전문성을 위해 정식 직원만 파견하는 것이 좋을 것임.

7) 기타

○ 해원협의 2007년 Code of Conduct 리뷰가 필요함. 현재에 맞게 수정이 요구됨.

○ 개발구호단체들의 시행착오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 시행착오도 필요하지만, 이를 공유한다면 좋은 학습이 될 것임.

○ CSO가 발전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만큼 부족함을 이해하고 장려해야 함. 이를 위해 KOICA가 CSO를 더욱 장려하기 위한 제도(reward)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가 전제된다면 신규단체가 진입할 수 있는 문이 더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국제개발에 있어 대학의 연구와 논문을 바탕으로 활동가가 활동을 하는 만큼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개발 사업과 역량강화에서 빈곤층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문제와 같이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분야로의 접근이 필요함.

○ CSO와 KOICA에게 모두 전문성과 체계성이 요구됨. CSO는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독립적인 평가자에 의해 평가받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함.

○ 동료평가과정이 큰 자산이 될 수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CSO가 더욱 학습하는 조직이 되어야 함.

연구자료 민관협력 2011-09-259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 - 시민사회 협력 방안 연구

발 행 2011년 11월
발 행 인 박 대 원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우 : 461-833)
전 화 031) 740-0256
팩 스 031) 740-0665
홈 페 이 지 http://www.koica.go.kr
인 쇄 동화인쇄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6469-074-1 13320